

러시아-중국  
문서와 사실에 나타난 동부국경





РОССИЯ-КИТАЙ: ВОСТОЧНАЯ ГРАНИЦА В ДОКУМЕНТАХ И ФАКТАХ

В. I. Tkachenko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러시아-중국

## 문서와 사실에 나타난 동부국경

지음 보리스 이바노비치 트카첸코 | 옮김 성중환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국 독자들에게 소개되는 본 역서는 1999년 러시아에서 출간된 『Rossiya-Kitay : vostochnaya granitsa v dokumentakh i faktakh』을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은 17~20세기 역사적·법적 문건을 바탕으로 러·중 간 동부국경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17세기 이래 양국 간에 구축된 법적 합의를 토대로 양국 간 영토·국경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1991년 체결된 소·중 동부국경협정의 역사적·국제법적·경제적·정치적 관점을 분석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러시아의 극동지역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연해 변강주 당국의 피나는 노력도 소개하고 있다.

지난 11년간 러·중 국경에는 2000년 체결된 러·중 동부국경 추가협정 및 2008년 하바롭스크 지역 러시아령 도서의 대중(對中) 양도와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 내 번역·출판 과정에서 2004년 러·중 동부국경 추가협정 체결로 발생한 다양한 문제를 종합·분석한 보론 『하바롭스크 지역 러·중 국경변경』을 1999년 출판된 단행본에 보충하게 되었다.

하바롭스크 시 일대 러·중 간 영토 ‘문제’에 대한 역사적·법적, 지구·물리학적 분석을 통해서 이 지역 러시아령 도서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과 대중 양도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한국에서 번역 출간되는 본 저작물은 오직 권위 있는 원전을 근거로 한 필자의 연구서이다. 이 책은 역사학, 법학, 정치학 및 국제관계학 학자, 러·중 관계 및 동북아 각국의 역사와 정치, 특히 영토·국경 문제에 관한 각국의 전략·전술을 연구하는 교수, 학생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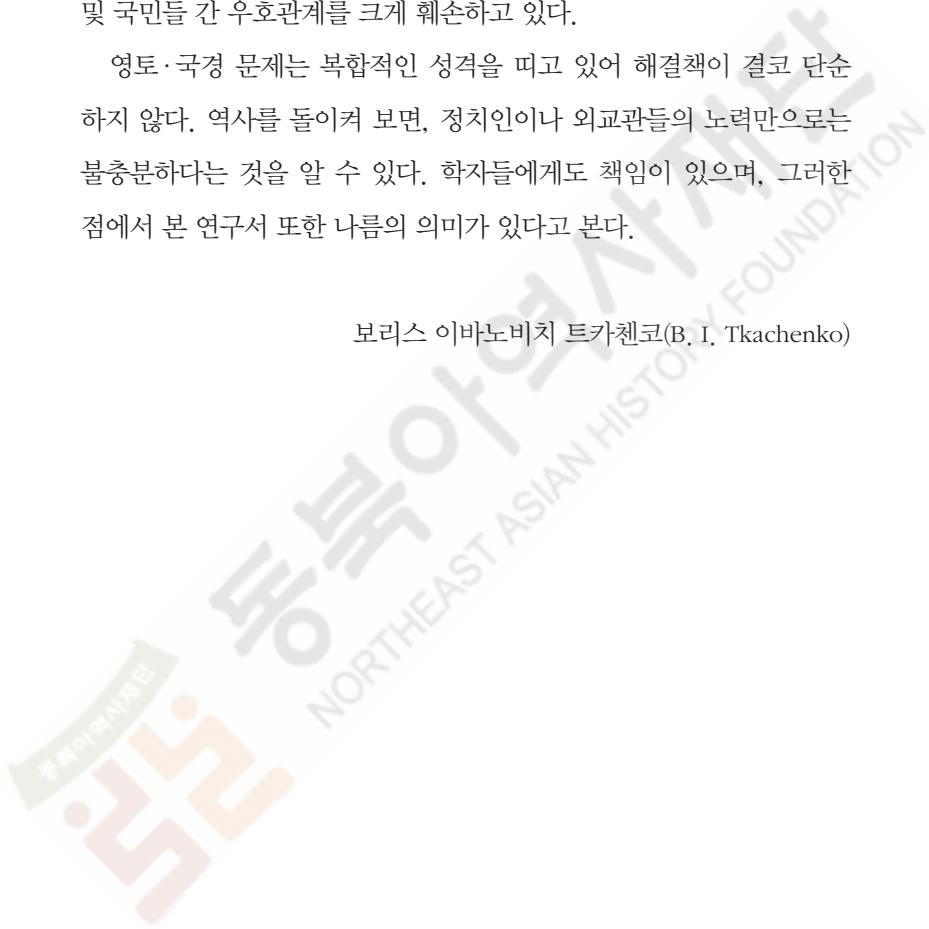
연구 중 수집된 자료는 동북아 지역 각국 간 영토·국경 문제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극동 지역 및 역내(域內) 각국 간 관계의 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는 데서 본 연구서의 실용적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극동 지역과 중국, 일본, 미국 등 주변국들과의 영토·국경 문제를 다룬 필자의 저작물로 『러시아의 대 극동 정책의 효율성 문제』(1996)를 필두로 『17~20세기 러·중 동부국경 조약 및 협정서』(1998), 『러시아-중국 : 문서와 사실에 나타난 동부국경』(1999), 『러·미 해양 경제수역 문제』(2008), 『쿠릴열도 문제 : 역사, 법률, 정치와 경제』(2009), 『문서와 사실에 나타난 러·중 동부국경』(2010) 등 다양한 연구서가 있다.

영토·국경 문제는 아·태 지역의 가장 심각한 불안 요인 중 하나이며, 미해결 국경문제는 지금도 각국 간 주요 긴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식민지배, 세계대전 및 역내 무력 분쟁에서 기인했다. 이러한 과거의 유산은 역내 통합과정을 크게 지체시키고, 각국 및 국민들 간 우호관계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영토·국경 문제는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해결책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정치인이나 외교관들의 노력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서 또한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보리스 이바노비치 트카첸코(B. I. Tkachenko)



## 1. 시작하는 말

2008년 10월 러시아와 중국은 지난 수십 년을 끌어왔던 양국 간 동부지역 국경협정을 타결함으로써 국경설정을 마무리했다. 1991년 5월 양국 간 동부국경협정이 체결된 이후 2004년 10월 14일 베이징에서 러시아연방 푸틴 대통령의 방중 기간 동안 양국 간 체결된 동부국경 추가협정은 2005년 5월 양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sup>1</sup> 협상 대표들이 최종

<sup>1</sup> 러시아와 중국 간의 동부국경 추가협정은 2005년 5월 20일 러시아연방 국가 두마(하원)에서 찬성 307표, 반대 80표, 기권 2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비준되고 5월 23일 상원인 연방회의에서 승인되었다. 그리고 5월 31일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동 협정 비준법안에 서명했다(연방법률 No. 52-Φ3). 러시아 국내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경지대 하바롭스크 인근에 마지막 국경표주를 설치함으로써 양국 간 국경 갈등의 끝은 완전히 종식되었다.<sup>2</sup>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 간에 체결된 동부지역 국경협정을 놓고 러시아 내에서는 중앙정부의 국가적 차원과 극동지역의 지역적 차원 간에 상당한 인식 및 이해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중앙정부는 대내적으로 국가의 영토적 경계를 명확하게 만듦으로써 국가의 안보와 통합성을 공고하게 구축하고 대외적으로는 중국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해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협정 체결 이후 중국은 양국 접경지역에 있는 도서(島嶼)와 하천 등에 대한 영유권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왜냐하면 중국은 동 협정을 통해서 국경안보와 지역개발, 물적·인적 자원의 활발한 교류 그리고 군사적·상업적 항행 등 다양한 측면의 이익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른바 양국의 이해관계가 적절한 지점에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확립과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모델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 이어 2004년 추가협정에 대한 지역 차원의 이해에 집착하는 극동지역 현지 행정당국과 주민들의 불만은 상당히 고조되어 있다. 실제로 극동지역 현지 지주와 농어민들은 토지와 어로구역 등 생계수단이나 생활터전을 잃게 되어 직접적인 경제적 손

---

법의 승인 절차를 마치고 6월 2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중이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동부국경 추가협정'은 양국 간의 국경협정으로 발효되었다. 트카첸코 저서의 번역본 『하바롭스크 지역 러·중 국경변경』의 본문 내용 가운데 발췌.

2 『조선일보』 (2008. 10. 14).

실을 입게 되었다. 또한 전통적인 지정학적 관점에서 있는 정치인이나 지정학 전문가들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동 협정으로 말미암아 국경이 후퇴하고 그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비판한다. 하바롭스크 공항 이전, 기존 군사시설 폐쇄 및 신 국경지대에 새 군사시설물 구축 등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지 러시아 영토 및 국경 관련 전문가들은 동 협정으로 중국에 양도된 지역에 분포하는 현시적·잠재적 지하자원과 수자원, 그리고 항행권 허용 등으로 인한 경제적·군사안보적 손실의 총합은 30억~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더해 이 지역 고유의 지정학적 가치에 입은 손실액은 산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흥미로운 것은 모스크바(중앙)와 극동지역(지방) 사이에 대중 동부국경협정 체결에 대한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린 것이다. 말하자면 모스크바 쪽은 이 협정을 거시적·미래지향적·전략적 차원의 ‘국익’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비해 극동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미시적·지역적 이해를 언급하면서 현실적·구체적인 손실을 계산하고 잘못된 협정이라고 폄하하는 입장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주하는 영토·국경 문제 전문가인 트카첸코(B. I. Tkachenko)의 『러시아-중국: 문서와 사실에 나타난 동부국경』이라는 연구 단행본을 발굴, 역자를 통해 번역하게 되었다. 트카첸코의 저서는 기본적으로 러시아 극동지역 영토와 국경에 대한 현지 행정당국 및 주민들의 인식과 이해를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러시아와 중국의 동부지역 국경협정 타결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이해가 극명하게 다르다. 따라서 트카첸코 연구서의 의의를 평가하기에 앞

서 러시아연방 중앙정부 차원의 영토·국경정책 기초에 대해 간단히 살핀 후 저자 트카첸코의 주요 주장과 입장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 2. 러시아연방의 당면과제와 영토·국경정책의 기초

러시아는 모스크바 공국의 통치자 이반 III세(Ivan III, 재위 1462~1505)<sup>3</sup> 때부터 본격적인 영토 확장을 시작하여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제정러시아가 소멸할 때까지 약 450년 동안 일일 평균 128km<sup>2</sup>씩 영토를 확장해 왔다. 제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약간의 기복이 있었으나 러시아의 영토 확장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이하 ‘소연방’) 당시에 계속되었다. 따라서 1991년 소연방이 해체될 때까지만 해도 전세계 육지 면적의 1/6에 해당하는 거대한 영토가 소연방에 속해 있었다.

소연방 해체로 새롭게 등장한 러시아연방(이하 ‘러시아’)은 지난 수 세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영토 확장의 시대를 마감하고 근대적 ‘국민 국가 건설(Nation-State Building)’에 총력을 기울여야 했다. 서유럽의 근대화 과정을 보면 다인종·다민족적 식민 제국(Empire)들이 해

3 이반 III세는 몽골의 통치세력인 ‘킵차크한국(Kipchak汗國)’을 물리쳐 240년간 지속되었던 러시아 지역에 대한 몽골의 압제를 종식시켰을 뿐만 아니라 노브고로드 공국(Novgorod公國)을 비롯한 주변의 여러 공국을 통합하여 러시아의 영토를 확장했다. 그의 영토 확장 노력은 파편화되어 있던 동슬라브계 러시아 세력 전체를 모스크바 공국 중심으로 아우르는 출발점이 되었다. 그의 뒤를 이은 계승자 바실리 III세(Vasili III, 재위 1505~1533)에 이르러 오늘날 러시아와 더불어 슬라브 3국으로 통칭되는 우크라이나(키예프 지역), 벨라루스(민스크 지역) 등이 러시아와 통일을 이룬 것도 이반 III세의 영토 및 세력 합병정책의 결과이다. 이반 III세가 대제(the Great)로 통칭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체되면서 국민 국가 단위로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 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은 특정한 인종집단(Ethnicity)을 기반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을 일컫는다. 이것은 자국 국민들에 대해 근대적 시민권을 형성하고 공동체적 일체감을 고취시켜 국가의 응집력을 확보하는 일이다.<sup>4</sup> 그러나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꾸준히 영토와 세력을 확장하면서 다인종·다민족으로 구성된 제국(Empire, not Imperial State)의 위상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소연방이 해체될 때 ‘제국의 상실’이라는 예상치 못한 당혹감과 마주하게 되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러시아도 제국의 형태를 포기하고 국민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당면과제와 직면한 것이다.

거대제국의 모습을 띤 러시아의 영토 내에는 유럽계에서 아시아계에 이르기까지 인종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가 추구하는 국민 국가의 정체성은 특정한 인종집단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자국 영토 내의 모든 인민을 아우르는 ‘영토적 공민(Civic Territorial)’ 개념을 내세워 그 안에 모든 민족과 인종을 통합적으로 담아야 했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는 영토적 통합성을 강조하는 연방주의 국가를 추구한다는 것이다.<sup>5</sup> 바로 이러한 이유로 국민 국가 건설을 위한 러시아의 대내외 정책목표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를 국경 안정과 영토적 통합성을 공고히 하는 데 둔 것이다.

<sup>4</sup> Mette Skak(1996), *From Empire to Anarchy: Post-Communist Foreign Polic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N.Y. : St. Martin's Press, pp. 21~22.

<sup>5</sup> Robert J. Kaiser(1994), *The Geography of Nationalism in Russia and the USSR*,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homas F. Remington (1999), *Politics in Russia*, N.Y. : Longman, Ch. 2.

영토 및 국경에 관한 러시아의 정책 목표와 기조는 독립 초기에 제정한 「러시아연방 국경에 관한 법률(Zakonodatelstvo o Gosudarstvennoy Granitse RF)」(이하 ‘국경법’)에 잘 정리되어 있다.<sup>6</sup> 국경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의 영토·국경정책은 국가 주권과 영토 불가침, 영토적 통합성을 확립하고 연방 국경지역의 안보와 국익을 수호하는 데 만전을 기한다. 둘째, 국경정책은 연방의 국경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여기에는 연방의 국경, 국경 통과(검문)소, 접경지역, 영공, 영해, 내수면, 경제특구 등을 모두 포함한다. 셋째, 국경정책은 접경국들과의 선린우호관계 구축과 공동 번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한다.

나아가 러시아는 국경정책의 목표와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첫째 러시아 국경에 대한 국제법적 기준을 시급히 완성하고,<sup>7</sup> 둘째 러시아 국경에 대한 안보를 확립하며, 셋째 독립국가연합을 러시아의 내부적 국경지대로 상정하고 그 외부지역으로부터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의 집단안보를 확립하고자 노력해 왔다.<sup>8</sup>

<sup>6</sup> 「국경법」전문(全文)은 [www.rospotrebnadzor.ru/documents/zakon/464/](http://www.rospotrebnadzor.ru/documents/zakon/464/) (2010년 7월 21일 검색) 참조. 러시아의 국경법은 1993년 4월 처음 제정되었으나(Federalny Zakon No.4730-I or 01.04.1993)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2006년 6월 개정된 국경법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sup>7</sup> 쿠디아로프(V. Kudiyarov), “Dialektika Mezhsudarstvennogo Razgranicheniya” *Zakon i Pravo*, (7월), 32~36쪽.

<sup>8</sup>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과거 소연방의 외부 국경을 국제법과 국경레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 회원국들의 국경방위를 위해 선린우호의 원칙과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였다. 그리신(M. L. Grishin)·

이와 같이 러시아는 독립 초기부터 선린우호와 평화 우선의 미래지향적 국경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에 소연방 해체로 새롭게 등장한 많은 접경국들과의 심각한 영토갈등이나 국경 분쟁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러시아는 유럽통합과 세계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초국경적 협력이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한 첩경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sup>9</sup> 러시아의 영토·국경정책의 근간은 지정학적 유라시아주의로 확실하게 정립되었으며,<sup>10</sup> 중국과의 동부지역 국경협정을 원만하게 타결한 점 역시 이러한 정책기조가 실행된 사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3. 트카첸코 연구 단행본의 주요 내용

트카첸코의 저서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999년 출판된 단행본은 본문 3개의 장과 부록 4개의 별첨문서를 담고 있다. 동 단행본이 출간된 이후 러시아와 중국 간 동부지역 국경협정이 최종적으로 타결되었다. 그 무렵 단행본의 한국어 번역이 추진되었다. 그에 따라 저자인 트카첸코는 양국 간 국경설정 과정에서

굽첸코(V. N. Gubchenko) 등(2001), *Problemy Pogranichnoy Politiki Gosudarstva i Ikh Resheniya*, 모스크바: BDTS-press, pp. 46~49. 신생국의 불완전한 국경과 민족갈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Stephen Van Even(1994), "Hypotheses on Nationalism an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18, no. 4(Spring), pp. 21~22.

<sup>9</sup> 로마노프(S. Romanov)(1997), 「국경협력 상의 러시아 지역」, *Mezhdunarodnaya Zhizn*, (11~12월), pp. 100~110.

<sup>10</sup>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우준모(2005), 「러시아의 지정학적 목표: 유라시아주의의 확립과 실현」, 『국제정치논총』 제45집 1호, 255~280쪽.

최후까지 쟁점으로 작동했던 하바롭스크 지역 국경 변경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조사·분석한 보론 성격의 글을 보내왔다. 이로써 이 단행본은 본문이 4개 장으로 늘어난 셈이다.

본문의 제1장은 러시아와 중국이 처음으로 체결한 조약인 1689년의 네르친스크 조약부터 1860년의 베이징 조약을 거쳐 1991년 ‘소·중 동부국경협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약 및 협정들을 분석하고 있다. 각 조약의 주요 조항 내용을 발굴하여 세세하게 소개·분석하고 있는 점이 탁월하다.

제2장은 주로 1991년 ‘소·중 동부국경협정’ 내용을 다루고 있다. 동부지역 국경선의 총 연장은 4195.22km에 이른다. 그 중 육로국경선이 578.18km, 수로국경선이 3547.01km 그리고 호수 면을 지나는 국경선이 70.03km이다. 저자는 1991년 소연방이 중국과 협상을 통해 세계 최장의 국경선을 새로 획정하면서 심각한 문제와 오류가 발행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1991년 국경협정은 앞서 제1장에서 소개한 역사적 기록과 문서에 명시된 모든 내용을 무시한 채 러시아(소연방)가 너무 많은 권역에서 러시아 땅을 내주도록 규정한 매국적 졸속 작품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1991년 동부국경협정의 내용을 서부의 치타 주에서부터 동쪽 끝 연해 변강주 하산구에 이르기까지 권역별로 세분하여 분석했다. 아무르 강[Amur R., 黑龍江] 하바롭스크 지역 및 두만강 하구에서의 선박 항행권 규정을 변경하거나 개정하면서 러시아가 중국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허용한 점 등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특히 제2장에서 1991년의 국경협정은 영토 할양이나 변경 시 의회의 비준을 받도록 명시한 국내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과 협정서의 서명 양식, 내용과 작성과정 및 상호 교환의 방식 등 많은 측면에서 국가 간에

체결된 조약의 공식문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사료(史料)를 통해 입증하고 있다. 트카첸코 연구의 핵심부분에 해당하는 제2장은 A4 100장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러시아의 국익이 현저하게 훼손되었다는 결론을 논증하고 있다.

제3장은 1991년 5월 서명된 소·중 간 동부국경협정이 협정 체결 이후에도 비밀에 부쳐져 있었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 협정으로 러시아가 얼마나 큰 영토적·지정학적·경제적·생태학적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지를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해당 지역 지방정부와 전문가 그룹이 동 협정이 지닌 태생적 한계와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해 전개한 노력과 투쟁을 조항별·권역별로 분석한 다음,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하고 있다.

보론적 성격을 지니는 ‘하바롭스크 지역 러·중 국경변경’에 관한 내용은 양국 간 국경협정 과정에서 최후까지 쟁점이 되었던 하바롭스크 지역의 하천과 수로, 섬 등에 대한 국경설정 내용을 다루고 있다. 2008년 10월 러·중 양국은 동부지역 국경설정 문제를 최종적으로 매듭지었다. 그러나 소연방 말기인 1991년 협정 이후 17년 동안 계속된 러·중 국경협상 과정과 결과 역시 정보가 소상하게 공개된 바 없다. 결국 트카첸코는 협상에 참여했던 관료나 의회 내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지정학 및 영토·국경 관련 전문가들을 인터뷰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언론보도 내용 등을 취합하여 최종 타결된 러·중 국경선을 확인했다. 저자는 결론적으로 중국은 오랜 시간을 끌어 온 협상기간 동안 일관된 협상 행태를 보여준 반면 러시아는 무책임하고 전략이 부재한 협상 행태를 드러냈다고 비판한다. 그 결과 당연히 중국이 얻은 국익은 최대치에 달한 반면 러시아의 손실은 극에 달했다는 것이다.

#### 4. 평가 및 제언

트카첸코의 저서가 비록 극동지역의 이해와 인식에 경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맥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러시아와 중국 간 동부지역 국경설정에 대한 역사적·법적 근거를 1, 2차적 사료와 문건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름지기 학자가 자신이 주장(Argument)하는 바를 설득력 있게 전개하려면 풍부한 논거(Reasons)와 체계적인 서술과정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트카첸코의 저서는 러시아와 중국 간 국경설정의 전 과정을 사료와 문건에 기초하여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트카첸코의 저서는 영토와 국경에 대해 매우 강한 ‘근대적’ 집착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의 논거와 주장은 일관되게 러시아가 이미 영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영토와 하천, 수로 그리고 영공에 대해 양보할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말하자면 러시아 지방정부의 입장이나 전형적으로 근대적 인식과 이해에 기초를 둔 지정학적 맥락에서는 트카첸코의 논리가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다만 이와 같은 완고한 입장으로는 러시아가 중국과의 해묵은 국경 갈등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국 간 우호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거나 변경지대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은 고려조차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오늘날 냉전 종식 이후 급속히 진행되는 복합적 상호의존성은 구조화되고 심화되는 데다 국가 간 이해관계가 다층적으로 발전하는 세계화 시대에 어떻게 근대적 국민국가 중심적인 사고체제로 대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트카첸코의 연구가 한국정부와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본다. 우선 영토문제를 연구·분석하면서 대상에 대한 사료와 문건을 철저히 수집하고 관련 인사들을 발굴하여 심층적인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은 아주 훌륭한 귀감이 될 수 있다. 앞에서 논한 바처럼 러시아 중앙정부가 탈냉전의 새로운 세계에서 자국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성안(成案)한 영토·국경정책의 목표와 기초 역시 높이 평가받아야 할 내용이다. 국민 국가가 지닌 ‘근대성’을 탈피한 초국가적 수준의 협력과 선린우호의 해안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정부와 한국사회는 독도 영유권을 비롯한 백두산 북사면과 두만강 수로 항행권 등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영토성(Territoriality)을 어떻게 정립하고 초국가적 협력과 선린우호의 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체계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영토분쟁은 갈등의 대상 국가가 있어서 자국민의 정서나 일방적인 집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트카첸코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은 영토와 국익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할 뿐만 아니라 지루하고 긴 협상 과정에서 일관된 협상 행태를 보인다. 현재 한국은 동북공정을 비롯한 황해상의 어업권 문제,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운영, 북한의 천연자원에 대한 중국의 선점 등 다양한 쟁역에서 중국을 상대해야 한다. 트카첸코의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여기에 있다.

이 번역본이 나오기까지는 선문대학교 동북아학과 우준모 교수의 꼼꼼한 감수 및 지도와 동북아역사재단 최덕규 박사의 광범위한 도움이 있었다. 두 학자의 도움이 없었다면 장황하고 두서 없는 단행본의 번역을 중도 포기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두 분의 도움에 깊이 감사드리는 바이다.

또한 이번 번역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많은 연구·학습 기회를 제공  
해 준 동북아역사재단에도 감사를 표한다.

성종환



- 이 책은 보리스 이바노비치 트카첸코(B. I. Tkachenko)의 책 『Россия-Китай : восточная граница в документах и фактах』(블라디보스토크 : 우수리 출판사, 1999)를 번역한 것이다.
- 외래어 표기는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을 따랐다.

## 차례

- 저자 서문 · 4
- 역자 해제 · 7

### 제1장 17~20세기 러·중 동부국경 설정에 관한 역사적·법적 문건

1.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 · 25
2. 1727년 부라 조약과 카흐타 조약 · 28
3. 1858년 아이훈 조약 · 34
4. 1858년 톈진 조약 · 36
5. 1860년 베이징 조약 · 37
6. 1861년 한카 의정서 · 43
7. 1881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 · 49
8. 1886년 노보키엠스크 의정서와 하바롭스크 의정서 · 51
9. 1911년 치치하얼 협약 · 59
10. 1917년 10월 혁명에서 1991년 협약까지 · 63
11. 1991년 '소·중 동부국경협정' · 72

### 제2장 1991년 「소·중 동부국경협정」 분석

1. 치타 주 국경변경 · 83
2. 아르군 강 국경변경 · 88
3. 아무르 강 국경변경 · 98
4. 하바롭스크 지역 국경변경 가능성 · 118
5. 하바롭스크 지역 아무르 강 선박 항행규정 변경 · 135
6. 우수리 강과 순가차 강 국경변경 · 140
7. 연해 변경주 국경변경 · 146
8. 연해 변경주 한카구 국경변경 · 151

9. 연해 변경주 우수리스크구 국경변경 · 169
10. 연해 변경주 하산구 국경변경 · 203
11. 두만강 하구 선박 항행규정 개정 · 256
12. 빼앗기는 영토 · 273
13. 소·중 동부국경협정의 법적 문제점 · 276
14. 러시아-중국 : 미래에 대한 시각 · 291

### 제3장 극동지역 러시아 영토 수호를 위한 연해 변경주 행정부의 투쟁

1. 중국의 대 러시아 극동정책 · 354
2. 연해 변경주 관내 러·중 간 국경설정 과정의 제문제와 지정학적·경제적·생태학적 영향 · 356
3. 결론과 제안 · 359

### 별첨문서

- 별첨 1. 1991년 5월 16일자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소·중 동부국경협정 · 377
- 별첨 2. 러·중 동부국경설정 작업 완료조치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 · 391
- 별첨 3. 국경 인접 구역과 국경표주 《П》 일대의 지형연구 및 문서분석 결과 · 393
- 별첨 4. 국경표주 《П》 설명서 · 405

### 보론

- 하바롭스크 지역 러·중 국경변경 · 407

- 저자와 역자 소개 · 455  
 찾아보기 · 456



제 1 장

17 ~ 20 세기 러·중 동부국경  
설정에 관한  
역사적·법적 문건

동북아시아  
연구재단  
동북

동북아시아  
NORTHEAST ASIAN  
RESEARCH FOUNDATION



러시아와 중화인민공화국 간 영토 ‘문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면 지난 300년(17~20세기) 동안 양국이 체결한 영토·국경 문제에 관한 역사적·법적 문건이 바탕이 되어 한다.

이 기간 러·중 간 동부국경의 영토·국경 문제에 관한 상호관계를 조율해 온 각종 협정 및 조약은 다음과 같다.

1689년 네르친스크(Nerchinsk) 조약, 1727년 부라(Bura) 조약과 카흐타(Kyakhta) 조약 및 별첨 교환서신, 1858년 아이훈(Aihun) 조약, 1858년 텐진 조약, 1860년 베이징 조약(텐진 조약에 대한 추가조약), 1861년 한카 의정서, 1881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 1886년 노보키예스크 의정서와 하바롭스크 의정서, 1911년 치치하얼[齊齊哈爾] 협약 및 1991년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동부국경협정

## 1.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

1640년대 시작된 러시아인들의 프리아무르 지역 이주는 1680년대 만주족(族)과의 무력충돌 이후 중단되었다. 만주족은 17세기 중반 중국을 손에 넣은 후 러시아인들이 개척한 프리아무르 지역 정복에 심혈을 기울였다. 러시아는 1689년 체결한 국경 및 무역조건에 관한 네르친스크 조약(Treaty of Nerchinsk)에 따라 스스로 개척한 광활한 프리아무르 영토를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에 내줘야만 했다.<sup>1</sup> 러시아 측 협상 대

<sup>1</sup> 외무부 출판사(1889), 「1689년 8월 27일 네르친스크 조약」, 『러·중 조약집』, 1689~1881년, 상트페테르부르크 : 제정과학아카데미 인쇄소, 1~6쪽 ; 트카

표들에게 강요되었던 네르친스크 조약의 영토 조항은 러시아 측에 매우 불리한 것이었다. 더구나 당시 청나라의 국경은 랴오둥(遼東) 반도 이북, 아무르 강 이남 800~1000km 지점을 지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나라 전권대표들은 회담 초기부터 자바이칼(Zabaikal) 지역과 레나 강 동쪽에 이르는 영토 전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 알바진(Albazin) 성을 포함한 알바진 군관구의 드넓은 관할지역(아무르 강 중·상류 양안 지역) 내에 있던 러시아인 거주지와 요새들은 아무르 강 하류와 서쪽 네르친스크 지역으로 내밀려야만 했다(제3조). 아르군(Argun) 강 우안에 있던 아르군 요새는 좌안으로 이전했으며, 아르군 강 최상류(발원지)로부터 시작해서 강 서쪽과 동쪽 전 지역, 즉 강 우안이 모두 청나라로 넘어갔다(제2조). 그러나 만주족은 자신들에게 귀속된 아무르 강 좌안의 광활한 영토를 사실상 버려둔 채 관리하지 않았다. 양국 간 국경선은 아르군 강, 초르나야(Chornaya) 강 인근 실카(Shilka) 강 좌측 지류인 고르비차(Gorbitsa) 강 및 스타노보이 산맥(와이싱안링, 外興安嶺)을 따라 우디(Ud') 강까지로 확정되었다.

우디 강에서 아무르 강 인근 산악지대까지, 즉 오호츠크 해로 유입되는 강 유역 해안 지역 영토에 대한 국경선 획정은 연기되었다(제1조). 네르친스크 조약에 따라 확정된 국경선은 (아르군 강 일대를 제외하고) 매우 불분명했다. 이는 명칭이 불확실하거나 아예 등록되지 않은 하천과 산들이 아무르 강 이북 지역과 그 인근 지역의 지리적 좌표를 대신하고 게다가 관련 지도 또한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첸코(B. I. Tkachenko)(1998), 『17~20세기 러·중 동부국경 조약 및 협정서』, 블라디보스토크 : 극동대학교 출판부, 47~49쪽.

네르친스크 조약 체결 후 후속 국경설정 작업이나 지도 제작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경설명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이처럼 네르친스크 조약에 따라 설정된 양국 간 국경선은 아르군 강 일대에 불과했다.

네르친스크 조약문은 러시아어, 라틴어 및 만주어로 작성되었다.<sup>2</sup> 러시아어본의 작성일자는 1689년 8월 27일(러시아 구력), 라틴어본과 만주어본의 작성일자는 8월 28일로 각각 기록돼 있다.

1689년 8월 29일(9월 8일 : 이하 괄호안은 신력) 러시아와 중국의 전권 대리인들이 서명하고 라틴어본 2부를 상호 교환했다.<sup>3</sup>

당시 러시아 통역관은 라틴어에서 번역된 러시아어본 마지막 부분에 청나라 대표들을 돕던 통역관의 말을 인용하여 만주어본이 라틴어본과 합치하며, 러시아 측에는 만주어 통역관이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 측 대표들은 만주어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기록했다.<sup>4</sup>

그러나 네르친스크 조약 체결 당시 3개 언어본의 내용이 서로 합치해야 한다는 조건은 준수되지 않았다. 러시아어본과 라틴어본은 대체로 일치하지만, 내용과 조약의 조문 분류에서조차 서로 차이를 보이며, 조약문의 러시아어본, 만주어본, 라틴어본에 사용된 지명 또한 일치하지 않는다.

<sup>2</sup> 네르친스크 조약의 보다 정확한 3개 국어 원문은 다음 책에 실려 있다. 「17세기 러·중 관계」, 『문서와 자료』(1972) 총 2권 중 2권, 1689~1691년, 모스크바 : Nauka, 582~584쪽(러시아어본), 645~646쪽(라틴어본), 649~650쪽(만주어본) ; 트카첸코(1998), 47~49쪽(러시아어본), 50~52쪽(라틴어 러역본), 52~55쪽(라틴어본), 55~57쪽(만주어본).

<sup>3</sup> 「17세기 러·중 관계」, 『문서와 자료』(1972), 645쪽.

<sup>4</sup> 『문서와 자료』(1972), 594쪽.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은 중국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자 러·중 양국이 맺은 최초의 조약이었다. 네르친스크 조약은 향후 170년 동안 자바이칼 지역과 프리아무르 지역에 대한 러·중 양국 관계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약문의 3개 언어본의 내용이 서로 달라 고르비차 강 이동 지역은 국경이 사실상 확정되지 않은 채 양국 간 완충지 역할을 하게 되었다. 만주인들은 [아무르 강 좌안 제야(Zeya) 강 하구 지역과 제이스코부레인 평원의 64개 만주족 마을을 제외하] 러시아 카자크인들이 남기고 떠난 알바진 군관구 관할지역에는 거주하지 않았다. 중국인들은 19세기 중엽까지 만주지역에서조차 거주가 금지되었다.

네르친스크 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상황은 중요하다. 이 조약은 당시 러시아의 공동황제 이반 알렉세예비치와 표트르 알렉세예비치(표트르 1세) 형제의 명을 받은 대귀족 표도르 골로빈(F. F. Golovin, 대표단에는 대귀족 블라소프(I. E. Vlasov)와 서기 코르니츠키야(S. Kornitskaya)가 포함되었음)가 이끄는 전권대리인들과 청나라 황제의 전권대리인들에 의해 체결되었지만 러시아 황제나 청 황제의 추인을 받지 못하여 비준서나 법적 의미를 갖는 조약문은 상호 교환되지 않았다. 따라서 네르친스크 조약의 각 조항은 국제법상 법적 효력을 갖지 못했다.

## 2. 1727년 부라 조약과 카흐타 조약

1727년 예카테리나 1세가 파견한 라구진스키-블라디슬라비치(Raguzinsky-S. L. Vladislavich)가 이끄는 러시아 대표단은 베이징에서 시작하여 국경에서 지속된 2년간의 회담 끝에 영토분할 및 남쪽 바이

갈호와 서쪽 아르군 강으로부터 사얀 산맥(현 하카시아)까지의 러·중 간 국경획정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다. 당시 동몽골은 청나라에 점령되었다.

먼저 러·중 간 국경획정에 관한 부라 조약(Treaty of Bura)이 체결되었다.<sup>5</sup> 본 조약은 1727년 8월 20일(31일) 부라 강(아르군 강 지류)에서 체결되었다. 부라 조약에 따라 아르군 강(동쪽)에서 서(西)사얀 산맥의 사빈다바가(Shabin-Dabaga)령까지의 구간에 대한 러·중 간 대체적인 국경이 확정되었다. 부라 조약은 러시아어, 라틴어, 만주어 및 몽골어로 작성되었다.

러시아 측에서는 러시아의 특명전권공사 4등문관 블라디슬라비치 백작과 사절단 서기관 글라주노프(I. I. Glazunov)가 서명했다. 서명 후 양측은 동 국경조약을 포함한 완전한 조약문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조건하에 부라 강에서 조약문을 상호 교환했다.

부라 조약에 따라 2개의 러·중 공동 국경표지위원회가 구성돼 현장에 국경을 설정하고 ‘부속서’ 국경표지 소재 설명서(국경표지 목록) 및 국경지도(도면) 등 관련 문서를 작성했다.

카흐타(Kyakhtha)에서 아르군 강 상류까지의 구간에 대한 러·중 간 국경획정에 관한 첫 번째 부속서가 국경표지 목록과 함께 1727년 10월 12일(23일) 아바가이투이(Abagaitui) 산에서 서명되었다.<sup>6</sup> 러시아 측에서는 러시아 사절단 서기관 글라주노프 국경수비대장이 서명했다. 두

<sup>5</sup> 「1727년 8월 20일 부라 조약」, 『러·중 조약집』(1889), 11~14쪽 ; 트카첸코(1998), 57~59쪽.

<sup>6</sup> 부라 조약에 따라 작성된 카흐타 좌측에서 아르군 강 상류까지의 러·중 간 국경분할에 관한 1727년 10월 12일자 부속서, 「국경표지 목록 별첨」, 『러·중 조약집』(1889), 27~32쪽 ; 트카첸코(1998), 59~68쪽.

번째 부속서는 카흐타에서 사빈다바가까지의 러·중 간 추가 국경분할에 관한 문서로 국경표지 목록과 함께 부라 강에서 1727년 10월 27일(11월 7일) 서명되었다.<sup>7</sup> 러시아 측에서는 국경수비대장 콜리초프(S. A. Kolychov)가 서명에 참여했다.

첫 번째 부속서는 러시아어와 만주어로, 두 번째 부속서는 러시아어와 만주어 및 몽골어로 작성되었다. 부라 조약은 카흐타 조약의 핵심 조항으로 조약문 제3조에 반영되었다.

러·중 양국 간 정치·경제관계를 규정한 카흐타 조약은 1727년 10월 21일(11월 1일) 체결되었다.<sup>8</sup> 카흐타 조약에 따라 양측은 ‘각측은 현재의 점유지를 점유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국경을 획정했다.

동쪽 국경선은 달라이노르(Dalay-Nor) 호수 북쪽 아르군 강 강변에 있는 아바가이투이 산, 즉 네르친스크 조약에 따라 확정된 지점에서부터 부라 조약과 카흐타 조약 체결 당시 존재했던 러시아군 초소와 청군 경계초소(과거 몽골 초소로 주로 아르군 강에서 대러 국경지역의 카흐타 성에 이르는 지역에 배치되었음)를 따라 획정되었다. 이러한 초소가 없는 곳에서는 주로 산맥, 하천 등 자연지형지물이 국경을 이루었다. 카흐타에서 사야니(Sayany) 산맥까지의 국경선은 주로 산맥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몽골 서북지역에서 우란하이(Uryankhay : 현 투바) 지방까지의 국경선은 조약문에만 명시되었을 뿐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7 카흐타에서 우측으로 사빈다바가까지, 그리고 콘타이시나(Kontayshina)까지의 러·중 간 국경분할에 관한 1727년 10월 27일자 부속서, 『국경표지 목록 별첨』, 『러·중 조약집』(1889), 41~43쪽 ; 트카첸코(1998), 69~73쪽.

8 「1727년 10월 21일 카흐타 조약」, 『러·중 조약집』(1889), 50~60쪽 ; 트카첸코(1998), 앞의 책, 74~77쪽.

카흐타 조약 제7조에 따라 우디 강 유역의 영토분할 및 해당 지역 러시아 하천 문제에 대한 논의는 또다시 연기되었다. 이는 해당 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고, 러시아 측 대표들이 아무르 지역 영토분할에 대한 전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카흐타 조약 체결로 러시아는 자신의 영토 일부를 상실하게 되었다. 그 첫 번째 지역은 아르군 강 상류였다. 네르친스크 조약에 따르면 아르군 강 좌안 전체가 '최정상'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영토였고, 당시 아르군 강 발원지는 달라이노르 호수였다. 따라서 달라이노르 호수까지의 아르군 강 좌안 전 지역이 러시아령으로 남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카흐타 조약에 따라 아르군 강 좌안의 러시아 영토는 아르군 강으로 흘러드는 우측 지류 하일라르(Khaylar) 강에서 시작되고, 아르군 강 상류 지역은 청나라에 귀속되었다.

청나라에 내준 두 번째 러시아 영토는 치카야(Chikaya) 강과 셀렌가(Selenga) 강 유역으로 치카야 강 남안 전역과 셀렌가 강 유역 일부가 청나라 영토로 귀속되었다. 그 밖에 우란하이 지방의 국경설정 당시 저지른 실수로 인해 사야니 산맥과 탄누올라(Tannu-Ola) 산맥 사이의 상당한 영토가 마치 무주지(無主地)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이곳 우란하이 유목민들은 러시아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sup>9</sup> 그 밖에 카흐타 조약에 따른 영토분할 시 17세기 전반에 걸쳐(1617~1680년대 말)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서부 몽골지역의 광대한 러시아의 봉토가 청나라에 넘어갔다. 이들 봉토는 서쪽의 우스바노르(Usba-nor) 호수로부터 동

<sup>9</sup> 프로호로프(A. Prokhorov)(1975), 「소·중 국경문제에 부쳐」, 모스크바 : Mezhdunarodnye otnosheniya, 96쪽.

쪽 흡수굴(Khubsugul) 호수에 이르는 지역과 남쪽 몽골알타이산맥 기슭으로부터 북쪽 대규모 영토를 포함한 현 투바 공화국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였다.<sup>10</sup> 또한 1688년 북부 몽골지역의 상당한 영토를 점유하고 있던 수십 명의 몽골족이 골로빈(F. A. Golovin)과 체결한 조약에 따라 러시아에 귀속되었다.<sup>11</sup> 이 지역은 17세기 말 만주족에게 점령되었다. 한편 카흐타 조약에 의한 영토분할 시 몽골 봉건지주들의 관리하에 있던 크라스노야르스크(Krasnoyarsk)와 쿠즈네츠크(Kuznetsk) 이남의 영토가 러시아에 추가로 귀속되었다.

카흐타 조약은 러시아어, 라틴어 및 만주어로 작성되었다.

카흐타 조약은 러시아 대사 블라디슬라비치 백작과 서기관 글라주노프가 서명했다. 서명 후 러시아 대사는 청국 전권대리인들에게 날인된 러시아어본과 라틴어본 조약문을 전달하고, 청국 대표들은 러시아 대사에게 날인된 만주어본, 러시아어본 및 라틴어본 조약문을 전달했다. 조약문은 1728년 6월 14일(25일) 카흐타에서 교환되었다.

카흐타 조약은 19세기 중반까지의 러시아와 청국 간 외교·경제문제 및 1911년까지의 국경 문제에 관한 법적 근거로 작용했다. 그 후 카흐타 조약은 18~20세기에 상호 합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서에 의해 수정·보완되었다.

1768년 10월 18일(20일) 러·중 국경에 관한 카흐타 조약의 추가조항

<sup>10</sup> 마스니코프(V. S. Myasnikov)(1996), 『조약문에 의한 확인. 17~20세기 러·중 국경외교사』, 모스크바: 러시아 역사학회 Mosoblupropoligrafizdat 출판사, 154·199·219~220쪽.

<sup>11</sup> 『조약문에 의한 확인. 17~20세기 러·중 국경외교사』, 162~164쪽.

이 서명되어 월경지들에 대해 규정한 조약문 제10조가 개정되었다.<sup>12</sup> 그 밖에 카흐타 조약에 의해 설정된 관련 지역의 국경선은 산맥을 통과한다는 내용이 보완되었다. 문서는 러시아어, 만주어 및 몽골어로 작성되었으며 러시아 측에서는 예카테리나 II세의 크로포토프(I. Kropotov) 전 권위원이 러시아어본과 만주어본에, 청나라 측에서는 전권대리인들이 만주어본과 몽골어본에 서명·날인했다. 이어 동일 문안의 추가조항이 상호 교환되었다.

1792년 2월 8일(19일) 카흐타 지역을 통과하는 러·중 양국 간 무역 절차에 관한 국제조약이 체결되어 카흐타 조약과 1768년 서명된 추가 조항을 확인했다.<sup>13</sup> 이 조약은 러시아어, 만주어 및 몽골어로 작성되어 러시아 측의 국경수비대장, 이르쿠츠크(Irkutsk) 주지사 나겔(I. Nagel) 소장이 러시아어본·만주어본·몽골어본에, 청나라 측 전권대리인들이 만주어본과 몽골어본에 각각 서명·날인했다. 이어 동일 내용의 서한이 상호 교환되었다.

1727년 카흐타 조약의 무역 관련 조항은 19세기 들어 1858년 아이훈 조약과 1860년 베이징 조약에 의해 보완되었다.

아르군 강에서 서쪽 국경점 《No.58》[타르바간다흐(Tarbagan-Dakh) 산]까지의 구간은 1911년 치치하얼[Qiqihar, 濟濟哈爾] 의정서에 의해 복원·수정되었다.

12 「1768년 10월 10일 카흐타 조약 추가조항」, 『러·중 조약집』(1889), 84~86쪽 ; 트카첸코(1998), 77~78쪽.

13 「1792년 2월 8일 교환된 국제조약」, 『러·중 조약집』(1889), 93~95쪽 ; 트카첸코(1998), 79~80쪽.

### 3. 1858년 아이훈 조약

19세기 중엽 러시아의 외교적 노력으로 네르친스크 조약이 수정되어 아이훈 조약[Treaty of Aihun, 愛琿條約]과 베이징 조약의 관련 조항에 반영되었다.

아무르 강 좌안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한 ‘아무르 강 연안 지역의 러·중 국경 및 무역’에 관한 1858년 아이훈 조약은 아무르 강 유역 아이훈(현 중국의 헤이허[黑河] 시)에서 체결되었다.<sup>14</sup> 아이훈 조약 제1조에 따라 러·중 국경선은 아무르 강을 따라 획정되어 ‘아르군 강에서 아무르 강 하구까지의 아무르 강 좌안은 러시아령’으로, ‘우수리[Ussuri, 烏蘇里] 강 하류쪽 아무르 강 우안은 대청제국(大清帝國)령’이 되었다(이하 문서 인용은 원문 발췌임). 아이훈 조약 제1조는 또한 “우수리 강에서 해안까지의 영토는 이 지역에 대한 국경이 획정될 때까지 대청제국과 러시아가 공동 관리한다”, 즉 우수리 강 동쪽 동해에 이르기까지 아무르 강 이남의 우수리 변강주 영토는 이 지역에 대한 양국 간 국경이 최종 획정될 때까지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소유로 남게 되었다. 이처럼 아이훈 조약을 계기로 러시아는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에 따라 내줘야만 했던 영토에 대한 합법적 영유권을 되찾게 되었다. 그러나 아르군 강 우안의 러시아 영토와 아무르 강 중·상류 우안의 구(舊) 알바진 군관구 영토는 청국이 관리하게 되었다.

아이훈 조약 제1조에 따라 ‘아무르 강, 쑹화 강[松花江], 우수리 강 항

14 「1858년 5월 16일 아이훈에서 체결된 조약」, 『러·중 조약집』(1889), 110~112쪽 ; 트카첸코(1998), 80~81쪽.

행권은 오직 청나라와 러시아 선박들에만 주어질 뿐 다른 나라의 선박들은 항행이 금지'되고, 이 조약 제2조에 따라 '양국 국민의 우호증진을 위해 아무르 강, 송화 강, 우수리 강 연안의 양국 주민들 간 상호 무역이 허용되며, 역내 지도자들은 강 양안의 양국 상인들을 보호'해야 했다.

아이훈 조약은 러시아어, 만주어, 몽골어로 작성되었다.

아이훈 조약에는 러시아 황제의 시종무관장, 중장 무라비요프(N. N. Muraviyov)와 동시베리아 총독, 4등문관 페롭스키(P. Perovsky)가 서명했다. 1858년 5월 16일(28일) 조약 서명 후 러시아어본과 만주어본 조약문이 러시아 측 전권대리인 무라비요프에 의해 청나라 측 전권대리인에게 전달되었으며, 만주어본과 몽골어본 조약문은 청나라 측 전권대리인에 의해 러시아 측 전권대리인에게 전달되었다. 아이훈 조약은 청나라 황제의 칙령으로 1858년 6월 2일(14일) 승인되었다. 이는 1858년 6월 4일(16일) 러시아 측 대표 청나라 주재 러시아 공사 푸타틴(E. V. Putyatin)에게 통지되었다. 이에 따라 아이훈 조약은 1858년 7월 8일(20일) 러시아 제국 알렉산드르 II세에 의해 승인·공포되었으며 청나라 측에 조약이 발효되었음이 통보되었다. 이와 관련, 승인된 문서는 상호 교환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아이훈 조약 제1조에 따라 '우수리 강에서 해안까지'의 아무르 강 이남 지역 영토를 양국이 공유했던 기간은 1858년 여름부터 1860년 11월까지 2년 반이 채 되지 못했고, 그 후 아이훈 조약은 베이징 조약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연해 변강주와 하바롭스크 변강주 이남 지역의 경우 단 한 차례도 양국이 공유했던 적이 없으며, 더욱이 러·중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한 적은 결코 없었다.

사료에서 볼 수 있듯이 아이훈 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프리모리예(남

우수리 변경주) 지역은 만주족, 더구나 중국인들에게는 단 한 차례도 예속된 적이 없었다. 이 지역은 현지 원주민들이 정착한 곳으로 그 어떤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상태였다. 프리모리에 지역 원주민들은 그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은 채 고유의 전통관습에 따라 독자적인 삶을 영위했다. 그들이 점유하고 있던 우수리 강 연안 지역 또한 17세기 초 이래 만주뿐 아니라 청나라에도 예속된 적이 결코 없었다.<sup>15</sup>

#### 4. 1858년 텐진 조약

아이훈 조약 체결 2주 후인 1858년 6월 1일(13일) 텐진(베이징 인근)에서 러·중 양국 관계 기본원칙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었다. 텐진 조약 [天津條約]은 러·중 양국 간 정치관계를 다루었다.<sup>16</sup> 양국 간 국경 문제를 다룬 텐진 조약 제9조에 의해 “양국 정부의 전권대리인들은 양국 간 국경 미확정 지역에 대해 지체없이 현지 실사를 시행하며, 그들이 합의한 국경선에 관한 조건은 본 조약에 추가조항으로 삽입한다. 국경확정 후 인접지역에 대한 상세한 국경설명서 및 지도를 제작하여 향후 양국 정부의 국경에 관한 명확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보완되었다.

이 조약 제12조는 ‘향후 계약 쌍방은 텐진 조약의 각 조항을 장래를

<sup>15</sup> 솔로비요프(F. V. Soloviyov)(1973), 『프리모리에 지방의 중국 이농민과 지역 분포』(19세기 후반~20세기 초), 블라디보스토크 : 소련 과학아카데미 극동학술센터, 63~72쪽.

<sup>16</sup> 「1868년 6월 1일 텐진에서 서명된 조약」, 『러·중 조약집』(1889), 122~130쪽 ; 트카첸코(1998), 81~83쪽.

위해 성실하게 보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텐진 조약은 러시아어, 만주어 및 중국어로 작성되었다.

텐진 조약에는 황제 특별사절단장, 시종무관장, 러시아 동부지역 해군사령관, 중장 푸타틴 백작이 서명했다. 서명 후 양국 전권대리인들이 날인한 러시아어본, 만주어본 및 중국어본 조약문이 상호 교환되고 조약문 해석 시 만주어본을 우선하기로 했다. 텐진 조약은 청나라 황제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 사실이 1858년 6월 4일 푸타틴에게 통보되었고 이어서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II세가 이를 승인했다. 상호 승인된 조약문은 1859년 4월 24일 베이징에서 교환되었다.

## 5. 1860년 베이징 조약

텐진 조약 제9조를 이행하기 위해 1859년 부도고스키(K. Budogossky) 중령이 이끄는 탐험대가 현지 지도제작 및 강, 호수, 산맥, 우수리 강 하구에서 포시예트(Posyet) 만까지의 해안선 실사작업을 마친 후 1860년 11월 2일(4일) 러·중 국경 및 양국 간 외교절차와 굴자[Ghulja, 伊寧] 지역 무역에 관해 규정한 베이징 추가조약이 체결되었다.<sup>17</sup> 본 조약은 제1조에서 러·중 양국 간 동부국경을, 그리고 제2조에서 서부국경을 획정했다.

베이징 조약[北京條約] 제1조에 따라 양국 간 동부국경은 “실카(shilka) 강과 아르군 강 합류지점에서 아래로 아무르 강을 지나 아무르 강과 우수리 강 합류지점까지 그리고 우수리 강 하구에서 우수리 강과

<sup>17</sup> 「1860년 11월 2일 베이징에서 체결된 추가 조약」, 『러·중 조약집』(1889), 159~172쪽 ; 트카첸코(1998), 83~86쪽.

순가차(Sungacha) 강을 따라” 획정되었다. 이어 양국 간 국경은 한카(Khanka)호, 벨렌허 하구 및 산맥을 따라 러시아와 북한 간 국경을 이루는 두만강으로 이어졌다. 아무르 강, 우수리 강, 순가차 강을 통과하는 국경선은 현재의 국경과 동일하며 베이징 조약에 첨부된 지도에 반영되었다. 베이징 조약에 따라 전에 국경 미획정 지역으로 분류되었던 우수리 변강주(아무르 이남의 하바롭스크 변강주 일부와 현재의 연해 변강주 전 지역)가 모두 러시아령이 되었다.

러시아의 대중(對中) 국경선은 모든 국제법 규범과 외교절차를 준수한 가운데 획정되었으며, 이는 베이징 추가조약 원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베이징 조약 전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러시아제국 황제와 대청제국 황제는 러시아와 중국 간 체결된 조약들을 면밀하게 논의·검토한 후 양 제국 간 우호증진과 무역발전을 도모하고 양국 간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일부 추가조항을 신설했다.

제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58년 5월 16일 체결한 아이훈 조약 제1조를 확인·해석하고 같은 해 6월 1일 체결한 텐진 조약 제9조를 이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지금 이 순간부터 양국 간 동부국경은 실카 강과 아르곤 강 합류지점에서 시작하여 아무르 강 하류를 지나 아무르 강과 우수리 강 합류지점까지로 한다. 아무르 강 좌안(북쪽)의 영토는 러시아령으로 하고 우안(남쪽), 우수리 강 하구까지의 영토는 중국령으로 한다. 이어서 우수리

강 하구에서 힌카이(Khinkay) 호수[興凱湖 : 현 한카호]까지의 국경선은 우수리 강과 순가차 강을 통과한다. 우수리 강과 순가차 강 동쪽(우안)의 영토는 러시아령으로 하고, 서쪽(좌안)의 영토는 중국령으로 한다. 양국 간 국경선은 순가차 강 발원지에서 시작하여 힌카이 호수를 가로질러 벨렌허(투르 강)까지 이어지며, 나아가 벨렌허 하구에서 출발한 국경선은 산맥을 따라 후비투 강[후투(Hubtu) 강 : 현 그라니트나야(Granitnaya) 강] 하구로 이어지고 여기서 다시 훈춘 강[琿春江]과 바다 사이의 산을 따라 두만강까지 이어진다. 이곳 영토 또한 동쪽은 러시아령으로 하고 서쪽은 중국령으로 한다. 국경선은 두만강의 동해 유입지점 상류 20리(중국) 지점에서 강을 통과한다.

또한, 텐진 조약 제9조를 이행하기 위해 국경선을 선명하게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그 방향을 러시아어 철자 А, Б, В, Г, Д, Е, Ж, З, И, К, Л, М, Н, О, П, С, Т, У로 표기한 지도를 승인한다.

이 지도는 양국의 전권대리인들이 서명·날인한다.

1991년 조약 체결 당시 발생한 러·중 국경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제1조 마지막 단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경표지 설치 후 양국 간 국경선은 영원히 변경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조는 서부 국경선의 대체적인 방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국경선은 남서쪽으로 샤빈다바가 령에서 자이산 호수까지, 여기서 다시 이식쿨(Issyk-Kul) 호수 이남에 있는 텐산[天山] 산맥으로 이어지고, 텐산 산맥을 따라 코칸트(Kokand) 영토에 이르면서 “산맥, 대규모 하천과

중국의 기존 전초선을 따라 획정되었다.”

제3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후 발생 가능한 모든 국경 문제는 동 조약 제1, 2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동부지역, 한카호에서 두만강까지 국경표지를 설치하기 위해 러·중 양국 정부는 각각 대리인(국경수비대장)을 지명한다. 대리인들은 동부국경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내년 4월 중 우수리 강 하구를 시찰한다.

동 조약 제1, 2조에 따라 시찰을 다녀온 관리(국경수비대장)들은 러시아어본 2부, 중국어본 혹은 만주어본 2부 등 국경지도와 국경설명서를 4부 작성한다. 국경지도와 국경설명서는 국경수비대장들이 서명·날인하여 러시아어본 1부와 중국어본 혹은 만주어본 1부 등 2부는 러시아 정부에, 나머지 2부는 중국 정부에 각각 전달하여 보관한다.

국경지도와 국경설명서 교환식은 의사록을 작성, 국경수비대장들이 서명·날인한다. 동 의사록은 본 조약의 추가조항으로 간주한다.

제15조에 따르면 ‘상호 합의에 따라’ 승인된 베이징 조약의 각 조항은 “문자 그대로 튜진 조약의 일부로서 양국 전권대리인들 간 상호 교환 일로부터 법적으로 유효하고 항구적이고 신성하게 이행돼야 한다.”

1860년 11월 2일 베이징 조약 서명식에서 먼저 청나라 황제의 칙령이 낭독되었다. 칙령은 승인 상정된 총 15조로 구성된 베이징 조약 안(案)을 전면 승인하며 이를 ‘신성하게 이행’하고 자국 전권대리인에게 조약의 서명·날인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베이징 조약은 청 황제의 지시에 따라 최종 승인되었다. 그 후 양국 전권대리인들에 의해 조약문 러시아어본 2부와 중국어 번역본 2부가 서명·날인

되었으며 러시아어본과 중국어본 각 1부와 러시아어본과 중국어본 베이징 추가조약 교환 의사록이 상대국에 전달되었다.<sup>18</sup> 베이징 추가조약과 조약문 교환 의사록은 러시아제국의 전권대리인, 황제 시종무관단 해군 소장 이그나티예프(N. P. Ignatyev)가 서명했다.

아무르 강, 우수리 강, 순가차 강 및 한카호, 나아가 육지를 따라 동해로 이어지는 국경지도가 베이징 조약 서명 시 승인되어 조약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II세는 1860년 12월 20일(1861년 1월 1일) 베이징 조약을 승인했다. 서명 후 조약문은 1860년 12월 20일 먼저 베이징에서 공포되었으며,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황제의 승인 후 1860년 12월 26일(1861년 1월 7일) 정부 원로원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공포했다. 추인된 조약문은 상호 교환하지 않기로 결정한바 이는 청나라 황제가 자신의 칙령으로 조약을 승인하고 조약 서명 후 칙령 사본이 러시아 측 전권대리인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조약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137년 전 러·중 양국 간 동부국경이 획정되었다. 그림 1은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 대비 1858년 아이훈 조약과 1860년 베이징 조약에 의해 러시아령으로 편입된 영토를 보여 준다.

양국 전권대리인들이 서명·날인한 러시아어 및 중국어로 2부 작성된 베이징 조약 원본은 국경선을 붉은색으로 표시한 국경지도 1부와 함께 러시아 외무부 산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 고문서 보관소에 소장

<sup>18</sup> 『베이징 추가조약 교환 의사록』, 『러·중 조약집』(1889), 172~173쪽; 트카첸코(1998), 86~8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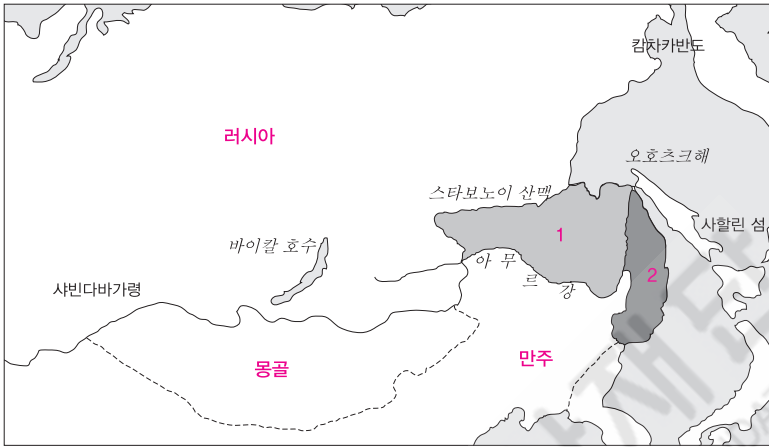


그림 1 러시아령이 된 영토 : 1-1858년 아이훈 조약, 2-1860년 베이징 조약

대 있다(장서분류 『조약집』, 목록 466, 문서번호 881/157, 리스트 1~14).

베이징 조약에 첨부된 러·중 동부국경 지도는 1 : 1,050,000 축척으로 작성되었으며, 지도상 거리 1cm는 실제 거리 10.5km를 의미한다.<sup>19</sup>

베이징 조약에 따라 러·중 간 분할된 아무르 강, 우수리 강 및 순가차 강 등 국경 하천 도서들에 대한 법적 영유권을 입증해 주는 주요 문건은 앞에서 언급한 국경지도로, 이는 1860년 베이징 조약의 주요 일부이다. 붉게 표시된 국경선은 그 통과 지점을 뚜렷하게 보여 준다. 아무르 강을 지나는 지도상의 붉은 국경획정선은 대체로 중국 측 하안 쪽으로 이동했다. 아무르 강의 거의 모든 도서는 1860년 붉은 획정선에 의해 러시아령이 되었고, 가장 큰 2개의 도서는 대체로 양분되었다. 우수리 강과 순가차 강의 모든 도서들은 1860년의 국경획정과 1861년의

19 「1860년 베이징 조약(텐진 조약에 대한 추가조약)」, 『외교사전』(1985), 개정 증보 4판, 전 3권 중 2권, 모스크바 : Nauka, 352쪽.

국경표지작업에 따라 러시아령이 되었다.

## 6. 1861년 한카 의정서

정의에 따르면 국경선이란 한 국가의 영토 한계를 정하는 선을 말한다.<sup>20</sup> 육로 및 수로국경은 관련 국가 간 합의에 의해 획정된다. 국경확정 절차는 국경획정과 국경설정 두 단계로 나뉜다. 국제법상 국경획정이란 인접국 간 합의에 따라 국경선의 위치와 방향을 정하는 것이며,<sup>21</sup> 이러한 과정은 지도상에 국경선 통과 지점 및 위치를 지리적으로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관련국 간 조약에 구체화한다. 이와 관련, 지도는 조약의 주요 일부로 조약문에 첨부되며, 국경선의 위치에 관한 확실한 입증자료 역할을 하게 된다.

이처럼 1860년 베이징 조약에 따라 러시아와 청나라 간 국경이 획정되었다.

국경획정 후 국경표지작업이 이루어진다. 국제법상 국경표지작업은 현장에 국경선을 표시하는 것이다.<sup>22</sup> 국경표지작업은 국경획정 조약에 따라 공동위원회가 시행하며, 공동위원회는 국경표지(표주, 철조망 등)를 설치함으로써 현장에 국경선 통과 지점을 확정, 표시한다. 이때 국경표지 및 국경선 통과 지점을 설명하는 별도 문건들이 작성된다. 국경

<sup>20</sup> 「국경선」, 『소비에트 대백과사전』(1972), 3판 7권, 모스크바 : 소비에트 백과사전, 252쪽.

<sup>21</sup> 「국경획정」, 『소비에트 대백과사전』(1972), 3판 8권, 모스크바 : 소비에트 백과사전, 60쪽.

<sup>22</sup> 『소비에트 대백과사전』(1972), 70쪽.

표지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베이징 조약 제3조에 의거, 우수리 강에서 두만강까지의 러·중 양국 국경에서 이루어진 국경표지작업은 러·중 합동 지형탐사대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러시아 측 지형탐사대는 참모본부 부도고스키 대령이 이끌었다. 탐사대는 국경지대에 국경표주를 설치하고 지형도를 제작했다. 우수리 강에서 두만강까지 총 8개의 국경표주를 설치하고, 각각 러시아어 철자 E, I, K, Л, H, O, П 및 T로 표시했다. 그 중 하나의 국경표주 《E》는 우수리 강이 아무르 강에 합류하는 지점, 즉 중국 측 연안 카자크 마을 카자케비체보(Kazakevichevo) 맞은편 우수리 강 하구에 설치되었다. 또 다른 국경표주 《I》는 한카호에서 비롯되는 순가차 강 발원지인 중국 측 하안에 설치되었다. 나머지 여섯 개 국경표주는 벨렌허가 한카호에 합류하는 지점, 즉 중국 측 연안의 벨렌허 하구에 두만강까지 20~175베르스타(1베르스타 : 1,067km) 간격으로 설치되었다.

우수리 강 하구(좌안, 중국 측 하안)에 국경표주 《E》를 설치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이는 우수리 강 하구의 위치가 베이징 조약 서명 당시의 해석처럼 우수리 강과 아무르 강 우측(남쪽) 지류인 카자케비체보 수로(푸위안[撫遠]봉에서 국경표주 《E》가 설치된 우수리 강 하구까지)와의 합류지점 주위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은 ‘우수리 강에서 해안까지의 양 제국 간 국경설명서’에 기록돼 있다. 또한 러·중 양국 간 국경선이 카자케비체보 수로를 통과한다는 사실은 1860년 베이징 조약에 첨부된 국경지도상에 표시된 붉은 선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은 볼쇼이우수리스크(Bolshoy Ussuriisk) 섬과 타라바로프(Tarabarov) 섬, 그리고 이들 주변의 작은 도서들이 중국령이 아닌 러시아령이라는 점을 입증해 준다. 또한 이 지도상에는 우수리 강 하구로부

터 한카호에서 비롯되는 순가차 강 발원지까지의 러·중 국경선이 이들 하천의 중국 측 하안을 통과하는 것으로 표시돼 있고, 이에 대한 관련 기록이 앞에서 언급한 ‘국경설명서’에 남아 있다. 이처럼 우수리 강과 순가차 강을 통과하는 양국 간 국경선은 이들 하천의 중국 측 하안에 매우 가까이 지나고 있다.

베이징 조약 체결 7개월 후 측량작업 결과에 따라 1861년 6월 4일(16일) 한카호 서안 벨렌허 하구에 있는 투리로크(Tury Rog) 초소에서 양국 전권대리인들은 우수리 변강주 러·중 국경지도 및 국경설명서 교환 의정서(약칭 1861년 한카 의정서)에 서명했다. 이 의정서는 베이징 추가조약 제1, 3조를 바탕으로 작성된 국경지도 및 국경설명서와 함께 베이징 조약의 주요 추가조항으로 편입되었다.

의정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모든 지도와 국경설명서를 부수별로 최종 점검한 결과 전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러시아제국과 대청제국의 국경수비대장들이 러시아어본과 만주어본 국경지도 2부에 서명·날인하여 베이징 조약에 첨부하고, 우수리 강에서 해안까지의 국경지도와 국경설명서 4부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날인했다. 4부의 지도와 국경설명서 중 2부는 러시아어로, 2부는 중국어로 작성되었다.

이어서 러시아제국 제1 수비대장이 러시아어본과 만주어본 국경 정밀지도 1부씩을 대청제국 제1 수비대장에게 전달하고, 대청제국 제1 수비대장은 지도 접수 후 동일 언어본의 동일 지도 1부씩을 러시아제국 제1 수비대장에게 전달했다. 우수리 강에서 해안까지 표기한 또 다른 지도와 국경설명서 또한 같은 방법으로 교환되었다.

지도와 국경설명서 교환이 끝난 후 양국 전권대리인들은 2부의 본 의정서에 서명·날인했다. 본 의정서는 별첨 정밀지도 및 국경설명서와 함께 문자 그대로 베이징 조약의 일부로서 항구적으로 변함없이 이행되어야 한다.<sup>23</sup>

의정서에는 ‘1860년 11월 2일자 베이징 추가조약 제1, 3조를 바탕으로 작성된 우수리 강에서 해안까지의 러시아제국과 대청제국 간 국경설명서’<sup>24</sup>가 첨부되고 국경선 통과지역 및 국경표주가 명시돼 있으며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돼 있다.

모든 국경선은 양 제국이 지도상에 표시한 붉은 선에 의해 선명하게 나타나 있으며 이에 따른 국경설명서 또한 작성되었다.

베이징 조약 추가조항인 국경지도, ‘국경설명서’ 및 의정서에는 러시아 황제 시종무관단 해군 소장, 연해 변경주 총독 코자케비치(P. Kozakevich)와 동시베리아군 보급담당관, 참모본부 대령 부도고스키가 서명했다.

그 밖에 1861년 6월 16일자 한카 의정서(1860년 베이징 조약 추가조

23 「베이징 조약 추가조항」, 『리·중 조약집』(1889), 188~189쪽 ; 트카첸코(1998), 88~89쪽.

24 「1860년 11월 2일 체결된 베이징 추가 조약 제1, 3조에 따라 작성된 우수리 강에서 해안까지의 러시아제국과 대청제국 간 국경설명서」, 『1914년 외무부 소식지』(1914) 제4권 ; 「국경확정, 수정 및 국경문제에 관한 러시아와 중국 간 합의서」, 페트로그라드, 2~3쪽 ; 트카첸코(1998), 89~91쪽.

항)의 부속서로 ‘우수리 강에서 두만강 하구까지의 러시아제국과 대청제국 간 국경설정 설명서’(1861년)가 있다.<sup>25</sup>

동 ‘국경설정 설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베이징 조약에 《I》, 《K》, 《II》, 《H》, 《O》, 《II》와 《T》 등 러시아어 철자로 표기된 국경표주에 대한 상세한 설명 ; 페로(Ferro) 섬을 기점으로 분, 초까지 정밀 측정된 위도와 경도 등 국경표주의 지리적 위치 ; 자기자오선이 표기된 국경선의 각도 ; 국경표주 간 거리 ; 국경표주 설치자의 성명, 직위, 직책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포함된 러시아 측 국경표지 설치 증거자료(청나라 측 국경표지 설치 증거자료에는 청나라 관리들의 서명이 담겨 있다).

그 밖에 모든 국경표주에 대한 설명서에는 표주의 시각적 특성, 표주의 위도와 경도 측정시간이 기록된 주석이 첨부돼 있고, 국경표주 사이의 국경선과 그 주변의 산, 숲, 하천 등이 묘사돼 있으며, 해당 국경선 구간 내에 위치한 청나라에서 러시아로 통하는 국경통로의 특성이 묘사돼 있다.

‘국경설정 설명서’에는 국경표주 《K-T》를 직접 설치한 국경수비대장(코자케비치와 부도고스키)의 보좌관, 참모본부 투르빈(Turbin) 대위와 러시아제국 제2 국경수비대장, 참모본부 대령 부도고스키가 서명했다.

이렇게 해서 137년 전 우수리 강에서 두만강까지의 러·중 동부지역

<sup>25</sup> 「1861년 우수리 강에서 두만강 하구까지의 러시아제국과 대청제국 간 국경설정 설명서」, 『1914년 외무부 소식지』(1914) 제4권, 페트로그라드, 4~11쪽 ; 트카첸코(1998), 92~ 99쪽.

국경선이 최종 확정되었다.

러시아어와 만주어로 된 2부의 우수리 변강주 국경지도 및 국경설명서 교환에 관한 1861년 한카 의정서 원본이 러시아 외무부 산하 제정 러시아 대외정책 고문서 보관소에 소장돼 있다(장서분류 『조약집』, 목록 466, 문서번호 882, 리스트 2~4).

‘1860년 11월 2일자 베이징 추가조약 제1, 3조를 바탕으로 작성된 우수리 강에서 해안까지의 러·중 동부지역 국경설명서’의 러시아어본과 중국어본 2부가 러시아 외무부 산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 고문서 보관소에 소장돼 있다(장서분류 『조약집』, 목록 466, 문서번호 883).

‘1861년 우수리 강에서 두만강 하구까지의 러·중 국경설명서’ 러시아어본이 러시아 외무부 산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 고문서 보관소에 소장돼 있다(장서분류 『조약집』, 목록 466, 문서번호 884).

동 고문서 보관소, 장서분류 및 목록에는 앞에서 언급한 우수리 강에서 동해안까지의 국경 정밀지도 원본 2부(러시아어본과 중국어본) 또한 소장돼 있다.

1860년 베이징 조약 체결 및 1861년 후속 국경표지작업으로 17세기 말 이래 사실상 국경이 확정되지 않았던 극동지역의 영토분할이 완료되었다. 사료 및 문건,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결과에서 입증할 수 있듯이 베이징 조약에서 언급된 영토는 “중국령이 아니었으며, 이전에도 중국인들이 거주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중국과는 아무런 경제, 정치 및 민족적 이해관계가 없었다.”<sup>26</sup>

베이징 조약 체결 당시 아무르 강을 따라 확정된 일부 동부국경지대

---

<sup>26</sup> 『외교사전』(1985) 2권, 353쪽.

에는 국경표지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그 후에도 국경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았었다.<sup>27</sup>

## 7. 1881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

1881년 2월 12일(24일) 투르케스탄(Turkestan)의 일리스크(Iliisk) 변경주와 서 중국에서의 무역에 관한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이 체결되었다.<sup>28</sup>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 제19조에 따라 ‘러·중 간 이미 체결된 각 조약은 본 조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본래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1860년 베이징 조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 제18조는 특별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1858년 5월 16일 양국 국민의 아무르 강, 송화 강 및 우수리 강 항행권 및 이들 하천의 연안지대 거주 주민들 간의 무역권에 관해 체결한 아이하운 조약의 내용을 확인한다.

동 조약 제18조는 또한 “양국 정부는 상기 조항의 이행방안에 관한 협약체결을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sup>27</sup> 위의 책.

<sup>28</sup> 「1881년 2월 12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체결된 조약」, 『러·중 조약집』(1889), 225~236쪽 ; 트카첸코(1998), 100~101쪽.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은 러시아어, 중국어 및 프랑스어로 작성되었으며, 조약문 해석 시 프랑스어본을 우선하기로 했다.

3개 국어로 2부씩 작성된 조약문 각각에 대해 양국 전권대리인들이 서명·날인했다. 러시아 측에서는 궁내관, 원로원 의원, 2등문관, 외무부 아시아 국장 기르스(N. K. Girs)와 2등문관, 청 황실 주재 러시아 특명전권 공사 부초프(E. K. Byutsov)가 서명했다. 동 조약은 1881년 5월 3일(15일) 청 황제, 1881년 8월 4일(16일)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III세가 추인하고, 1881년 8월 7일(19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추인된 조약문을 교환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1858년 아이훈 조약에 명시한 러시아 선박들의 송화 강 항행권 관련 조항 이행이 청나라 당국의 저항에 부딪혔다는 것이다. 청나라 정부는 러시아 탐사선 및 무역선의 항행과 러시아 상인들의 현지 상인 및 주민들과의 무역관계 수립을 방해했다. 그 결과 1860년대와 1880년대 초 송화 강 연안의 양국 국민 간 교류는 산발적이고 소규모로 이루어졌다.

러시아 내 중국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881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 체결 후 청나라 당국은 러시아 선박들의 송화 강 항행을 계속 방해하다가 1898년부터 동중국철도 건설과 관련한 송화 강 정기 운항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그 후 러시아 선박의 송화 강 항행은 25년간 지속되다가 1924년 초 만주군벌 장쥘린(張作霖)의 결정에 따라 중단되었다.

## 8. 1886년 노보키엡스크 의정서와 하바롭스크 의정서

이미 설치된 국경표지가 종종 훼손됨에 따라 ‘국경을 재설정한다’는 구실로 러시아로부터 포시예트만 연안의 일부를 빼앗아 이 지역과 조선을 차단하여 중국의 동해 진출로를 확보하려던 만주정부가 영국의 사주를 받아 야기한 1882~1886년의 러·중 간 일시적 긴장고조 상태가 해소된 후 1886년 6월 10일(22일) 중국 훈춘 시 인근 러시아령 노보키엡스크[Novokievsk : 현 크라스키노(Kraskino)]에서 러·중 간 국경표지 실사에 관한 일반 의정서가 서명되었다. 흔히 훈춘 의정서라고 불리는 본 의정서는 1860년 베이징 조약에 따라 획정된 우수리 변경주 남부지역의 러·중 국경선을 재확인하고,<sup>29</sup> 1861년 시행된 러·중 간 국경설정이 대체로 정확했음을 확인했다.

같은 해 국경선 재설정 작업, 즉 ‘이미 설정된 국경선의 실사와 훼손된 국경표지의 복원 및 교체’가 이루어졌다.<sup>30</sup> 이 작업은 러·중 공동 국경표지위원회에 의해 시행되었다. 한카호 이남 지역 러·중 국경선에 국경표지가 추가되고 훼손 혹은 유실된 국경표지는 복원되고, 목제 국경표주는 석제로 대체되었다. 국경선 재설정 작업 결과는 면밀한 문서 작업을 통해 1886년 6월 10일(22일)부터 9월 21일까지 노보키엡스크에서 양국 전권대리인들 간 체결된 노보키엡스크 의정서에 명시되었다.<sup>31</sup> 의정서에는 면밀한 공동조사를 통해 합의 작성된 지도들이 첨부

29 『극동지역 국제관계(1840~1949)』(1956) 개정증보 2판, 모스크바 : Gospolitizdat, 106~107·718쪽.

30 「국경설정」, 『소비에트 대백과사전』(1972), 70쪽.

되었다. 이 지도들은 1 : 42,000 축척으로 작성되어, 지도상 거리 1cm는 실제 거리 420m를 의미하는 것으로,<sup>32</sup> 당시 지도로서는 정확성이 매우 뛰어난 것이었다. 러·중 양국은 이 지도를 상호 교환했다. 그 당시 러·중 양국 국경선에는 새로운 국경표주 및 보조 국경표지가 설치되어 1993~1997년에 교체될 때까지 100년 이상 유지되었다.

노보키예스크 의정서는 총 9건이 체결되었다. 1886년 6월 22일 체결된 제1의정서 전문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양 제국 간 동부국경지대에 설치된 목제 국경표지가 일부 지역에서 훼손되고, …… 1861년 교환한 지도에는 일부 지역의 붉은 선이 불분명하게 표시돼 있다.<sup>33</sup>

이와 관련, ‘양국 정부당국과 국민의 실수와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양국 정부의 전권대리인이 임명되어 러·중 국경 수정범위를 확정하고 그 성격을 정의했다.

제1의정서 제1항은 두만강 하안의 훼손된 국경표주 《T》를 1861년 작성한 국경설명서에 따라 석제표주로 복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1의정서 제2항은 3개 석제 국경표주 《P》, 《C》, 《M》을 추가,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1861년부터 존속했던 7개 목제 국경

<sup>31</sup> 1860년 베이징 추가조약에 의해 1861년 확정된 러·중 간 국경에 대해 1886년 시행한 실사 의정서.

<sup>32</sup> 『외교사전』(1985) 2권, 353쪽.

<sup>33</sup> 『1914년 외무부 소식지』(1914) 제4권, 페트로그라드, 12~14쪽; 트카첸코(1998), 102~105쪽.

표주 《E》, 《I》,<sup>34</sup> 《K》, 《Л》, 《H》, 《O》, 《П》 또한 석제 국경표주로 교체되었다.

제1의정서 제3항은 러·중·조 국경 교차점 포시예트 인근 중국령의 문제의 한인마을 사벨롭카(Savelovka)의 민간인 주거지와 러시아 군 초소의 러시아 이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1의정서 제4항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조선과 국경을 이루는 30리에 걸친 구간(국경표주 《T》에서 두만강 하구까지의 강과 바다)에서의 중국선박들의 자유로운 항행에 관해 러시아와 합의를 체결한다. 이 문제는 이미 바라노프(Baranov) 소장이 러시아 외무부에 검토 의뢰했으며, 답변을 듣기 위해 동 사안에 관한 질의서가 본 의정서에 첨부될 예정이다.

그러나 추가 합의서는 체결되지 않았다.

제1의정서 제5항은 홉투 강 하구와 쉰이펀허[Suifenhe, 綏芬河 : 현 라즈돌나야(Razdolnaya) 강] 북안에 있는 국경표주 《O》, 《H》의 위치 변경에 관해 논하고 있다.

제1의정서 제6항에서는 벨렌허 하구에서 두만강 하구에 이르는 국경지역 지도를 2부씩 제작, 양국 전권대리인들이 실사 후, 지도에 첨부되는 국경설명서와 함께 서명·날인키로 했다.

<sup>34</sup> 1914년 외무부 소식지에 발표된 제1노보키엡스크 의정서에는 《I》 대신 《И》로 표기돼 있다. 이는 1861년 6월 16일자 「국경설명서」와 1861년 「국경설정설명서」의 내용과 배치된다.

제1의정서 제7항에서는 11곳에 신규 설치된 석제 국경표주 외에 철자 표기 국경표지로 인한 혼돈을 막기 위해 1, 2, 3, 4 등 숫자 표기 국경표지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러한 추가 국경표지를 이전의 지도보다 훨씬 더 상세한 별도의 지도에 표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후속 의정서들은 23개의 보조 국경표지 설치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 외에 1887년 3개의 국경표지를 더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제1의정서 제8항에서는 앞에서 거론된 11개 지역과 보조 국경표지가 설치된 모든 지역에 대한 각각의 정밀 지형도를 2부씩 작성하여, 양국 국경수비대장이 서명·날인하기로 했다. 각 지형도 1부씩은 참고용으로 러·중 양국 외무부에 전달되었다.

제1의정서 결론 부분은 ‘공동으로 작성한 위 8개 조항은 양국 정부와 국민의 화해를 도모하고, 화합과 우호관계를 강화하며, 모든 불만과 오해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고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노보키옙스크 제1의정서 및 나머지 8개 의정서는 러시아어, 만주어 및 중국어로 작성되었으며, 그 중 만주어본이 정본으로 채택되었다. 모든 의정서는 양국 전권대리인들이 서명·날인했다. 제1의정서 마지막 문장은 ‘본 의정서들은 1861년 작성된 국경설명서에 첨부되어, 영구 보존된다’고 명시하고 있다.<sup>35</sup>

9건의 노보키옙스크 의정서에 대한 러시아 측 서명자는 다음과 같다.

국경표지위원회 위원장, 연해 변경주 군사령관, 총독, 참모본부 소장  
바라노프, 국경표지위원회 위원, 프리아무르주 군관구 측지과장, 참

<sup>35</sup> 트카첸코(1998), 104쪽.

모본부 소장 술긴(Shulgin), 연해 변경주 참모장, 참모본부 대령 클라도(L. Klado), 남 우수리 변경주 국경수비대장, 6등관 마튜닌(N. Matyunin).

제2의정서는 1886년 6월 26일 체결된 ‘양국 간 국경 정밀실사 대상 제1구간에 관한 의정서’이다.<sup>36</sup> 1884년 러시아 지형측량단이 작성한 지형도에 따르면 제1구간은 두만강에서 시작하여 장린(張麟) 고개까지 이어졌다. 장린에는 러시아와 중국을 잇는 도로와 분수령 산맥 교차점에 천문지표가 설치되었다. 신규 설치된 국경표주 《T》에서 1884년 설치된 동 천문지표까지 총 65.5베르스타의 국경은 지도상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분수령을 따라 획정되었다. 국경표주 《T》에서 해안까지의 거리는 두만강을 따라 측정하면 15베르스타, 직선거리로는 30베르스타 이상이었다. 국경표주 《T》로부터의 국경은 산과 하산(Khasan)호 서쪽을 지나 8베르스타 이상 북서쪽으로 이어졌다. 러·중 국경 제1구간 전역에 8개의 보조 국경표지가 설치되었다. 의정서는 러시아어, 만주어 및 중국어로 각 2부씩 작성되고 지형도 또한 2부씩 제작되었다. 이들 의정서와 지형도에는 양국 국경획정위원들이 서명·날인하고 쌍방은 의정서와 지형도 1부씩을 교환했다.

제3의정서는 1886년 9월 20일 체결된 ‘양국 간 국경 정밀실사 대상 제2구간에 관한 의정서’이다.<sup>37</sup> 제2구간은 보조 국경표지 《No.8》로 표

36 『1914년 외무부 소식지』(1914) 제4권, 페트로그라드, 15~17쪽; 트카첸코(1998), 105~108쪽.

37 『1914년 외무부 소식지』(1914) 제4권, 페트로그라드, 17~19쪽; 트카첸코(1998), 108~111쪽.

기된 천문지표에서 국경표주 《P》까지이며, 그 거리는 121베르스타 이상이다. 국경선은 분수령을 통과했다. 러·중 국경 제2구간에는 2개의 국경표주 《P》, 《C》 및 8개의 보조 국경표지가 추가로 설치되었다. 국경선은 2부씩 작성된 국경지도 《No.2》에 붉은색으로 표시되었다.

제4의정서는 1886년 9월 20일 체결된 ‘양국 간 국경 정밀실사 대상 제3구간에 관한 의정서’이다.<sup>38</sup> 제3구간은 국경표주 《P》에서 우샤고우 강(Ushagou, 홉투 강 : 현 그라니트나야 강)까지이며, 그 거리는 128여 베르스타이다. 국경선은 분수령을 지나 국경표주 《Π》에 이르고 그 후 북서쪽으로 강을 따라 이어지다 우샤고우 강 합류지점에 다다른다. 이어서 우샤고우 강을 따라 강 하구지점까지 이어졌다. 의정서에는 ‘상기 국경선은 제3구간으로 정밀실사 후 2부 작성된 지도에 표시되었다’고 언급돼 있다.

제5의정서는 1886년 10월 3일 체결된 ‘양국 간 국경 정밀실사 대상 제4구간에 관한 의정서’이다.<sup>39</sup> 제4구간은 우샤고우 강 하구, 즉 우샤고우 강물과 쉰이편허 강물의 합류지점으로부터 국경표주 《H》까지 이어진다. 국경선은 전 구간에 걸쳐 북서쪽으로 직선으로 뻗어 있으며, 구간의 거리는 70베르스타 이상이다. 러·중 국경 제4구간에는 2개의 국경표주 《H》, 《O》와 신규 보조 국경표지 4개가 설치되었다. 의정서에는 ‘상기 국경선은 제4구간으로 정밀실사 후 2부 작성된 지도에 표시되

38 『1914년 외무부 소식지』(1914) 제4권, 페트로그라드, 20~21쪽 ; 트카첸코 (1998), 111~113쪽.

39 『1914년 외무부 소식지』(1914) 제4권, 페트로그라드, 21~23쪽 ; 트카첸코 (1998), 113~115쪽.

었다'고 언급돼 있다.

제6의정서는 1886년 10월 3일 체결된 '양국 간 국경 정밀실사 대상 제5구간에 관한 의정서'이다.<sup>40</sup> 제5구간은 국경표주 《H》에서 출발하여 《M》에 이르며 거리는 70베르스타 이상이다. 국경은 분수령을 따라 이어진다. 러·중 국경 제5구간에는 신규 국경표주 《M》과 3개의 보조 국경표지가 설치돼 있다. 의정서에는 '상기 국경선은 제5구간으로 정밀 실사 후 2부 작성된 지도에 표시되었다'고 언급돼 있다.

제7의정서는 1886년 9월 28일 체결된 '양국 간 국경 정밀실사 대상 제6구간에 관한 의정서'이다.<sup>41</sup> 제6구간은 국경표주 《M》에서 출발하여, 한카호로 유입되는 벨렌허 하구에 이르며, 거리는 90베르스타 이상이다. 러·중 국경 제6구간에는 국경표주 《K》와 《Π》이 설치돼 있으며, 그 중 《K》는 벨렌허 북안, 하구에 있다. 의정서에는 '상기 국경선은 정밀실사 후 2부 작성된 지도에 표시되었으며, 제6구간으로 간주한다'고 언급돼 있다.

제8의정서는 1886년 10월 3일 체결된 '양국 간 국경 제6구간 설명서에 대한 추가 결정 의정서'이다.<sup>42</sup> 제8의정서는 양국 국경 제6구간에 3개 보조 국경표지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제9의정서는 1886년 9월 20일 체결된 '국경표주 《H》과 《O》의 변경

<sup>40</sup> 『1914년 외무부 소식지』(1914) 제4권, 페트로그라드, 23~25쪽 ; 트카첸코 (1998), 116~118쪽.

<sup>41</sup> 『1914년 외무부 소식지』(1914) 제4권, 페트로그라드, 25~27쪽 ; 트카첸코 (1998), 118~121쪽.

<sup>42</sup> 『1914년 외무부 소식지』(1914) 제4권, 페트로그라드, 27~28쪽 ; 트카첸코 (1998), 121~122쪽.

에 관한 의정서'이다.<sup>43</sup> 제9의정서는 예전에 잘못 복원된 목제 국경표주 《H》을 파기하고 1861년 동일 철자의 국경표주가 설치되었던 같은 장소에 석제 국경표주 《H》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9의정서는 또한 신규 제작된 석제 국경표주 《O》를 지대가 낮아 침수가 잦은 홉투강 하구가 아닌 하구 맞은편 수이편허 북안 고지대, 산 경사면에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예전에 설치했던 동일 철자의 목제 국경표주는 파기하도록 조치했다.

앞에서 언급한 노보키엡스크에서 체결된 9건의 의정서 외에 1886년 7월 14일 하바롭카(Khabarovka : 현 하바롭스크) 시에서 또 한 건의 의정서가 체결되었다.<sup>44</sup> 이 의정서는 우수리 강 좌안, 카자케비체보 마을 위쪽에 있는 목제 국경표주 《E》를 신규 석제 국경표주로 교체하도록 했다. 국경표주는 1886년 7월 9일 러·중 공동위원회에 의해 교체되었다. 이 의정서에는 아무르 군관구 참모장교 볼로시노프(Voloshinov) 대령, 우수리 강 연안 거주 카자크 마을 지도자 폴베르크(Folberg) 대위, 카자케비체보 마을 지도자 무르진(Murjin) 하사관 및 통역관 드미트리예프(N. Dmitriyev) 등 공동위원들이 서명했다.

상기 모든 의정서와 별첨 지도들은 현존하는 연해 변강주 지역 러·중 국경을 유지해 주는 법적 효력을 갖는 문건이다.

1886년 노보키엡스크와 하바롭스크에서 러시아어, 만주어 및 중국

43 『1914년 외무부 소식지』(1914) 제4권, 페트로그라드, 28~30쪽 ; 트카첸코(1998), 122~124쪽.

44 『1914년 외무부 소식지』(1914) 제4권, 페트로그라드, 30~31쪽 ; 트카첸코(1998), 124~125쪽.

어로 작성된 의정서 원본과 두만강에서 벨렌허 하구까지의 정밀 국경 지도 원본이 러시아 외무부 산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 고문서 보관소에 소장돼 있다(장서분류 『조약집』, 목록 466, 문서번호 905/159).

## 9. 1911년 치치하얼 협약

러·중 국경이 마지막으로 변경된 것은 1911년도였다. 1911년 12월 7일(20일) 중국 치치하얼[Qiqihar, 齊齊哈爾 : 만주 소재]시에서 ‘러·중 국경점 《No.58》(타르바간다흐)에서 국경점 《No.63》(아바가이투이)까지, 이어서 아르군 강을 지나 아르군 강과 아무르 강의 합류지점까지의 국경선 복원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었다.<sup>45</sup> 흔히 치치하얼 의정서라고 불리는 이 국제협약이 체결됨으로써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에 의해 설정된 아르군 강을 통과하는 러·중 국경선과 1727년 카흐타 조약으로 획정된 아르군 강에서 서쪽 타르바간다흐 산까지 90km 구간의 국경선이 획정·설정되었다.

국경점 《No.58》에서 국경점 《No.63》까지의 육로국경은 앞으로를 위해 일련번호와 명칭이 카흐타 조약 부속서 1727년 10월 12일자 아바가이투이 교환서신에 명시된 국경점과 일치하는 6개 국경점 사이의 직선으로 설정하고 1911년 12월 7일자 협약의 추가본인 1911년 11월 25일자 합의의사록 《No.2》에 따라 6개 국경점에 공동 작업을 통해

<sup>45</sup> 「러·중 간 국경점 《No.58》 타르바가타이(Tarbagatai)에서 국경점 《No.63》 아바가이투이(Abagaitui)까지, 이어서 아르군 강을 따라 아르군 강과 아무르 강의 합류지점까지의 국경설정에 관한 조약」, 『1913년 외무부 소식지』(1913), 65~67쪽 ; 트카첸코(1998), 126~128쪽.

측정된 위도와 경도가 표기된 국경표지를 설치하기로 했다.<sup>46</sup> 또한 국경선 전 구간에 걸쳐 도랑을 파도록 했다. 모든 국경선은 합의의사록 《No.2》에 첨부된 지도상에 국경점 《No.58》부터 《No.63》까지, 이어서 무트나야프로토키(Mutnaya Protoka) 수로를 지나 아르군 강까지 붉은 색으로 표시했다.

아르군 강 하구, 즉 아르군 강과 아무르 강 합류지점으로부터 국경점 《No.63》 아바카이투이까지의 러·중 수로국경은 네르친스크 조약 제1조에서와 같이 아르군 강을 중심으로 획정되었다. 아르군 강을 지나는 양국 간 국경설정은 1911년 10월 18일자 협약의 추가본인 합의의사록 《No.1》<sup>47</sup>과 합의의사록 《No.1》의 첨부 문건인 아르군 강 하구에서 아르군 마을 및 그 상류에 있는 도서 목록,<sup>48</sup> 1911년 11월 7일자 협약의 추가본인 1911년 11월 25일자 합의의사록 《No.3》,<sup>49</sup> 이에 대한 첨부 문건인 아르군 강에 있는 《No.88》부터 《No.280》까지의 도서 목록에 따라 여러 도서를 분할함으로써 이루어졌다.<sup>50</sup> 아르군 강에 있는 총 280개의 도서에 대한 영유권이 결정되었으며, 《No.1》부터 《No.280》까지 일련 번호가

46 『1913년 외무부 소식지』(1913) 제3권, 페트로그라드, 70~71쪽 ; 트카첸코 (1998), 132~133쪽.

47 『1913년 외무부 소식지』(1913) 제3권, 페트로그라드, 67~68쪽 ; 트카첸코 (1998), 129쪽.

48 『1913년 외무부 소식지』(1913) 제3권, 페트로그라드, 68~70쪽 ; 트카첸코 (1998), 130~131쪽.

49 『1913년 외무부 소식지』(1913) 제3권, 페트로그라드, 71~72쪽 ; 트카첸코 (1998), 134~135쪽.

50 『1913년 외무부 소식지』(1913) 제3권, 페트로그라드, 73~75쪽 ; 트카첸코 (1998), 136~138쪽.

부여된 도서 중 러시아가 160개, 중국이 120개를 나눠 가졌다. 흥미로운 것은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 체결 후 1911년 치치하얼 의정서가 체결될 때까지 222년 간 과거 러·중 양국 간 수로국경이었던 아르군 강 구(舊) 하상(河床)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서히 서쪽으로 이동하여 생긴 신 아르군 강 사이에 형성된 18개 도서는 러시아령으로 남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양국 간 국경선은 신 아르군 강을 따라 획정되었다. 러시아령으로 남게 된 18개 도서 중 5개의 큰 도서 맞은편, 아르군 강 신·구 하구 연안에 석제 국경표지를 설치하기로 하고 국경표지에는 상호 교환한 지도에 섬의 면적, 국경표지와 아르군 강 신·구 하상 간 거리, 표지 위치의 위도와 경도를 러시아어와 중국어로 표기해 넣기로 했다.

치치하얼 의정서에는 추가 합의의사록 《No.1》, 《No.2》, 《No.3》, 아르군 강 도서 목록, 1 : 100,000 축척으로 복원된 육로 및 아르군 강을 지나는 수로 국경지도가 첨부되었다.

이 모든 문건은 러시아어와 중국어로 2부씩 작성되었다. 양국의 전권대표들이 이들 문건에 서명·날인하여 상호 교환함으로써 양측은 러시아어와 중국어로 작성된 문건의 원본을 보관하게 되었다. 또한 1911년 10월 18일 서명된 합의의사록 《No.1》, 동년 11월 25일 서명된 합의의사록 《No.2》, 《No.3》 및 양국 황제의 명에 따라 각국 정부를 대표한 국경수비대장들이 서명·날인한 도서 목록이 담긴 지도는 1911년 12월 7일자 양 제국 간 국경복원에 관한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모든 문건에는 러·중 공동 재조사 전권대표로 러시아제국 니콜라이 II세의 명을 받아 출장을 떠난 국경표지위원회 러시아측 위원장인 소장 푸틸로프(Putilov)가 서명했다. 치치하얼에서 서명한

협약은 합의문을 비준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러·중 양 제국정부는 이 합의가 현장에서 최종 타결된 것으로 보고 합의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경표지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911년 12월 7일(20일)자 협약은 관련 첨부 문건들과 함께 베이징 주재 제정러시아 대리대사 5등문관 셰킨(Schekin)의 1911년 12월 3일(16일)자 외교노트와 1911년 12월 7일(20일)자 청 외무장관의 외교노트 교환을 통해 비준되었다.

치치하얼 의정서는 최근까지 서쪽의 몽골 영토로부터 동쪽의 아무르 강까지의 소·중 및 러·중 국경을 유지해 준 근간이었다.

1911~1913년 혁명 결과 중국을 지배하던 청조가 무너졌다. 1912년 청조가 공식 퇴위하고 중화민국이 들어섰다. 1913년 9월 23일 중국 외무장관 쑤바오치(孫寶琦)가 중화민국의 대총통 위안스카이(袁世凱)의 9월 27일 취임사에 대해 주중 러시아 대사 크루펜스키(V. Krupensky)에게 사전 통지해 왔다. 동 취임사 중 중국의 대외관계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이를 통해 청 왕조와 중화민국 임시정부가 맺은 외국정부들과의 모든 협정과 조약 및 기타 약정이 엄격히 준수될 것임을 선언한다.<sup>51</sup>

51 위안스카이[Yuan Shikai, 袁世凱] 중화민국 총통의 대외정책 선언문과 관련하여 쑤바오치[Sun Baoqi, 孫寶琦] 중화민국 외무장관이 주중 러시아 대사 크루펜스키(V. Krupensky)에게 보낸 통지문. 1913년 9월 23일. 「러·중 관계」, 『1689~1916년, 공식문서집』(1958), 모스크바 : Vostochnaya Literatura, 99~100쪽 ; 트카첸코(1998), 141쪽.

이와 같이 1914년 10월 이전 중국이 기존의 법적 합의 절차에 따라 인정한 현재의 연해 변경주를 포함한 러·중 동부국경이 유지되었다. 동부국경은 치치하얼 협약과 그에 대한 별첨 문건(러·중·몽 3국 간 교차점에서 아르군 강 상류, 나아가 아무르 강과의 합류지점까지), 베이징 조약(아무르 강), 한카 의정서와 그에 대한 별첨 문건 및 하바롭스크 의정서(카자케비체보 수로, 우수리 강, 순가차 강, 한카호), 노보키엡스크 의정서에 의해 수정·보완된 한카 의정서(한카호 서안, 즉 벨렌허 하구에서 산을 지나 러·중·북한 3국 간 두만강 교차점까지) 등에 의해 관리되었다.

러·중 국경은 앞의 조약 및 협정에 따라 국제법적·외교적인 필요 조건 및 절차가 엄격히 준수되는 가운데 유지, 확정되었다. 따라서 1860년 베이징 조약, 1886년 노보키엡스크 의정서에 의해 수정된 1861년 한카 의정서, 1886년 하바롭스크 의정서 및 1911년 치치하얼 협약, 그리고 관련 별첨 문건들은 현재의 러·중 동부국경(몽골 접경지에서 북한 접경지까지)을 확인해 주는 법적 근거이다.

## 10. 1917년 10월 혁명에서 1991년 협약까지

1917년 러시아 10월 사회주의 대혁명 이후 소·중 양국 관계에서 영토문제와 관련한 국가 간 이견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소비에트 정부는 대중 우호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RSFSR(Russian Soviet Federative Socialist Republic,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은 1919년 7월 25일자 ‘중국인민과 남북 두 중국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제정러시아가 동맹국들과 함께 일본, 중국 및 구 동맹국들과 체결한 비밀조약, 강요와 매수를 통해 특히 중국인민을

비슷한 동방 민족들을 억압했던 조약들'을 무효화했다.<sup>52</sup> 그러나 1919년 7월 25일자 메시지에 열거된 조약들은 국경 문제와 관련이 없었다. 즉 카흐타 조약, 아이훈 조약, 베이징 조약과 기타 영토·국경 문제를 다룬 협정들은 위 메시지에 열거되지 않았다.

러시아 외무인민위원회는 1919년 발표한 메시지를 근거로 작성, 중국 외교부에 보낸 1920년 9월 27일자 외교노트를 통해서 중국 정부에 양국 간 우호관계 수립을 위한 공식회담 및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안 제1항을 제안했다.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정부는 제정러시아 정부와 중국 간 체결된 일체의 조약은 무효임을 선언하며 강탈한 중국 영토와 중국 내 이권을 전면 포기하고 제정러시아와 러시아 부르주아가 중국에서 약탈한 모든 것을 중국에 무상으로 영구 반환한다.<sup>53</sup>

1920년 9월 27일자 러시아 외무인민위원회의 외교노트에는 강탈한 중국 영토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채 1896년 러·중 조약, 1901년 다자간 베이징 의정서 및 1907년부터 1916년까지 일본과 체결한 모든 협약의 파기, 즉 제정러시아의 북만주와 내이멍구[內蒙古]에 대한 영향력 포기에 관해서만 언급돼 있는 1919년 7월 25일자 메시지를 참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외교노트는 국경 문제에 관한 특별협약 체결

52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대외정책문서』(1958), No.2. 모스크바 : Gospolitizdat, 221~223쪽.

53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대외정책문서』(1959), No.3. 모스크바 : Gospolitizdat, 213~216쪽.

을 제안했다.

1920년 말부터 시작된 소·중 회담은 1924년 5월 31일 베이징에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과 중화민국 간 현안해결을 위한 일반원칙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타결되었다.<sup>54</sup> 동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되었다.

동 1924년 5월 31일자 ‘소·중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일반원칙에 관한 협정’에 따라 기타 조항(제2조)에 명시된 일반원칙에 입각한 구체적인 문서 작성을 위한 소·중 회담 소집이 예정되었다. 동 회의에서 제정 러시아가 중국 정부와 체결한 일체의 협약, 조약, 합의서, 의정서 및 계약 등을 무효화하고 평등, 상호주의, 정의 및 1919년과 1920년 소비에트정부의 선언정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문건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정되었다(제3조). 제3조에서 논의된 것은 무역, 교통, 통신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한 양국 간 일반협정이다. 제4조는 ‘중국의 주권과 이익을 침해하는 제정러시아와 제3국 간 체결한 일체의 조약과 협약 등은 파기되어 효력을 상실한다’고 선언했다. 소·중 양국 정부는 개최 예정된 회의에서 ‘양국 간 국경을 재확인하고 향후 검증이 이루어질 때까지 현행 국경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제7조). 동 조항은 제정러시아와 중국 간에 체결된 영토·국경에 관한 조약과 합의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소·중 양측은 1924년 5월 31일자 협정에 따라 향후 양국 간 회의에서 국경을 검증하고 기존의 국경선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 회의에서 평등과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양국 간 국경선이 통과하는 하천, 호

<sup>54</sup>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대외정책문서』(1963), No.7. 모스크바 : Gospolitizdat, 331~340쪽.

수 및 기타 수로를 통한 선박 항행 문제를 해결하고(제8조), 합의된 원칙과 중화민국의 주권을 존중하여 동중국철도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제9조). 특이한 것은 ‘양국 간 국경 구간’ 내 수로를 통과하는 항행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한 점, 즉 양국 간 기존의 국경이 언급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합의사항의 이행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1924년 9월 20일 봉천(현 선양[瀋陽])에서 소련정부와 장쥘린 장군이 이끄는 중화민국의 동부 3성 자치정부(만주) 간에 협정이 체결되었다. 동 협정은 내용면에서 1924년 5월 31일자 베이징 협정과 동일하지만 주로 동중국철도 문제를 다루었고 베이징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봉천 협정 체결과정에 영토문제에 관한 이견은 표출되지 않았다. 더구나 국경 문제에 관한 조항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양 계약 당사국 정부는 양측이 이미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국경을 재설정하되 그 이전까지는 현행 국경선을 유지하기로 한다.<sup>55</sup>

따라서 1924년 5월 31일자 베이징 협정에서뿐 아니라 1924년 9월 20일자 소·중 국경 문제에 관한 봉천 협정에도 영토·국경에 관한 기존의 러·중 간 협약들이 온전한 법적 효력을 유지하고, 추후 협상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상호검증, 즉 양국 간 국경을 정확하게 재설정하는 문제였다.

---

55 『소·중 관계 1917~1957년 공식문서집』(1959), 모스크바 : Vostochnaya Literatura, 97쪽.

1924년 5월 31일자 베이징 협정에서 논의된 소·중 회담은 협정 서명 후 1개월 이내가 아닌 1925년 8월에야 열리게 되었다. 1926년 베이징에서 시작되어 단 한 차례밖에 열리지 못했던 소·중 회담 관련분과에서 국경 문제가 논의될 당시 소비에트 측 발표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돼 있다.

…… 소·중 국경선은 쌍방의 현지 주민들과 당국들에 의해서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따라서 양국의 국경을 다양한 국경 관련 조약 및 협정에 의해 획정된 초기 형태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sup>56</sup>

1926년 시작된 양국 간 국경 문제 관련 교섭은 같은 해 중단되었다. 양국 간 회담 과정은 내전 격화로 인한 국내정세 악화로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중국 측의 제안으로 1926년 6월 중단되었다.

1927년 중국에는 소연방에 적대적이었던 장제스(蔣介石) 정부가 들어섰다. 1929년 중국 군국주의자들의 동중국철도 점령으로 인해 양국 간 무력충돌이 발발했다. 이로 인해 소·중 간 외교관계는 단절되고 양국 간 무력분쟁은 중국군의 패배로 종결되었다. 1929년 12월 22일 하바롭스크에서 동중국철도 상황을 1924년 베이징 협정에 따른 분쟁 이전의 상황으로 복원하고 소·중 국경의 평화체제 복원을 골자로 하는 공동 의정서가 서명되었다.<sup>57</sup> 그러나 1930년 1월로 예정되었던 국교정

<sup>56</sup> 키레예프(G.V. Kireev)(1999), 『러·중 국경 4200km』 No.2, 모스크바: Mezhdunarodnaya Zhizn, 42쪽.

<sup>57</sup>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대외정책문서』(1963), No.12, 673~676쪽.

상화 회담은 1930년 10월에야 개최되었다. 그러나 회담은 수시로 중단되고 양국 간 현안도 해결하지 못했다. 결국 소·중 간 외교관계는 1932년 12월에야 전면 복원되었다.

1931년부터 중국 동북성(만주)들이 일본군에게 점령되기 시작해 1932년에는 친일 만주국이 수립되었다.

전쟁 이전 소·만 국경의 전반적인 정치·군사적 상황을 살펴보면, 몽골에서부터 한반도까지의 소·만 국경에는 1932년부터 러·중 양국 간 체결된 조약 및 협약(1727년, 1860년, 1861년 및 1911년)에 따라 현상 유지가 지속되었지만 사실상 이 시기부터 만주지역 소·중 국경에는 일본의 군사도발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예로 1933년 10월 일·만 연합군의 소련 국경수비대 공격, 1935년 6~7월 일본군의 국경도발, 1938년 7~8월 일본군의 하산호 인근 소연방 영토 침략 및 궤멸 등을 들 수 있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선포 후 초기 수년간 소·중 국경은 평화와 우호시대였다. 1950년 4월 11일 발효된 '소·중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에 따라 소련과 중국은 상대국의 주권과 영토보존에 대해 상호 존중기로 합의했다.<sup>58</sup>

평화롭고 우호적인 분위기가 지속돼 오던 양국 국경의 상황은 1960년대 초 잘 알려진 이유로 말미암아 급격히 악화되었다.

중국 지도부는 1960년대 초부터 동부 국경지역의 아르군 강, 아무르 강, 우수리 강 및 순가차 강의 소련령 도서와 아르군 강, 아무르 강 좌

---

<sup>58</sup> 1950년 2월 14일 「소중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 『소연방 대외 협정 및 조약집』(1957), 제9판, 모스크바 : Gospolitizdat, 15~17쪽.

안 및 우수리 강 우안 일부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처음에 소연방 영토 2만 2000km<sup>2</sup>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더니 나중에는 요구면적을 3만 3000km<sup>2</sup>로 끌어올렸다.<sup>59</sup> 중국은 이 과정에서 제정러시아가 1858년 아이훈 조약, 1860년 베이징 조약, 1864년 추구차크[Chuguchag, Tarbagatai, 塔爾巴哈臺: 현 塔城] 의정서, 1881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 및 1911년 치치하얼 의정서, 1915년 쿠레스크(Kuresk) 의정서 등 19~20세기 ‘불평등조약’을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150만km<sup>2</sup> 이상의 영토를 약탈해 갔다는 주장을 폈다. 중국 지도에는 해당 지역 소연방 영토를 중국령 혹은 ‘분쟁지역’으로 표기했다.

소·중 국경회담은 1964년 2월 베이징에서 시작되었으나, 그해 8월 중단된 후 수차례의 휴지기를 거쳐 30년 동안 진행되었다.

회담은 앞서 소련공산당과 중국공산당 간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본질적인 이념논쟁과 첨예한 대립 등 급격한 소·중 관계의 악화로 인해 시작되었다.

그러나 양국 공산당과 정부들 간의 극한 대립과 1960~1970년대 중국 측의 소연방 영토에 대한 집요한 영유권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경선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1964년 소련은 중국에 일정 부분 영토를 양보할 의향이 있었다. 그러나 하바롭스크 지역에 있는 총면적 350km<sup>2</sup>에 달하는 2개의 큰 섬과 인근 소규모 도서들에 대한 중국 측의 지나친 요구로 국경재설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반소(反蘇) 히스테리를 동반한 중국 ‘문화혁명’이 절정을 이룬 1969

59 「소·중 국경회담」, 『외교사전』(1985) 3권, 214~215쪽.

년 3월 연해 변경주 이만(Iman) 시 인근 우수리 강의 작은 섬 다만스키 섬(Damanskii Island, 전바오다오[珍寶島])에서 중국 측의 도발로 발발한 대규모 무력충돌 사태로 양측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같은 해 8월 카자흐스탄의 세미팔라틴스크(Semipalatinsk) 주 소·중 간 서부 국경지대 잘라나시콜(Zhalanashkol) 마을 동쪽에서도 무력충돌 사태가 발생했다. 이어 1969년 9월 베이징 공항에서 코시긴(A. N. Kosygin) 소연방 총리가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주석을 만나 분쟁을 종식하고 국경 문제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회담은 베이징에서 1969년 10월부터 1978년 6월까지 외무차관급 양국 정부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총 40회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회담 중 소련과 중국 양측은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소련 측은 1917년 이전 체결된 러·중 간 조약 및 협정으로 획정된 기존의 국경통과 지역 중 양측의 국경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구간의 국경선 실사를 제안했다. 반면 중국 측은 국경재설정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에 착수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소련 측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했다.

소연방 내에 ‘분쟁지역’이 있음을 시인할 것, 이 지역에서 소련군과 국경수비대를 철수시킬 것, 이 지역에서 중국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할 것

이처럼 중국 측은 사실상 소련 측에 영유권을 주장했으나 이는 정치적 성격의 일방적인 요구로서 양국 간의 국제법적 기반에 저촉되는 것이었다.

중국 측은 소·중 간 국경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1980~

1983년 단독으로 양국 간 국경실사 작업을 시행했다.<sup>60</sup>

소연방 측에서도 1983년 2월 3일자 소연방 각료회의 결정(No.113 - 48)에 따라 구성된 ‘소·중 국경 단독실사 부처간 특별위원회’가 1983년부터 1986년까지 동일한 실사작업을 단독으로 시행했다.<sup>61</sup> ‘소·중 국경 단독실사 부처간 특별위원회’는 소연방 외무부, KGB 국경수비대 총국, 소연방 해군 관계자 등으로 구성해 4년 동안 국경실사 작업을 시행했다. 특별위원회는 수십 년에 걸쳐 양국 국경에서 발생한 사건 전모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그 후 당시의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 현장을 탐사했다.<sup>62</sup>

1982년 양측의 합의에 따라 양국 간 정치협상이 이루어졌다.<sup>63</sup> 이 협상은 양국의 외무차관급 정부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1980년대 말까지 상호 합의에 따라 비공개로 베이징과 모스크바에서 번갈아 가며 지속되었다. 특히 소련 측 제의에 따라 국경지역에서의 신뢰 강화, 상대국의 주권과 영토보존에 대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양국관계 개선대책이 검토되었다.

<sup>60</sup> Tikhii Okean-V(1995. 4. 7), 「누구를 위해 진실을 은폐하는가?」, No. 14, 블라디보스토크, 1~4쪽.

<sup>61</sup> 로조프(V. Rozov), 「위대한 이웃들에게 평화의 국경을」, 『블라디보스토크』; 『블라디보스토크』(1997. 1. 16), No.8, 5쪽.

<sup>62</sup> Tikhii Okean-V(1995. 4. 7), 1쪽.

<sup>63</sup> 「소·중 정치협상」, 『외교사건』(1985) 3권, 215~216쪽.

## 11. 1991년 ‘소·중 동부국경협정’

국경변경에 관한 결정이 소연방 외무부에서 채택되었다. 1991년 5월 16일 모스크바에서 소연방 베스메르트니흐(A.A. Bessmertnykh) 외무장관과 중국의 첸지첸(錢其琛) 외교부장이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국경 동부구간 협정’(이하 ‘동부국경협정’)에 서명했다.<sup>64</sup> 이 동부국경협정은 1989년 5월 고르바초프(M. S. Gorbachyov)의 베이징 방문 중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급조되었다. 고르바초프는 마치 현행 국제법 원칙을 고려하기라도 한 듯 19세기 러·중 간 체결된 영토·국경 관련 조약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동부국경협정을 준비·서명할 것을 직접 주도했다.

1991년 5월 16일자 동부국경협정은 동쪽의 몽골 영토(국경점 《No.1》 타르바간다흐)에서 북한(두만강에 있는 국경점 《No.33》) 영토까지의 소·중간 국경선을 다루고 있다.

1994년 9월 3일 30년간에 걸친 국경회담은 ‘러·중 간 국경 서부구간 협정’(이하 ‘서부국경협정’) 체결로 막을 내렸다. 양국 간 서부국경선은 몽골 영토[국경점 타분보그다울라(Tabun-Bogda-Ula)]와 카자흐스탄 간 총 55km 구간의 험난하고 높은 산악지대를 통과하고 있다.

소·중 국경은 치타(Chita) 주, 아무르 주, 유대인 자치주, 하바롭스크 변경주, 연해 변경주의 아르군 강, 우수리 강, 순가차 강, 한카호를 각각 통과하는 수로국경과 치타 주, 연해 변경주를 지나는 육로국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양국 간 국경선은 총 4200km로, 그 중 3600km는

<sup>64</sup> 트카첸코(1998), 142~155쪽.

강과 호수를 통과한다.

1991년 동부국경협정은 러시아어와 중국어로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모두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991년 5월 16일자 소·중 동부국경협정은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최고회의에 의해 1992년 2월 13일 비준되었다.<sup>65</sup>

비준된 문서는 1992년 3월 16일 베이징에서 교환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러시아는 동 협정 관련 소연방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러시아 정부는 1992년 8월 10일과 1993년 5월 5일 2건의 동부국경협정 시행령을 채택했다. 동 시행령에 따라 러·중 공동 국경표지위원회 러시아 측 대표단은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 의거, 국경표지작업에 착수해 1997년까지 이를 완료하여 같은 해 관련 문건을 정부에 승인 제출해야” 했다.<sup>66</sup>

국경표지작업은 1993년 시작되어 1998년에 종료되었다. 한편 아무르 강과 우수리 강 등 수로국경에서는 수로측량이 시행되었다. 이는 동부국경협정과 국제법 규범에 따라 주 항로(특히 도서 구간의 항로)와 그 중앙선은 수로측량 자료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양국 간 국경선이 될 수도 있고, 그에 따라 도서의 영유권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러·중 공동 국경표지위원회 러시아 측 위원장, 러시아 외무부 특임

<sup>65</sup> 소·중 동부지역 국경협정비준에 관한 1992년 2월 13일자 러시아연방 최고회의 결정,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RSFSR) 인민회의와 최고회의 소식지』(1992. 3. 5), No.10, 468쪽.

<sup>66</sup> 러시아연방 하원, 『회의 속기록』(1995. 5. 12), No.13, 54쪽.

대사, 러시아 특명전권대사 키레예프(G. V. Kireev)의 자료에 따르면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 의거, 1983년부터 1986년까지 시행한 단독실사에 따른 국경 하천의 도서분할 결과 러시아는 700개 이상의 도서(총 면적 700km<sup>2</sup> 이상)를 중국 측에 양도해야 했다.<sup>67</sup>

그러나 한가, 우수리 및 하산 등 연해 변강주 3개 구의 국경획정 작업 중 돌발상황이 발생했다. 연해 변강주 당국이 동 3개 구의 러시아 영토 양도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 따라 러시아령 두만강과 아무르 강 구간의 선박 항행규정 또한 변경되었다. 동 협정 제8조에 따르면 “체약 쌍방은 군함을 비롯한 다양한 선박들이 우수리 강에서 하바롭스크를 지나 아무르 강으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 한편 제9조에 따르면 “소련 측은 (중국 깃발을 게양한) 중국 선박들이 두만강 국경점 《No.33》 하류를 지나 바다까지 왕래하는 데 동의했다.”<sup>68</sup>

소·중 동부국경협정은 ‘국제관계 시스템의 전면적 페레스트로이카’를 기치로 내건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신사고(新思考)’ 정책 차원에서 체결되었다. 마치 국경재설정에 관해 논하는 듯했지만, 연해 변강주 우수리스크 시당국의 질의에 대한 러시아 외무부 아태국장 솔로비요프(N. Soloviyov)가 서명한 답변서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은 ‘동부국경협정은 국경획정 문건’이었다.<sup>69</sup>

67 러시아연방 하원(1995. 5. 12), 『회의 속기록』, No.13, 55쪽.

68 트카첸코(1998), 142~155쪽.

69 솔로비요프(N. Soloviyov)(1993), 「중국과의 국경은 평화롭다」, *Krasnoye Znamya*, No.118, 블라디보스토크, 2쪽.

국경 ‘문제’는 오랫동안 소·중 관계를 훼손하며, 양국 관계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에 장애물이 되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만일 1991년 동부국경협정이 진정 대중 국경선 수정에 그쳤더라면 그것은 지루하게 끝어온 회담의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비록 19세기 러·중 양국 간 영토분할 및 국경에 관한 다양한 조약이 1991년 동부국경협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여기에는 사실상 많은 수정이 가해졌다. 우선 하천 도서들에 대한 영유권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연해 변경주 3개 지역과 일부 치타 주의 러시아 영토가 중국에 양도되었다. 결국 하바롭스크 인근 볼쇼이우수리스크 섬과 타라바로프 섬, 아르군 강 상류의 볼쇼이 섬 지역에 대한 법적 영유권 문제가 제기되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sup>70</sup> 1991년 동부국경협정 체결 당시 국경설정이 라는 미명하에 러시아의 일부 영토를 이웃나라에 양도하는 국경확정이 이루어졌다.

게다가 이 동부국경협정의 비준 과정에서도 1992년 2월 비준 당시 발효 중이던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의 헌법규범을 크게 위반했다. 다시 말해서 당시의 헌법규범에 따르면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의 영토변경을 초래하는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국경변경 문제에 대한 심의는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인민대의원대회가 배타적으로 관장’했으며(2부 제104조 제5항),<sup>71</sup> ‘러

70 트카첸코(B. I. Tkachenko)(1996), 「소·중 동부지역 국경협정 정밀분석」, 『러시아의 대 극동 정책의 효율성 문제』, 블라디보스토크 : 극동대학 출판부, 95~129쪽.

71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헌법(기본법) 개정 및 증보에 관하여.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법률. 1989년 10월 27일 제11대 러시아연

시아 헌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러시아 국가기관의 그 어떤 법률이나 법령을 채택할 수 없었다'(제184조).<sup>72</sup>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영토는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의 의지 표시 없이는 변경될 수 없음'을 규정한 1990년 6월 12일자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국가 주권선언문 조항(제8항) 또한 위반했다.<sup>73</sup> 그 밖에 '국가 중대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전 국민적 심의와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러시아 헌법 제5조도 위반했다.<sup>74</sup>

1998년부터 1999년까지 러·중 공동 국경표지위원회는 획정작업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국경설정문건을 작성했다.

러·중 동부국경 설명서, 국경선 및 국경표주가 표시된 별첨 지도(축척 1 : 50,000), 국경표주 의정서, 국경표주 높이 및 좌표 목록, 도서 및 사주 표, 국경표지위원회 활동에 관한 최종 의정서

위와 같은 국경설정문건 작성 후 1999년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

---

방 최고회의 11차 회의에서 채택됨.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최고회의 소식지』(1989. 11. 2), No.44, 1303조, 865쪽.

<sup>72</sup> 러시아연방(러시아) 헌법(기본법). 1978년 4월 12일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제9대 최고회의 제7차 임시회의에서 채택됨(1989년 10월 27일, 1990년 5월 31일, 6월 16일, 12월 15일, 1991년 5월 24일, 11월 1일 개정, 1992년 4월 21일자 법률). 모스크바 : 이즈베스티야, 1992년, 78쪽.

<sup>73</sup>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국가 주권선언문.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인민대의원대회, 『최고회의 소식지』(1990. 6. 14), No.2, 22조, 45쪽.

<sup>74</sup> 러시아연방(러시아) 헌법(기본법), 4쪽.

지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중 공동 국경표지위원회 최종회의에서 모든 러·중 동부국경 및 서부국경 설정문건을 최종 검토, 합의했다. 공동위원회 양 공동의장(러시아 외무부 특임대사 키레예프와 러시아 주재 중국대사 인위바오[尹纘標])는 러·중 동부국경 및 서부국경 설명서와 국경지도들에 가조인했다. 이러한 문건들은 절차에 따라 양국 정부에 최종 승인을 위해 제출될 예정이다. 가조인 된 문건들은 양국 정부를 대표하는 관련 당사자들이 최종 서명한 후 발효될 예정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 2장

1991년 「소·중·동부  
국경협정」 분석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러·중 동부지역 국경선 변경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경변경을 규정한 1991년 5월 16일자 소·중 동부국경협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부국경협정은 1989년 5월 고르바초프의 베이징 방문 중 이루어진 합의에 의해 체결되었다. 고르바초프는 마치 현행 국제법 원칙을 고려하기라도 한 듯 19세기와 20세기 초 러·중 간 체결된 영토·국경 관련 조약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동부국경협정을 준비·서명할 것을 직접 주도했다.

모든 것을 미루어 볼 때 동부국경협정은 고르바초프가 이끌던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압력으로 급조되었으며 협정서명 역시 그의 또한 차례의 방중일정에 맞춰진 듯하다. 그러지 않았다면 본 협정으로 말미암아 소련이 입게 된 분명한 손실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어쨌든 그 당시 소련방 외무부에는 지금 형태의 최종 협정문을 작성하는 데 반대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유능한 중국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반대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아니면 국익과 직업윤리에 앞서 소련방 외무부에서의 자신의 출세를 더 소중히 여긴 나머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고르바초프의 ‘신사고’는 소·중 관계라는 새로운 분야의 동부국경협정에서 실현되었으며, 이것은 소련이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변덕스러운 이웃 중국에 영토적·전략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양보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중 동부지역 국경선은 총 4195.22km며, 그 중 육로국경선은 578.18km, 수로국경선은 3547.01km, 호수 면을 지나는 국경선은 70.03km이다.<sup>1)</sup>

러·중 간 국경선 전 구간에 걸친 획정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그러나 각종 출판물과 언론매체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핫이슈였던 이 문제에 대해 일제히 입을 다문 채 외면하고 있다.

이제 모든 문제가 분명하게 해결되었다는 것인가?

아니다. 이 문제는 아직 미결 상태이며 공공기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네자비시마야 가제타(Nezavisimaya Gazeta)』가 발간한 러시아 외무부 관계자들의 시각을 반영한 자료집 『러·중 국경 : 문서, 논거, 사실』을 살펴보자.

서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991년 협정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결과 협정이 러시아의 국익에 일치하기 때문에 협정의 전면적 혹은 부분적인 수정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었다.<sup>2</sup>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느 나라든 자국 영토 일부를 이웃나라에 자발적으로 내주고 이를 다행으로 여길 수 있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반대로 국토를 이웃나라에 내주는 행위는 해당국 영토보존에 대한 위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영토를 내준 무리의 이적행위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1 키레예프(1999), 50쪽.

2 『러·중 국경 : 문서, 논거, 사실』(1997), 모스크바 : 『네자비시마야 가제타(Nezavisimaya Gazeta)』, 4쪽.

러시아 외무부 관리들이 1991년 동부국경협정서에 의해 확정된 러·중 국경선 ‘재합의’를 수용하려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 1990~1991년 대중 협상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면, 이제 러시아 외무부는 이에 대한 법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한 상황에서 그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문제는 1991년 중국과 맺은 “동부국경협정이 러시아의 국익에 일치한다.” 따라서 “협정을 전면 혹은 부분 수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적극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코 사실과 다르다는 분명한 예를 들어보겠다.

러·중 동부국경 서쪽으로부터 극동지역까지, 즉 치타 주의 ‘러·중·몽’ 3국 간 접경지로부터 연해 변강주의 ‘러·중·북한’ 3국 간 교차점까지 살펴보기로 하자.

1991년 소·중 동부국경협정문을 살펴보자.

## 1. 치타 주 국경변경

첫 번째 국경변경은 치타 주의 ‘러·중·몽’ 3국 간 교차점에서 아르군 강까지의 총연장 약 90km 구간의 육로국경에서 이루어졌다.

이 지역의 양국 간 국경은 1727년 부라 조약과 카흐타 조약 및 관련 국경설정문건, 즉 카흐타에서 아르군 강 상류까지의 구간에 대한 러·중 국경설정에 관한 1727년 10월 12일(23일)자 아바가이투이 교환서신 및 국경표지 목록에 의해 관리되었다. 카흐타 조약은 부속서와 함께 비준서가 교환됨으로써 1727년 6월 14일(25일) 발효되었다. 이들 문건에 의해 설정된 카흐타 이동 지역의 국경선은 달라이노르(Dalay-Nor) 호수 북쪽 아르군 강변의 아바가이투이 산, 즉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

에 의해 획정된 국경선에서 시작하여 부라 조약과 카흐타 조약 서명 당시 사실상 존재했던 러시아 측 군 초소와 청나라(옛 몽골) 측 국경수비대 라인을 지나고 있었다.

1727년 10월 21일자 카흐타 조약과 1727년 10월 12일(23일)자 별첨 교환서신에 의해 획정된 아르군 강에서 서쪽 몽골국경까지 구간의 양국 간 국경선은 1911년 12월 7일(20일)자 ‘러·중 국경점 《No.58》(타르바칸다흐)에서 국경점 《No.63》(아바카이투이)까지, 이어서 아르군 강을 지나 아르군 강과 아무르 강의 합류지점까지의 국경선 복원에 관한 협약’에 의해 획정·설정되었다.<sup>3</sup> 흔히 치치하얼 의정서라고 불리는 이 협약은 당시 베이징 주재 제정러시아 대리대사와 청나라 외무장관의 외교노트 교환을 통해 비준된 국제협약이다.

그런데 1991년 5월 16일자 소·중 동부국경협정에 따라 치타 주 육로국경이 일부 수정된다. 이로써 소연방(러시아 포함)은 1991년 동부국경협정이 체결되기 264년 전 중국과 체결한 양국 간 조약에 의해 러시아 영토로 획정되고, 그 후 동부국경협정이 체결되기 80년 전 러시아 영토임이 확인된 97km<sup>2</sup>의 영토를 잃게 되었다.

이 지역 국경에서 러시아가 영토를 잃게 되었다는 소식은 라스킨(Yu. Raskin)의 기고문 「어쨌든 우리가 이겼다! 연해 변경주 지방의 ‘두만강프로젝트’는 더 이상 추진되지 않을 것이다」<sup>4</sup>와 1997년 11월 22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보도된 그의 또 다른 기고문 「1991년 동부국경협정은 러·중 국경 전 구간에서 전면 이행되었다. 그 결과 치타 주는

3 트카첸코(1998), 126~128쪽.

4 『노보스티(Novosti)』(1997. 11. 19), 블라디보스토크.

9700ha의 땅을 잃었다는 점만을 생각하라」에 실려 있다.

이 또한 이중으로 해석될 소지가 전혀 없는 분명한 조항을 담고 있는 러·중 양국 간 맺은 기존의 조약들과는 상치되는 내용이다.

다음 문건들을 보자.

1727년 8월 20일(31일)자 부라 조약을 이행하기 위해 서명된 1727년 10월 12일자 아바가이투이 교환서신에 의해 카흐타에서 아르군까지의 양 제국 간 국경선이 63개의 국경표지 설치를 통해 획정, 승인, 설정되었다. 몽골에서 아르군 강까지의 구간에는 6개의 국경표지 《No.58~No.63》이 설치되었다.

위 서신에 기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부 스텝지역[이하 밑줄 표시-필자] 폐 등대 타르바간다흐에 국경표지 《No.58》이 설치되었다.<sup>5</sup>

이어서 본 서신에 첨부된 양 제국 간 설치된 국경표지 목록에는 국경표지 《No.58》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돼 있다.

폐 등대 국경표지 《No.58》(타르바간다흐)는 북부 스텝지역에 위치하며, 국경표지 인근 타르바간다흐 호수 주변에 초병을 세우라는 지시가 내려졌다.<sup>6</sup>

<sup>5</sup> 트카첸코(1998), 63쪽.

<sup>6</sup> 트카첸코(1998), 68쪽.

1911년 치치하얼 협약에 따라 이 지역 양국 간 국경은 6개 국경점 사이를 직선으로 통과하는 선으로 결정되었으며, 동 국경점들의 일련 번호와 명칭은 1727년 10월 12일자 카흐타 조약의 별첨 문건들 중 하나인 아바가이투이 교환서신에 명시된 국경점과 일치한다. 치치하얼 협약의 추가본인 1911년 11월 25일자 합의의사록 《No.2》에 따라 이듬해 봄 이들 국경점에 공동 측량을 통해 획정한 위도와 경도를 러시아어와 중국어로 표시한 국경표지를 설치하기로 하고,<sup>7</sup> 그 이전까지는 당분간 국경점에 기호 형태의 돌무더기를 쌓아 두기로 했다. 또한 국경선 전 구간에 걸쳐 도랑을 파도록 했다.

국경점 《No.58》(국경표지 《No.58》)과 관련해 치치하얼 협약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돼 있다.

국경점 《No.58》(타르바간다흐)는 타르바간다흐 산 정상에서 정남쪽 6베르스타 312사젠 혹은 12.64 중국 리(7220.16m) 지점 스텝지역에 설치한다.<sup>8</sup>

국경점 《No.58》의 위치는 합의의사록 《No.2》에도 동일하게 기술돼 있다.<sup>9</sup>

그러나 1991년 소·중 동부국경협정은 위에서 열거한 모든 초기문건에 배치된다.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 국경점 《No.1》로 명명된 과거

<sup>7</sup> 트카첸코(1998), 132~133쪽.

<sup>8</sup> 트카첸코(1998), 126쪽.

<sup>9</sup> 트카첸코(1998), 126쪽.

의 국경점 《No.58》의 위치는 제2조에 다음과 같이 기술돼 있다.

소·중 동부국경 국경점 《No.1》은 타르바간다흐 고지이다.<sup>10</sup>

동일한 국경점의 위치(러·중·몽 3국 간 교차점), 즉 1727년과 1911년 협정에 명시된 지점(타르바간다흐 산 정상에서 정남쪽 7.22km 지점의 스텝지역)과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 명시된 지점(타르바간다흐 고지)이 상치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경점 《No.2》(이전 협약의 《No.59》)까지 동남쪽으로 직선거리 약 30.4km 떨어진 국경점 《No.1》(이전 협약의 《No.58》)이 북쪽으로 7.2km 이동했다. 즉 국경선이 러시아 영토 안쪽으로 평균 약 3.6km 파고들어 온 것이다. 삼각형 넓이 산출 공식에 의하면 러시아 영토가 97km<sup>2</sup> 줄어들게 된 것이다.

우리 영토 일부를 이웃나라 중국에 이런 식으로 선사했다는 점은 전혀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확실히 이는 과거 양국 간 해당지역 국경획정과 관련된 모든 조약(1727년 초기 카흐타 조약과 국경설정문건 및 1911년 국경재설정문건)과도 상치된다.

흥미로운 점은 1909년부터 1911년까지 개최되었던 아르군 강 및 몽골 이전까지의 자바이칼 지역 국경재획정 회담에서 국경표지 《No.58》을 남쪽 스텝지역에서 북쪽 타르바간다흐 고지로 옮겨 달라는 중국 측의 요청이 1727년 초기 협정의 내용과 다르다 하여 러시아 측 대표단에 의해 거부되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제정러시아 대외정책 고문서 보관소에서 러시아어와 몽골어로 작성된 1727년 10월 12일자 아바가기

<sup>10</sup> 트카첸코(1998), 142쪽.

투이 교환서신 원본이 발굴되었는데, 동 원본에는 아르군에서 몽골, 나아가 카흐타까지의 국경획정 및 설정작업의 결과가 명시돼 있다. 회답에서 정보으로 채택된 교환서신은 몽골어본이었다. 국경표지 《No.58》구역의 국경은 1727년 초기 국경설정문건들(아바기투이 교환서신 및 국경표지 목록)에 따라 1911년 복원(재설정)되었다. 아울러 국경표지 《No.58》의 위치는 치치하얼 협약과 추가 의정서에 ‘막연한 스텝지역이 아닌 타르바간다흐 산 정상에서 정남쪽으로 7.22km 지점’으로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국경표지 《No.58》과 관련된 모든 문건의 내용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자바이칼 지역 국경재획정 과정에 정통한 러시아 국방장관 수흐리노프(V. A. Sukhomlinov)의 “경험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측이 양보하고 흔들리면[이하 밑줄과 괄호 안의 부호-필자] 중국 측은 이를 우리의 약점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는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하도록 부추기는 빌미가 된다”는 발언은 매우 흥미롭다. 그러한 행동은 동양인들, 특히 아시아인들의 전형적 특성이다.<sup>11</sup>

바로 여기에 당연한 의문이 제기된다. 치타 주의 비옥한 경작지 97km<sup>2</sup>를 아무런 역사적·법적 근거 없이 내주는 것은 과연 러시아의 국익에 일치하는 것인가?

## 2. 아르군 강 국경변경

두 번째 국경변경은 치타(Chita) 주 아르군 강에서 이루어졌다.

<sup>11</sup> 마스니코프(1996), 329쪽.

아르군 강 수로국경은 최초로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에 의해 획정되고,<sup>12</sup> 그 후 1911년 치치하얼 협약과 그에 대한 1911년 11월 25일자 추가 합의사록 《No.3》에 의해 아르군 강을 지나 아르군 강 하구, 즉 아르군 강과 아무르 강 합류지점으로부터 국경점 《No.63》(아바가이트우이)까지의 국경선이 확인되었다.

네르친스크 조약에는 아르군 강 유역의 도서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치치하얼 협약과 1911년 10월 18일과 11월 25일자 추가 의정서 《No.1》, 《No.3》 및 도서 목록에 따라 《No.1》부터 《No.280》까지 일련 번호가 부여된 도서 총 280개 중 러시아가 160개, 중국이 120개를 사이좋게 나눠 가졌다. 흥미로운 것은 합의의사록 《No.3》에 따라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 체결 후 1911년 치치하얼 의정서가 체결될 때까지 222년 간 과거 러·중 양국 간 수로국경이었던 아르군 강 구 하상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서히 서쪽으로 이동하여 생긴 신 아르군 강 사이에 형성된 18개 도서는 러시아령으로 남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양국 간 국경선은 신 아르군 강을 중심으로 획정되었다.<sup>13</sup> 아르군 강을 지나는 양국 간 국경은 1911년 12월 7일자 협약의 추가본인 1911년 10월 18일자 합의의사록 《No.1》<sup>14</sup>과 그에 대한 첨부 문건인 아르군 강 하구에서 아르군 마을 및 그 상류까지의 도서 목록,<sup>15</sup> 1911년 11월 25일자 합의의사록 《No.3》,<sup>16</sup> 이에 대한 첨부 문건

<sup>12</sup> 트카첸코(1998), 47~49쪽.

<sup>13</sup> 트카첸코(1998), 134~135쪽.

<sup>14</sup> 트카첸코(1998), 129쪽.

<sup>15</sup> 트카첸코(1998), 130~131쪽.

아르군 강의 《No.88》부터 《No.280》까지의 도서 목록에 따라 여러 도서를 분할함으로써 설정되었다.<sup>17</sup>

치치하얼 의정서에는 추가 합의의사록 《No.1》, 《No.2》, 《No.3》, 아르군 강 도서 목록, 1 : 100,000 축척으로 복원된 육로 및 아르군 강 수로국경 지도가 첨부되었다. 각측은 러시아어와 중국어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모든 문서의 원본을 상호 교환하고 각 추가 의정서와 그에 대한 첨부 문건, 양국 황제의 명에 따라 각국 정부를 대표한 국경수비대장들이 서명·날인한 도서 목록을 포함한 지도는 1911년 12월 7일자 양 제국 간 국경복원에 관한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의했다.

치치하얼 협약에 대한 별첨 문건으로 양국 수로국경위원회 위원장들이 서명·날인하여 상호 교환한 아르군 강 하구에서 국경점 《No.63》까지의 모든 도서가 표시된 지도와 도서 목록은 양국의 합의에 따라 ‘국경 관련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향후 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문건은 러시아 외무부 산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 고문서 보관소에 소장돼 있다.

아르군 강을 통과하는 양국 국경선은 영구적이고 매우 상세하게 획정되어, 그 어느 쪽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없어 보였다.

그러나 1911년 러·중 양 제국의 황제들이 전권대표들을 통해 합의한 사항은 1991년 소·중 간 새로운 국경에 관한 동부국경협정이 체결

<sup>16</sup> 트카첸코(1998), 134~135쪽.

<sup>17</sup> 트카첸코(1998), 136~138쪽.

됨으로써 문제가 되었다.

동부국경협정을 체결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경에 관한 분명한 문건들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인가? 더구나 국경이 영구적으로 획정되지 않았던가?

1991년 동부국경협정 문안 작업에 참여하고 현재 러·중 국경표지 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러시아 외무부 특임대사 키레예프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911년 치치하얼 협약은 법적으로 매우 불완전한 것으로 당시의 아르군 강 유로(流路)를 국경으로 인정하여 신(新) 하상(河床), 즉 국경과 구 하상 사이의 많은 도서가 러시아령으로 간주되었다. 그리하여 러시아는 국경 밖의 영토를 점유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오해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었다. 1920년대 초 극동공화국 외무부는 러시아 농민들로 하여금 중국 세리들에게 건초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특별 명령을 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현 국경설정 당시 중국 영토에 거의 맞닿아 있던 섬을 자신들의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다.<sup>18</sup>

마지막 문장에 언급된 섬은 아르군 강에 있는 175km<sup>2</sup>의 멘케셀리(Menkeseli) 섬이다. 이 섬은 치타 주에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유는 그 섬 맞은편에는 다섯 개의 대규모 카자크 마을이 있었는데 이곳 주민들에게 멘케셀리 섬은 건초 수확과 사냥, 낚시와 휴식 공간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섬은 점점 중국 영토

<sup>18</sup> 『이즈베스티야』(1998, 3, 28), No.57.

에 맞게 되어 1911년 11월 25일자 합의의사록 《No.3》과 1911년 12월 7일자 치치하얼 협약에 따라 러시아령으로 남게 되었던 나머지 17개 섬과 마찬가지로 국경획정 결과 중국에 귀속되었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정회원 마스니코프(V. S. Myasnikov,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극동연구소)에 따르면 이 18개 섬의 총면적은 200km<sup>2</sup>를 넘는다.<sup>19</sup>

치치하얼 협약은 현행 국제법 규범에 일치하는가?

아르군 강은 러·중 간 국경 하천이다. 현행 국제법 규범에 따르면 “국제협약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항행 가능한 하천이 국경을 이룰 경우 국경선은 일반적으로 하천 주 항로의 중심 혹은 수심이 가장 깊은 최심선(最深線)을 따라 획정되며”, 항행 불가능한 하천의 경우 하천이나 주지류(主流)의 중앙선을 따라 획정된다.<sup>20</sup> 따라서 양측은 합의 절차에 따라 주 항로의 중심, 최심선 혹은 양안 중 한쪽 등 국경 하천을 통과하는 모든 안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측 간 이뤄지는 모든 합의는 현행 국제법 규범에 저촉되지 않는다.

또한 현행 국제법 규범에 따르면 “국경 하천을 통과하는 국경선 획정과 동시에 하천 도서들에 대한 영유권이 결정되는데, 이때 국경선이 하상의 중앙을 통과할 경우 도서들의 영유권은 도서와 하천 양안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당사국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sup>21</sup> 알려진 바와 같이 치치하얼 협약에 따라 아르군 강 주지류의 중앙선이 국경선으로 결정되었다.

<sup>19</sup> 마스니코프(1996), 377쪽.

<sup>20</sup> 『외교사전』(1985) 2권, 458~459쪽.

<sup>21</sup> 『외교사전』(1985) 2권, 459쪽.

현행 국제법 규범은 또한 국경 하천을 통과하는 국경선이 자연현상(예를 들어 국경선이 통과하는 국경 하천 중앙선의 전위 등)에 의해 기존의 국경선에서 후퇴할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른다.

국경선은 하상 중앙선의 자연적인 전위에 따라 변경된다. 이 경우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도서의 영유권은 변경되지 않으며,<sup>22</sup> 국경 하천의 유로 자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국경선은 구 하상을 통과하는 것으로 보고, 관련 당사국들은 하천을 구 하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면, 관련 당사국들은 건조 구간에 국경선을 표시하거나(국경표지-국경표주나 철조망 설치) 국경선이 신 하상을 통과하도록 합의한다.<sup>23</sup>

알려진 바와 같이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에 따라 러·중 국경선으로 확정된 아르군 강 하상은 1911년 치치하얼 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222년에 걸쳐 서쪽으로 전위되었다. 그 결과 구 하상에 비해 러시아 측 하안에 더 가까워진 아르군 강의 주지류가 새로 생겨나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앞에 언급한 내용과 인용된 국제법 규범 및 문건 등을 종합해 볼 때, 아르군 강 구 하상과 신 아르군 강 사이에 형성된 18개 도서는 다른 아닌 네르친스크 조약에 따라 러시아령으로 확정된 아르군 강 좌안과 북안 사이의 러시아 영토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영유권 또한

22 『외교사전』(1985) 2권, 459쪽.

23 『외교사전』(1985) 2권, 459쪽.

변경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치치하얼 협약을 체결할 때 러·중 국경은 당시 아르군 강의 유로로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함으로써 러시아가 중국 측에 양보한 것이다.

현행 국제법 규범에 따르면 국경 하천의 하상 통과 지점 자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국경선은 구 하상을 통과하는 것으로 보고, 관련 당사국들은 하천을 구 하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때 기술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구 하상이 통과하던 선을 따라 건조 구간에 국경선을 표시한다. 이 경우 국경선은 아르군 강 우측 수로가 된 바닥이 드러난 구 하상을 통과해야 했다.

그러나 1911년 러·중 양국은 아르군 강 러시아 측 하안에 있던 땅으로 조성된 18개 도서를 러시아령으로 한다는 조건하에 양국 간 국경선은 신 하상을 따라 획정하기로 합의했다. 더구나 1911년 11월 25일자 합의의사록 《No.3》의 4항은 또한 이듬해 봄 이미 언급한 5개의 큰 도서 맞은편, 신·구 아르군 강 연안에 석제 국경표지를 설치하기로 하고, 국경표지에는 섬의 면적, 국경표지와 아르군 강 신·구 하상 간의 거리, 공동 측정한 표지 위치의 위도와 경도를 러시아어와 중국어로 표기해 넣고, 그 이전까지는 합의의사록 《No.2》에서 규정한 육로국경에 서처럼 돌무더기 형태의 임시표지를 설치하기로 규정했다. 나머지 규모가 작은 13개 도서가 러시아령임을 입증해 준 자료는 서명·날인을 통해 확인된 지도들이었다.<sup>24</sup>

이러한 상황은 러·중 양국은 비록 아르군 강의 현 유로가 양국 간

---

<sup>24</sup> 트카첸코(1998), 135쪽.

국경선으로 간주되지만, 러시아 영토에 형성된 신규 도서들에 대해 러시아의 영유권을 인정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치치하얼 협약을 통해서 이들 5개 도서지역에 구 국경선뿐 아니라 신 국경선도 설정하기로 했다는 점을 입증해 준다.

따라서 “1911년 치치하얼 협약은 법적으로 매우 불완전하다”는 키레예프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양국은 치치하얼 협약을 통해 아르군 강에 있는 도서들을 공인된 국제법 규범에 의거해 항행이 대부분 불가능한 하천(올로치에서 하구, 즉 아무르 강까지 428km 구간에서 비정기적인 항행이 이루어짐)에서처럼 아르군 강 주지류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도서를 분할한 한편 네르친스크 조약을 통해 러시아령으로 획정된 아르군 강 좌안 지역을 러시아령으로 확인했다. 그런데 이 아르군 강 좌안 지역에는 네르친스크 조약 체결 이후 200여 년 동안 18개 도서가 형성되었는데, 강 하상 자체의 변동으로 자연스럽게 러시아 영토에서 분리되었다.

그러지 않았다면, 러시아는 네르친스크 조약 서명 당시의 구 하상으로 하천을 되돌리기 위한 수로측량작업의 권한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르군 강 (수심이 낮은) 우측 수로가 된 구 하상으로 수로국경이 복원되지 못한 것처럼 이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 그 대신 양국은 아르군 강 하구, 즉 아무르 강과의 합류지점으로부터 국경점 《No.63》(아바가이투이)까지의 양 제국 간 수로국경은 이전과 같이 아르군 강 유로로 인정하되, 새로 형성된 18개 도서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영유권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1911년 러·중 양국은 양국 간 국경선이 아르군 강 신 하상을 통과하는 것으로 사실상 합의했다. 이는 어느 정도 타협을 통해 이루어진 결정

이었다. 러시아 측은 강을 구 하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를 포기하고, 중국 측은 타협 결과 마치 ‘남의 땅’이 돼 버린 듯한 영토를 ‘미래를 위해’ 러시아령으로 하는 데 동의한 것이다. 이러한 국경획정 방식은 회담 중 양측이 발휘한 어느 정도의 외교적 타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동시에 러시아 측 외교관들의 중국 측에 대한 양보로도 볼 수 있다.

실제로 국경선은 17세기 말 네르친스크 조약 체결 당시 통과했던 아르군 강 구 하상을 통과했어야 했다. 이 구간은 항행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따라서 국경선이 신 하상을 지나는 것은 하천의 경제적 활용 면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구 하상은 1911년경 바닥을 드러낸 상태에서 국경획정 대상이 되었다(이는 부분적으로 1911년 11월 25일자 합의의사록 《No.3》의 4항에 의해 규정되었다). 국경선이 아르군 강 구 하상을 통과했다면, 18개의 ‘남의’ 섬, 특히 그 중에서 치타 주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규모가 큰 5개 도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1911년에 있었던 러시아 측의 전혀 근거 없는 양보는 결과적으로 또 다른 양보를 야기하게 되었다. 키레예프가 언급한 바와 같이, “1920년대 초에 러시아 농민들로 하여금 중국 세리들에게 건초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극동공화국 외무부의 특별 명령서가 발표되기도 했다.”<sup>25</sup> 문제는 ‘완충국(극동공화국)’ 정부에 의해 러시아 국민이 (치치하얼 협약에 따르면) 자기 땅에 있는 건초발 사용 대가를 외국정부에 납부해야 했다는 것이다.

1911년 아르군 강을 지나 자바이칼 지역 몽골까지의 국경재획정 기간에 베이징 주재 러시아 공사 코로스토베츠(I. A. Korostovets)가 러시

---

25 『러·중 국경 : 문서, 논거, 사실』(1997), 27쪽.

아 외무부에 행한 다음과 같은 보고는 바로 이 문제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오늘 있었던 중국인들의 발언은 국경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과 무지, 평화주의를 이용하여 수만 데샤티나(1데샤티나는 1,092ha)의 비옥한 토지를 갈취하려는 바람으로 해석된다. 이미 언급된 국경선의 모호성과 장기간의 점유 사실로 중국인들에게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정부는 이웃나라에 대해 선린정책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우리의 영토주권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중국인들의 약탈행위를 부추긴 셈이다. 우리의 카자크인들이 목축과 건조재배를 위해 우리가 우리 땅으로 여기는 토지를 중국인들에게서 임차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며 이로써 중국인들의 권리가 강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심지어 카자크인들은 이 땅이 러시아로 넘어가면 임차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지지 않을까 두려워 중국의 영유권을 지지한다는 소문마저 듣고 있다.<sup>26</sup>

이처럼 치타 주에서는 1991년 소·중 동부국경협정 이행으로 육상과 아르군 강에서 300km<sup>2</sup>의 러시아 영토를 중국에 양도함으로써 상실하게 되었다.

---

<sup>26</sup> 마스니코프(1996), 329쪽.

### 3. 아무르 강 국경변경

세 번째 국경변경은 아무르 강 유역의 아무르 주와 유대인 자치주에서 이루어졌다.

아르군 강에서 아무르 강과 우수리 강 합류지점까지 아무르 강을 통과하는 러·중 수로국경은 최초로 1858년 아이훈 조약에 의해 획정된 후<sup>27</sup> 1860년 베이징 조약 제1조에 의해 확인되었다.<sup>28</sup>

양국 간 국경선 관련 정보가 가장 많이 왜곡된 곳이 바로 아무르 강, 우수리 강, 순가차 강을 통과하는 수로국경이다.

러·중 공동 국경표지위원회 러시아 측 위원장, 러시아 외무부 특임 대사, 러시아 특명전권대사 키레예프는 1995년 5월 12일 러·중 간 국경획정 과정에 관한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경 하천, 특히 아무르 강과 우수리 강의 양국 간 국경선은 전혀 획정되지 않았으며 현지 도서에 대한 영유권 또한 단 한 차례도 양자 간 법적 절차에 따라 확립되지 않았다(?).

1930년대 중반 소연방은 중국 측 하안에 있는 도서 대부분을 일방적으로 점령하였고 사실상 유지되고 있는 국경선이 중국 측 하안 가까이 굳어지게 되었다. 그 당시 육로 국경선 또한 이동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국경선이 실제로 형성되었으나 반복하건대 양자 간 절차

<sup>27</sup> 트카첸코(1998), 80~81쪽.

<sup>28</sup> 트카첸코(1998), 84쪽.

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 이 구간의 국경선은 러·중 간 체결한 기존 협정에 따라 합의된 국경선과는 많은 점에서 다르고 중국 측으로부터 단 한 차례도 인정을 받지 못했다.

1991년 5월 16일자 소·중 동부국경협정은 국경선이 이동한 지역의 국경선을 획정·설정하고 있다. (중략)

이 동부국경협정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단 한 차례도 국경획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하천에 대한 국경선을 획정하고 있다.<sup>29</sup>

이어서 키레예프는 하원 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1930년대 초 소연방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 항로 중심으로 부터 중국 측 하안까지의 도서 대부분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장악했다.<sup>30</sup>

책임 있는 국가 관리(러시아 특명전권대사)의 입을 통해 발표된 겨우 30분 정도의 보고에서 상호 모순된 발언이 튀어나왔다. 1930년대 중반에(!) 소연방이 중국 측 하안까지의 도서 대부분을 일방적으로 점령했다는 발언과 1930년대 초에(!) 소연방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우리가 이들 도서를 장악했다는 발언 중 도대체 어떤 얘기를 믿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소연방 중앙집행위원회가 과연 그러한 결정을 내린 적은 있는 것인지?

위에 언급한 자료집 『러·중 국경 : 문서, 논거, 사실』에서 키레예프

29 러시아연방 하원(1995), 『회의속기록』, 54쪽.

30 러시아연방 하원(1995), 『회의속기록』, 58쪽.

대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아무르 강과 우수리 강의 국경선 또한 전혀 확정된 적이 없으며(?), 도서들 또한 일찍이 법적으로 어느 나라에 의해서도 분할된 적이 없다(?).  
끝으로, 일본이 중국 동북부 지역을 점령한 상태에서 1931년부터 소련방이 아무르 강과 우수리 강 주 항로 중심으로부터 중국 측에 연해 있는 도서 대부분을 통제하게 되었으나 일방적인 통제설정 절차는 알려진 바대로 상호 문서에 의해 조정되는 양국 간 유기체인 국경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sup>31</sup>

러·중 간 국경설정 결과에 대한 논문에서 그는 또다시 다음과 같이 반복하고 있다.

아무르 강과 우수리 강 연안은 양국 간 '1국 1연안' 원칙에 의해 분할되었다. 항행 가능한 아무르 강과 우수리 강 수역에 대한 국경은 그 어떤 기존 협정이나 양자 간 절차에 의해 설정된 것이 아니며(하천 자체가 국경으로 인정돼 왔다), 해당 도서들에 대한 법적 영유권은 단 한 차례도 확립된 적이 없었다.<sup>32</sup>

러시아 외무장관 코지레프(A. V. Kozyrev)가 연해 변경주 주지사 나즈드라텐코(E. I. Nazdratenko)에게 보낸 1995년 6월 6일자 서신은 다

31 『러·중 국경 : 문서, 논거, 사실』(1997), 9쪽.

32 키레예프(1999), 42쪽.

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아무르 강과 우수리 강에 있는 도서들은 1860년 베이징 조약을 포함한 그 어떤 양자 간 협정에 의해서도 분할되지 않았으며(?), 영유권 또한 확립된 적이 없었다(?). 우수리 강의 다만스키 섬은 1930년대 소연방에 의해 일방적으로 ‘보호조치’ 되었다.<sup>33</sup>

국경수비대 중장 네슈모프(Yu.A. Neshumov)와 러시아군 참모본부 중령 골루프(N.A. Golub)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베이징 조약은 아무르 강과 우수리 강의 도서를 분할하지 않았다(?). 1930년대 초 소연방이 아무르 강과 우수리 강의 국경선을 일방적으로 획정했으며, 사실상 이들 하천의 모든 도서를 통제하에 두었다.<sup>34</sup>

소·중 공동 국경표지위원회 러시아 측 부위원장 아르하로프(Yu. Arkharov)는 『트루트(Trud)』지(紙)에 아무르 강 국경설정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고했다.

아무르 강 수역에 대한 국경은 그 어떤 기존 협정의 적용을 받거나 양자 간 절차에 의해 설정된 것이 아니며(?) 해당 도서들에 대한 법적 영유권 또한 단 한 차례도 확립된 적이 없었다(?). 이것은 공리(公理)이다. 하천

33 『러·중 국경 : 문서, 논거, 사실』(1997), 15쪽.

34 『러·중 국경 : 문서, 논거, 사실』(1997), 6쪽.

자체가 국경으로 인정돼 왔다. 양국 간 '1국 1연안' 원칙이 적용된 가운데, 도서들은 분할되지 않았다(?). …… 아무르 강 국경은 1991년 이전까지 양자 간 법적 절차에 따라 설정된 적이 전혀 없었고 이제야 처음으로 국경이 제대로 설정되는 것이다.<sup>35</sup>

러시아 외무부 관계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아무르 강과 우수리 강에 있는 도서들은 1860년 베이징 조약이나 그 어떤 양국 간 합의서에 의해서도 분할되지 않아 마치 무주지로 간주되어, 1930년대 초 소연방이 이들 하천의 주 항로와 중국 측 하안 사이에 있던 도서 대부분을 포함 한 이들 도서를 사실상 점령하게 되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키레예프 대사와 아르하로프 부대사의 주장에 따르면 아무르 강과 우수리 강을 지나는 국경은 결코 확정된 적이 없다.

그러나 러시아 외무부 키레예프 특임대사와 아르하로프 부대사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1860년 11월 2일(14일)자 베이징 조약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제부터 동부국경은 실카 강과 아르군 강 합류지점에서 아래로 아무르 강을 지나 아무르 강과 우수리 강의 합류지점까지 이어진다. ……

또한 톈진 조약 제9조를 이행하기 위해 국경선을 더욱 선명하게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그 방향을 러시아어 철자 А, Б, В, Г, Д, Е, Ж, З, И,

---

<sup>35</sup> 아르하로프(Yu. Arkharov)(1997), 「항로 중심에서 이탈하지 마시오(아무르 강 국경획정 문제에 부쳐)」, 『러시아의 아침』, No.92, 블라디보스토크, 1쪽.

I, K, Л, M, H, O, П, P, C, T, Y로 표기한 지도를 승인한다.

이 지도는 양국의 전권대리인들이 서명·날인한다.<sup>36</sup>

베이징 조약에는 아무르 강, 우수리 강 및 기타 러·중 간 동부 국경 하천에 있는 도서들에 대한 영유권이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다. 그러나 베이징 조약 제1조에 따라, 그리고 톈진 조약 제9조를 이행하기 위해 국경선을 붉은색으로 표시한 지도가 승인되었다. 이 지도에 따르면 국경선은 아무르 강 우안, 우수리 강, 순가차 강과 그라니트나야 강(홉투 강)의 좌안을 통과했다. 러시아어와 만주어로 1부씩 작성된 이 지도는 베이징 조약에 별첨되었다. 그 밖에 1861년 서명된 베이징 조약 추가조항에는 각각 러시아어와 중국어로 작성된 지도 2부와 우수리 강 하구에서 두만강까지의 국경설명서가 첨부되었다. 따라서 아무르 강, 우수리 강, 순가차 강 및 그라니트나야 강을 통과하는 붉은색 국경선을 기점으로 아무르 강 북쪽 방향과 나머지 세 하천의 동쪽 방향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도서는 러시아령인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 하천 도서들에 대한 영유권을 법적으로 확인해 주는 주요 문건은 베이징 조약의 일부인 관련 지도이다. 이 지도는 양국 간 국경선 현황에 대한 결정적인 문건이다.

1860년 베이징 조약에 첨부된 지도는 1858년 6월 1일(13일)자 톈진 조약 제9조를 이행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본 조항은 “양국 정부의 전권대리인들은 양국 간 국경 미확정 지역에 대해 지체없이 현지 실사를 시행하며 그들이 합의한 국경선에 관한 조건은 본 조약에 추가조항

<sup>36</sup> 트카첸코(1998), 84쪽.

으로 삼입한다. 국경획정 후 인접지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 및 지도를 제작하여 향후 양국 정부의 국경에 관한 명확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37</sup> 국경선에 관한 이러한 조건은 이미 언급한 1860년 베이징 조약 제1조에도 기록돼 있다.

실카 강과 아르군 강 합류지점에서 동해까지 1 : 1,050,000 축척으로 러시아어와 만주어로 작성, 1860년 베이징 조약에 첨부되어 러시아와 중국에 각 1부씩 보관돼 있는 러·중 간 동부국경 지도는 양국 간 국경 하천을 통과하는 국경현황에 대한 결정적인 문건이다. 이들 문건은 국경선이 아무르 강, 카자케비체보 수로, 우수리 강과 순가차 강 우안을 통과한다는 점을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다.

이 지도는 연구자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붉은색 국경선이 중국 측 하안을 통과하고 있음을 입증해 주는 문건도 존재한다.

정밀지도 및 국경설명서와 함께 베이징 조약에 추가된 1861년 6월 16일자 의정서의 부속서 ‘우수리 강에서 해안까지의 러시아제국과 대청제국 간 국경설명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베이징 조약 제1조는 문자 그대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우수리 강 하구에서 한카호까지의 국경선은 우수리 강과 순가차 강을 통과한다. 동 조약 제3조는 즉각 시행된다. 이 구간 국경을 이루는 하천들은 양국 간 자연적인 경계로, 지도상에 붉은색과 러시아어 철자 E, Ж, 3, И, I와 K로 표기하고, 이들 하천에는 지반이 강한 우수리 강 하구와 순가차 강 발원지 좌안의 국경표주 《E》와 《I》 외에 다른 국경표주는 설치

<sup>37</sup> 트카첸코(1998), 82쪽.

하지 않는다. …… 국경점 《K》의 위치는 벨렌허(투르 강) 하구 좌안이다. …… 국경표주 《O》는 홉투 강 좌안 하구에 설치한다.<sup>38</sup>

동 ‘국경설명서’에는 또한 그라니트나야 강은 우측에서 쉰이편허로 유입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연구자들이 열람할 수 있는 ‘국경설명서’에는 우수리 강, 순가차 강 및 그라니트나야 강, 그리고 이들 하천의 모든 도서와 한카호로 유입되는 벨렌허(투르 강) 하구에 대한 러시아의 영유권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즉 어떤 경우든 국경선은 전적으로 중국 측 하안을 통과하고 있다.

아무르 강과 관련, 대중 국경 문제에 관한 많은 출판물에는 국경선이 중국 측 우안을 통과하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sup>39</sup> 유대인 자치주 남쪽, 특히 스미도비치(Smidovich) 구의 지도를 보면 양국 간 국경은 상당 구간에서 아무르 강 주 향로가 아닌 우측(남쪽)의 수심이 낮은 수로를 통과하고 있다. 이 지역의 대규모 늪지대 도서들은 당연히 러시아령으로 보이지만,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 따라 이들 도서는 종합적인 국경표지작업이 끝난 후, 즉 1999년 중국에 양도될 예정이다.

베이징 조약 제1조 ‘국경선을 더욱 선명하게 붉은색으로 표시한다’는 내용은 붉은 선이 곧 국경선임을 지칭한다. 베이징 조약 합의문 자체에는 “국경은 …… 아래로 아무르 강을 통과한다”고 비록 개괄적으로 기술돼 있지만, 이 붉은 선은 사실상 국경획정선이다.

따라서 키레예프와 아르하로프 등 러시아 외무부 관계자들의 주장

<sup>38</sup> 트카첸코(1998), 89~91쪽.

<sup>39</sup> 프로호로프(1975) ; 마스니코프(1996).

은 베이징 조약 문구와 일치하지 않는다. 중국과 국경협상을 이끌 정도의 고위급 외교관들이 회담의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역사적·법적 기본 문건을 몰랐을 개연성은 매우 희박하다.

베이징 조약에 서명한 제정러시아의 전권대리인 이그나티예프 소장이 국경을 의미하는 붉은 선을 아무르 강 우안을 따라 그었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 지도를 열람한 필자로서는 아무르 강을 따라 그어진 붉은색 국경 획정선이 대체로 중국 측 하안 쪽으로 이동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도에는 또한 러시아어 철자 《A》, 《B》, 《B》, 《Г》, 《Д》로 표기된 5개 국경점이 설치되어 아무르 강 발원지(실카 강과 아르군 강 합류지점)에서 아무르 강 하류를 지나 카자케비체보 수로까지의 국경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국경점 《A》는 지도상 아무르 강 발원지에, 국경점 《Д》는 아무르 강 지류 카자케비체보 수로의 발원지에 설치되었다. 나머지 국경점 《B》, 《B》, 《Г》는 《A》와 《Д》 사이에 설치된 가운데, 국경점 5개 중 2개는 아무르 강 상류 지역 러시아 측 하안에 설치돼 있다.

지리 참고서를 통해 얻은 정보에 따르면 아무르 강은 상류에서 매우 좁은 계곡을 이루며 흐르다가 제야 강 하구에서부터 폭이 넓어진 후 다시 말리힌간(Maly Khingan) 산맥을 지나며 폭이 좁아진다. 그러나 그 아래 지금의 유대인 자치주에서는 강 폭이 늘어나 여러 개 수로로 나뉘어 많은 섬을 형성하게 된다.

1858년 아이훈 조약에 따라 러시아령으로 획정된 아무르 강 좌안(북쪽)은 특히 강 중간 지점에서 매우 취약했다. 이곳은 예전부터 봄철, 특히 여름철에 잦은 큰 홍수로 대규모 범람이 연이어 발생하는 곳이다.

아무르 강 러시아 측, 특히 유대인 자치주 지역 하안은 지반이 견고한 중국 측 하안과 달리 늪지대로 형성돼 있다.

짐작하건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베이징 조약에 첨부된 1860년 국경획정지도에 국경통과 지점이 설정되었을 것이다. 1860~1861년 양측이 아무르 강을 분할할 때 하천의 수계 특성과 하안의 상태로 인해 주 항로의 중앙선이나 북쪽 늪지대의 연약한 러시아 측 하안을 따라 국경선을 획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도를 작성할 때는 아무르 강 상류에서는 실제로 주 항로를 기준으로 국경선을 획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강 상류 지역은 폭이 좁고, 수로가 없으며 양측 하안은 견고하다. 따라서 지도상 아무르 강에 설치된 국경점 5개 중 《A》, 《B》 2개가 러시아 측 하안에 설치된 듯하다. 그러나 국경점 5개 중 《B》, 《I》, 《II》 3개는 중국 측 하안에 설치돼 있다. 그리고 이들 국경점 5개는 지도상에 붉은 선으로 연결돼 있다. 그러나 국경선 전 구간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은 아니나 아무르 강 발원지에서 우수리 강 하구까지의 러·중 간 국경 하천인 아무르 강 대부분 수역에서는 이 붉은 국경선이 주로 중국 측 하안을 통과하고 있다. 국경수비대 중장 네슈모프와 러시아군 참모본부 중령 골루프는 이 붉은 국경획정선의 특성과 관련하여 (이미 언급한 자료집에서) “붉은 선이 중국 측 하안 쪽으로 이동했다”고 밝히고 있다.

청나라 전권대표 궁친왕[恭親王] 이신[奕訢]은 베이징 조약 서명 후 전해 받은 국경선이 표시된 지도에 서명을 거부했다. 문제는 중국 측이 1858년 텐진 조약 제9조를 이행하기 위해 1859년에 시행했던 러·중 간 국경 미획정 구간에 대한 현지 지형탐사에 참여하지 않아 이 문제에 대한 현지 실사를 위해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당시 이 지도는 양측 간

합의에 따라 베이징 조약 서명 당일 서명되지 않은 채 상호 교환되었다. 이 지도는 이르쿠츠크에서 특별히 제작된 러시아 각 지방 행정당국의 문장이 새겨진 은제 원통에 넣어 청나라 측 전권대표에게 전달되어 청나라황제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청나라 전권대표는 지도를 자국 획정위원들에게 보내 현지 실사를 마친 후 서명·날인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제정러시아 전권대표 이그나티예프 소장에게 보냈다.

아무르 강, 우수리 강 및 순가차 강, 한카호, 나아가 육로로 동해에 이르는 국경선을 표시한 지도(붉은색으로 표시된 1860년 국경획정지도)는 베이징 조약 서명 당시 승인되었다. 이는 ‘작성된 지도는 승인되며’, 조약의 일부라고 명시한 베이징 조약 제1조(두 번째 단락)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지도는 1861년 6월 4일(16일) 한카호 서안 벨렌허 하구에 있는 투리로크 초소에서 양국 전권대리인들에 의해 서명되었다.

이렇게 해서 양국 간 국경, 즉 국경선의 위치와 방향이 획정되었다.

엄밀히 말하면, 아무르 강 국경설명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며, 베이징 조약과 별첨 국경지도 서명 후에도 국경 자체에 국경표지가 설치되지 않았다. 즉 국경선은 획정되었지만, 그 후 아무르 강에 대한 국경표지 작업은 실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베이징 조약에 따른 것이었다. 베이징 조약 제3조는 ‘추후 발생 가능한 모든 국경 문제는 동 조약 제1, 2조에 준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는 서부, 중앙아시아 지역까지의 전반적인 국경선 방향을 다루었다). 동부지역의 국경표지 설치는 ‘한카호에서 두만강’까지만 규정되었다.<sup>40</sup> 따라서 베이징 조약과 후속 국경표지작업

---

<sup>40</sup> 트카첸코(1998), 85쪽.

을 다룬 동 조약 제3조에 따른 아무르 강 국경표지 설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까닭으로 아무르 강의 영토·국경 분할에 관한 모든 문제는 오직 1860년 작성되어 베이징 조약의 일부로 첨부된 지도를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것이다.

국경수비대 중장 네슈모프와 러시아군 참모본부 중령 골루프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조약에는 축척 1 : 1,050,000 지도가 첨부돼 있다. 이 소축척 지도에는 아무르 강의 일부 도서만 표시돼 있고, 우수리 강은 단 하나의 선으로 표시돼 있을 뿐 도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지도의 붉은 국경획정선은 획정된 경계만을 반영할 뿐 자동적으로 지형에 적용할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 이토록 상세하게 논하는 이유는 붉은 선이 중국 측 하안 쪽으로 이동하여 이 문제가 추후 발생할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국제법상 기본은 조약문 자체이며, 조약문과 별첨 지도가 상이할 경우 조약문이 우선한다는 사실이다.<sup>41</sup>

문제는 1860년 베이징 조약에 첨부된 지도와 조약문이 상치되거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지도는 조약문 제1조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바 제1조 첫 단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양국 간 동부국경은 실카 강과 아르군 강 합류지점에서 아래로 아무르 강을 통과하며, 아무르 강 좌안(북쪽)의 영토는 러시아령으로 하고, 우

41 『러·중 국경 : 문서, 논거, 사실』(1997), 6쪽.

안(남쪽), 우수리 강 하구까지의 영토는 중국령으로 한다.

제1조 두 번째 단락은 ‘국경선을 더욱 선명하게 붉은색으로 표시하여’ 조약 내용을 구체화한 지도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sup>42</sup> 따라서 베이징 조약 제1조의 해석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국경선이 국경지도상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상 국경은 바로 이 선을 따라 획정된 것이지 막연하게 하천을 따라 획정된 것이 아니다. 더구나 이 지도상에는 아무르 강의 주요 도서들 또한 표시돼 있다.

물론 베이징 조약은 전체적으로 매우 짧고 간결하며 이것은 현대 국제협약과 다른 점이지만 그렇다고 다른 해석이 있을 수는 없다.

1860년 베이징 조약에 따라 러·중 양국 간 분할된 국경 하천 아무르 강, 우수리 강 및 순가차 강 도서들의 영유권을 법적으로 입증해 주는 주요 문건은 앞에서 논한 베이징 조약의 별첨 지도이다.

그리고 비록 베이징 조약에는 아무르 강, 우수리 강 및 기타 하천을 통과하는 러·중 양국 간 동부국경에 있는 도서들에 대한 영유권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양국 간 수로국경은 1860년 작성된 지도(국경선이 붉은색으로 표시됨)에 서명함으로써 1861년 획정되었다. 지도상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표시된 붉은색 국경선은 국경 통과 지점에 대한 명확한 증거이다.

아무르 강 도서 분할이 조약문에는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지도상에 표시되지 않은 소규모 도서들을 제외한 나머지 도서들은 지도상에 표시된 러·중 양국 간 붉은색 국경선에 의해 분명하게 구분돼 있다. 사실상 아

---

<sup>42</sup> 트카첸코(1998), 84쪽.

무르 강에 있는 모든 도서가 1860~1861년 붉은 국경획정선에 의해 러시아령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현 유대인 자치주 구간의 아무르 강에 있는 2개의 큰 도서는 이 붉은 국경선에 의해 대체로 양분되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러·중 양국은 1861년 서명 당시 국경선을 붉은색으로 표시한 이 지도를 베이징 조약을 이행하고 아무르 강 국경선 통과 지점을 명시해 주는 영토분할 문건으로 본 것이지 그저 획정된 국경선만을 반영하는 지리적인 의사표시로 본 것(러시아 외무부의 견해)은 아니다.

베이징 조약에 첨부된 러·중 양국 간 동부국경 전도에서 국경획정선이 육지로 자동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없다는 국경수비대 중장 네 슈모프와 러시아군 참모본부 중령 골루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 붉은 선은 국경 하천 아무르 강에 있는 대체로 양분된 2개의 대규모 도서와 중국 측 하안 가까운 곳에 있는 일부 소규모 도서 및 강 상류를 제외한 하천의 사실상 거의 전 구간에서 중국 측 하안 가장자리를 통과하기 때문에 여차하면 육지로 이동할 수 있다.

필자가 알기로 후에 이 지도가 수정·보완되어 서명된 경우는 결코 없었다. 따라서 베이징 조약에 첨부된 이 지도는 국경선이 아무르 강과 그 우측(남쪽) 지류인 카자케비체보 수로를 통과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주는 유일한 문건이다.

이 때문에 베이징 조약에 첨부된 이 지도가 여론의 눈을 피해 철저히 은닉되고 극히 일부만이 지도의 원형을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러시아 외무부는 진실을 과도하게 은폐하려 하는데, 대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1931년 9월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여 동북부(만주) 지역을 점령했다. 일본은 1932년 3월 이곳에 일본 관리와 군이 통치하는 만주국을 세워

중국 동북부지역에는 사실상 일본의 괴뢰정권이 들어섰다. 일본은 만주를 점령함으로써 소연방 공격에 유리한 거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토록 긴장된 상황에서 소련 정부는 일본 군벌과 그들이 세운 만주국 괴뢰정부의 동중국철도에 대한 도발과 폭력에 대응을 자제하고, 일관되게 조심스러운 평화정책을 취하며 극도의 인내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들의 도발과 폭력은 중국 동북부 점령과 함께 시작되어 1933년 봄에 이르러 강화되었다. 더구나 소련 정부는 1935년 3월 동중국철도를 만주국에 내줌으로써 일시적으로나마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대소(對蘇) 도발 명분을 하나라도 더 제거하고자 했다. 그런데 과연 이 시기(1930년대 초반)에 소연방이 어떻게든 만주지역에서 소련과의 무력충돌 계기를 찾고 있던 일본이 사실상 지배하던 국경 하천의 도서들을 장악하려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바로 붉은 국경획정선에 따라 1861년 러시아령으로 확정된 아무르 강의 사실상 모든 도서와 우수리 강의 모든 도서가 1930년대 초(1931~1932년) 일본군의 만주 점령 후 소연방 국경수비대에 의해 보호되었다. 네슈모프, 골루프, 키레예프, 코지레프 및 아르하로프 등의 주장에 의하면, 소연방 지도부의 이러한 조치는 일방적 절차에 의한 국경획정이 아니었다. 소연방 지도부는 이미 언급된 1860년 베이징 조약의 일부로 첨부된 법적 문건인 러·중 양국 간 동부국경지도에 의거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 지도에는 러·중 양국 전권대표들의 서명과 함께 양 제국의 국새(國璽)가 찍혀 있다. 짐작하건대 키레예프 대사가 자주 인용한 ‘아무르 강 주 항로 중심으로부터 중국 측 하안에 있는 도서 대부분을 일방적으로 장악하라는 소연방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 결정은 아마도 지도상에 나타난 국경획정선의 특성을 근거로 했을

것이다. 그러나 소연방 중앙집행위원회의 그러한 결정이 과연 있었을까? 필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소연방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문을 찾아 내지 못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주로 아무르 강 중국 측 하안을 통과하는 국경선이 중국 경제에 손해를 끼친다는 러시아 외무부 관계자들의 주장은 문서로 확인되지 않는다. 1858년 5월 16일(28일)자 아이훈 조약 제2조에 따르면 아무르 강, 우수리 강 및 순가차 강은 양국의 자유 무역을 위해 항행이 상호 개방돼 있었다. 즉 추후 아무르 강 대부분과 우수리 강 전 구간에 대한 러시아의 영유권이 이들 하천에 대한 중국의 경제권을 제한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내용은 나중에 1881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 제18조에 의해 확인되었다. 더구나 아무르 강에 있는 모든 도서에는 대체로 자유로운 국경선 체제가 존재해 왔으며 19세기 말까지 일정한 경제활동(고기잡이와 건초재배)과 심지어 밀수까지 하면서 그곳에 거주하던 중국인들이 이를 활용했다. 1894년 러시아 재무장관 비테(S. Yu. Vitte)가 보드카 국가 전매제도를 도입하자 이들 도서에 거주하던 중국인들은 중국산 술의 밀매와 함께 각 도서에 술 창고를 짓기 시작했다. 그래서 한 섬은 ‘주(酒)섬’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들 중국인들은 유명한 1899~1901년 의화단운동(義和團運動) 이후 합법적 절차에 따라 이곳에서 추방되었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선포 후 국경 하천에서의 정상적인 항행을 보장하기 위한 아무르 강, 우수리 강, 아르군 강, 순가차 강 등 국경 하천과 한카호에서의 항행 절차 및 조건에 관한 협정이 1951년 1월 2일 체결되었다.<sup>43</sup> 이 협정 제1조에 의거, 양국의 모든 선박은 국

43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대외정책문서』(1957), No.14, 333~336쪽.

경선 통과 지점과 관계없이 국경 하천의 주 항로를 따라 자유로운 항행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한카호 항행은 국경선 내에서만 허용되었다.

또한 1957년 12월 21일자 국경 하천과 인접 하천 및 호수에서의 무역항행 조건에 관한 협정 제1조는 “양측은 …… 상호주의와 평등을 기반으로 아무르 강(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영토 내에 위치한 아무르 강 하구까지의 하류를 포함), 쑹화 강, 우수리 강, 아르군 강, 초르니이르티시 강, 일리 강, 순가차 강과 한카호 및 관련 항만의 모든 항로에서 체약 당사국의 무역항행이 24시간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sup>44</sup>

확신하건대 아무르 강에서 주로 중국 측 하안 가장자리를 통과하던 국경선은 아무르 강에서 중국의 무역항행을 방해하지 않았지만 소연방은 1957년 자국의 내해, 즉 오흐츠크 해와 연계되는 아무르 강 하구와 카자흐스탄에 있는 초르니이르티시 강 및 일리 강 하구까지 중국의 무역항행을 허용할 준비가 돼 있었다. 소련 지도부가 당시 중국 측 요구에 대해 우호적으로 대응한 것이 이를 입증해 준다.

1991년 소·중 동부국경협정이 서명됨으로써 중국 측은 국경선 재검토와 함께 아무르 강 하상 변동에 따른 일련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1993년 5월 12일자 러시아 대통령 하바롭스크 변경주 대리인 데샤토프(V. M. Desyatov)의 서한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돼 있다.

최근 중국 측은 국경 하천 아무르 강 하상을 인위적으로 교란시켜, 아무르 강 항로를 러시아 측으로 밀어내고 있다. 그렇게 되면, 1000km<sup>2</sup>의

44 『소·중 관계(1917~1957년)』, 333~336쪽.

수역과 636km<sup>2</sup>의 도서지역이 중국령이 될 것이다.

예상 결과에 대해 유대인 자치주 의회 의장 바벨로프(S. V. Vavilov)와의 인터뷰 형식을 취한 『프라우다』지 기사는 다음과 같이 입증하고 있다.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 명시된 기준들은 항행 가능한 하천에 대한 국경획정시 적용해야 하는 기준들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이들 하천에는 수시로 변화하는 수많은 수로가 있기 때문이다.

동부국경협정에는 국경은 아무르 강 항로를 통과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항로를 결정하기 위해 폭, 곡선반경과 수심 등 세 가지 기준이 채택되었다. 기준이 요구조건에 가장 잘 부합하는 곳에 주(主) 하상(河床)이 통과하고, 그곳으로 국경선이 통과한다.

중국 측은 10년 동안 일방적이고 인위적으로 아무르 강 하상의 흐름을 러시아 측, 즉 강 좌안 쪽으로 바꿔 놓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전에 아무르 강은 우측으로 흘렀으나 펌프선을 동원하여 우측 수로를 막아 버리자 강물이 러시아 측으로 흐르게 되었다. 그 결과 강물은 자연스럽게 강기슭을 깎아내 우리 측 하안이 더 깊어지게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은 인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부 부처 누구도 왜 중국 측이 일방적으로 하상의 흐름을 우리 쪽으로 바꿔 놓고 있는지 알아보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들은 50m 너비의 작은 수로 하나만을 남겨둔 채 우리의 모든 수로를 다 앗아가고 있다. 아무르 강은 더 이상 우리가 항행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외에 이들 수로를 통해 철갑상어가 산란하기 위해 이동하고 우리는 여기서 연어알과 철갑상어알을 얻는다. 벌써 중국인들이 대규모 불법 어로를 일삼고 있다. 이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물고기가

폐죽음을 당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판단으로는 중국은 이미 국경 하천 아무르 강에서 매년 1500t의 캄차카 산 연어를 남획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15년 동안 아무르 강 중류의 캄차카 산 연어는 오직 유대인 자치주의 인공양식에 의해서만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만일 이들 수로가 중국의 관리하에 놓이게 된다면, 아무르 강에서 더 이상 캄차카 산 연어는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중국에는 더 이상 물고기가 없다. 그들은 이미 모든 물고기를 다 잡아 버렸다. 그들은 연어를 재생산하지 않는다. 연어를 재생산하는 것은 오직 우리뿐이다. 단지 유대인 자치주뿐 아니라 러시아 전체가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sup>45</sup>

1997년 11월 옐친(B. N. Yeltsin)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 후 러시아 연방회의에서 러·중 간 국경설정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논의 과정에서 바빌로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태고 이래 러시아 땅이었던 유대인 자치주의 5개 도서가 중국 측에 넘어가게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국경설정 작업에는 중국 측이 수년 동안 아무르 강 주 항로를 러시아 측으로 인위적으로 옮기는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했다.

만일 이 협정이 발효되면 러시아 측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어업 손실이 크게 우려된다.

더구나 우리는 ‘러·중 간 국경설정 과정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

---

<sup>45</sup> “아무르 강은 러시아의 항행로로 남게 될 것인가?”, 『블라디보스토크』(1997. 4. 2).

러나 이 결의문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 문제와 관련한 대통령, 외무장관과 정부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요청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처럼 이 결의문 또한 시행되지 않았다.<sup>46</sup>

바빌로프의 자료에 따르면 아무르 강 유대인 자치주 구간의 국경설정 과정에서 강 하상의 인위적 변경 외에 수심을 측정할 때에도 심각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러·중 국경선이 통과하게 될 항로가 부정확하게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유대인 자치주에는 이른바 ‘분쟁지역’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문제는 8개 도서 중 5개가 국경설정 후 중국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바빌로프의 주장에 따르면 측량점 간의 거리는 20m가 아닌 700여m였다. 현지 의회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아무르 수로(Amurvodoput)’사(社) 전문가들이 재측량을 한 결과 전혀 다른 항로가 결정되었고, 이 새로운 항로를 기준으로 볼 때 모든 도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러시아령으로 판단되었다.<sup>47</sup>

1991년 동부국경협정 5조가 이행되면, 러시아령이었던 유대인 자치주 내 8개 대규모 도서 중 포포프(Popov), 사벨리에프(Savelyev), 예브라시하(Evrasikha), 루굽스코이(Lugovskoy), 니즈네펀트롭스키(Nizhnepetrovsky) 등 5개 도서를 중국에 내줘야 한다. 이와 관련, 1995년 유대인 자치주 거주 카자크인들이 주 의회 의장과 주지사에게 러·중 간 국경설정 방법에 대해 재검토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sup>46</sup> “국경에 드리워진 암운 ……”, 『오늘의 러시아연방』(1998), No.1. 11~12쪽.

<sup>47</sup> 『블라디보스토크』(1996. 12. 24).

우리는 한때 카자크인들이 점유하여 지금까지 선조들이 문혀 있는 울신(Ulshin), 포포프, 모살레프(Mosalev), 수호이(Sukhoy), 볼쇼이바르카스니(Bolshoy Barkasny), 빈니(Vinny), 예브라시하, 루콥스코이 도서 등 태고 이래 러시아 영토가 중국 측에 넘어갈 수 있다는 데 우려한다.<sup>48</sup>

그러나 국제법은 국경 하천의 주 항로를 기준으로 한 국경획정의 합목적성만 규정할 뿐, 결코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관련 당사국들은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합의할 수 있다. 러·중 양국의 비준 후 체결 쌍방에 대해 법적 효력을 갖게 된 1860년 베이징 조약은 다른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수십 년 동안에 걸쳐 개정된 국제법은 소급력이 없다. 즉 개정된 국제법이 19세기 국제협약에 강제 적용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이다.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 따라 도서가 분할되면, 러시아는 1996년 여름의 평가자료에 따라 아무르 강 유대인 자치주 구간의 총면적 625km<sup>2</sup>의 도서들만을 중국에 양보하게 될 것이다.<sup>49</sup> 이는 아무르 강의 다른 러시아 영토-아무르 주와 하바롭스크 변강주에 있는 도서는 포함하지 않는다.

#### 4. 하바롭스크 지역 국경변경 가능성

네 번째 국경변경은 아무르 강 우측(남쪽) 지류인 하바롭스크 변강주

<sup>48</sup> 『블라디보스토크』(1995. 3. 23).

<sup>49</sup> 『러·중 국경 : 문서, 논거, 사실』(1997), 26쪽.

의 카자케비체보 수로에서 가능하다.

1991년 소·중 동부국경협정 제3조에 따르면 양국의 체약 쌍방은 동협정 제1조를 바탕으로 양국 간 동부 국경의 국경점 《No.7》에서 국경점 《No.8》까지, 그리고 국경점 《No.10》에서 국경점 《No.11》까지의 국경선 통과 지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sup>50</sup> 국경점 《No.10》은 아무르 강 주 항로 중심(카자케비체보 수로 발원지 주위)에 있고, 국경점 《No.11》은 우수리 강 주 항로의 중심(우수리 강 하구)에 있다.

현재까지 동 30km(아무르 강 지류 카자케비체보 수로의 발원지에서 우수리 강 하구까지) 구간은 1860년 베이징 조약(정확하게는 베이징 조약 별첨 붉은 선이 표시된 국경지도), 1861년 6월 4일(16일)자 한카 의정서(베이징 조약 추가조항) 및 그 부속서-‘1860년 11월 2일자 베이징 추가조약 제 1, 3조를 바탕으로 작성된 1861년 6월 4일(16일)자 우수리 강에서 해안까지의 러시아제국과 대청제국 간 국경설명서’ 및 1886년 7월 2일(14일)자 ‘하바롭스크 의정서’에 의해 관리되었다.

그러나 1991년 동부국경협정은 우수리 강이 아무르 강에 유입되는 하바롭스크 지역의 국경선 문제는 미결로 남겨 두었다. 즉 동부국경협정에서는 이 문제를 논외로 한 것이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 문제는 특별한 검토가 필요하다.

1991년 동부국경협정은 소·중 양국 국경선이 국경 하천의 주 항로를 통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하바롭스크 지역에 있는 총면적 350km<sup>2</sup>의 볼쇼이우수리스크 섬, 타라바로프 섬 등 대규모 도서 2개와 인근 소규모 도서들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발생했다.

50 『러·중 국경 : 문서, 논거, 사실』(1997), 26쪽.

문제는 협상 과정에서 중국 측이 우수리 강이 하바롭스크 시 인근에서 아무르 강에 유입된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아이훈 조약에 의해 “우수리 강 하류까지의 아무르 강 우안은 대청제국(중국)령”으로 결정되고,<sup>51</sup> 베이징 추가조약에 의해 “양국 간 동부국경은 …… 아래로 아무르 강을 지나 아무르 강과 우수리 강 합류지점까지 이어지며”, 이때 “아무르 강 좌안(북쪽)의 영토는 러시아령으로, 우안(남쪽), 우수리 강 하구까지의 영토는 중국령”으로 결정되었으며, “(우수리 강과 순가차 강) 동쪽(우안)의 영토는 러시아령으로, 서쪽(좌안)의 영토는 중국령으로 결정되었다.”<sup>52</sup> 따라서 중국 측 주장대로라면, 중국에서 푸위안 델타라고 불리는 삼각형[서쪽의 카르마(Karma) 곳 인근 현 중국의 푸위안 시에서 동쪽의 하바롭스크 시까지의 아무르 강 주 하상과 삼각형의 남서쪽과 남동쪽 변을 이루는 카자케비체보 수로] 내의 영토는 중국령이 되고, 양국 간 국경선은 수십km 러시아 영토 깊숙이 이동하게 돼 있다.

1991년 동부국경협정 제3조에 하바롭스크 지역의 일부 ‘영토문제’를 공식화한 것은 단기적 전망에서 볼 때 러·중 양국 관계에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은 1964년 2월부터 10월까지 베이징에서 있었던 소·중국경회담 중 소련 외교관들에 의해 검토된 적이 있었다. 당시 소련은 아무르 강과 우수리 강 수역의 붉은 국경획정선이 항해도에 선명하게 표시된 주 항로를 지나는 선박 통행로와 일치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하면서 중국 측에 일부 영토를 양보할 의향이 있었다. 그러나 하바롭스크 지역

51 트카첸코(1998), 152~153쪽.

52 트카첸코(1998), 84쪽.

의 총면적 350km<sup>2</sup>에 달하는 2개의 큰 섬과 인근 소규모 도서들에 대한 중국 측의 지나친 요구로 국경재설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중국 측 대표단은 아무르 수로의 국경선 문제, 나아가 하바롭스크 지역 도서들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1964년 회담에서 다루지 말고 미제로 남겨 향후 회담에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 문제는 양측 간에 이견이 없거나 일정 부분의 영토를 양보함으로써 중국 측과 합의할 수 있는 다른 구간의 국경재설정과 연계하여 일괄타결해야만 했다. 그러지 않으면 후속 회담에서 소련 측은 350km<sup>2</sup>의 영토에 대한 중국 측의 영유권 주장에 전혀 대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부나마 상호 균형적 기반이 아닌 전면적 혹은 부분적(‘타협적’) 양보를 통한 소련 측의 희생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소련 측 협상 수석대표 소연방 국경수비대 사령관 지랴노프(P. I. Zyryanov) 대장은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우선 카자케비체보 수로 문제를 해결한 후 사전에 조건부로 합의한 다른 지역 국경 문제에 관한 제2, 3, 4차 실무그룹 협정에 서명해야 한다.<sup>53</sup>

이것이 소련 대표단의 원칙적인 입장이었다. 소련 대표단은 중국 측이 향후 소련 측에 제기할 수 있는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없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랴노프가 언급한 바처럼 “중국 대표단은 아무르 강 국경선 수정작

<sup>53</sup> 마스니코프(1996), 386쪽.

업 기간 내내 양국이 합의한 지도에 표기된 붉은 선은 합의된 국경선이 아니며 개략적이고 불분명하고 바르지 못한 선이라고 완강하게 주장했다.”<sup>54</sup>

중국 측의 이러한 입장을 현 러시아 외교고문-국경수비대 중장 네 슈모프와 러시아군 참모본부 중령 골루프의 다음과 같은 주장과 비교해 보자.

조약에는 축척 1 : 1,050,000 지도가 첨부돼 있다. 이 지도의 붉은 국경 획정선은 획정된 경계만을 반영할 뿐 자동적으로 지형에 적용할 수는 없다.

이들은 이어 붉은 선은 ‘추후 발생한 오해의 원인이 되었다’며 따라서 조약문이 지도에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sup>55</sup>

그러나 문제는 베이징 조약의 조약문에는 국경선이 카자케비체보 수로를 통과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시돼 있지 않다는 데 있다. 그러나 베이징 조약 별첨 지도에는 국경선이 카자케비체보 수로를 통과하는 것으로 표시돼 있다. 그런데 1864년 중국 측은 1861년 자국 대표단이 서명한 붉은 선이 표시된 이 지도를 문서로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더구나 소연방 외무부는 1991년 이 문제에서 중국 측의 입장을 지지했다. 그들은 영토문제와 같은 중대한 외교문제에서 문서에 근거하지 않고 중국 측의 입장을 수용함으로써 국익에 해를 끼쳤다. 그 후 러시아

---

<sup>54</sup> 마스니코프(1996).

<sup>55</sup> 『러·중 국경 : 문서, 논거, 사실』(1997), 6쪽.

외무부는 고르바초프의 소연방 외교노선을 견지했다.

러시아 외무부 아시아 제1국장 아파나시예프(E. V. Afanasyev)와 외무부 특임대사 키레예프는 1991년 동부국경협정을 ‘러·중 간 역사적인 문건’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두 곳의 ‘분쟁지역’(하바롭스크 지역과 아르군 강 상류)에 대한 문제를 당시 협정 차원에서 해결하지 않고, 이 두 구간과 나머지 구간에 대한 문제를 분리하여 해결하기로 한 것은 ‘러·중 국경 대부분에 대한 합의방안을 제시한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sup>56</sup>

1964년의 입장을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영토회담 진행과정에서 심각한 양보를 초래하게 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자신들의 승리로 착각한 러시아 외무부의 심각한 오산인 것이다. 중국 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언제든지 하바롭스크 도서 지역 영토문제를 ‘보류’ 상태에서 끄집어내 1991년 동부국경협정을 근거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결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동부국경협정 제3조는 ‘소·중 국경회담 중 이룩한 합의를 바탕으로’ 양국 간 국경을 획정·설정하기로 한 ‘동 협정 제1조에 따라’ 이 문제에 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동부국경협정 제5조에서 계약 쌍방은 “항행 가능한 하천의 소·중 간 국경선은 하천의 주 항로를 통과한다”는 데 합의하고, “하천의 주 지류 결정을 위한 주요 기준은 하천의 평균유량이다”라고 규정했다.<sup>57</sup>

물론 아무르 강 좌측(북쪽) 지류가 주 지류이다. 수문자료에 따르면

<sup>56</sup> 『러·중 국경 : 문서, 논거, 사실』(1997), 10~11쪽.

<sup>57</sup> 트카첸코(1998), 15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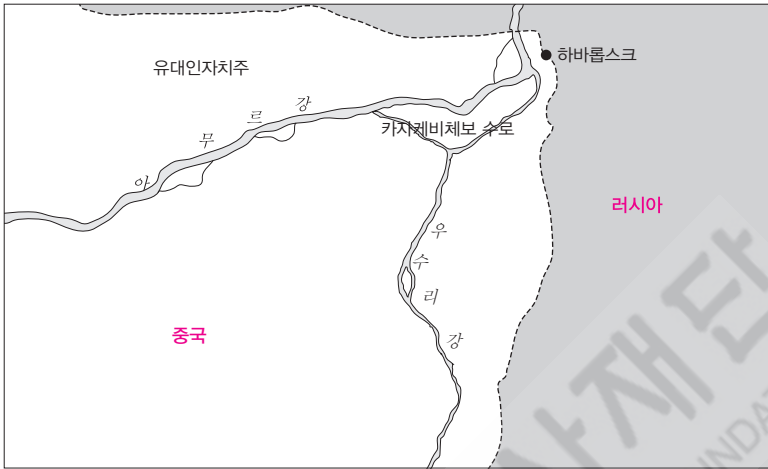


그림 1 아무르 강, 우수리 강 및 카자케비체보 수로의 러·중 국경 도면

60%의 유량은 주 하상으로, 나머지 40%는 아무르스카야(Amurskaya) 혹은 카자케비체보 수로라 불리는 아무르 강 우측(남쪽) 지류로 흐른다. 그림 1은 아무르 강, 우수리 강 및 카자케비체보(아무르스카야) 수로의 양국 간 국경을 보여 준다.

러시아 측이 적당히 타협할 경우 중국 외교관들은 향후 회담에서 우수리 강이 하바롭스크 인근에서 아무르 강에 유입된다는 점을 큰 어려움 없이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중국 측은 아마도 이를 목적으로 카자케비체보 수로를 천수화(淺水化)하기 위해 수로변경 등 일련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바롭스크 스튜디오가 제작하여, 1998년 4월 30일 연해 변강주 TV 제2채널을 통해 방영한 시사 프로그램 「동부국경, 국경설정」에서 이샤예프(V. Ishaev) 하바롭스크 변강주 주지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중국 측은 아무르 강에서 비롯되는 카자케비체보 수로 발원지 인근에 모래를 실은 바

지선들을 침몰시켰다. 그 결과 카자케비체보 수로는 그 발원지에서 우수리 강 하구까지 모래가 쌓이고 천수화되고 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카자케비체보 수로에 일어난 변화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이와 관련, 『이즈베스티야』지 특파원과과의 대담에서 밝힌 키레예프 대사의 발언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하바롭스크 주민들은 인근 도서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인위적인 천수화 관련 소문은 조작된 것이다. 이곳 수계(水系)는 예전 그대로이며, 카자케비체보 수로는 아무르 강의 다른 지류들과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얕아지기도 하고 깊어지기도 한다. 다만 이것은 계절에 따른 자연적인 변화일 뿐이다.<sup>58</sup>

또다시 여론을 호도하는 러시아 외무부 고위 당국자의 거짓말이 횡행하고 있다.

조만간 카자케비체보 수로는 궁극적으로 바닥을 드러내 수로 우안(중국 측)이 좌안(러시아 측)과 맞닿게 되어 중국 영토와 러시아령 타라바로프 섬 사이에는 수로 장애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 측은 타라바로프 섬과 볼쇼이우수리스크 섬 지역의 국경획정 회담에서 우수리 강 하구는 하바롭스크 시 지역에 있으며, 따라서 이 도서들은 베이징 조약에 따라 당연히 중국령이 돼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을 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

<sup>58</sup> 『이즈베스티야』(1998, 3, 28), No.57.

우수리 강 하구의 위치가 하바롭스크 지역, 즉 아무르스카야(카자케 비체보) 수로와 아무르 강 합류지점이라는 주장은 앞으로 전략적·국제 정치적 면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그렇게 되면 국경선이 러시아 영토 깊숙이 하바롭스크 쪽으로 40~50km 이동하게 된다. 하바롭스크 지역 대중 국경선은 이 지역 아무르 강변을 따라 설정되어 국경표주가 설치되고 중국 측 국경수비대원들이 개를 끌고 다니며 국경을 감시하게 될 것이다. 이 지역에서 두 강의 물줄기가 만나 형성된 볼쇼이우수리스크 섬과 타라바로프 섬 및 수많은 소규모 도서들은 중국 영토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곳 도서 상공에서 민간 항공기 및 군용기가 이착륙 훈련을 해 왔다. 그 밖에 볼쇼이우수리스크 섬에는 아무르 강 철교의 비상시에 대비한 철도 부교(浮橋)가 부설돼 있다. 문제의 도서들이 중국령이 되면 전략적 의미가 큰 아무르 강 철교, 이 지역 시베리아횡단 철도 구간 및 하바롭스크시 등이 상대 측의 군사적 표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지역 도서들의 형성 및 운곽의 변형 과정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자료에 따르면 하바롭스크 지역 아무르 강의 수류(水流)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아무르스카야 수로 우안의 모래톱이 축적되어 또 다른 하나의 섬이 형성될 수 있다. 이 모래톱의 축적과정이 지속될 경우 이 모래톱은 아무르 강 철교 쪽으로 이동하여 향후 섬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그림 2는 하바롭스크 인근 아무르 강과 아무르스카야 수로를 보여준다. 아무르 강과 아무르스카야 수로의 하상은 매우 불안정하며 끊임없이 혹은 주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내륙 하천의 수문자료에 따르면 아무르 강 중·하류 지역에서 너비 10~25km 규모의 잦은 범람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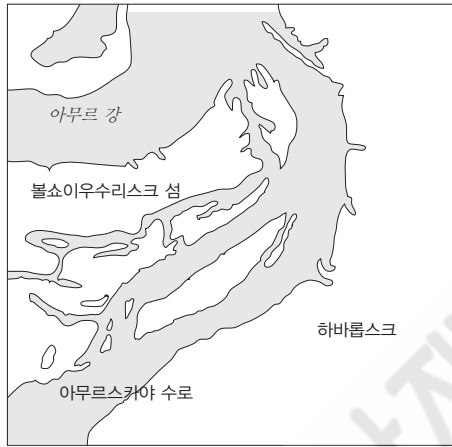


그림 2 하바롭스크 인근 아무르 강과 아무르스카야 수로

한다. 1991년 동부국경협정 제3조의 이행을 위한 중국 측과의 협상 결과 아무르스카야 수로와 아무르 강 합류지점으로 결정된 아무르 강 하구의 위치가 약 50년이 지나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아무르 강 철교 밑이나, 심하면 철교 북쪽으로도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전략적인 의미가 큰 아무르 강 철교 및 아무르 강을 지나는 시베리아횡단철도는 중국 영토에 놓이게 되어, 그 결과 많은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 이 경우 우리 후손들은 1991년 5월 16일자 소·중 동부국경협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협정문 작성자와 서명자들의 경솔함과 이적행위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어쨌든 베이징 조약에 서명한 19세기 중반 제정러시아 외교관들은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정책에 입각하여 본 조약을 반(反)국익적으로 ‘수정한’ 1980년대 말의 외교관들과는 달리 냉철한 실리적 사고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하바롭스크시 인근 지역의 러·중 국경선은 1860년 베이징 조약(제1조) 및 1858년 헨진 조약 제9조를 이행하기 위해 작성된 베이

징 조약 별첨 지도(1861년 서명)에 의해 획정되었다.

특히 베이징 조약 제1조는 지도에 ‘국경선을 더욱 선명하게 붉은색으로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59</sup>

하바롭스크 시 지역 아무르 강에서 우수리 강 하구에 이르는 국경선의 위치와 방향이 지도상에 일목요연하게 표시돼 있다. 국경선은 아무르 강의 카르마 굿(중국 푸위안 시 인근)에서 카자케비체보 수로를 따라 우수리 강 하구(카자케비체보 마을 인근)까지 이어진다. 이 사실은 러시아어와 만주어로 작성되어 러시아 외무부 산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 고문서 보관소(『조약집』)에 소장된 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우수리 강 하구 문제와 우수리 강과 아무르 강 합류지점 문제가 회담과정에서 외교적 관심을 끄는 이유이다.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리적·역사적 정보를 동원해야 한다.

우리의 관심사인 우수리 강 하구에 관한 소연방 기상청의 공식자료에 따르면 “우수리 강은 카자케비체보 마을 인근에서 아무르 강 지류 중 하나인 카자케비체보 수로(이하 ‘아무르스카야 수로’)로 유입된다. 순가차 강의 유입 지점에서 우수리 강 하구까지는 대중(對中) 국경 하천이다.”<sup>60</sup>

이 공식자료는 아무르스카야 수로와 우수리 강의 특징을 보여 준다. 이 자료의 <표 2> 설명서 No.5140에 따르면 아무르스카야 수로의 발원지는 니즈네스파스크(Nizhnespask) 마을 위 9.5km 지점의 아무르

<sup>59</sup> 트카첸코(1999), 102쪽.

<sup>60</sup> 『소연방 지표수자원』(1972) 제18권, No.3, 극동, 프리모리에, 레닌그라드 : Gidrometeoizdast, 310쪽.

강이다.<sup>61</sup> 또한 <표 2> No.5140에 따르면 총연장 70km인 아무르스카야 수로는 아무르 강 우측 지류로 강 하구로부터 966km 지점에서 아무르 강에 유입되며 각각의 길이가 10km 미만으로 총연장 65km의 33개 지류가 동 수로에 유입된다.<sup>62</sup> <표 2> No.5142에 따르면 우수리 강은 아무르스카야 수로의 우측 지류로 강 하구로부터 39km 지점에서 아무르스카야 수로로 유입되며 수류의 총 길이는 588km이다.<sup>63</sup> 또한 <표 2> No.5142에서는 우수리 강이 아무르스카야 수로로 유입되는 지점을 우수리 강 하구로 보고 있다.<sup>64</sup>

공식자료를 볼 때 아무르 강 우측(남쪽) 지류는 아무르스카야 혹은 카자케비체보 수로로 불리는 반면, 그 발원지(아무르 강)로부터 우수리 강 하구까지의 수로(카자케비체보 마을 인근, 우수리 강이 아무르 강 우측 지류로 유입되는 지점)는 카자케비체보 수로라 불리고, 그 아래 우수리 강 하구로부터 아무르 강 우측 지류와 아무르 강이 합류하는 지점까지의 수로(하바롭스크 시 지역 대부분의 아무르 강 유역)는 아무르스카야 수로라고 불린다.

카자케비체보 마을 인근에서 아무르 강 지류(아무르스카야 수로)에 우수리 강이 합류함으로써 유량이 증가한다. 그 결과 카자케비체보 마을에서 하바롭스크 시까지의 구간에서 물의 흐름이 거세진다. 더구나 카자케비체보 수로(카자케비체보 마을 인근, 그 발원지로부터 우수리 강 하구

61 『소연방 지표수자원』(1966) 제18권, No.1, 극동, 아무르, 레닌그라드 : Gidrometeoizdast, 245쪽.

62 『소연방 지표수자원』(1966), 168쪽.

63 『소연방 지표수자원』(1966), 168쪽.

64 『소연방 지표수자원』(1966), 245쪽.

까지)의 수리적 특성으로 볼 때, 우수리 강의 유량이 더해지면 이 구간의 강물은 역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리 강의 유량은 2개의 지류(서쪽 지류와 동쪽 지류)로 나뉘어 아무르 강으로 유입된다.

이 지역에는 두 강줄기가 합류하여 우수리 강 하구 정반대편의 볼쇼이우수리스크 섬을 비롯한 크고 작은 많은 도서가 형성되었다. 도서들이 꾸준히 형성되고 있으며 그 윤곽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1987년 트카첸코(G. I. Tkachenko) 역사학 박사가 밝혀낸 다음과 같은 역사·지리적 사실은 아무르스카야 수로의 수계가 매우 불안정함을 지적해 준다.<sup>65</sup>

소연방 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역사학·고고학·민속학연구소 도서관 동양장서 코너에 중국 학자 치자오난[齊召南]의 연구서 『수도제강』(水道提綱: 수로 해설서, 1776년)이 소장돼 있다.

본 연구서 25장 「아무르 강에 유입되는 커루룬허[克魯倫河], 쑹화 강, 년 강[嫩江], 우수리 강」에는 아무르 강과 우수리 강 합류지점에 대해 설명돼 있다. 필자에 따르면 우수리 강은 아무르 강에 2개의 지류로 나뉘어 유입되는데 서쪽의 주 지류는 아무르 강으로 유입되고 인근 동쪽 지류는 북동쪽으로 흘러 아무르 강과 합류한다.

이처럼 18세기 중국의 학자는 우수리 강 서쪽 지류(현 카자케비체보 수로)를 우수리 강의 주 하상으로 언급하고 있다. 물론 1858년 5월 아이훈 조약문을 작성할 때, 1859년 부도고스키 대령이 이끄는 지형탐사대가 국

65 크루샤노프(A. I. Krushanov)·솔로비요프(F. V. Soloviyov)·트카첸코(G. I. Tkachenko)(1987), 「하바롭스크 지역 러·중 간 국경획정 전 ‘우수리 강 하구’의 중국 측 개념에 대하여」, 『태평양 지도, 블라디보스토크』, No.8, 45~46쪽.

경표지를 설치할 때, 1860년 베이징 조약문을 작성할 때에도 러·중 국경선은 서쪽 수로를 따라 획정되었고 이는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국경을 표지할 때 우수리 강 서쪽 지류, 즉 카자케비체보 수로가 주 경계선으로 인정된 것이다. 카자케비체보 수로를 지나는 하천 국경이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간 각종 협정에도 부합한다.

끊임없이 혹은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아무르 강, 아무르스카야 수로와 우수리 강의 수계는 1860~1861년 획정된 이 지역 국경 하천의 러·중 국경과 결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러시아 외교관들 또한 러시아의 국익과 양국 간 국경의 견고함을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앞에서 언급한 역사·지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230년 전에 현 카자케비체보 수로(카르마 곳에서 우수리 강 하구까지)를 따라 강물이 역류했으며 중국인들은 이 서북쪽 하상을 현 우수리 강 하구로부터 현재 하바롭스크 시가 위치한 지역까지의 동북쪽 지류에 맞서 우수리 강의 주 하상이라고 불렀다.

자연적 요인은 변동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것이 곧 항행 가능한 하천의 주 항로와 항행 불가능한 하천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한 국경획정 원칙을 버리고 위도와 경도가 분, 도까지 정확하게 표기된 좌표를 이용하여 국경점을 정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렇게 되면 국경선을 체계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도 없을 것이고 아울러 국경선 변경 및 재검토에 따른 분쟁의 씨앗 또한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항행 가능한 국경 하천의 주 항로를 국경획정의 합리적 기준으로 정한 현대 국제법의 빈약한 근거에 따른다면 자연의 지구·물리학적 요인의 변화에 따라 국경선의 재검토 요인이 발생한다.

자연적인 수로국경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면 국경분쟁, 영유권 주장 등 분쟁의 씨앗이 발생한다. 그래서 정확한 측량을 통해서 얻은 국경선의 좌표기록이 더욱 인정을 받게 된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우수리 강 하구는 카자케비체보 마을 인근에 있다. 반면에 총연장 70km의 아무르스카야 수로는 니즈네스파스크 마을 위 아무르 강에서 발원하여 하바롭스크 시 인근에서 다시 아무르 강에 유입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수리 강의 합류로 물의 흐름이 거세진다.

국경 하천 우수리 강은 카자케비체보 마을(예전의 카자크 마을) 인근에서 끝난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우수리 강 하구는 지도상에 철자 《E》로 선명하게 표기되었고, 1861년 국경표지작업 중 카자케비체보 카자크 마을 맞은편 우수리 강 좌안(중국 측)에 목제 국경표주 《E》가 설치되었다.

우수리 강 하구(좌안, 중국 측 하안)에 국경표주 《E》를 설치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이는 우수리 강 하구의 위치가 베이징 조약 서명 당시의 해석처럼 우수리 강과 아무르 강 우측(남쪽) 지류인 카자케비체보 수로와의 합류지점 주위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우수리 강에서 해안까지의 양 제국 간 국경설명서’에 기록돼 있다.

우수리 강 하구에 대해 위에 언급한 ‘국경설명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베이징 조약 제1조는 문자 그대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우수리 강 하구에서 한카호까지의 국경선은 우수리 강과 순가차 강을 통과한다. 동 조약 제3조는 즉각 시행된다. …… 이들 하천에는 지반이 견고한 우수리 강 하구와 순가차 강 발원지 좌안의 국경표주 《E》와 《I》

외에 다른 국경표주는 설치하지 않는다.<sup>66</sup>

러시아 외무부 제정러시아 대외정책 고문서 보관소의 자료에 따르면 “국경실사 후 중국 측 국경획정 전권대표들은 러시아 측 전권대표들에게 우수리 강 하구의 국경이 정확하게 설정되었다”고 서면 통지해 왔다.

국경표주 《E》의 위치는 현 하바롭스크 시 남동쪽 50km 지점 우수리 강 하구, 즉 우수리 강이 아무르스카야 수로에 유입되는 지점이었으며 좌표는 북위 48도 16분 20초, 동경 152도 37분이었다.<sup>67</sup> 경도는 당시 러시아 측량국에서 통용되던 자오선 측정방법에 따라 그리니치 서경 약 17.5도 상에 위치한 대서양 카나리아 제도 페로 섬의 본초 자오선을 기점으로 측정되었다.

이같이 상세하고 면밀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1860년 베이징 조약에 첨부된 국경지도상에 표시된 붉은 선이 카자케비체보 수로(카르마 곶 혹은 중국의 푸위안 시에서 국경표주 《E》가 설치된 우수리 강 하구까지)를 통과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국경이 이 지역을 통과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사실은 볼쇼이우수리스크 섬과 타라바로프 섬, 그리고 이들 주변의 작은 도서들이 중국령이 아닌 러시아령이라는 점을 입증해 준다.

<sup>66</sup> 트카첸코(1998), 89~90쪽.

<sup>67</sup> 렵킨(G. Levkin)(1995), 『중국인들이 하바롭스크인들 턱 밑에서 수영을 하고 싶어한다. 혹은 ‘우수리 강 하구 문제에 대하여’』, No.12, 블라디보스토크 : Dalnevostochny uchyeny, 8~9쪽.

궁극적으로 1860년 베이징 조약과 별첨 지도에 따르면 볼쇼이우수 리스크 섬과 타라바로프 섬, 그리고 하바롭스크 지역의 삼각형 ‘카자케비체보 수로(수로의 발원지에서 카자케비체보 마을 인근 우수리 강 하구까지)-아무르스카야 수로(우수리 강 하구에서 하바롭스크까지)-아무르 강(카자케비체보 수로의 발원지에서 하바롭스크 인근 카자케비체보 수로의 아무르 강 유입지점까지)’ 내에 있는 이들 섬 주변의 작은 도서들은 러시아령인 것이다.

카자케비체보 마을에서 하바롭스크 구간의 아무르스카야 수로는 국경 하천이 아니다. 이유는 베이징 조약과 조약의 주요 일부인 별첨 국경지도(국경선을 더욱 선명하게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그 방향을 러시아어 철자 A~Y로 표기했음)에 서명하고 국경선과 각 국경표주의 위치를 표시한 정밀 지형도가 첨부된 ‘국경설명서’를 작성했던 1860~1861년에 그렇게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또한 베이징 조약 제1조는 ‘국경표지 설치 후 양국 간 국경선은 영원히 변경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sup>68</sup> 제15조는 베이징 조약 각 조항의 ‘항구적이고 신성한 이행’을 규정하고 있다.<sup>69</sup> 조약은 당시로서는 합당한 절차에 의해 비준되었다.

1886년 하바롭카(Khabarovka : 현 하바롭스크) 시에서 국경재설정(즉 이미 설정된 국경선을 점검하고, 훼손된 국경표지를 복원하거나 교체하는 작업) 당시 1886년 7월 14일자 하바롭스크 의정서가 작성되었다.<sup>70</sup> 하바

<sup>68</sup> 트카첸코(1998), 85쪽.

<sup>69</sup> 트카첸코(1998), 86쪽.

<sup>70</sup> 트카첸코(1998), 124~125쪽.

롭스크 의정서는 ‘완전히 훼손된 상태’로 카자케비체보 마을 위 우수리강 좌안에 서 있던 목제 국경표주 《E》를 같은 장소에 석제 국경표주로 교체하되 구 목제표주와 동일하게 방향을 틀어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국경표주 교체작업은 1886년 7월 9일 러·중 공동위원회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의정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우리 측의 참관하에 교체작업이 착수, 시행, 완료되었다.” 하바롭스크 의정서는 각 측에서 5명씩 총 10명의 러·중 공동위원회 위원들에 의해 서명되었다.

중국 측은 1917년 러시아에 발생한 두 차례에 걸친 혁명 후 내전과 극동지역에 대한 외세간섭 등으로 러시아의 세력이 약화된 틈을 타 국경표주 《E》를 제거해 버렸다. 아마도 이 국경표주가 누군가에게 큰 장애가 된 듯했다. 특히 향후 하바롭스크 지역 국경감시에 방해가 되는 듯했다. 러시아 국경수비대는 1919년 국경표주 《E》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1919년 1월 8일 유즈노우수리스크 변강주 국경수비대장은 베이징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중국 측에 의한 국경표주 《E》의 제거 사실을 통보했으며, 중국 측에 이에 대한 서면 항의서를 전달했다.<sup>71</sup>

위의 모든 문건은 러시아 대외정책 고문서 보관소에 소장돼 있다. “소 연방과 러시아 외무부 누구에게 왜 하바롭스크의 텅 빈 곳에 ‘영토문제’를 야기할 필요가 있었을까?”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5. 하바롭스크 지역 아무르 강 선박 항행규정 변경

다섯 번째 국경변경은 하바롭스크 시를 지나는 러시아령 아무르 강

<sup>71</sup> 마스니코프(1996), 380쪽.

구간의 선박 항행규정과 관련이 있다.

양측은 1991년 동부국경협정 제8조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체약 쌍방은 군함을 포함한 다양한 선박들이 우수리 강에서 하바롭스크를 지나 아무르 강으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 항행규정은 양측의 관련 당국이 작성한다.<sup>72</sup>

러시아 외무부 관리들은 이 합의에 대한 언급은커녕 떠올리기조차 꺼린다. 아마도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수리 강 하구에서 하바롭스크 시까지의 아무르스카야 수로’와 ‘하바롭스크 시에서 카르마 곶 인근 중국의 푸위안 시까지의 아무르 강’ 구간은 소련령 내수로다. 하바롭스크 시는 인구 수와 전략적인 면에서 극동지역 제2의 도시이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도시 주변을 흐르는 소연방(러시아) 내수로에 대한 중국 군함의 자유항행권을 인정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과연 중국 군함들이 하바롭스크 시 주변을 항행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이 지역에 제3국은 없지 않은가? 따라서 우수리 강과 아무르 강을 항행하는 중국 측 군함들의 작전 대상국은 오직 소연방과 러시아뿐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상해 보자. 러·중 관계가 악화되면 중국 군함들은 합법적으로 국경선으로부터 40~50km 러시아 영토 깊숙이 우수리 강과 아무르 강을 거슬러 올라와 하바롭스크 인근에 정박하여 러시아 극동지역 제2도시를 향해 함포

---

<sup>72</sup> 트카첸코(1998), 154쪽.

사격을 가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해병대를 상륙시킬 수도 있다.

이 조항은 과연 누구를 위해 협정문에 삽입되었을까? 당연한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결코 소연방(현 러시아)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1991년 소·중 동부국경협정 문안을 작성한 소연방 외부 관리들은 어느 나라의 국익을 추구했을까? 그들은 어떤 지침을 따랐으며 무슨 생각을 한 것일까? 생각이 모자랐을까? 아니면 그보다 더 나쁜 반역을 행한 것일까?

다음을 보자. 1991년 동부국경협정 제8조에는 ‘우수리 강에서 하바롭스크를 지나 아무르 강으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군함을 포함한 다양한 선박’의 국적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따라서 하바롭스크 시를 지나는 항행권은 중국뿐 아니라 소련(러시아) 선박들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관련 조항에 중국이나 소련의 국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항행권은 체약 당사국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국의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소연방은 선박 운항이 자국의 내수로를 통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당연히 항행권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소연방은 그러한 권리를 굳이 상대국과 공유할 필요가 없었다.

1991년 동부국경협정 제8조를 그런 식으로 작성한 데에는 대규모 중국 선박들이 카자케비체보 수로를 항행할 수 없거나 어려울 때에 대비한 단지 ‘아무르 강~우수리 강’ 구간의 항행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항행조건에 따른 나름의 현실적인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제8조는 다른 방식으로 작성되었어야 한다. 즉 “군함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중화인민공화국 선박들은 ……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다.”

제8조가 사실상 하바롭스크시 인근 하천에 대한 자유로운 항행권을 상호 부여하고 있는 한 이 조항에는 현실적인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가 숨어 있으며 이는 향후 발생 가능한 요구사항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제8조 마지막 문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행규정은 양측의 관련 당국이 작성한다.

그러나 문제는 소연방(러시아) 측은 자국 선박의 자국 내수로 항행에 따른 규정이나 조건을 굳이 이웃나라 중국과 합의할 필요가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데 있다. 제8조는 하바롭스크시 인근 내수로의 항행권 공유 및 향후 항행규정의 공동작성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제8조는 이미 향후의 상황을 암암리에 예견했을 것이라는 결론을 가능케 한다. 어찌면 1991년 동부국경협정 체결 당시에 이미 동 협정 제3조에 따라 하바롭스크 지역의 국경점 《No.10》에서 국경점 《No.11》까지의 양국 간 동부국경 문제 협의 후에는 볼쇼이우수리스크 섬과 타라바로프 섬이 중국 측에 넘어가고, 하바롭스크 시까지의 국경은 (카자케비체보 수로가 아닌) 우수리 강 북쪽 지류와 현재의 우수리 강 하구로부터 하바롭스크까지의 (중국인들이 우수리 강이라고 여기는) 아무르스카야 수로를 기준으로 설정될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견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카자케비체보 수로(발원지에서 현재의 우수리 강 하구까지는 중국의 내수로가 될 수 있고, 그 경우 소연방의 내수로였던 아무르 강과 우수리 강 구간이 국경 하천이 되어 체약 당사국 간 항행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결국 양측의 관련 부처는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로 한 항행조건 및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런 형태의 1991년 동부국경협정 제8조는 가까운 장래에 카자케비체보 수로의 천수화 및 침전(沈澱) 결과 항행 중단이 예견될 경우에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소련 측은 선린정신에 따라 중국 측 무역선들이 우수리 강에서 하바롭스크를 지나 아무르 강으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소련 선박들의 송화강 운항에) 적용된 그러한 항행권은 1881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 제18조에 전적으로 부합할 수도 있다. 동 조약 제18조는 ‘양국 국민의 아무르 강, 송화[松花] 강과 우수리 강 항행권 및 이들 하천의 연안지대 거주 주민들 간의 무역권’에 관한 1858년 아이훈 조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양국 정부는 상기 조항의 이행방안에 관한 협약체결을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sup>73</sup> 그러나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아이훈 조약이나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 어디에도 군함에 이웃나라 내수로 항행권을 부여한다는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다.

그 밖에 자연적인 요인으로 카자케비체보 수로 항행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타라바로프 섬과 볼쇼이우수리스크 섬에 대한 영유권이나 이 지역 국경선을 카자케비체보 수로에서 하바롭스크 근교로 이전하는 데 아무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우수리 강에서 하바롭스크를 지나 아무르 강으로의 자유로운 왕복 항행권 부여 문제는 오직 중국 선박들에 해당하는 것이며, 결코 소연방 선박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와 관련, 소연방 선박들은 당연히 이러한 권리

<sup>73</sup> 트카첸코(1998), 100쪽.

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웃나라의 그 어떤 동의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았다.

이 경우 중국 군함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하바롭스크 시 인근 항행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군사적·정치적 관점에서 매우 의심스러운 일이다.

확신하건대 1991년 동부국경협정 제8조는 분명히 향후 이 지역 소(러)·중 간 국경변경을 전제로 한 일종의 숨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하바롭스크 지역 국경변경 가능성을 열어둔 동 협정 제3조와도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동 2개 조항이 이행될 경우 러시아가 입게 될 군사·정치적, 전략적 손실은 실로 클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많은 문제와 과정에 대한 면밀하고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더구나 이러한 문제들은 학계에서나 언론에서 일찍이 다뤄진 적이 없다. 이러한 문제들은 러시아 극동지역 지정학적(地政學的) 정세 분석에 매우 중요한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 6. 우수리 강과 순가차 강 국경변경

여섯 번째 국경변경은 하바롭스크 변강주와 연해 변강주의 우수리 강과 순가차 강에서 있었다.

순가차 강 전 구간과 우수리 강으로 유입되는 우수리 강 좌측 지류, 즉 순가차 강의 우수리 강 유입지점에서 우수리 강 하구까지의 우수리 강 하류는 국경 하천이다.

러시아 대사 키레예프는 1995년 5월 12일 러시아 국가두마 청문회

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다만스키 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다만스키 섬은 아무르 강과 우수리 강에 위치한 다른 모든 도서와 마찬가지로 결코 분할된 적이 없으며 법적으로도 소련령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무단 점령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1930년대 초 소연방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 항로 중심으로부터 중국 측 하안까지의 도서 대부분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장악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만스키 섬은 주 항로 중심에서 중국 쪽으로 멀리 하안 가까이에 있다. 따라서 모든 국제법적 규범과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다만스키 섬은 국경설정 결과 중국령이 될 것이다.<sup>74</sup>

국경 하천 우수리 강과 아무르 강을 통과하는 리·중 간 수로국경은 1860년 베이징 조약에 의해 획정되었다. 동 조약 제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어서 우수리 강 하구에서 헨카이 호수(현 한카호)까지의 국경선은 우수리 강과 순가차 강을 통과한다. 우수리 강과 순가차 강 동쪽(우안)의 영토는 러시아령으로 하고, 서쪽(좌안)의 영토는 중국령으로 한다.<sup>75</sup>

아무르 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경 하천 우수리 강과 순가차 강의

74 러시아연방 하원(1995), 『회의 속기록』, 58쪽.

75 트카첸코(1998), 84쪽.

러·중 양국 간 국경에 관한 분명한 입증자료로 실카 강과 아르군 강 합류지점에서 동해까지의 러·중 간 동부국경 지도(축척 1 : 1,050,000)를 들 수 있다. 이 지도는 러시아어와 만주어로 작성, 1860년 베이징 조약에 첨부돼 있으며, 지도에는 조약에 따라 ‘국경선을 더욱 선명하게 붉은색으로 표시했다’.

1969년 3월 중국의 영유권 주장으로 소·중 간 유혈 국경 무력충돌 사태가 발생한 우수리 강의 다만스키 섬의 영유권은 소연방에 있는 것으로 당시 많은 간행물에 발표되었다. 문제는 19세기 후반의 국경획정 지도들에 나타난 러·중 간 붉은 국경선은 다만스키 섬 남쪽을 통과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한 진실은 오직 이 지도들의 원본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을 것이다.

베이징 조약과 이 지도는 국경획정 문건으로, 조약내용에 따라 국경선의 위치와 방향이 표시돼 있다. 조약문에 국경선 통과지형이 명기돼 있으며 조약의 주요 일부로 첨부된 지도상에는 국경선을 더욱 선명하게 붉은색으로 표시했다. 이 붉은 선은 분명히 우수리 강과 순가차 강 좌안(중국쪽)을 따라 통과하고 있다.

그 외에 국경에 관한 분명한 자료로 다음과 같은 문건들이 있다.

베이징 조약에 러시아어와 중국어로 2부 작성·첨부되어 1861년 6월 16일 서명된 우수리 강에서 두만강 하구까지의 국경지도 ; 러시아어와 중국어로 2부 작성된 베이징 조약 추가조항 부속서로 ‘1860년 11월 2일자 베이징 추가 조약 제1, 3조를 바탕으로 작성된 1861년 6월 4일(16일)자 우수리 강에서 해안까지의 러시아제국과 대청제국 간 국경설명서.’<sup>76</sup> 베이징 조약 추가조항에 첨부된 ‘1861년 러시아제국과 대청제국 간 우수리

강 하구에서 두만강까지의 국경설정 설명서<sup>77</sup>

이러한 지도와 국경설명서들은 국경표지작업 결과에 따라 작성된 국경설정문건이다. 베이징 조약 제3조에 의거, 우수리 강에서 두만강까지의 러·중 양국 국경에서 이루어진 국경표지작업은 러·중 합동 지형탐사대에 의해 1861년 봄과 초여름에 시행되었으며 러시아 측 지형탐사대는 참모본부 부도고스키 대령이 이끌었다. 탐사대는 국경지대에 국경표주를 설치하고 지형도를 제작했다. 탐사대는 우수리 강에서 두만강까지 총 8개의 국경표주를 설치하고 각각 러시아어 철자 E, I, K, Л, H, O, П 및 T로 표시했다. 그 중 하나의 국경표주(E)는 우수리 강이 아무르 강에 합류하는 지점, 즉 중국 측 연안 카자크 마을 카자케비체보 맞은편 우수리 강 하구 주위에 설치되었다. 또 다른 국경표주(I)는 한카호에서 비롯되는 순가차 강 발원지 주위 중국 측 하안에 설치되었다. 나머지 여섯 개 국경표주는 벨렌허가 한카호와 합류하는 지점, 즉 중국 측 연안의 벨렌허 하구 주위에서 두만강까지 설치되었다. 이때 국경에는 국경표지가 설치되었을 뿐 아니라 국경표주 각각의 위치와 국경선 통과 지점을 설명해 주는 국경설명서 또한 작성되었다. 그런데 앞에 언급한 1861년 국경설명서들은 매우 간편했다.

베이징 조약에 첨부되어 1861년 서명된 1860년 국경획정지도에는 우수리 강 하구로부터 한카호에서 비롯되는 순가차 강 발원지까지의 러·중 국경이 이들 하천의 좌측, 즉 중국 측 하안을 통과하는 것으로

76 트카첸코(1998), 89~91쪽.

77 트카첸코(1998), 92~99쪽.

표시돼 있고 이에 대한 관련 기록이 앞에서 언급한 ‘국경설명서’에 남아 있다. 따라서 비록 베이징 조약에 첨부된 이 지도에 우수리 강과 순가차 강이 하나의 굵은 선으로 표시되고 도서들은 표시돼 있지 않지만(지도의 축척을 고려할 때 지도상에 강폭을 세밀하게 표기하기는 여의치 않았다), 지도상에 표시된 국경선은 분명히 이들 하천의 중국 측 하안을 통과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앞에 언급한 ‘국경설명서’의 관련 기록에 의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러·중 국경이 우수리 강과 순가차 강 좌안(서쪽), 즉 중국 측 하안을 통과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국경표지작업 완료 후 1861년 6월 16일 투리로크에서 서명한 국경지도들뿐 아니라 그 당시 서명된 ‘우수리 강에서 해안까지의 러시아제국과 대청제국 간 국경설명서’ 본문에 의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동 국경설명서에는 특히 다음과 같이 언급돼 있다.

이들 하천에는 지반이 강한 우수리 강 하구와 순가차 강 발원지 좌안의 국경표주 《E》와 《I》 외에 다른 국경표주는 설치하지 않는다.<sup>78</sup>

‘국경설명서’ 마지막 단락에는 “모든 국경선은 양 제국이 지도상에 표시한 붉은 선에 의해 선명하게 나타나 있으며, 이에 따른 국경설명서 또한 작성되었다”<sup>79</sup>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우수리 강과 순가차 강을 지나는 양국 간 국경선은 이들 하천의 중국 측 하안 가장자리를 따라

<sup>78</sup> 트카첸코(1998), 90쪽.

<sup>79</sup> 트카첸코(1998), 91쪽.

획정된 것이다.

국경표주 《I》는 ‘1861년 우수리 강에서 해안까지의 러시아제국과 대청제국 간 국경설정설명서’에 다음과 같이 묘사돼 있다.

목제 국경표주는 한카호에서 비롯되는 순가차 강 발원지 좌안에 설치되었다.

동 국경표주의 좌표는 북위 45도 3분 30초, 동경 150도 9분 233초이다.<sup>80</sup>

앞에 언급한 모든 문건의 원본, 즉 한카 의정서와 별첨 국경설명서 2건, 1860년과 1861년 작성된 국경지도 등은 러시아 외무부 산하 제정 러시아 대외정책 고문서 보관소에 소장돼 있다(장서분류 『조약집』).

이와 같이 우수리 강과 순가차 강에 있는 모든 도서는 1860~1861년 행해진 국경선 획정 및 1861년 국경표지작업에 따라 러시아령이 되었다. 여기에는 1969년 마오쩌둥[毛澤東] 지도부가 국경 무력도발을 통해 소연방에 영유권을 주장했던 이만(현 달네레첸스크구, Dalnerechensk) 시 인근 우수리 강의 다만스키 섬도 포함돼 있다. 현재 소연방 외무부와 러시아 외무부는 1991년 동부국경협정을 체결, 이함으로써 이러한 ‘역사적 불공정성’을 중국 측에 유리하게 시정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1969년의 다만스키 섬 사태와 그 당시 전사한 소연방 국경수비대 소속 젊은 영혼들의 희생은 어떻게 해석·평가할 수 있을까?

<sup>80</sup> 트카첸코(1998), 92~93쪽.

그러나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 따라 국경 하천의 도서를 분할하게 될 경우 1996년 여름의 평가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측은 하바롭스크 변강주와 연해 변강주 지역 우수리 강에서만 총 144km<sup>2</sup>의 도서를 중국 측에 내주게 될 것이다. 더구나 여기에는 순가차 강의 도서 면적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 7. 연해 변강주 국경변경

연해 변강주 한카, 우수리스크 및 하산 등 3개 구의 국경표지작업 과정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다. 연해 변강주의 러·중 국경 총연장은 1162km이며, 위 분쟁지역 국경 총연장은 27km이다.

연해 변강주의 양국 간 국경변경의 합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 국경설정에 관한 역사적·법적 문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연해 변강주의 러·중 양국 간 수로국경은 1860년 베이징 조약에 의해 확정되었으며, 동 조약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우수리 강 하구에서 힌카이 호수까지의 국경선은 우수리 강과 순가차 강을 통과한다. 우수리 강과 순가차 강 동쪽(우안)의 영토는 러시아령으로 하고, 서쪽(좌안)의 영토는 중국령으로 한다. 양국 간 국경선은 순가차 강 발원지에서 시작하여 힌카이 호수를 가로질러 벨렌허까지 이어지며, 나아가 벨렌허 하구에서 출발한 국경선은 산맥을 따라 후비투 강 하구로 이어지고, 여기서 다시 훈춘 강과 바다 사이의 산을 따라 두만강까지 이어진다. 이곳 영토 또한 동쪽은 러시아령으로 하고, 서

쪽은 중국령으로 한다. 국경선은 두만강의 동해 유입지점 상류 20리(중국) 지점에서 강을 통과한다.<sup>81</sup>

베이징 조약은 국경획정문건이다. 그러나 조약문을 보면 현 연해 변강주의 러·중 국경선 통과 지점은 매우 개괄적으로 획정돼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베이징 조약 별첨 붉은 선이 표시된 지도는 지도상 거리 1cm가 실제 거리 10.5km를 의미하는 소축척지도로 세부적인 설명 없이 국경선의 위치와 방향만 약식으로 표시돼 있다.

베이징 조약 마지막 제15조는 ‘상호 합의’에 따라 승인된 베이징 조약 각 조항의 ‘항구적이고 신성한 이행’을 규정하고 있다.<sup>82</sup>

제3조는 “동부지역, 한카호에서 두만강까지 국경표지를 설치하기 위해 러·중 양국 정부는 각각 대리인(국경수비대장)을 지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83</sup>

연해 변강주 국경표지작업은 1861년 4월에 시작하여 6월에 완료되었다. 1861년 6월 4일(16일) 한카호 서안 벨렌허 하구에 있는 투리로크 초소에서 양국 전권대리인들은 우수리 변강주 러·중 국경지도 및 국경설명서 교환 의정서(약칭 1861년 한카 의정서)에 서명했다.<sup>84</sup> 이 의정서는 1861년 서명된 우수리 강에서 두만강 하구까지의 국경지도 및 러시아어와 중국어로 작성된 ‘우수리 강에서 해안까지의 러시아제국과 대

<sup>81</sup> 트카첸코(1998), 84쪽.

<sup>82</sup> 트카첸코(1998), 86쪽.

<sup>83</sup> 트카첸코(1998), 85쪽.

<sup>84</sup> 트카첸코(1998), 88~8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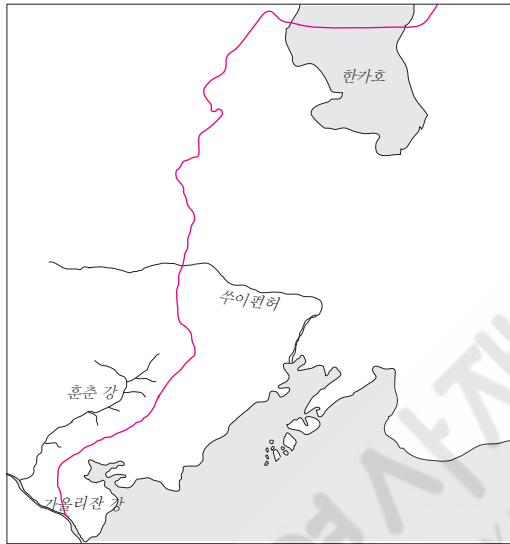


그림 3 우수리 강에서 두만강 하구까지의 러·중 국경지도(1861년)

청제국 간 국경설명서'와 함께 베이징 조약의 주요 추가조항으로 편입되었다.

한카 의정서는 “본 의정서는 별첨 정밀지도 및 국경설명서와 함께 문자 그대로 베이징 조약의 일부로서 항구적이고 신성하게 이행되어야 한다”는 말로 끝을 맺고 있다.<sup>85</sup>

문제는 비록 한카 의정서에는 별첨 ‘정밀지도’라고 언급돼 있지만 우수리 강에서 두만강까지의 국경을 묘사한 이 지도는 베이징 조약 별첨 붉은 선이 표시된 지도와 마찬가지로 상세한 설명 없이 지도상 거리 1cm가 실제 거리 8.4~10.5km를 의미하는 소축척지도로 국경선의 위치와 방향만 약식으로 표시돼 있다는 점이다. 연해 변강주의 국경선 통

<sup>85</sup> 트카첸코(1998), 88쪽.

과 지점과 국경표주 《I》, 《K》, 《Л》, 《H》, 《O》, 《П》, 《T》와 국경점 《M》, 《P》, 《C》와 《Y》가 표시된 한카 의정서에 첨부된 지도 일부가 그림 3에 소개돼 있다.

그 외에 1861년 6월 16일자 한카 의정서의 부속서로 ‘우수리 강에서 두만강 하구까지의 러시아제국과 대청제국 간 국경설정 설명서(1861년)’가 있다. 여기에는 베이징 조약에 I, K, Л, H, O, П, T 등 러시아어 철자로 표기된 국경표주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돼 있다.

앞에 언급한 1861년 한카 의정서에 첨부된 두 건의 국경설명서와 국경지도는 국경설정문건이다.

1886년 러·중 간 국경설정 및 국경표주 설치 후 25년이 지나 국경 재설정 작업, 즉 이미 설정된 국경선을 점검하고 훼손된 국경표지를 복원하거나 교체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 당시 한카호에서 두만강까지의 러·중 국경선에 3개의 신규 국경표주(《M》, 《P》, 《C》)와 26개의 보조 국경표지 《No.1~No.26》이 설치되어, 1993~1997년 교체될 때까지 100여 년 유지되었다.

1886년 노보키엡스크 의정서와 별첨 지도들은 현재까지 연해 변강주의 러·중 국경선을 뒷받침해 주는 법적 근거이다.<sup>86</sup>

여기서 우리가 113~139년 전 연해 변강주의 국경을 확정·설정한 근거가 되었던 역사적·법적 문건에 대해 이토록 상세하게 논의하는 목적은 단 하나, 즉 연해 변강주의 러·중 국경을 확립해 주는 법적 문건은 무엇이며 연구자들의 역사적 관심을 끄는 주요 문건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건들은 뒤이어 나온 문건들에 의

<sup>86</sup> 트카첸코(1998), 102~124쪽.

해 교체, 수정, 보완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료집 『러·중 국경 : 문서, 논거, 사실』과 다른 매체에서 러시아 외무부 관계자들은 연해 변강주 러·중 간 국경변경 근거는 오직 1860~1861년의 국경획정 및 국경설정문건, 즉 베이징 조약과 한카 의정서 및 그 부속서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베이징 조약은 국경을 매우 개괄적으로 획정하고 있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1860년 베이징 조약에 의해 러·중 국경이 획정되었다. 즉 국경선의 위치와 방향이 결정되었다. 그 후 1861년 한카 의정서와 그 부속서들에 의해 국경이 설정되었다. 즉 국경표지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다. 1861년에는 국경이 한카호에서 남쪽으로 두만강까지 약식으로 설정되었을 뿐이다. 국경 497베르스타(530km) 전 구간에 걸쳐 육상에 총 6개 국경표주가 평균 106km마다 하나씩 세워졌다. 국경 전 구간의 하천과 호수에는 철조망, 출입금지구역, 하천 경계부표 등 국경식별표지가 전혀 설치되지 않았다. 한카 의정서에 ‘정밀지도’라고 명시돼 있는 1861년의 별첨 지도는 사실 세밀하지도 않다. 한카 의정서에 첨부된 1861년의 국경설명서 2건은 우수리 강에서 두만강 하구까지의 국경선 통과 지점과 국경표주의 위치에 대해 일부 주요 지점만을 강조할 뿐 전반적으로 매우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다.

당연히 그러한 국경상황은 무한정 유지될 수 없었다. 연해 변강주와 인접 국경지역 만주지방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피할 수 없는 분쟁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주로 중국 측의 도발로 인한 것이었다. 1882~1886년 ‘국경을 재설정한다’는 구실로 러시아로부터 포시예트만 연안의 일부를 빼앗아 이 지역과 조선을 차단하려는 만주 당국의 야

육으로 러·중 관계는 일시적으로 긴장이 고조되었다.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중국은 그들의 생각에 만주지역 발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동해 출구를 확보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유즈노우수리스크 변강주의 국경 긴장상태는 1886년 양국 정부에 의한 현지 국경재설정 작업을 계기로 해소되었다. 아울러 당시 '분쟁지역'에 관한 모든 문제 또한 해결되었다.

1886년 6월 10일(22일) 국경재설정 결과 노보키엡스크에서 러·중 간 국경표지 실사에 관한 일반 의정서가 서명되었다. 이 의정서는 1860년 베이징 조약에 의해 획정된 우수리 변강주 남부지역의 러·중 국경선을 재확인하고, 또한 1861년 수행된 러·중 간 국경설정 작업이 대체로 정확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현(1990년대) 상황에서 국경재설정은 1860년 베이징 조약, 1886년 노보키엡스크 의정서에 의해 수정·보완된 1861년 한카 의정서 등의 문건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1993~1998년 국경표지작업 과정의 연해 변강주 러·중 국경변경 내용을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 8. 연해 변강주 한카구 국경변경

일곱 번째 국경변경은 연해 변강주의 한카구에서 있었다.

연해 변강주의 한카호에서 두만강까지의 러·중 국경은 베이징 조약에 따라 산맥과 산, 즉 자연적인 분수령을 따라 설정되었다. 그러나 연해 변강주의 한카구는 평야지대로 측량도구를 이용하지 않고는 분수령을 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양측은 대규모 지형측량을 공동으로 시행하

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확실한 분수령과 국경선 통과 지점을 정하기로 합의했다.

국경표지작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국경설정 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중국 측은 처음에 현재 목초지와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769ha(460ha의 경지 포함)의 러시아 영토를 양도해 줄 것을 요구하고 러시아 측은 (가옥과 논밭, 그리고 송전탑과 도로와 같은 매우 중요하지만 중국인들에게는 불편한 시설물이 들어서 있는) 299ha의 땅을 내줄 생각이었다. 키레예프 대사가 1995년 5월 12일 러시아연방 국가두마 청문회에서 러·중 양국 간 국경설정 과정에 대한 논의 중 의원들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러시아에 85~90ha의 경지를 넘겨주고, 러시아는 중국에 일부 경지와 목초지가 포함된 200~260ha의 토지를 넘겨주도록 돼 있었다.<sup>87</sup>

그러나 한카구의 국경표지작업은 매우 민감한 쟁점들이 발생하여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경표지작업 과정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이에 따라 연해 변강주 행정부는 한카구의 국경설정 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경선 수정 후 일부 영토를 양국이 상호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동의 해결안이 마련되었다. 러시아 측 대표단은 연해 변강주 행정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한카구의 분수령을 측량도구를 이용하여 정하기로 중국 측과 합의했다. 분수령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중국 측과 공동으로 대규모 지형측량(1 : 10,000과 심지어는 1 : 2,500 축척)을 시행했다. 연해 변강주 행정부는 획정된 분수령에 만족을 표했으며 국경

---

<sup>87</sup> 러시아연방 하원(1995), 『회의 속기록』, 5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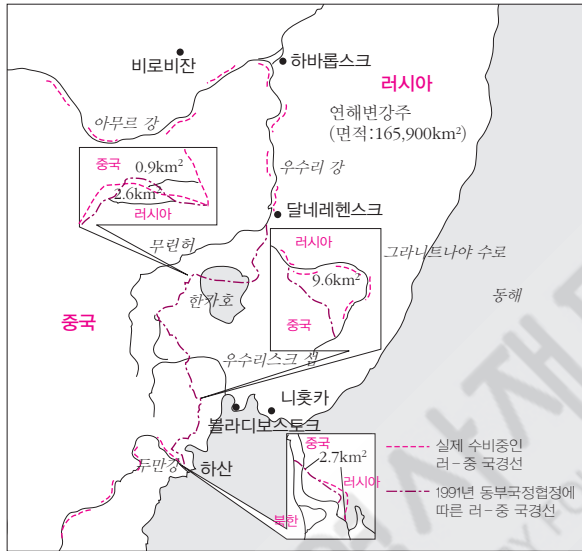


그림 4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 따른 연해 변강주 러·중 국경선 통과 지도

선도 이 분수령을 따라 설정되었다. 이렇게 설정된 이 지역 국경선은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 첨부된 1 : 100,000 축척 국경획정지도에 반영된 국경선과는 약간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국경설정 작업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국경선은 분수령을 따라 대체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설정되고 러시아 측이나 중국 측 모두 더 이상 반박하거나 요구사항이 없었다. 한카구의 대중(對中) 국경선은 총 90km 정도이나 국경재설정 구간의 총연장은 13km로 1 : 1,250,000 축척이 적용된 연해 변강주 표준지도에서는 1cm를 조금 넘는다.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 따른 연해 변강주 국경지도 그림 4에 문제의 국경 지역이 표시돼 있다.

1995년 연해 변강주 한카구 러·중 국경 구간의 국경설정 작업 과정

에서 중국 측에 257ha, 러시아 측에는 85ha가 분할되었다.<sup>88</sup> 이렇게 해서 러시아 측은 172ha의 영토를 상실하게 되었다.

러시아 외무부 관계자들은 다양한 근거를 들어 한카구의 국경선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러·중 공동 국경표지위원회 러시아 측 위원장, 러시아 외무부 특임대사 키레예프는 이 문제에 대해 1995년 5월 12일 러·중 간 국경설정 과정에 관한 국가두마 청문회에서 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1991년 동부국경협정은 한카구의 국경이 1860~1861년 협정 내용, 즉 분수령을 따라 통과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그런데 1930년대 일부 구간(총연장 13km)에서 국경선이 분수령을 벗어나 중국과 러시아 영토를 번갈아 침범하면서 직선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1년 동부국경협정은 이미 합의된 국경선을 복원하고 있다.<sup>89</sup>

그는 이어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국경선 이동은 이미 언급한 한카구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총연장 13km 구간의 국경선이 분수령에서 벗어나 러시아 측(85ha)보다는 중국 측(260ha)으로 더 깊이 이동하여 결국 직선으로 통과하게 되었다.<sup>90</sup>

88 『러·중 국경 : 문서, 논거, 사실』(1997), 27쪽.

89 러시아연방 하원(1995), 『회의 속기록』, 55쪽.

90 러시아연방 하원(1995), 『회의 속기록』, 58쪽.

그러나 키레예프 대사는 왜 이 지역 국경선이 이동하게 되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1994년 말 국가두마 국제관계위원회의 한 회의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본이 만주를 점령한 1930년대 초 우리가 국경선을 일방적으로 중국 측 하안 가까이로 이동시킨 바 있는데 이는 다름 아닌 1933년 10월에 내려진 소연방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으며 그 당시 특히 연해 변경주를 비롯한 많은 구간의 육로국경선이 이동했다. 우리는 국경선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영구진지를 구축했다. 바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로 및 육로국경 지역에 당시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비밀결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설정된 이른바 실효적 국경선이 형성된 것이다. 이 국경선이 합의에 따른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중국 측은 단 한 차례도 인정할 적이 없다.

이어 대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1991년 동부국경협정은 결코 러시아 영토의 약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현행 국경에 관한 각종 러·중 간 조약 및 현행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경선을 획정·설정하자는 것이다. 국경선은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혹은 일부 구간에 대한 러시아 측의 일방적 점유에 의해 조약과 상충하는 구간에서 수정될 것이다.<sup>91</sup>

91 “러시아 국가두마는 국경선을 어떻게 ‘수정하고 있는가’”, 『블라디보스토크』

키레예프 대사의 주장은 많은 의문을 낳는다. 연해 변강주 한카구를 통과하는 대중 국경선은 하상이 변화하는 하천이 아닌 높이 솟아오른 고위 평탄지대를 통과하는 육로국경으로 그 어떤 자연현상에 의해서도 '전위'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점은 국경선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다른 원인으로 “러시아가 영구진지를 구축하기 위해 국경선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일부 구간을 점유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한 가지 모호한 점은 영구진지 구축을 위해 소련군대가 중국 영토를 일방적으로 점령한 후 왜 국경선이 중국 측(260ha)뿐 아니라 러시아 측(85ha)으로도 이동했을까 하는 것이다. 1930년대 초 만주를 점령한 일본군이 유사한 방법으로 일부 소연방 영토를 점령한 것일까? 총연장 13km 구간에 구축된 소련군의 영구진지는 일본군의 우리 영토 점령을 어떻게든 막을 수 없었던 말인가? 실제로 이 구간에 구축된 영구진지(보루, 영구진지, 간이진지 및 기타 방어시설)의 면적이 2.5km<sup>2</sup>를 넘고, 1861년 분수령을 기준으로 설정된 국경선을 이탈하여 직선으로 배치되었던 말인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양국의 경작지가 거의 맞닿아 있는 국경지대 한가 평원에서 발생했단 말인가?(러시아 외무부 관계자들은 이 지역을 ‘인적 없는 벽촌’이라고 부른다) 어딘지 앞뒤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국경수비대 네스테로프(P. A. Nesterov) 예비역 육군 중령의 증언에 따르면<sup>92</sup> 국경지대 거주 중국인들에 의한 연해 변강주 한카구의 러시아

---

(1995. 2. 9), No.24, 1쪽.

<sup>92</sup> 네스테로프(P. A. Nesterov)(1996), “이미 100년이 넘는 ‘분쟁지역’의 개념”,

영토 침탈행위는 1930년대, 심지어 1957년에도 자행되었다. 그들은 러시아 땅을 경작할 목적으로 장기 점유 등을 통해 이 지역을 침탈했다.

키레예프 대사의 전우이자 국경설정 과정에서 러시아 영토를 중국 측에 양도하자는 대사의 견해를 지지한 국가두마 국제관계위원회 루킨(V. P. Lukin) 위원장은 1995년 3월 8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러·중 동부지역 국경설정 문제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일부 국경이 불분명하며, 이에 따른 다양한 가설이 존재한다”고 밝혔다.<sup>93</sup>

키레예프 대사는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루킨 위원장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일부 구간의 국경선은 각종 조약문이 규정한 바와는 전혀 다르게 통과하고 있다. 이는 주로 연해 변경주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지금에 와서 우리 선조가 왜 국경선 통과 지점을 변경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당시 『아르구멘트 이 팩트』에 실린 인터뷰 중 발췌)

공식 인사, 더구나 책임 있는 국가 인사와 러시아 외무부 관리의 이러한 발언은 놀라움과 의심을 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일부 국경이 불분명하고’ 게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지금에 와서 우리 선조가 왜 국경선 통과 지점을 변경했는지 파악하기 어렵

---

『블라디보스토크』, No.58, 6~7쪽.

<sup>93</sup> “미국 속에 빠져있는 국경선. 해결의 열쇠는 누구한테 있는가?”, 『블라디보스토크』(1995. 3. 15), 13쪽.

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1991년 러·중 동부국경협정을 체결할 수 있었는가? 불분명한 국경선에 관한 문제들이 1995년뿐 아니라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아니던가? 게다가 1997년 말 연해 변경주 '분쟁지역' 현장에서 완료한 국경설정 작업은 분명히 골치가 아픈 이 문제를 덮어 버려 외무부의 업무 중 발생한 심각한 외교적 실수를 숨기 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일부 국경이 불분명하고' 게다가 '우리 선조가 왜 국경선 통과 지점을 변경했는지 파악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모든 잘못은 '특히 연해 변경주를 비롯한 많은 구간의 육로국경선을 이전시킨' 1933년 10월 채택된 소연방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과 수로 및 육로국경 지역에 이른바 실효적 국경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비밀결정에 있다.

아울러 1930년대에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게다가 당 지도기관인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실령 일방적인 절차라 하더라도 국경선 획정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이는 입법기관의 특권이다. 1926년 4월 15일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최고회의는 자신의 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소연방 해안 이북 북극까지의 북빙양에 위치한 모든 영토와 도서는 소련령이다.<sup>94</sup>

94 북빙양의 모든 영토 및 도서의 소련령 선언에 관한 1926년 4월 15일자 소연방 중앙집행위원회 최고회의 결정. 『소연방 법령집』(1926), No.32, 203조, 586쪽.

키레예프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어야만 했다.

키레예프 대사의 이러한 애매한 주장은 여러가지 또 다른 의문을 야기한다. 연해 변강주를 비롯한 많은 구간의 육로국경선이 이동했던 시기인 1933년 10월 채택된 ‘소연방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은 도대체 무엇이며, 그 결정의 구체적인 형태와 채택된 결정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비밀결정’은 무엇이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한카구를 비롯한 연해 변강주의 육로국경변경에 관한 키레예프 대사의 주장은 모호하고 상충되는 점이 매우 많다. 국경설정 기준인 분수령선의 존재와 1930년대 이 지역 국경 구간에 영구방어진지를 구축하기 위한 일부 중국 영토의 침탈 문제가 그렇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지금에 와서 우리 선조가 왜 국경선 통과 지점을 변경했는지 파악하기 어렵지만” 합의된 국경선과는 다른 실효적 국경선이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비밀결정’에 의해 획정되었다는 점이 그렇다. 만일 이것이 비밀결정이었다면 중국에서는 이에 관해 전혀 알 수가 없었을 것이므로, 이 비밀결정이 채택되었다 하여 국경 문제에 관한 양국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합의된 국경선으로 언급된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비밀결정’에 의해 획정된 이 실효적 국경선을 인정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아마도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시기 소연방 외무부와 그 후 엘친 ‘개혁기’의 러시아 외무부(부처의 명칭은 달라졌지만, 관리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가 대중(對中) 외교정책에서 범한 명백한 실수들을 은폐하려다 보니 애매한 점과 모순이 많은 듯하다.

한카구 지역 러·중 국경선 변경 필요성은 당시 러시아 외무장관 코

지레프가 연해 변경주 나즈드라텐코 주지사에게 보낸 1995년 6월 6일자 서한에서 제기되었다.

연해 변경주 한카구 지역 국경선은 1860~1861년 각종 조약문에 따라 분수령을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또한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 이에 국경을 조약문에 정확하게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즉 국경선을 분수령을 기준으로 수정해야 한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 구간의 국경선은 분수령을 이탈하여 러시아 영토 및 중국 영토를 침범하고 있다.<sup>95</sup>

조약문을 살펴보자.

이 지역을 통과하는 국경선은 1860년 베이징 조약 제1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양국 간 국경선은 …… 벨렌허 하구에서 …… 산맥을 지나 후비투 강(후투 강) 하구로 이어진다.<sup>96</sup>

‘1860년 11월 2일자 베이징 조약 제1, 3조를 바탕으로 작성된 1861년 6월 16일자 우수리 강에서 해안까지의 러시아제국과 대청제국 간 국경설명서’에는 이 구간의 국경통과 지점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95 『러·중 국경 : 문서, 논거, 사실』(1997), 15쪽.

96 트카첸코(1998), 84쪽.

국경선은 벨렌허 혹은 투르 강 하구에서 한카호와 무린허(Mulinhe)로 유입되는 두 하천 사이의 산맥, 즉 자연적인 분수령을 따라 후비투 강 하구까지 이어진다. 국경선은 계속해서 이 산맥을 따라 쑤이펀허 수역을 무린허와 한카호 수역을 분리해 주는 또 다른 산맥과 동 산맥의 합류 지점까지 이어진다. 국경선은 우측에서 쑤이펀허로 유입되는 후비투 강 하류의 정반대편, 그리고 한카호로 유입되는 모강(현 네스테로프카 강) 상류 맞은편에 위치한 이들 산맥의 합류지점으로부터 후비투 강 하구까지 직선으로 이어진다. 이 구간 국경을 따라 국경표주들이 설치된다. 국경표주 <K>는 벨렌허 하구의 좌안에 설치된다. 표주에는 러시아어 및 중국어로 된 문자와 국경선 방향이 설명돼 있다. 국경표주 <П>은 이전 국경표주 <K>로부터 북서쪽으로 동일한 내용을 담아 상기 언급한 분수령에 설치된다. 국경표주 <H>은 한카호와 무린허 사이의 분수령선, 즉 동 분수령이 한쪽의 쑤이펀허와 다른 쪽의 한카호 및 무린허 사이의 분수령선과 만나는 지점에 설치된다.<sup>97</sup>

한카구 국경통과 지점에 대해서는 예로 든 1861년 6월 16일자 ‘국경 설명서’의 바로 첫 문장에 언급돼 있다.

국경선은 벨렌허 혹은 투르 강 하구에서 한카호와 무린허로 유입되는 두 하천 사이의 산맥, 즉 자연적인 분수령을 따라 후비투 강 하구까지 이어진다.

<sup>97</sup> 트카첸코(1998), 90쪽.

‘1861년 우수리 강에서 두만강 하구까지의 러시아제국과 대청제국 간 국경설정 설명서’에는 이 구역을 통과하는 국경선과 국경표주 《Ⅱ》의 위치가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국경선은 한카호로 흘러드는 우사치 강, 시엔헤 강(현 코미사롭카 강)과 모강 북서쪽 상류를 무린허 및 샤오쑤이편허와 분리해 주는 산 정상을 따라 이어진다. (중략)

목제표주는 한카호와 무린허 수역 사이의 분수령 위에 설치된다 ……<sup>98</sup>

국경재설정 작업 후 작성된 양국 간 국경 정밀실사 대상 제6구간에 관한 1886년 9월 28일자 노보키예스크 제7의정서 ‘양국 간 국경 정밀실사 대상 제6구간에 관한 의정서’는 한카구의 총연장 13km의 ‘분쟁지역’을 통과하는 국경선을 다음과 같이 더욱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모든 기술은 남쪽에서부터 시작된다).

국경선은 이미 언급된 평탄한 정상으로부터 동북쪽으로 고위 평탄면을 따라 16베르스타 430사젠을 지나 국경표주 《Ⅱ》까지 이어진다. 물과 나무가 없는 이 고위 평탄면은 스텝지역으로 무린허와 바이링허[白稜河]의 분수령 역할을 한다.<sup>99</sup>

의정서의 마지막 단락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돼 있다.

---

<sup>98</sup> 트카첸코(1998), 95쪽.

<sup>99</sup> 트카첸코(1998), 119쪽.

상기 국경선은 정밀실사 후 2부 작성된 지도에 반영하여 제6구간으로 간주한다.<sup>100</sup>

각종 문서에서 발췌된 내용을 분석해 보자.

베이징 조약 제1조의 일부 내용은 분명히 연해 변강주를 통과하는 육로국경의 일부 구간(255km-한카호에서 쉰이편허 혹은 라즈돌나야 강으로 유입되는 후비투 강 혹은 그라니트나야 강 하구까지)에 대한 특성을 기술하고 있다. 이 구간은 한카호에서 두만강 하구에 이르는 연해 변강주의 육로국경선 총연장 608km 중 42%에 해당한다. 이 구간의 국경선은 전 구간에 걸쳐 '산맥을 따라' 이어진다. 이것이 동 구간의 국경선 통과 지점과 방향을 나타내 주는 전반적인 특성이다.

1861년 6월 16일자 '국경설명서'에는 벨렌허 하구에서 후비투 강 하구까지 "산맥을 따라" 통과하는 국경선 통과 지점이 변경되고 있다.

먼저 국경은 벨렌허 하구에 있는 국경표주 《K》로부터 한카호와 무린허 사이의 분수령선이 한쪽의 쉰이편허와 다른 쪽의 한카호 및 무린허 사이의 분수령선과 만나는 지점에 있는 국경표주 《H》까지 산맥을 따라 이어진다. 이 산맥을 통과하는 국경선의 총연장은 108km이다.

이어 국경은 국경표주 《H》으로부터 산맥을 따라서가 아니라 산맥에서 직선으로 후비투 강 하구까지 이어진다. 이 직선은 분수령선이 아니며 쉰이편허와의 교차점에서 강의 집수구역을 북쪽으로부터 남남동쪽으로 사실상 수직으로 가로지른다. 이 직선의 거리는 75km이다.

따라서 '산맥을 따라'라는 표현은 국경표주 《K》와 국경표주 《H》간의

<sup>100</sup> 트카첸코(1998), 120쪽.

구간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산맥은 자연적인 분수령, 여기서는 한카호와 무린허로 유입되는 두 강 사이의 분수령선으로 이해된다.

1861년 ‘국경설정 설명서’에는 국경표주 《I》에서 《H》까지의 국경선은 단순히 산맥을 따라서가 아니라 ‘산 정상’을 따라 이어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국경선이 산 정상을 통과하는 경우는 국경표주 《I》에서 《H》까지의 전 구간이 아니라 산 정상이 분명하게 드러남으로써 분수령선을 명확하게 그을 수 있는 구간에서만 적용된다. 현재 이 산맥의 명칭은 포그라니치니(Pogranichny) 산맥이다. 이 산맥은 하산구에 있는 총연장 13km의 ‘분쟁지역’ 남쪽 약 12km 지점에서 시작된다.

하산구에 있는 총연장 13km의 ‘분쟁지역’ 동북쪽 3km 지점에 있는 국경표주 《I》에 대해서는 1861년 6월 16일자 ‘국경설명서’와 1861년 ‘국경설정 설명서’에서 공통점이 발견된다. 첫 번째 문건에는 국경표주 《I》이 “상기 분수령선에” 설치된다고 명시된 반면에 두 번째 문건에는 “한카호와 무린허 사이의 분수령선 표면에 설치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러시아어 해석사전』에 따르면 분수령이란 둘 이상의 하천 유역 사이에 있는 높이 솟은 지형이다.<sup>101</sup> 따라서 확연히 드러난 분수령선만을 분수령으로 볼 필요는 없다. 상대적으로 평탄한 산악 고지대 심지어 강이나 호수 집수구역 위로 솟아오른 고위 평탄면 또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국경표주 《I》 남서쪽으로 이어지는 약 18km 구간의 국경이 바로 이러한 분수령을 통과한다.

---

<sup>101</sup> 오제고프(S. B. Ozhegov)·시베도바(N. U. Shvedova)(1997), 『러시아어 해석사전』 4차 증보판, 모스크바 : Azbukovnikov, 90쪽.

그러나 국경표주 《H》의 위치는 막연한 의미의 분수령이나 광역분수령이 아니라 2개 분수령 산맥의 합류지점으로 더욱 확실하게 명시돼 있다. 따라서 2개 분수령선의 합류지점이라는 개념은 2개의 집수구역, 즉 한카호와 무린허 사이의 ‘분수령 표면’ 개념과 달리 매우 구체적이다.

양국은 25년이 지난 후 연해 변경주 러·중 간 국경재설정 작업 과정에서 1886년 9월 28일자 의정서를 통해서 한카구의 13km ‘분쟁지역’을 포함한 국경표주 《Ⅱ》 남서쪽 18km 구간의 국경은 ‘고위 평탄면’을 통과한다고 규정했다. 동 평탄면은 해발 100~200m상에 있다. 또 “물과 나무가 없는 이 고위 평탄면은 스텝지역으로 분수령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 이어지고 있다. 이 경우 여기에 단 한마디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선이 아닌 모든 고위 평탄면이 분수령이라고 언급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적은 1861년 ‘국경설정 설명서’에 따라 이 구간 국경지역의 분수령 표면에 설치된 국경표주 《Ⅱ》의 설치 설명서와도 전적으로 일치한다.

“1930년대 영구진지를 구축하기 위해 국경선을 고려하지 않고 중국 영토를 일방적으로 점유했다”면서 “세월이 지나치게 많이 흘렀다”는 러시아 외무부 관리 키레예프와 코지레프의 주장은 문서 분석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문서 분석에 따르면 총연장 13km의 ‘분쟁지역’으로 상기 언급한 한카구의 고위 평탄면을 통과하는 국경선은 1886년 국경재설정 당시 러시아와 중국 관리들이 공동으로 직선을 포함한 자신들에게 편리한 그 어떤 방법으로든 설정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 구간의 국경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유일한 문서인 1886년 9월 28일자 의정서 원문에 국경선이 무린허와 벨렌허의 분수령이기도 한 고위 평

탄면을 통과한다고만 기술돼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는 곧 모든 고위 평탄면이 분수령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이 지형을 따라 설정된 국경선이 러·중 양국 국경설정위원들이 서명·날인한 2부의 지도(축척 1 : 42,000 : 지도상 거리 1cm는 실제 거리 420m)로 작성되어 양측이 각각 1부씩 나눠 가졌다. 따라서 1991년 동부국경협정 체결에 앞서 노보키옴스크 의정서들 중 1886년 6월 22일자 제1의정서에 의해 ‘참고문건’으로 지정되어 ‘영원히 신성하고 훼손되지 않게’ 러시아와 중국 외교부에 보관돼 있는 동 지도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국경선이 올바르게 통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 이들 지도상의 실제 거리 13km는 지도상의 31cm에 해당한다. 이것은 한카구의 동 구간을 통과하는 국경선이 합의된 국경선에서 어디에서 어느 정도 이탈했는지를 파악하기에 충분한 거리이다. 만일 실제 국경선이 1886년 지도에 합의 반영된 국경선과 차이가 없다면 ‘국경선 이동’이라고 할 수 없다. 지도상에 국경선이 직선으로 통과하고, 따라서 국경설정 지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은 1886년 9월 28일자 의정서 원문에 어긋나지 않는다.

물론 1886년 양측이 눈대중으로 대충 분수령을 정하고 그에 따라 국경선을 직선으로 설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이것은 이 13km의 ‘분쟁지역’이 포함된 총연장 18km 구간에 대한 1886년 9월 28일자 의정서의 내용과 어긋나지 않는다. 1861년 6월 16일자 ‘국경설명서’에서 국경선은 “벨렌허(투르강) 하구에서 후비투 강 하구까지 산맥, 즉 한카호와 무린허로 유입되는 두 강 사이에 있는 자연적인 분수령을 따라 통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산맥 혹은 분수령은 포그라니치니 산맥을 일컫는 것이지 1886년 9월

28일자 의정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산맥이 전혀 없고 스텝지역으로서 무린허와 벨렌허의 분수령 역할을 하는 그리 높지 않은 총연장 18km의 고위 평탄면(연해 변강주의 물리지도에 회녹색으로 표시돼 있음)으로 돼 있는 동 구간의 국경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벨렌허는 한카호로 유입된다.

1991년 동부국경협정은 동 구간에 대해 그리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다. 동 협정 제2조는 동 구간에 대해 단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국경선은 국경점 《No.18》 [1881년 한카 의정서와 1886년 노보키엠프스크 의정서들의 국경표주 《П》-필자]로부터 무린허의 지류들과 한카호로 유입되는 강들 사이의 분수령을 따라 대체로 남서쪽으로 이어진다.<sup>102</sup>

비록 1861년 6월 16일자 ‘국경설명서’에 담긴 국경통과 조건이 1991년 동부국경협정서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동 협정서에는 1886년 9월 28일자 의정서의 상세기록, 즉 이 지역의 국경이 통과하는 모든 고위 평탄면이 무린허와 벨렌허의 분수령 역할을 한다는 내용은 빠져 있다.

양측은 1991년 국경선 통과 지점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을까? 당연하다. 양측은 무엇이든 합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만일 국경통과 지점이 1886년 국경재설정지도에 명시된 지점과 다른 경우에는 국경이 변경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

<sup>102</sup> 트카첸코(1998), 147쪽.

결론적으로 만일 1886년 지도와 그 후 같은 해 현지 지형에서 실제로 ‘눈대중으로’, 즉 잠정적이고 개략적으로 국경이 설정되었다면 양측은 국경선 통과 지점을 변경하여 이 구간의 분수령선을 획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여기서 이러한 국경선 변경의 경제적·정치적 타당성 문제가 제기된다. 새로운 국경선은 직선으로 이어지는 현행 국경선과 달리 굴곡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양국 모두에 국경수비뿐 아니라 토지이용 또한 어렵게 된다. 또한 만일 새로운 국경선이 국경재설정, 낡은 국경표주의 신규 교체 및 1887년 ‘분쟁지역’의 추가 보조 국경표지 《No.26》 설치 후 합의 작성된 1886년 정밀지도의 국경선과 다르다면 이는 “국경표지 설치 후 양국 간 국경선은 영원히 변경되어서는 아니된다”는 1860년 베이징 조약 제1조의 마지막 부분에 위배된다. 따라서 그 누구에 의해서 혹은 1991년 동부국경협정을 비롯한 그 무엇에 의해서도 파괴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기본협약에 위배되는 것이다. 베이징 조약 제3조는 “추후 발생 가능한 모든 국경 문제는 동 조약 제1, 2조에 준하여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sup>103</sup>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련과 중국이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서 이 지역 양국 간 국경선을 분수령선을 따라 통과하는 것으로 수정하게 된 이상, 국경선이 분수령을 따라 설정된 하산구를 비롯한 연해 변강주의 다른 지역 국경에 대해서도 당연히 분수령선 원칙을 적용하려 들 것이다.

---

<sup>103</sup> 트카첸코(1998), 85쪽.

## 9. 연해 변강주 우수리스크구 국경변경

여덟 번째 국경변경은 연해 변강주 우수리스크(Ussuriysk)구에서 있었다. 이곳 국경표주 《II》가 위치한 우수리스크구 관내 러시아 영토 968ha가 중국에 넘어간다.

우수리스크구에는 매우 귀중한 침엽수와 강도가 높은 활엽수종이 자라는 삼림지대와 사냥터가 아무런 보상 없이 중국에 양도된다. 사람이 살지 않는 이 삼림지대에는 두릅나무와 오미자나무 및 삼나무가 우거진 숲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는 사향노루, 곰, 멧돼지, 청설모가 서식하고 있다. 이 지역을 상실할 경우 우수리스크구와 연해 변강주의 수렵경제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키레예프 대사는 우수리스크구 ‘분쟁지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지역은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곳으로 습지와 소택지가 주를 이루고, 산에만 질이 썩 좋은 삼나무 숲과 특히 다람쥐를 잡을 수 있는 수렵지가 있을 뿐이다.<sup>104</sup>

그런데 ‘분쟁지역’이 지나는 해발 650~700m 높이의 고지대 경사면에 어떻게 해서 습지와 소택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이들 습지나 소택지는 정밀 지형도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러시아 외무부 관계자들은 삼나무가 주를 이루는 이 타이가 지대의

104 『블라디보스토크』(1995. 2. 9), No.24, 6쪽.

대중 양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근거를 대고 있다.

코지레프 외무장관이 나즈드라텐코 연해 변경주 주지사에게 보낸 1995년 6월 6일자 서한에서 발췌했다.

1860(?)~1861년 체결된 조약문서들에 따르면 그라니트나야 강(우수리스크구)은 하구에서 강 발원지에 이르기까지 전 구간이 국경을 이룬다. 그러나 국경표주 《II》는 1860(?)~1861년 체결된 조약문서들에 의해 명시된 장소가 아닌 엉뚱한 곳에 설치돼 있다. 그 결과 그라니트나야 강의 발원지가 러시아령이 되었다. 1991년 동부국경협정서 준비과정에서 국경표주 《II》가 설치된 구간에 대한 영유권이 결정되었다. 이는 19세기 러·중 양국 간 체결된 조약문들에 근거한다.<sup>105</sup>

러시아 카라신(G. B. Karasin) 외무차관이 베데르니코프(V. P. Vedernikov) 연해 변경주 두마 의장에게 보낸 1996년 9월 3일자 서한에서 발췌(같은 자료집)했다.

귀하에게 일부 송부된 국경표주 《II》 일대의 1859년 지도는 사실 조약 문서가 아니다. 이것은 국경설정을 위한 초안이며, 후에 이 초안을 바탕으로 1861년 지도가 작성되어 1861년 국경설명서와 함께 조약의 주요 일부로 1860년 베이징 조약에 첨부된 것이다.

1859년 시행된 측량은 상기 언급한 구간의 지형을 꽤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홉투 강(그라니트나야 강) 발원지 주변의 굴곡이 잘

105 『러·중 국경 : 문서, 논거, 사실』(1997), 15쪽.

묘사돼 있다. 따라서 귀하에게 송부된 1861년 작성된 지도의 일부에도  
홉투 강 발원지 일대에 대한 동일한 측량도가 반영돼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도뿐 아니라 1860(?)~1861년 체결된 조약문서들  
이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이 문건들에 따르면 그라  
니트나야 강은 하구에서부터 발원지까지 전 구간이 국경 하천으로 명시  
돼 있고, 국경표주 《II》는 이 강 발원지의 분수령에 설치되어야 한다. 알  
려진 바와 같이, 1995년 3월 국경표주 《II》 일대를 특별 방문했던 의회  
대표단과 전문위원회는 일치된 결론에 도달했다(?). 즉 국경표주 《II》는  
조약문서들에 규정된 장소에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sup>106</sup>

국가두마 의원들로 구성된 대표단은 1995년 3월 상반기 연해 변경  
주에 도착하여 국경설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러·중 국경상황에 대해 현  
장점검을 시행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행한 러·중 국경 문제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국가두마 국제관계위원회 루킨 위원장은 특히 카라신 외  
무차관이 베테르니코프 연해 변경주 두마 의장에게 보낸 서신 내용과  
는 다르게 아래와 같은 정반대의 주장을 폈다.

국경설정 작업이 곳곳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매우 부정확한  
지도 문제가 더욱 그렇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모스크바와 극동지  
역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다시 한번 상세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  
를 통해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이다. (중략) 국경설  
정 작업은 복잡한 과정이다. 일부 국경이 불분명하며 이에 따른 다양한

106 『러·중 국경 : 문서, 논거, 사실』(1997), 16쪽.

가설이 존재한다.<sup>107</sup>

도대체 여기 어디에 결론이 갈단 말인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는 다시 며칠 후 행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경표지위원회가 검토한 서류들은 우수리스크 국경 구간 어디에 이른바 국경표주 《Π》가 서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야기한다. 이 국경표주 《Π》는 지도로 볼 때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엉뚱한 곳에 설치된 것으로 주장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다. 베이징 조약에 따라 작성된 지도들은 지나치게 개괄적이었다.<sup>108</sup>

또다시 카라신 차관이 말하는 국가두마 국제관계위원회 위원들의 일치된 결론은 없고 단지 문제만 있을 뿐이었다. 게다가 또다시 카라신 차관이 인용하고 있는 지도들은 심지어 국경설정 문제에 관해 키레예프 대사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지지자 루킨 국제관계위원장의 시각에서 본다면 해도 지나치게 개괄적이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이다. 1:1,050,000 축척지도(지도상 거리 1cm에 실제 거리 10.5km가 들어있었다)에 총연장 약 5km에 달하는 그라니트나야 강 발원지의 굴곡을 상세하게 표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연해 변경주 우수리스크구 지역 러시아 영토의 대 중국 양도 문제에 대해 키레예프 대사는 1995년 5월 12일 러시아 국가두마 청문회에서

107 『블라디보스토크』(1995. 3. 15), 13쪽.

108 『네자비시마야 가제타』(1995. 3. 14).

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수리스크구에서는 1860(?)~1861년 체결된 조약문들에 의해 발원지에서부터 하구에 이르는 그라니트나야 강 전 구간이 국경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고문서 보관소에서 문서도 발견되지 않는 등 알 수 없는 이유로 국경표주 《II》가 이동하여 분수령 산맥이 아닌 그로부터 800m 이탈하여 서 있게 되었다. 그 결과 국경선은 19세기 체결된 문서들에 명시된 바와 달리 그라니트나야 강 전 구간이 아닌 일부 구간만을 통과하게 되었다. 다시 한 번 반복하건대 뚜렷한 이유 없이 국경표주가 이동함으로써 형성된 이 구역의 면적은 약 960ha, 즉 약 10km<sup>2</sup>이다. 1991년 동부국경협정은 국경통과 조약, 즉 국경선이 그라니트나야 강 전 구간을 통과하는 것으로 복원하고 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에게는 국경이 그라니트나야 강 전 구간을 통과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복원하지 못할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 물론 1886년 국경실사작업 이후 체결된 다양한 협정서에서는 일부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sup>109</sup>

문서들을 살펴보자.

이 지역 국경통과 지점에 대해서는 1860년 베이징 조약 제1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양국 간 국경선은 산맥을 따라 후비투 강(홉투 강) 하구로 이어지며, 여기서 다시 훈춘 강과 바다 사이의 산을 따라 두만강까지 이어진다.<sup>110</sup>

<sup>109</sup> 러시아연방 하원(1995), 『회의 속기록』, 55쪽.

<sup>110</sup> 트카첸코(1998), 84쪽.

1860년 11월 2일자 베이징 추가 조약 제1, 3조를 바탕으로 작성된 1861년 6월 16일자 우수리 강에서 해안까지의 러시아제국과 대청제국 간 국경설명서'에는 이 구간의 국경통과 지점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홋투 강 하구에서 출발한 국경선은 강을 따라 위로 최정상까지 이어지며 이어서 조약문에 명시된 대로 분수령을 따라 이어진다. 국경표주 《O》는 홋투 강 좌안 하구에 설치된다. 국경표주 《Π》는 홋투 강 발원지 부근 분수령에 설치된다.<sup>111</sup>

'1861년 우수리 강에서 두만강 하구까지의 러시아제국과 대청제국 간 국경설정 설명서'에는 이 구역을 통과하는 국경선과 국경표주 《Π》의 위치가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홋투 강 하구에서 출발한 국경선은 강을 따라 위로 남동쪽 정상까지 82베르스타 250사젠 이어지며, 이곳에서부터 동남쪽 169도 방향으로 무명천을 따라 분수령에 있는 국경표주 《Π》까지 305사젠 이어진다. (중략) 목제 국경표주는 훈춘계곡, 쉰이퉁허 유역 및 바다로 유입되는 문구 강 사이의 분수령에 설치된다. 국경표주 인근의 산맥에서 북서쪽으로는 홋투 강의 남동쪽 상류가, 남쪽으로는 훈춘 강의 지류 훈치 강이 흐른다. (중략) 국경표주에서 이어지는 국경선은 훈춘 강 수역과 바다로 직접 흘러드는 하천들 사이의 산등성이를 따라 통과한다.<sup>112</sup>

111 트카첸코(1998), 90~91쪽.

우수리스크구의 그라니트나야 강이 마치 1860년 조약 문서들에 의해 하구에서부터 발원지에 이르는 전 구간이 국경 하천으로 확정된 것으로 주장하는 코지레프 러시아 외무장관, 카라신 외무차관, 키레예프 대사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1860년에 체결된 조약은 오직 베이징 조약뿐이다. 그해에는 국경선과 관련한 다른 조약은 베이징 조약 외에는 더 체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베이징 조약에는 국경선이 그라니트나야 강(후비투 강, 홉투 강, 우샤고우 강)을 통과한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다.

더구나 1861년 연해 변경주 리·중 간 국경설정 작업 당시 국경선이 1860년 베이징 조약문에 따라 설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위에 인용된 베이징 조약 제1조의 발췌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경선은 홉투 강 하구에서 훈춘 강과 바다 사이에 위치한 산을 따라 두 만강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국경선은 리·중 공동 국경표지위원회에 의해 사실상 다르게 설정되었는데, 이것이 ‘우수리 강에서 해안까지의 러시아제국과 대청제국 간 국경설명서’에 반영되었다. 이 구간의 국경통과 지점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홉투 강 하구에서 출발한 국경선은 강을 따라 위로 최정상까지 이어지며 이어서 조약에 명시된 대로 분수령을 따라 이어진다.

분계선으로서 ‘하구에서 …… 최정상까지’의 홉투 강은 오직 1861년

112 트카첸코(1998), 97·99쪽.

6월 16일자 ‘국경설명서’에만 등장하며, 베이징 조약(제1조)에서는 이 홉투 강(강의 전 구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베이징 조약 제3조에 의해서도 “추후 발생 가능한 모든 국경 문제는 동 조약 제1, 2조에 준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경선의 위치와 방향, 즉 국경설정을 규정한 법적 의미를 갖는 기본 문건은 다른 아닌 베이징 조약인 것이다.

국경표지위원회가 후비투 강(홉투 강, 우샤오우 강, 그라니트나야 강) 전 구간에 걸친 국경선을 1860년 베이징 조약문과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국경획정과 국경설정 간의 차이가 발생했으며, 이는 당연히 합법적이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맨 처음 주목한 사람은 코로츠키(A. M. Korotky) 지리학 박사(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태평양지리연구소)였다. 연해 변경주 당국의 과제에 따라 코로츠키 박사가 이끄는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국립극동대학, 극동 군관구 파르티잔스크 측지부대, 연해 변경주 우수리스크구 구청, 제9차 국경설정 실무그룹 소속 학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 ‘국경 인접 구역과 국경표주 《Π》가 위치한 지형연구 및 문서분석 결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

1860년 10월 2일자 추가조약 제1조는 후비투 강(홉투 강) 하구에서 두만강까지의 국경 구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국경선은 후비투 강 하구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훈춘 강과 바다 사이의 산을 따라 두만강까지 이어진다. 여기서 동쪽의 영토는 러시아령으로 하고, 서쪽의 영토는 중국령으로 한다.’(러시아 외무부 산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 고문서 보관

소, 장서분류『조약집』, 목록 466, 문서번호 881/157, 리스트 1~14).

알 수 없는 이유로 동 구간의 러·중 국경선은 ‘국경설명서’(러시아 의 무부 산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 고문서 보관소, 장서분류『조약집』, 목록 466, 문서번호 883호)에 의거하여 다르게 설정되었다.

홋투 강 하구에서 출발한 국경선은 강을 따라 위로 최정상까지 이어지며 이어서 ‘조약’에 명시된 대로 분수령을 따라 이어진다.

‘추가조약’과 ‘국경설명서’의 분석을 통해서 ‘조약에 명시된 문자 그대로’라는 표현은 후반부, 즉 ‘이어서 분수령을 따라’라는 내용의 후반부에만 해당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참고 : ‘추가조약’ 제1조).

‘추가조약’은 국경선의 위치를 단지 전체적인 틀에서만 정하고 그 구체적인 통과 지점은 ‘국경설명서’에 의해 결정된다는 러·중 국경회담 러시아 측 전문가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국경설명서’에 명시된 국경선의 위치와 홋투 강 하구에서부터 훈춘 강과 바다 사이의 산을 따라 이어진다고 정확하게 명시된 ‘추가조약’상의 국경선의 위치 사이에는 너무 큰 차이가 난다. ‘홋투 강’은 추가조약에 국경설정 기준으로는 언급되지 않았다. 다른 곳에서는 하바롭스크 변강주와 연해 변강주의 러·중 국경선은 정확하게 추가조약 원문을 바탕으로 설정되었다.

계속해서 우수리 강 하구로부터 헨카이 호수까지 국경선은 우수리 강과 순가차 강을 따라 이어지고 …… 그 후 순가차 강 발원지에서 출발한 양국 간 국경선은 헨카이 호수를 가로질러 벨렌허까지 이어지며, 벨렌

허 하구에서부터는 산맥을 따라 홉투 강(후비투 강) 하구 쪽으로 이어진다. (중략)

여기서 다시 한 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추가조약’에 반하여 설정된 국경선은 후비투 강 하구에서 691.5고지까지의 구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코룻키 박사의 판단에 따르면 러·중 국경선이 홉투 강(그라니트나야 강) 하구 남서쪽에 위치한 분수령 산맥에서 동쪽 홉투 강 전 구간으로 이동함으로써 러시아는 약 5000km<sup>2</sup>의 영토를 중국에 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1861년 시행된 국경설정이 1860년 베이징 조약에 반하여 이루어진 결과이다.

1860년 베이징 조약 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러·중 국경선이 그라니트나야 강(우샤고우 강, 후비투 강, 홉투 강)의 하구에서 발원지까지 전 구간을 통과한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다. 또한 코지레프 전 러시아 외무장관과 카라신 외무차관이 나즈드라텐코 연해 변경주 주지사 와 베데르니코프 두마 의장에게 보낸 공식서한에서 밝힌 주장과 키레예프 대사가 러시아 국가두마 청문회에서 밝힌 주장은 사실과 크게 어긋난다. 이러한 주장은 러시아 주체의 공식인사들에 대한 답변을 통해 드러난 공개적인 거짓이며 국가두마 의원들에 대한 명백한 기만행위이다. 문제는 국가두마 의원들이 물론 이 분야와 관련 문제에 대해 정통한 학자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데 있다.

미국의회 청문회에서는 의원들을 속인 대가로 국무장관이 해임될 뻔 했으며, 빌 클린턴(B. Clinton) 미국 대통령은 특별 청문회에서 의원들에게 거짓을 말한 대가로 탄핵 절차를 감내해야 했다. 그러나 이것은

(비록 절차적인 면에서나마) 민주국가인 미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만일 1995년 5월 12일 러시아 국가두마에서 열린 청문회 보고서에서 밝힌 키레예프 대사의 발언, 즉 “국경선은 …… 19세기 체결된 조약들에 명시된 바와는 달리 강의 전 구간을 따라 통과하는 것이 아니며” “1991년 동부국경협정은 국경통과 조약, 즉 국경선이 그라니트나야 강 전 구간을 통과하는 것으로 복원하고” “우리가 국경이 그라니트나야 강 전 구간을 통과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복원하지 못할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는 주장에 따르면 그라니트나야 강 전 구간에 따라 국경선을 설정해야 하는 한편 정확히 어떤 조약문을 그와 같은 국경설정의 근거로 삼아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또 1860년 베이징 조약을 근거로 삼아 동 조약에 명시하고 있는 합의된 국경선 통과 지점을 복원한다면 국경선은 우리가 위에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라니트나야 강 전 구간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서쪽에 위치한 그라니트나야 강(후비투 강, 홉투 강) 하구에서부터 ‘훈춘 강과 바다 사이의 산을 따라 두만강까지’ 이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훈춘 강과 썬이펀허 및 그 우측 지류인 홉투 강, 그리고 아무르만과 포트르대제 만, 다시 말해 동해로 직접 유입되는 암바 강, 문구 강 등 소규모 하천들 사이의 분수령을 따라 이어져야 한다.

1861년 한카 의정서에 첨부된 국경설정문서들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국경선이 그라니트나야 강 하구에서부터 키레예프 대사가 주장하는 발원지까지 이어질 수 없다.

실제로 1861년 6월 16일자 ‘국경설명서’에는 후비투 강을 따라 통과하는 국경선 통과 지점이 다음과 같이 전체적인 윤곽만 기술돼 있을 뿐이다.

홉투 강 하구에서 출발한 국경선은 강을 따라 위로 최정상까지 이어지며 …… 국경표주 《II》는 후비투 강 발원지 부근의 분수령에 설치된다.

동 ‘국경설명서’에서 후비투 강의 정상이라는 개념은 매우 모호하다.

『러시아어 해석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강의 정상은 강의 상부이며,<sup>113</sup> 하천 상류는 발원지에 가까운 부분이다.<sup>114</sup> 알려진 바와 같이 후비투 강(그라니트나야 강)에는 발원지가 많다. ‘강을 따라 위로 최정상까지 이어지며’라는 표현은 국경이 강의 구체적인 발원지나, 강이 시작되는 구체적인 출발점이 아니라 이 강의 정상(상류)이 시작되는 곳까지만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후비투 강 발원지 부근의 분수령’에 설치된 매우 중요한 국경표주 《II》와 관련, 이 ‘국경설명서’에는 무엇을 이 강의 발원지로 삼았는지에 대해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 잘 알려진 바대로 국경표주 《II》가 설치된 그라니트나야 강에는 수많은 지류와 함께 8개의 발원지가 있다. 더구나 이와 같이 모호한 ‘국경설명서’대로라면 국경표주 《II》는 꼭 후비투 강 발원지의 시작점과 일치하지 않지만 발원지 주변 어딘가에 설치될 수도 있다.

연해 변강주 하천들이 갖는 특징은 하상뿐 아니라 발원지까지도 자주 변화한다는 데 있다. 그라니트나야 강(우샤고우 강)의 발원지 또한 어느 정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소연방 기상청 공식자료 <표 2> No.1025를 통해서 우샤고우 강과

113 오제고프·시베도바(1997), 76쪽.

114 오제고프·시베도바(1997), 75쪽.

그 발원지에 대한 현황을 알 수 있다.

우샤고우 강은 썩이편허 우측 지류로 썩이편허 하구에서부터 191km 지점에서 합류하며, 수류의 길이는 99km이다.<sup>115</sup>

〈표 2〉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설이 첨부돼 있다.

이 강은 레스노이(Lesnoy) 천과 드보이노이(Dvoynoy) 천이 합류하여 이루어진다.<sup>116</sup>

이와 같이 그라니트나야 강에 대한 현대의 공식적인 관점에서 출발한다면 그라니트나야 강(우샤고우 강)의 발원지는 현지 지형에 고착되지 않고 다른 두 하천(혹은 개천)이 합류함으로써 파생된다. 따라서 그라니트나야 강의 발원지는 계속 동등 ‘떠 다닐’ 수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1994년 12월 9일 러시아 국가두마 국제관계위원회 확대회의 리·중 동부국경 표지작업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키레예프 대사가 밝힌 주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여기서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 따라 중국 측에 내줘야 하는 우수리스크구의 그라니트나야 강 발원지 형성지점을 ‘습지, 소택지’로 규정했다.<sup>117</sup> 이 같은 습지에서는 하천의 하상이

<sup>115</sup> 소련 지표수자원(1964), 『수리학적 연구』 제18권, 극동, 제2판, 레닌그라드 : Gidrometeoizdast, 40쪽.

<sup>116</sup> 소련 지표수자원(1964), 『수리학적 연구』 제18권, 극동, 제2판, 44쪽.

<sup>117</sup> “러시아연방 하원은 러시아 국경을 어떻게 《변경하고 있는가》”, 『블라디보스토크』(1995. 2. 9), No.24, 6쪽.

특히 불안정하다. 그러나 그라니트나야 강에 관한 현대적 관점이 100년이 훨씬 더 지난 관점과 일치할 수 있을까?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1886년 ‘노보키엡스크 의정서’에 첨부된 정밀 지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지도는 지도상 거리 1cm가 실제 거리 420m를 의미하는 축척 1 : 42,000 지도이다. 따라서 880m의 ‘이동’ 거리는 지도상에 2cm로 표시될 것이며, 이는 진실을 규명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만일 “그리고 모든 것은 지도에 표시된 붉은 선과 일치한다”는 ‘국경설명서’ 마지막 단락에 따르면 이 지도는 (1860년, 1861년 지도와 마찬가지로) 매우 평범하며, 적용된 축척으로 그라니트나야 강(후비투 강) 상류의 국경선 통과 지점을 상세하게 표시하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앞에 언급한 1861년 6월 16일자 ‘국경설명서’는 국경선의 통과 지점을 그저 개략적으로만 기술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동 ‘국경설명서’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해답을 제시하기보다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야기하고 있다.

1861년 6월 16일자 ‘우수리 강에서 해안까지의 러시아제국과 대청제국 간 국경설명서’의 본문 자체는 발표된 원문 형태로 볼 때 총 한 페이지 반 분량으로 우측 한 쪽을 차지하고 있다. 좌측에는 1860년 베이징 조약에 따른 동 구간 국경선에 대한 더 간단한 특징이 제시돼 있다. 1861년 6월 16일자 ‘국경설명서’의 원본은 러시아 외무부 산하 제정 러시아 대외정책 고문서 보관소에 소장돼 있다(장서분류 『조약집』, 목록 466, 문서번호 883).

동 구간을 통과하는 러·중 국경선에 대한 더 구체적인 특징은 또 다른 국경설명서, 즉 앞에 언급한 1861년 6월 16일자 ‘국경설명서’와 함

계 한카 의정서의 부속서(베이징 조약 추가조항)로 첨부된 ‘1861년 우수리 강에서 해안까지의 러시아제국과 대청제국 간 국경설정 설명서’에 나타나 있다. 동 국경설명서에는 1861년 설치된 7개의 국경표주 《I》, 《K》, 《II》, 《H》, 《O》, 《Π》, 《T》가 기술돼 있다. 앞의 모든 국경표주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돼 있다.

위도와 경도의 도, 분, 초 등 국경표주 각각의 지리적 위치, 자기자오선이 표기된 전반적인 국경선 방향에 따른 각도, 표주들 간의 거리 등.

주석에는 각 표주의 위치와 표주들 간 국경선의 특성이 1861년 6월 16일 자 ‘국경설명서’에서보다 훨씬 더 상세히 기술돼 있다. 두 번째 ‘국경설명서’의 원문은 8페이지로 작성되었다.<sup>118</sup> 1861년 ‘국경표주 설치 설명서’ 원본은 러시아 외무부 산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 고문서 보관소에 소장돼 있다(장서분류 『조약집』, 목록 466, 문서번호 884).

두 ‘국경설명서’의 본문을 비교해 보자. 첫 번째, 1861년 6월 16일자 ‘국경설명서’에는 “홋투 강 하구에서 출발한 국경선은 강을 따라 위로 최정상까지, 이어서 분수령을 따라 이어진다”라고 기술되어 있는 반면에 두 번째, 1861년 ‘국경설정 설명서’에는 “홋투 강 하구에서 출발한 국경선은 강을 따라 위로 남동쪽 정상까지 82베르스타 250사젠 이어지며 이곳에서부터 남동쪽 169도 방향으로 무명천을 따라 분수령에 있는 국경표주 《II》까지 305사젠 이어진다”고 기술돼 있다.

두 번째 ‘국경설명서’에는 국경선 통과 지점이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

<sup>118</sup> 트카첸코(1998), 92~99쪽.

으로 명시돼 있다. 후비투 강 남동쪽 정상으로부터 국경표주 《Ⅱ》까지의 거리와 방위각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또한 첫 번째 국경설명서에는 국경선이 ‘최정상까지’ 이어진다고 명시돼 있지만 두 번째 국경설명서는 이를 후비투 강 남동쪽 정상으로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1861년 ‘국경설정 설명서’의 ‘국경선 상에 설치된 표주들 간의 거리’에 관한 항목에는 국경표주 《O》에서 국경표주 《Ⅱ》까지의 거리가 83베르스타 55사젠으로 기록돼 있다.<sup>119</sup> 아울러 홉투 강 하구에서 출발한 국경선은 강을 따라 위로 남동쪽 정상까지 82베르스타 250사젠 이어지며, 여기서부터 무명천을 따라 분수령에 있는 국경표주 《Ⅱ》까지 겨우 305사젠(650m) 이어진다. 1베르스타(1066.8m)는 500사젠이며, 1사젠은 2.1336m이다.

후비투 강 정상의 국경선과 관련하여 남동쪽 169도 방향에 위치한 국경표주 《Ⅱ》까지 305사젠 이어지는 무명천을 후비투 강 발원지(강의 정상 혹은 상부)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국경표주 《Ⅱ》의 위치와 관련하여 첫 번째 국경설명서에는 “국경표주 《Ⅱ》는 후비투 강 발원지 부근의 분수령에 있다”고 기술돼 있고, 두 번째 국경설명서에는 “목제 국경표주는 훈춘 강, 썬이핀허 유역 및 바다로 유입되는 문구 강 사이의 분수령에 설치된다. 국경표주 인근의 산맥으로부터 북서쪽으로 홉투 강의 남동쪽 상류가, 남쪽으로 훈춘 강의 지류 훈치 강이 흐른다”고 명시돼 있다.

국경표주 《Ⅱ》의 위치를 기술한 첫 번째 국경설명서의 본문은 지나치게 짧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국

<sup>119</sup> 트카첸코(1998), 96쪽.

경표주 《Π》가 1861년 6월 16일자 ‘국경설명서’와 베이징 조약 제1조에 명시된 것처럼 “훈춘 강과 바다 사이의 산을 따라 두만강까지” 이어지는 후비투 강 발원지 부근의 분수령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수령의 개념은 이제 두 번째 국경설명서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 분수령은 중국령의 훈춘 강과 표트르대제 만으로 유입되는 러시아령 몬구 강(당시 지도 : 시데미 강, 현대 지도 : 나르바 강) 사이의 분수령이다. 훈춘 강과 몬구 강은 쓰이편허와 후비투 강(우샤고우 강, 그라니트나야 강)을 비롯한 표트르대제 만으로 유입되는 강 유역으로부터 분수령 산맥에 의해 분리된다. 당시 지도에는 훈춘 강과 몬구 강 사이에 위치한 분수령 산맥은 초르니(Chorny)산으로 기록되고, 이들 하천과 쓰이편허(라즈돌나야 강) 유역 사이에 있는 분수령 산맥은 뤼쓰링(洛斯珪)산으로 명명돼 있다.

국경표주 《Π》는 1886년에서 있던 그 장소에 그 이전 시기, 즉 늦어도 1877년부터 1991년 동부국경협정 체결 순간까지 존재했었다는 사실이 다양한 문건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 게다가 러시아 국경수비대 중앙 고문서 보관소의 여러 문서(장서분류 14, 목록 215, 보관 단위 61, 리스트 29~31)에 따르면 연해 변경주 우수리스크구 대중 국경지대에 1877년 6월 5일 러시아 측의 동의에 따라 1861년 러·중 국경설명서를 바탕으로 훈춘 연대장 남기엔(Namgien)에 의해 일방적으로 ‘문제의’ 목제 국경표주 《Π》가 복원되었다. 그 후 1886년 동 구간의 양국 간 국경에 대한 정밀실사 후 목제 국경표주 《Π》는 석제(회색 현무암으로 제작)로 교체되고 이에 관한 의정서가 작성되었다. 동 석제표주는 설치 후 110년 이상, 즉 1997년 말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있었다.

1886년 9월 20일 노보키엡스크 마을에서 체결된 ‘양국 간 국경 정밀

실사 대상 제3구간에 관한 의정서'는 1886년에 국경표주 《Ⅱ》는 1877년 중국 측에 의해 복원된 바로 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제시해 준다. 1886년 9월 20일 체결된 동 의정서에는 의정서 작성 당시 국경표주 《H》, 《O》, 《T》와는 달리 국경표주 《Ⅱ》가 이전의 위치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국경표주 《Ⅱ》는 소·중 동부국경협정서가 체결된 1991년에도 같은 장소에서 있었다. 따라서 국경표주 《Ⅱ》의 위치는 적어도 120년간 변동이 없었다.

1886년 9월 20일 체결된 노보키옴스크 의정서에 따르면 국경 제3구간은 국경표주 《P》에서 우샤고우 강(홉투 강, 그라니트나야 강) 하구까지였다. 제3구간의 거리는 128베르스타 345사젠이었다. 국경선은 분수령 산맥을 따라 국경표주 《Ⅱ》까지 이어지고, 이어서 북서쪽으로 하천을 따라 통과하다가 동 하천이 우샤고우 강에 유입되는 지점까지 이어졌다. 그 후에는 이 우샤고우 강을 따라 강 하구까지 이어졌다.

중국 측의 국경표주 《Ⅱ》에 대한 이전 요구는 문서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의 '의정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국경표주 《Ⅱ》는 훈춘 강 및 암바벨리 강 정상과 우샤고우 강의 지류 사이에 있는 뤼쓰링산 분수령 산맥에 위치한다. 동 표주로부터 2개의 작은 길이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남서쪽 중국의 훈춘으로 이어지고 다른 하나는 우샤고우 강 계곡으로 이어진다. 분수령 산맥에 설치된 국경표주 《P》와 국경표주 《Ⅱ》 간 거리는 32베르스타 275사젠이다.

국경은 국경표주 《Ⅱ》에서 북서쪽으로 하천(현 소베츠키 천)을 따라 우샤고우 강 유입 지점까지 2베르스타 130사젠 이어진다. 이어서 국경은 우샤고우 강을 따라 계속해서 북서쪽으로 중국 측 2개 하천의 우샤고

우 강 유입 지점까지 9베르스타 이어진다. 그 후 국경은 북쪽으로 꺾여 지는 우샤고우 강을 따라 하구까지 이어진다. 우샤고우 강은 국경표주 《Ⅱ》에서 양안이 암벽으로 된 첫 구간 65베르스타를 가파르게 흐른다. 나머지 31베르스타 구간은 매우 완만하게 흐른다. 국경표주 《Ⅱ》에서 우샤고우 강 하구까지의 국경은 총 96베르스타 70사젠이다.<sup>120</sup>

1886년 9월 20일 노보키엡스크 마을에서 체결된 ‘양국 간 국경 정밀 실사 대상 제3구간에 관한 의정서’의 마지막 단락에는 “상기 국경선은 제3구간으로 정밀실사 후 2부 작성된 지도에 표시되었다”고 명시되어 있다.<sup>121</sup>

의정서는 러시아 측의 국경표지위원회 위원장, 연해주 군사령관, 총독, 참모본부 소장 바라노프, 국경표지위원회 위원, 프리아무르 주 군관구 측지과장, 참모본부 소장 술긴, 국경표지위원회 위원, 연해주 참모장, 참모본부 대령 클라도, 남 우수리 변경주 국경수비대장, 6등관 마튜닌과 중국 측의 중국 북방합대사령관 우다칭[吳大澂] 장군, 지린[吉林]성 사령부 훈춘 담당 부사령관, 국경담당 보좌관 이커탕아[依克唐阿]에 의해 서명되었다. 1886년 9월 20일 자 ‘양국 간 국경 정밀실사 대상 제3구간에 관한 의정서’의 원본은 러시아 외무부 산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 고문서 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다(장서분류 『조약집』, 목록 466, 문서번호 905/159, 리스트 13~15).

국경표주 《Ⅱ》의 당시 위치는 (1991년 동부국경협정 체결 이전과 신규

<sup>120</sup> 트카첸코(1998), 112쪽.

<sup>121</sup> 트카첸코(1998), 11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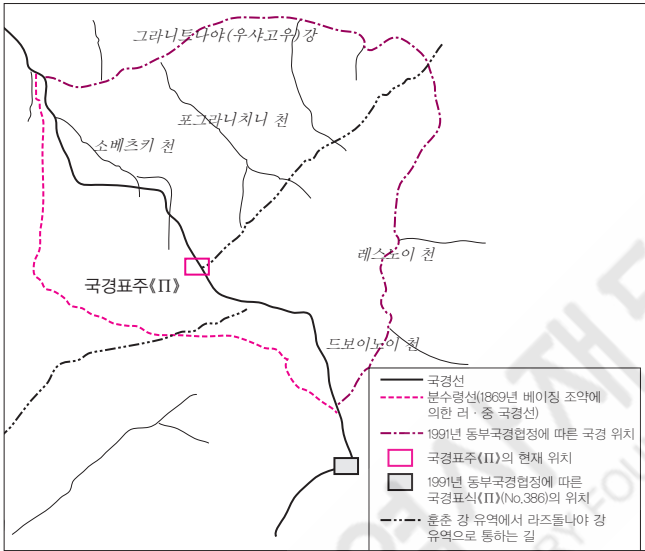


그림 5 연해 변강주 우수리스크구 국경표주 《II》 일대의 러·중 국경 도면

국경표지 《No.383~No.386》이 설치된 1997년 말 이전까지 위에 언급한 국경설명서와 정확히 일치한다. 중국 측은 1861년 러·중 공동 국경표지 위원회에 의해 동 국경표주가 설치된 이래 130년 동안 이 지역 국경선 통과 지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적이 전혀 없으며 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적도 없다.

연해 변강주 우수리스크구 러·중 국경지대 국경표주 《II》가 설치된 ‘분쟁지역’의 위치가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 따른 실제 국경선 통과 지점, 분수령선 및 국경선 도면 그림 5에 소개돼 있다(도면의 원본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태평양 지리연구소 지리학 박사 코룻키가 작성했음).

연해 변강주 당국의 과제에 따라 국경표주 《II》와 이 지역 러·중 국

경 '분쟁지역'의 위치에 대해 1994년 9월 19일부터 1995년 3월 25일까지 국제법 교수이자 법학박사인 미하일로프(V. S. Mikhailov)와 소·중국경 단독실사 부처간 특별위원회(1983~1986) 위원 네스테로프의 자문을 얻어 코룟기 박사가 이끄는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극동국립대학, 극동 군관구 파르티잔스크 측지부대, 연해 변경주 우수리스크 구 구청, 제9차 국경설정 실무그룹 소속 학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연구했다. 동 위원회는 가을, 겨울, 봄 세 차례에 걸쳐 현지 실사를 시행했다.

전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중국 측의 요구에 따르면 국경표주 《II》는 현재와는 다른 곳에 있어야 한다. 즉 그 장소는 바로 수이펀허(이 경우 라즈돌나야 강)와 곧바로 동해로 유입되는 강[이 경우 1861년 국경획정지도 및 국경설정지도에는 각각 암바 강(자나드보롭카 강)과 바라바셴카 강으로, 현대 연해 변경주 지형도에는 자피후 강과 암바벨라 강으로 표기], 그리고 두만강 지류 혼춘 강 유역을 분리해 주는 분수령 산맥에 위치한 그라니트나야 강(우샤고우 강, 후비투 강, 홉투 강)의 발원지이다.

국경표주 《II》의 이동 예상지점은 691.5고지와 일치하며, 현재의 위치에서 국경선을 따라 3.2km 지점에 위치한다.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 따른 러·중 국경선은 그라니트나야 강과 드보이노이 천 하상을 따라 앞에 언급한 고지(현재 국경표지 《No.386》이 설치돼 있다)에 이르도록 돼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그라니트나야 강 남동쪽 발원지 좌안 전체가 중국 측에 양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자신들의 활동 중 1860년 베이징 조약, 1861년 6월 16일자 ‘국경설명서’, 1861년 ‘국경설정(국경표주) 설명서’, 1886년 6월 22일자 ‘국경표주 실사 의정서’, 1886년 9월 20일자 ‘양국 간 국경 정밀실사 대상 제3구간에 관한 의정서’ 등의 원문을 분석하고, 또한 동 지역의 현대적 지형정보를 바탕으로 한 문서 해석과 현대적 개념에 따른 그라니트나야 강의 주 발원지를 밝혀내기 위해 집수구역 구조 및 상류지형 기록의 특성을 연구했다.

후비투 강(그라니트나야 강) 유역구조의 분석 결과 3개의 대규모 발원지 합류지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밝혀졌다. 그라니트나야 강 상류는 3개의 독립적인 집수구역, 즉 길이 18km의 남서쪽 집수구역(北三岔河), 길이 26km의 남쪽 집수구역(南三岔河)과 길이 16km의 남동쪽 집수구역(우샤고우 강)으로 이루어졌다. 남동쪽 발원지의 시발점은 국경표주 Ⅱ 일대의 러·중 국경 도면에 나와 있다.

위원회는 길이가 가장 짧고 유역면적과 유량이 가장 적은 남동쪽 발원지는 관련 국제규정으로 볼 때 후비투 강의 주 발원지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동 국제규정에 따르면 후비투 강의 주 발원지는 남쪽 집수구역, 즉 난싼차허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만일 1861년 6월 16일자 ‘국경설명서’만을 따른다면 국경선은 시발점이 앞의 도면에 표시돼 있는 후비투 강(우샤고우 강)의 남동쪽 발원지가 아니라 앞의 도면에 표시된 국경선보다 10~15km 서쪽에 위치한 남쪽 발원지를 따라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1861년 ‘국경설정 설명서’에는 “후투 강 하구에서 출발한 국경선은 강을 따라 위로 남동쪽 정상까지 이어진다”고 정확하게 기술돼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후비투 강(우샤고우 강)의 남동쪽 발원지만을 살

펴볼 것이다.

거리가 일치하지 않는 점에 주목하자.

1861년 ‘국경설정 설명서’에 따르면 국경표주 《O》에서 국경표주 《II》까지의 거리는 83베르스타 55사젠이다. 여기에는 후비투 강 하구에서 강을 따라 위로 남동쪽 정상을 지나 무명천까지의 국경선 82베르스타 250사젠과 무명천을 통과하는 국경선 305사젠이 포함된다. 국경표주 《O》에 대한 기술을 통해 볼 때 홉투 강 하구는 강 좌안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곳 수이편허 계곡의 언덕 위, 두 강의 합류지점에서 3베르스타 162.5사젠 떨어진 곳에 동 국경표주가 설치돼 있다. 이렇게 볼 때 3베르스타 162.5사젠은 위의 83베르스타 55사젠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홉투 강 하구에서부터 곧바로 국경표주 《O》까지 이어서 홉투 강과 그 남동쪽 정상 및 무명천을 지나 국경표주 《II》까지의 거리는 총 86베르스타 217.5사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1886년 9월 20일 체결된 ‘양국 간 국경 정밀실사 대상 제3구간에 관한 의정서’에 따르면 우샤고우 강(홉투 강)의 하구에서부터 국경표주 《II》까지의 국경선은 총 96베르스타 70사젠이다. 여기에는 남동쪽 정상을 통과하는 9베르스타와 무명천(현 소비츠키 천)을 통과하는 2베르스타 130사젠이 포함된다.

1861년 ‘국경설정 설명서’와 1886년 9월 20일자 ‘의정서’에 따른 후비투 강 하구에서부터 국경표주 《II》까지의 거리 차이가 9베르스타 352.5사젠(10.35km)이다.

1861년 ‘국경설정 설명서’에 따르면 후비투 강 하구에서부터 위로 남동쪽 정상을 지나 무명천이 유입되는 지점까지의 거리는 85베르스타 412.5사젠이지만, 1886년 ‘의정서’에 따르면 우샤고우 강(후비투 강)

하구에서부터 위로 남동쪽 정상을 지나 무명천이 유입되는 지점까지의 거리는 93베르스타 440사젠이다. 더구나 여기에는 우샤고우 강 남동쪽 발원지의 길이 9베르스타가 포함돼 있다.

우샤고우 강 하구에서부터 중국 측 두 하천(남쪽 및 남서쪽 발원지)이 우샤고우 강으로 유입되는 지점, 즉 ‘우샤고우 강의 3개 대규모 발원지가 합류하는 지점’까지의 우샤고우 강 자체의 길이는 84베르스타 440사젠이다. 코룻키 박사팀이 작성한 분석자료의 집필자들은 이 3개의 발원지를 “중국의 수리 전통에 따르면 우샤고우 강의 발원지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1861년 ‘국경설정 설명서’에 명시된 후비투 강 남동쪽 상류를 지나 무명천이 유입되는 지점까지의 국경선의 길이는 472.5사젠(0.945베르스타 혹은 1008m)에 불과한 것이다.

이 수치는 85베르스타 412.5사젠(후비투 강 하구에서부터 무명천이 유입되는 지점까지의 거리)에서 84베르스타 440사젠(후비투 강 하구부터 남동쪽 상류의 출발점까지 혹은 3개 대규모 발원지의 합류지점까지 혹은 후비투 강 발원지까지의 후비투 강 길이)을 뺀 나머지이다.

후비투 강의 3개 정상이 만나는 지점, 즉 (중국의 수리 전통에 따른) 발원지에서부터 1861년 ‘후비투 강 발원지 부근의 분수령에’ 설치 당시의 국경표주 《Ⅱ》까지는 겨우 1베르스타 277.5사젠(1659m)에 불과하다. 이는 1861년 6월 16일자 ‘국경설명서’에 명시된 “국경표주 《Ⅱ》는 후비투 강 발원지 부근의 분수령에 있다”는 개괄적인 설명과 전적으로 일치한다.

이와 같이 만일 1861년 국경설정문건들의 내용을 글자 그대로 엄밀하게 해석한다면 국경표주 《Ⅱ》는 목제 대신 석제로 교체, 복원되어 현재의 위치, 즉 1997년말까지 서 있던 소베츠키 천 발원지 부근이 아니

라 그보다 북서쪽 10km 지점, 즉 후비투 강(그라니트나야 강)의 3개 주요 발원지의 합류지점으로 판단되는 후비투 강의 발원지 남쪽 1.5km 지점에 설치되었어야 했다. 이어서 국경선은 국경표주 《Ⅱ》에서부터 후비투 강의 남쪽 발원지와 남동쪽 발원지 사이의 분수령을 따라 남남동쪽으로 이어졌어야만 했다.

따라서 만일 1861년 6월 16일자 ‘국경설명서’와 1861년 ‘국경설정 설명서’ 등 1861년의 각종 조약문건을 국경표주 《Ⅱ》가 설치된 ‘분쟁지역’의 영유권 문제해결 단서로 삼는다면 1991년 동부국경협정 준비과정에서 얻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국경선은 그라니트나야 강 남동쪽 정상을 통과하는 사실상의 국경보다 서쪽으로 통과해야만 했다. 게다가 이 문건들에 따르면 국경선이 레스노이 천과 드보이노이 천이 합류하여 형성되는 그라니트나야 강 발원지까지, 나아가 위로 드보이노이 천과 남남서쪽의 분지를 지나 1991년 동부국경협정 제2조에 명시된 바와는 달리 691.1고지까지는 결코 도달할 수 없다.

1860년 베이징 조약에 첨부되어 1861년 서명된 국경획정지도, 1861년 한카 의정서에 첨부되어 같은 해 서명된 우수리 강 하구에서부터 두만강까지의 국경설정지도와 함께 앞에 언급된 1861년 두 건의 ‘국경설명서’ 해석에 따르면 이 지도들은 지나치게 개괄적이며, 또한 1860년 베이징 조약을 바탕으로 1861년 설정된 러·중 간 국경 실사에 관한 1886년 6월 22일자 노보키옴스크 의정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1861년 교환된 지도상 일부 구간의 붉은 선은 매우 부정확하게 표시되었다.

실제로 연해 변강주 러·중 국경선은 1861년 작성된 지도상에 표시

된 국경선과 전반적인 맥락에서만 일치할 뿐 주요 세부사항에서는 상당부분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 국경수비대 중장 네슈모프와 러시아군 참모본부 중령 골루프의 주장을 인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국제법상 기본은 조약문 자체이며 조약문과 별첨 지도가 상이할 경우 조약문이 우선한다는 사실이다.<sup>122</sup>

그러나 1861년 체결된 조약문들은 국경표주 《Π》를 691,1고지로 이동함으로써 사실상의 현 국경선을 동쪽으로 이동하고 중국 측에 968ha의 러시아 영토를 이양해야 한다는 어떠한 근거도 명시돼 있지 않다. 상황은 오히려 정반대가 돼야 한다. 즉 국경표주 《Π》는 훨씬 더 북서쪽에 설치돼야 하며, 국경선은 사실상의 현 국경선 서쪽으로 통과해야 한다(1991년 기준).

러·중 국경선은 1886년에 재설정되었다. 다시 말해 정밀실사를 통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두만강 하구에서부터 벨렌허 하구에 이르는 국경 전 구간에 걸쳐 작성된 대축척(정밀) 지도에 기술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국경표주가 설치된 11개 지역과 보조 국경표지가 설치된 26개 지역에 대한 각각의 정밀 지형도가 작성되었다. 바로 이 문건들(관련 노보키엵스크 의정서에 명시된 기술, 지도 및 지형도)은 향후 참고에 실효적인 자료들이다. 한가 의정서의 일부인 1861년 ‘국경설명서들’은 수정되었다. 즉 설명서들은 일부 내용이 삭제되고 1886년 국경심사 말기에 위 문건들에 의해 보충되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아무런 모순점이 발

122 『러·중 국경 : 문서, 논거, 사실』(1997), 6쪽.

견되지 않는다. 이후 바로 이 1886년 노보키엡스크 의정서, 의정서에 명시된 기술, 별첨 지도와 지형도 등의 문건들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

연해 변경주 당국의 전문위원회는 이 문서들을 바탕으로 국경표주 《II》 일대에 대한 현대적 지형정보를 분석하여 그라니트나야 강 상류지역을 통과하는 국경선의 위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 동 구간의 국경은 홉투 강의 시발점이기도 한 주 발원지들의 합류지점에서부터 일부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대체로 남동쪽 발원지와 남쪽 발원지 사이의 분수령을 따라 통과하며, 소비츠키 천 하구(현재의 지도)에서 비롯되어 쉰이편허 구역에서 훈춘 강 유역을 연결하는 작은 길이 나 있는 구릉으로 이어진다.

둘째, 노보키엡스크에서 1886년 9월 20일 체결된 ‘양국 간 국경 정밀실사 구간에 관한 의정서’의 작은 길[국경표주 《II》로부터 2개의 작은 길 이 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남서쪽의 중국 훈춘으로 이어지고, 다른 하나는 우샤고우 강(홉투 강) 계곡으로 이어진다]이 나 있다는 지적은 현재(1997년) 까지 국경표주 《II》가 서 있는 바로 그 장소에 대한 설명이지 쉰이편허 구역에서 훈춘 강 유역으로 이동하기에는 기복이 험난한 691.5고지에 대한 설명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해 주고 있다. 별도의 정밀 지형도에 나타나 있는 국경표주 《II》의 위치 또한 동 표주의 현재 위치와 일치한다. 이 지형도에는 상기 1886년 9월 20일자 ‘의정서’에 언급되고 있는 작은 길이 표시돼 있다. 지형도에는 연해주 총독, 참모본부 소장 바라노프, 프리아무르 주 군관구 측지과장, 참모본부 소장 솔긴, 연해주 참모장, 참모본부 대령 클라도, 남 우수리 변경주 국경수비대장, 6등관 마튜닌과 중국 측 관계자들이 서명하고 러시아와 중국 측 수비대장들

이 낳인했다. 이 지형도는 러시아 외무부 산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 고문서 보관소(장서분류 『조약집』, 목록 466)와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고문서 보관소에 각각 1부씩 보관돼 있다.

셋째, 1886년 9월 20일자 노보키예스크 의정서에 기술된 국경에 대한 설명과 그에 첨부된 ‘지형도면’에는 국경표주 《II》가 691.5고지에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나타나 있지 않다. 이른바 튀쓰링 산맥의 북쪽 구간은 실제로 훈춘 강과 암바 강 집수구역을 우샤고우 강 발원지(지류)의 집수구역과 분리하며 난산차허 발원지에서 산두가(Sanduga) 강 발원지까지 펼쳐진다. 만일(중국 측 주장대로) 1886년 9월 20일자 ‘의정서’에 집수구역 3곳의 합류지점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면 구체적인 지류가 명시되거나 집수구역 합류지점의 정확한 위치가 언급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언급이 없고 구체적인 지점도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수령 산맥에……”라는 표현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광활한 고원으로 이루어진 동 구간은 실제로 3개 유역을 분리하며 이는 “국경표주 《II》는 후비투 강 발원지 부근의 분수령에 설치된다”(1861년 6월 16일자 ‘국경설명서’)는 국경표주 《II》의 위치에 대한 설명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 주 발원지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채 다만 표주가 분수령선이 아니라 ‘분수령’에 위치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을 뿐이다.

넷째, 1861년 ‘국경설정 설명서’에 따라 차라리 국경표주 《II》를 후투 강(우샤고우 강)과 훈춘 강의 분수령 안부(鞍部)로 이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국경표주 《II》가 설치된 구간을 통과하는 국경선을 서쪽인 소베츠키 천과 훈춘 강 발원지(친니바허) 및 난산차허 발원지를 분

리하는 분수령선으로 이전해야 한다. 국경표주 《Ⅱ》를 691.5고지로 이전하고 국경을 베이징 조약에 의거해 분수령을 따라 국경을 설정할 경우에도 국경선은 훨씬 더 서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국경표주 《Ⅱ》는 소베츠키 천과 포그라니치니 천의 발원지를 분리해 주는 분수령 고개에 설치돼 있다. 국경표주 《Ⅱ》는 그라니트나야 강 남동쪽 발원지, 친니바허(훈춘 강 발원지)의 유역과 난싼차허(우샤오우-그라니트나야 강의 주 발원지)의 수역을 분리해 주는 주 분수령에서 방위각 240도 방향으로 1250m, 방위각 180도 방향으로 850m 각각 떨어져 있다. 국경표주 《Ⅱ》의 절대고도는 693.7m이고, 포그라니치니 천 집수구 바닥으로부터의 상대고도는 33m이다. 포그라니치니 천 최심선 수로 쪽으로의 평균 경사도는 3도이며, 분수령 쪽으로는 1도 미만이다(즉 표면이 거의 수평선과 일치한다). 국경의 주향방위각은 334도이며, 이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 시 북북서 방향에 해당하고, 전체적으로 소베츠키 천의 계곡과 일치한다. 이러한 국경선의 주향(走向)은 1886년 국경재설정 당시 작성된 국경설명서와 일치한다. 국경표주 《Ⅱ》의 위치는 “목제 국경표주는 훈춘 강, 쉰이편허 유역 및 바다로 유입되는 문구 강 사이의 분수령에 설치된다. 국경표주 인근의 산맥으로부터 북서쪽으로 홉투 강 남동쪽 상류가, 남쪽으로 훈춘 강 지류 훈치강이 흐른다”는 1861년 ‘국경설정 설명서’에도 상치되지 않는다. 따라서 분석자료 집필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국경표주 《Ⅱ》의 위치는 설치 이후 변경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 따르면 국경표주 《Ⅱ》의 위치는 친니바허(훈춘 강 지류), 암바 강과 그라니트나야 강의 3개 집수구역의 합류 지점과 일치하는 691.5고지로 명시돼 있다. 1991년 동부국경협정

은 국경점 《No.24》의 위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경선은 (그라니트나야 강 하구에 설치된 - 필자) 국경점 《No.23》으로부터 그라니트나야 강(중국 측 지도에는 후부투허[瑚布圖河]로 표기됨)을 따라 위로 수류 중심 혹은 주 지류의 중심을 따라 대체로 남쪽 방향으로 이어지다가 이어서 드보이노이 천(중국 측 지도에는 무명천으로 표기됨)을 따라 위로 이어진다. 그 후에는 좁은 계곡을 따라 남남서쪽으로 국경점 《No.24》까지 이어진다. 동 국경점은 그라니트나야 강, 친니바히, 암바 강 사이 분수령들의 교차점에 설치되며 동 지점은 소연방 영토 741,1고지의 폴로가야(Pologaya) 산(중국 측 지도에는 742,2고지의 쌍두가평[桑杜嘎峰]으로 표기됨) 서남서쪽 4.4km, 694,6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691,5고지로 표기됨) 북북서쪽 약 2.4km, 그리고 중국 영토 770,5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770,5고지의 쉬바터우거우산[許霸頭溝山]으로 표기됨) 동쪽 약 10.3km 거리에 위치한다.<sup>123</sup>

국경표주 《Ⅱ》(현 국경표주 《No.386》)의 설치 장소인 691,5고지와 관련, 분석자료의 집필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691,5고지는 중국 측에 의해 국경표주 《Ⅱ》의 설치 예정지로 검토되고 있으며 좌표는 북위 43도 27분 12초, 동경 131도 18분 08초이다. 동 구간의 국경은 주향방위각 345도로 북북서쪽을 통과한다. 691,5고지에서

<sup>123</sup> 트카첸코(1998), 149쪽.

시작되는 수류의 방위는 주향방위각이 26도로, 즉 북북동쪽을 향한다. 이는 ‘국경설명서’, 즉 1886년 9월 20일 체결된 ‘양국 간 국경 정밀실사 대상 제3구간에 관한 의정서’에 상치된다.

국경표주 《Ⅱ》의 현대적 좌표는 북위 48도 28분 30초, 동경 131도 16분 56초이다. 국경표주 《Ⅱ》는 위치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늦어도 1877년부터 1997년까지는 위 좌표 상에 있었다. 그러나 동 좌표는 러시아 국경수비대장(제정러시아 황제 시종무관단 해군 소장 코자 케비치와 참모본부 부도고스키 대령) 보좌관 투르빈 대위가 측정한 좌표와 일치하지 않는다. 투르빈 대위는 국경표주 《K》부터 《T》까지 설치한 당사자이다. 투르빈 대위가 측정한 좌표는 북위 43도 27분 45초, 동경 148도 42분 05초이다. 현행 지도에 표시된 경도와 투르빈 대위가 측정한 경도 간에 차이가 나는 것은 1861년 측정된 경도는 대서양 카나리아 제도 페로 섬의 본초 자오선을 기점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위도 차이는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는 1861년에 시행된 좌표 측정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는 측정기가 불완전하거나 측정 부주의, 즉 기술적인 실수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1861년 국경표주 《Ⅱ》가 현재와는 다른 위치에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1861년 당시 국경표주 《Ⅱ》를 처음 설치할 때 현 위치에 비해 서쪽에 설치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

아마도 기술적인 실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1861년 작성된 국경설정문건들에 나타난 많은 모순들 자체가 이 문서들을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문서들은 1886년 국경재설정 결과 서명된 1886년 9월 20일자 ‘양국 간 국경 정밀실사 대상 제

3구간에 관한 의정서' 축척 1 : 42,000 지도 및 같은 날 서명된 석제 국경표주 《Ⅱ》에 대한 정밀 지형도면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일관된 사실은 1886년부터 1997년까지 석제 국경표주 《Ⅱ》의 위치가 변한 적이 없다는 점이며, 특히 1886년 9월 20일자 '의정서'와 또 다른 여러 노보키옴스크 의정서에는 이전의 위치, 즉 늦어도 1877년 이후의 위치에서 국경표주 《Ⅱ》의 위치가 변경 혹은 이전되었다는 내용이 전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 따라 국경표주 《Ⅱ》를 1877년부터 1997년까지 서 있던 693.7고지에서 691.5고지로 이전한 것은 부당한 처사이다.

앞의 전문위원회의 분석 보고서 '국경주변 구역과 국경표주 《Ⅱ》가 위치한 지형연구 및 문서분석 결과'는 국경표주 《Ⅱ》가 설치된 지역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국경표주 《Ⅱ》는 적색자료목록(The Red Data Book)에 수록된 많은 멸종위기의 수종과 함께 삼나무, 전나무 등 잘 보존된 침엽수림 지대에 설치돼 있다. 국경표주 《Ⅱ》 남서쪽 수십m 지점에 방화선이 구축돼 있고 그 뒤로 중국 영토에는 심하게 변형된 이차식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동 방화선은 중국 측에 의해 구축된 것으로 러시아 영토를 500m 정도 침범한 상태이며, 그 면적은 약 90ha에 이른다. 동 방화선이 러시아 영토에 구축돼 있다는 점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K-52-23-Г 지형도(1983년)에도 나타나 있다. 상기 언급한 러시아 영토는 알 수 없는 이유로 1991년 '동부국경협정' 체결 과정에서 러시아에 반환되지 않았다.

바로 이런 정황들은 연해 변강주 대외관계 담당 부지사 스테그니(V. Stegny)의 기고문에도 실려 있다.

부처간 위원회는 1986년 3월 19일 소·중 간 국경선 단독실사 결과 중국 측이 소연방 영토를 510m 침범한 상태에서 방화선을 구축함으로써 중국 측에 넘어간 92ha의 러시아 영토를 동 구간 국경설정 과정에서 돌려받아야 한다고 결론지었다.<sup>124</sup>

연해 변강주 행정부 전문위원회 자문위원이자 1983~1986년 소·중 국경 단독실사 부처간 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네스테로프가 작성한 ‘국경표주 《II》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중국인들은 동 구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본의 만주 점령기였던 1941년 7월 18일 일본군 병사들이 국경표주 《II》의 남측 면을 만주 방향으로 15도 돌려놓았으며, 1948년 4월 30일 태평양군 사령관의 지시로 국경표주 강화작업이 이루어졌다.

1983~1986년 국경선 단독실사 과정(1985년 6월 9일)에 부처간 위원회 위원들은 국경표주 《II》가 설치된 구역이 각종 조약문과 달리 중국 측에 의해 점령되었음을 밝혀냈다. 국경표주는 중국 쪽으로 45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1965년 중국인들이 구축한 방화선에 설치돼 있다.

네스테로프가 작성한 ‘국경표주 《II》에 관한 보고서’는 1997년 5월

124 『블라디보스토크』(1997. 1. 22).

14일 연방회의 본회의에서 공식문서로 지정되었다.

끝으로 연해 변경주 당국의 과제에 따라 학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 ‘국경주변 구역과 국경표주 《Π》가 위치한 지형연구 및 문서분석 결과’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 전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1) 국경표주 《Π》의 위치는 러·중 공동위원회에 의해 획정되었다(1861년 ‘국경설명서’, 1861년 ‘국경설정 설명서’). 국경표주 《Π》의 위치, 좌표와 유지 상태는 25년 후 재점검되었다(1886년 9월 20일자 ‘의정서’). 동 의정서에서 표주의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고 목제표주를 석제표주로 교체하기로 하는 결정이 공동으로 채택되었다. 동 의정서에는 러·중 양측의 전권대리인들이 서명·날인한 지형도면이 첨부되었다.

2) 국경선이 드보이노이 천을 따라 691.5고지까지 설정돼야 한다는 중국 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유는 ‘국경설명서’에 후비투 강 정상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

3) 중국인들은 국경선 통과 지점과 국경표주 《Π》의 위치에 대해 130년 이상 의혹을 제기한 적이 없으며, 이 문제에 대해 그 어떤 주장도 제기한 적이 없다.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 따라 92ha의 러시아 영토를 중국에 넘겨주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전략적으로도 허용할 수 없다.

4) 러·중 양국 관리들은 ‘조약’(베이징 조약)과 ‘국경설명서’의 기록을 바탕으로 국경표주 《Π》의 위치를 현장에서 독자적으로 설정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시행되었다.

이 분석 보고서는 1997년 5월 14일 연방회의에 연해 변경주 행정부

가 제출한 공식문서로 지정되었으며, 회의 결과 ‘러·중 간 국경설정 과정’에 관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 10. 연해 변경주 하산구 국경변경

아홉 번째 국경변경은 연해 변경주 하산구에서 일어났다.

러시아 외무부 관계자들은 러시아가 러·중·북한 3국 간 국경이 교차하는 연해 변경주 하산구 전략 요충지를 중국 측에 양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다음과 같은 문건에서 찾고 있다.

첫째, 연해 변경주 우수리스크 시당국의 질의에 대한 러시아 외무부 아·태국장 솔로비요프가 서명한 공식 답변서가 있다.

하산구 관내 두만강 유역의 소규모 두 구간에 국경선이 새로이 설정되었다. 과거 이 지역 국경선은 분수령을 따라 설정되었지만 지난 100년 동안 두만강 하상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실제 국경선이 강 수역을 통과하게 되었다. 이것은 중국인들이 자국령 하안을 통과하는 데 장애가 되었으며, 우리나라 중국 측 모두 국경수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sup>125</sup>

둘째, 러시아 외무부 특임대사 키레예프가 연해 변경주 하산구 러시아 영토의 대중 양도에 대해 1995년 5월 12일 러시아 국가두마 청문회에서 의원들에게 한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sup>125</sup> 『크라스노예 즈나냐』(1993. 10. 16).

1860년 조약에 따라 하산구를 흐르는 두만강 좌안은 중국령이었으나, 130년 동안 40~50m 침식되어 두 구간의 국경이 수면 위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국경을 정상적으로 수비할 수 없게 되어 크게 불편했다. 문제는 국경이 수면 위로 이동함에 따라 중국인들은 국경을 침범하여 우리 영토를 통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특히 1960년대 양국 간 분쟁으로까지 번질뻔 했다. 이에 따라 1964년 국경을 러시아 쪽으로 수백m 이전하기로 했으며, 이 내용은 1991년 동부 국경협정에 명시되었다. 기존의 국경과 신규 합의된 국경 면적 간 차이는 약 300ha이다.<sup>126</sup>

셋째, 코지레프 외무장관이 나즈드라텐코 연해 변경주 주지사에게 보낸 1995년 6월 6일자 서한이 있다.

알려진 이유로 인해 하산구를 흐르는 두만강 한 구간의 국경이 수면 위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인들은 조약에 명시된 국경표주 《T》까지의 자국 영토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러·중 양국 국경수비대 간 마찰이 발생했다. 1964년 국경 문제 협의 과정에서 국경 수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국경선을 우리 쪽으로 약간 끌어들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서는 1991년에도 합의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동 지역의 지정학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경표지 《No.423》에서 두만강 하구까지의 17km 하천 구간은 러·북한 간 국경수역이기 때문이다.<sup>127</sup>

---

<sup>126</sup> 러시아 하원(1995), 『회의 속기록』, 55~66쪽.

넷째, 러시아 카라신 외무차관이 베데르니코프 연해 변경주 두마 의  
장에게 보낸 1996년 9월 3일자 서한이 있다.

1964년 하산구에서 양측은 두만강 좌안 인근에 국경선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두만강 좌안은 비록 자연적 지형 변화에 따라 일부 이동하긴  
했으나 1860~1886년 조약문에 따르면 이 구간은 중국령이었다. 이러  
한 결정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모든 관계부처와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러·중 양측은 동 국경선을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서도 확인했다.<sup>128</sup>

다섯째, 러·중 공동 국경표지위원회 러시아 측 위원장, 러시아 외무  
부 특임대사 키레예프의 1997년 1월 31일자 인터뷰가 있다.

하산구 러·중 국경은 중국령이었던 두만강 좌안을 통과했었다. 강 자체  
가 거의 전 구간에 걸쳐 중국과 북한 간 국경을 이룬다. 다만 하구까지  
의 마지막 17km 구간에서만 러시아와 북한 간 국경이 통과한다.  
두만강 좌안의 한 구간에서 발생한 침식 결과 400~500m 구간에서 하  
안선에서 강 중심 쪽으로 10~20m 떨어진 수면 위를 통과하게 되었  
다. 이에 중국인들이 우리 영토를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지  
속적으로 요청해 옴에 따라 국경수비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64년 국경을 러시아 쪽으로 수백m 옮기도록 하는 결정이 채택되었  
다. 동 국경선 구간은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 명시돼 있다.<sup>129</sup>

127 『러·중 국경 : 문서, 논거, 사실』(1997), 15쪽.

128 『러·중 국경 : 문서, 논거, 사실』(1997), 17쪽.

하산호 일대 약 300ha에 달하는 러시아 영토의 대중 양도에 대한 러시아 외무부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특별히 러시아 국경수비대의 원활한 업무수행, 즉 러시아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신들의 업무 특성상 이 지역을 훤히 꿰뚫는 전문가들은 몇 가지 다른 사실을 전하고 있다.

중국 영토는 러시아 영토와 두만강 사이 국경 '분쟁지역' 북쪽 구간에서 수십m로 줄어들고 국경은 솔로비요프, 키레예프, 코지레프 등 외무부 관계자들의 주장과 달리 결코 두만강 수면을 통과하지 않는다.

국경수비대 예비역 중령 네스테로프의 증언에 따르면 1960년 소·중간 군사·정치적 상황이 첨예화되기 전까지 중국은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다. 1954년 8월 두만강과 보조 국경표지 《No.2》가 설치된 지역 간 중국 영토가 침식된 것으로 밝혀지고 이로 인해 국경표지 《No.2》 북쪽에 있는 중국의 바가툼(Bagatun) 마을과 하산호 및 두만강 사이 중국령 수이무(Shuimu) 마을 간 왕래가 어렵게 되었다. 중국 현지 당국의 요청으로 소연방 국경수비대가 철조망을 소연방 쪽으로 10m 이전했다. 1962년 중국인들은 소연방 측과의 합의 없이 이 구간의 소연방 영토를 30~80m 안쪽으로 침범한 상태에서 총연장 700m의 도로를 건설했다. 모스크바 당국은 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중국인들의 도로 사용을 허용했다.<sup>130</sup>

1962년부터 소·중 국경수비대 차원에서 중국인들의 소연방 임시여행 절차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129 『러·중 국경 : 문서, 논거, 사실』(1997), 27~28쪽.

130 『블라디보스토크』(1996, 3. 28), No.58, 7쪽.

1983년 2월 3일자 소연방 각료회의 결정(No.113 - 48)에 따라 구성된 ‘소·중 국경 단독실사 부처간 특별위원회’는 1983년 동 지역 현장 실사 완료 후 “두만강 하안의 전위 결과 국경이 소연방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형성된 면적은 5.8ha이다”라는 공식 결론을 내렸다. 공식 결론에는 “협정문건들에 따라 중국과 공동으로 국경을 수정(설정)할 때 동 구간의 영유권을 소련령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명시돼 있다. 즉 동 구간은 러시아령이 되는 것이다.<sup>131</sup>

국경 ‘분쟁지역’ 남쪽에서는 두만강 하상의 자연적인 변화 결과 실제로 국경이 강 하안에서 중심 쪽으로 10~15m 이동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1980~1983년 자국 영토의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기 위해 국경을 침범하지는 않았으나 일방적으로 국경 현상유지에 관한 합의를 깨고, 보조 국경표지 《No.1》 주변 두만강 좌안을 따라 제방을 축조했다.<sup>132</sup>

만일 이 구간 국경이 분수령을 통과한다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명시된 1860~1983년의 각종 조약문건을 엄격히 준수하고 또 그에 준해서 국경을 설정한다면 연해 변강주 하산구 러·중 국경 ‘분쟁지역’의 영유권 분쟁은 발생할 리 없다. 게다가 중국 측은 1886년 설치된 보조 국경표지 《No.2》 주변의 국경 ‘분쟁지역’ 북쪽의 러시아 영토 5.8ha를 러시아 측에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1991년 5월 16일자 소·중 동부국경협정 체결 준비 및 채택 과정에서 양국의 영토·국경 분할에 관한 19세기 역사적·법적 문건 및

<sup>131</sup> 『러·중 국경설정 문제, 1991~1997년 논문과 서류 모음』(1997), 모스크바 : 네자비시마야지, 31쪽.

<sup>132</sup> 『블라디보스토크』(1996. 3. 28), No.58, 7쪽 ; 『네자비시마야지』(1997), 31쪽.

기본 상식이 무시된 채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정반대 상황이 전개되었다. 1991년 동부국경협정 제2조에 따라 두 구역(남쪽과 북쪽)에서 총 300ha가 넘는 러시아 영토를 중국 측에 넘겨 줘야 했다. 문서들을 살펴보자.

이 지역 국경선 통과 지점은 1860년 베이징 조약 제1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양국 간 국경선은 …… 훈춘 강과 바다 사이의 산을 따라 두만강까지 이어진다. 여기서 동쪽의 영토는 러시아령으로 하고, 서쪽의 영토는 중국령으로 한다. 국경선은 두만강의 동해 유입지점 상류 20리(중국) 지점에서 강을 통과한다.<sup>133</sup>

1860년 11월 2일자 베이징 추가조약 제1, 3조를 바탕으로 작성된 ‘1861년 6월 16일자 우수리 강에서 해안까지의 러시아제국과 대청제국 간 국경설명서’에는 이 구간의 국경통과 지점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국경은 조약문에 명시된 대로 분수령을 따라 통과한다. (중략). 국경표주 《T》는 두만강 하구에서 20리(중국) 지점의 좌안에 설치된다. 최근에 설치된 국경표주들에는 그 이전 국경표주들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어와 중국어로 국경이 설명돼 있다. 또한 모든 것은 지도 위에 그려진 붉은 선과 일치하며, 이로써 양국 간 국경은 선명하게 표시되고 또 이에 따른

---

<sup>133</sup> 트카첸코(1998), 84쪽.

국경설명서가 작성되었다.<sup>134</sup>

‘1861년 우수리 강에서 해안까지의 러시아제국과 대청제국 간 국경 설정 설명서’에는 이 지역 국경선 통과 지점과 국경표주 《T》의 위치가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국경표주에서 이어지는 국경선은 훈춘 강 수역과 바다로 직접 흘러드는 하천들을 분리해 주는 산등성이를 따라 통과한다. (중략) 국경표주 《T》는 이전 국경표주와 마찬가지로 연해(沿海) 분수령 서단(西端) 두만강 좌안에 설치되고, 동 국경표주 맞은편 북서쪽 강 우안에는 한인마을 반란지천이 있다. (중략) 국경선은 국경표주 《T》에서 강을 따라 바다까지 이어진다.<sup>135</sup>

1886년 6월 22일자 노보키옴스크 제1의정서 제1항은 세월이 흘러 훼손된 국경표지 《T》를 복원하는 데 필요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두만강 하안에 설치된 국경표지 《T》가 세월이 흘러 훼손되었다. 따라서 이의 복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경표지 설치는 1861년 작성된 국경설명서 혹은 셴핑디[咸豐帝] 11년 통치령에 따라 석제로 복원돼야 한다. 표지 복원 위치는 합의에 따라 계곡으로 따라 내려온 산 끝자락, 강 하

134 트카첸코(1998), 90~91쪽.

135 트카첸코(1998), 99쪽.

안으로 결정되었다. 이곳에서 두만강을 따라 해안 모래사장까지는 15베르스타 혹은 30리(중국), 그리고 직선방향으로 강 하구까지는 13.5베르스타 혹은 27리이다.<sup>136</sup>

국경재설정 작업 후 작성된 1886년 6월 26일자 노보키엡스크 제2의정서인 ‘양국 간 국경 정밀실사 대상 제1구간에 관한 의정서’에는 국경표주 《T》의 설치 사실 자체가 명시돼 있고 하산구 ‘분쟁지역’ 국경선 통과 지점이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적인 묘사와 함께 정확한 거리가 제시돼 있다(모든 기술은 남쪽에서부터 시작된다).

제1구간은 두만강 하구에서 시작하여 장린 고개까지 이어진다. 장린에는 도로와 분수령 산맥 교차점에 천문지표가 설치되었다. 국경은 신규 설치된 국경표주 《T》에서 동 천문지표까지 분수령 산맥을 따라 이어지고 분수령 산맥은 지도상에 총 65.5베르스타 혹은 131리에 걸쳐 붉은 색으로 표시돼 있다. 서쪽의 두만강으로 유입되는 모든 수역은 중국령이며, 동쪽의 바다로 유입되는 수역은 러시아령이다. 국경표주 《T》에서 두만강을 지나 바다까지의 거리는 15베르스타이다. 1사젠 높이로 신규 설치된 국경표주 《T》는 지하 1아르신 깊이로 묻은 석제 토대 위에 세워졌다. …… 국경은 국경표주 《T》에서 북서쪽으로 산을 지나 하산호의 서쪽 측면을 따라 통과하여 보조 국경표지 《No.1》이 설치돼 있는 모래구릉 북단까지 이어진다. 거리는 8베르스타 100사젠이다. 국경은 계속해서 동일한 방향으로 1베르스타 65사젠 이어지며 400베르스타 135사

<sup>136</sup> 트카첸코(1998), 102~103쪽.

젠 길이의 모래 구릉을 통과한 후 방향을 바꿔 국경표지 《No.2》가 설치  
돼 있는 이간(Igan) 곳까지 이어진다. 국경은 동 표지에서 남동쪽으로  
바다 협곡을 끼고 돌아 북쪽에 있는 바라노바(Baranova)산까지 이른  
다.<sup>137</sup>

의정서의 마지막 단락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본 의정서와 지형도를 러시아어, 만주어 및 중국어로 각 2부씩 작성하  
여 양국 국경획정위원들이 서명·날인했으며 쌍방은 의정서와 지형도 1  
부씩을 상호 교환했다.<sup>138</sup>

앞에 인용된 발췌 문서들을 분석해 보자.

1886년 6월 26일자 노보키엡스크 제2의정서에 따르면 하산호 주  
변 러·중 국경 ‘분쟁지역’의 총연장은 5.2베르스타 혹은 5.5km, 국경  
표주 《I》에서 보조 국경표지 《No.2》까지의 거리는 13.6베르스타 혹은  
14.5km이다.

동 구간의 국경선이 두만강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각 문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1860년 베이징 조약에 따르면 “훈춘 강  
과 바다 사이의 산을 따라,” 1861년 6월 16일자 ‘국경설명서’에 따르  
면 (1860년 베이징 조약에 명시된 대로) “분수령을 따라” 1861년 ‘국경  
설정 설명서’에 따르면 “훈춘 강 수역과 바다로 직접 흘러드는 하천

<sup>137</sup> 트카첸코(1998), 105~106쪽.

<sup>138</sup> 트카첸코(1998), 105~106쪽.

들을 분리해 주는 산등성이와 연해 분수령을 따라” 1886년 6월 26일자 노보키엡스크 ‘양국 간 국경 정밀실사 대상 제1구간에 관한 의정서’에 따르면 “분수령 산맥을 따라” “산을 따라” “모래 구릉을 따라” 두 만강까지 이어진다. 『러시아어 대사전』에 따르면 구릉은 ‘일련의 작은 산이나 언덕으로 길고 높게 뻗어 있는 지대’를 의미한다.<sup>139</sup> 따라서 1860~1886년에 작성된 모든 문서에는 비록 그리 높지 않다 하더라도 훈춘 강과 표트르대제 만 및 동해로 곧바로 유입되는 모든 하천의 집수구역을 매우 정확히 구분해 주는 분수령 산맥이 언급돼 있다. 따라서 차후의 국경재설정에 관한 그 어떤 결정도 앞에 언급된 러·중 간 영토·국경 분할에 관해 1860년, 1861~1886년 체결된 문서와 상치되는 안 된다.

이와는 다른 영토·국경 문제의 해결안은 모두 1858년 텐진 조약과 1860년 베이징 조약(텐진 조약에 대한 추가조약)에 명시된 조항뿐 아니라 1861년에 시행된 국경설정과 1886년에 시행된 러·중 간 국경재설정에 위배된다. 양국 간 맺은 모든 협정은 반드시 이행돼야 하는 국가 간 협정, 즉 법률이다. 더구나 1860년 베이징 조약은 폐기되거나 1991년 소·중 동부국경협정으로 대체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베이징 조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1860년과 1861년에 체결된 양국 간 조약에는 2건의 지도, 즉 국경 획정지도와 국경설정지도가 첨부돼 있다. 그리고 1860년 베이징 조약에 첨부된 실카 강과 아르군 강 합류지점에서 바다까지의 국경획정지도는 1 : 1,050,000 축척으로 작성되었으며, 1861년 우수리 강에서 두

139 『러시아어 해석대사전』(1998), 상트페테르부르크 : 노린트, 23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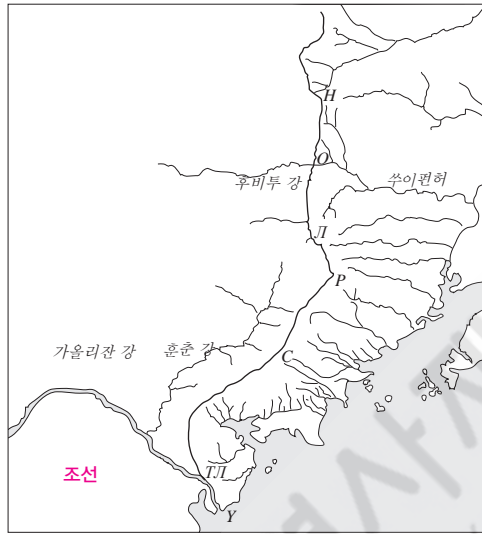


그림 6 1860년 베이징 조약 별첨 우수리 변강주 남부 러·중 국경 지도 일부

만강 하구까지의 국경설정지도에는 국경선을 의미하는 붉은 선이 하산 호 북쪽 두만강까지 매우 뚜렷하게 그려져 있다. 이 지점은 문자 《T》로 표시돼 있다. 여기에는 1861년 목제 국경표주 《T》가 설치되었다. 이어서 두만강 하류 쪽으로 러·조(제정러시아와 조선) 간 국경이 이어진다. 두만강 하구는 문자 《Y》로 표시돼 있다. 당연히 하구는 강물과 바닷물이 합류하는 지점이다. 우수리 변강주 남부지역 국경선 통과 지점과 국경표주 《H》, 《O》, 《Π》, 《T》 그리고 국경점 《P》, 《C》, 《Y》의 위치가 반영된 1860년 베이징 조약 별첨 국경획정지도의 일부가 그림 6에 나타나 있다.

1860년, 1861~1886년 체결된 조약문서들의 분석 과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베이징 조약 제1조는 1861년 국경설정 당시 국경표주 《T》가 하구에서 20리 혹은 10배

르스타(10.7km) 지점에 설치된 것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동 국경표주는 러·중 국경의 두만강 구간, 즉 하구에서 22베르스타(23.5) 혹은 44리 지점에 설치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1861년 ‘국경설정 설명서’ 제7항 ‘표주들 간의 거리’에 명시돼 있으며 또한 국경표주 《T》의 설치 당시 동 국경표주에서 하구까지의 최단 거리는 16베르스타 442,5사젠인 반면 국경선, 즉 강을 따라 바다까지는 22베르스타로 표기돼 있다.<sup>140</sup> 1861년 설치된 국경표주 《T》의 위치는 2건의 지도, 즉 1860년 베이징 조약의 일부인 국경획정지도와 1861년 국경설정지도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1861년 ‘국경표주 설치 설명서’와 이 두 지도에 따르면 국경표주 《T》는 현재 위치보다 약 7.5km 북동쪽에 설치되었다. 따라서 만일 국경설정 작업 결과 1861년 설치된 국경표주 《T》의 위치에 근거하면 중국 측은 판추안(수이무) 마을이 차지하고 있는 10km<sup>2</sup>의 영토를 러시아 측에 반환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중국 측은 이 지역에 그 어떤 항만도 건설할 수 없게 된다. 항만을 건설할 만한 장소가 없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886년 국경재설정 결과 국경표주 《T》는 최초 설치 지점보다 남남동쪽에 설치되었다.

따라서 러시아 측은 바로 1886년 국경표주 《T》를 국경(두만강)을 따라 강 하구 쪽으로 약 7베르스타 이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1861년 국경설정에 반하는 양보를 하게 된 것이다. 중국 측 단위로 이 거리는 약 14리 혹은 7.5km이다(1886년 중국 측 거리 측정 단위 1리는 533m였음).

<sup>140</sup> 트카첸코(1998), 98쪽.

문서 분석 결과 국경표주 《T》는 1886년 러시아 영토 안 쪽으로 약 10리 이전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1860년 베이징 조약과 1861년 6월 4일(16일)자 ‘국경설명서’ 공히 국경 최남단(두만강 좌안 국경표주 《T》)에서 두만강 하구까지의 거리(20리 혹은 10.7km)에 대해 언급돼 있다. 반면에 1861년 ‘국경설정 설명서’에 따르면 국경표주 《T》는 하구에서 22베르스타, 즉 23.5km 지점에 설치되었다.

아마도 양측은 1861년 국경설정 당시 동 국경표주를 두만강 하구에서 20리 지점에 설치할 경우 국경은 분수령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래서 국경표주 《T》는 1861년 ‘국경설명서’에 따라 두만강(현지 주민들은 가울리잔이라 불렀음) 좌안, 연해 분수령 서단, 즉 강 하구에서 22베르스타 지점에 설치된 것이다. 또한 국경설명서 주석에는 “국경이 표주에서 강을 따라 바다까지 이어진다”고 명시돼 있다.<sup>141</sup>

1886년 국경재설정 결과 국경표주 《T》를 1886년 6월 10일(22일) 양측이 합의한 바에 따라 강 남동쪽 분수령 산맥, 즉 ‘계곡으로 따라 내려온 산 끝자락, 강 하안’으로 14리 이전함으로써 국경은 매우 인위적으로 형성되고, 하산호와 두만강 사이의 판추안(수이무) 마을에 중국령 비지(飛地) 또한 매우 부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중국 본토와 가는 독으로 연결돼 있다. 이 가는 독 때문에 최근 많은 논란이 야기되자 국경선을 이전하고 분수령을 위반하여 이 지역의 약 300ha에 달하는 러시아 영토를 중국 측에 양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이는 식수원인 하

<sup>141</sup> 트카첸코(1998), 99쪽.

산호 생태계에 매우 위협한 것이다.

특이한 것은 러시아 외무부가 연해 변강주 하산구의 태고 이래 러시아령이었던 300ha 이상의 영토를 접경국인 중국에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러시아 외무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에는 1860~1861년 영토·국경 분할에 관한 러·중 간 각종 조약문건의 인용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실제로 하구에서 22베르스타(23.5km) 혹은 최단 거리로 16.9베르스타(18km) 지점에서 두만강을 통과한 1861년 시행된 최초의 국경설정(참고 : 1861년 우수리 강에서 두만강 하구까지의 러시아제국과 대청제국 간 국경설정 설명서)으로 돌아가 1860년 베이징 조약에 첨부된 국경획정지도 및 1861년 6월 16일자 한카 의정서에 첨부된 국경설정지도(1861년 우수리 강에서 해안까지의 러시아제국과 대청제국 간 국경설정 설명서와 함께 이 두 지도는 베이징 조약의 추가조항이었다)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국경표주 《T》의 초기 설치 장소는 하산호에서 북동쪽으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는 점과 하산호 인근 국경선의 전체 윤곽을 고려하면 중국은 하산호와 두만강 사이에 있는 판추안(수이무) 마을이 점유하고 있는 10km<sup>2</sup>의 영토를 러시아에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1886년 시행된 국경재설정 이후 법적 효력을 가진 문건으로 연해 변강주 하산호에서 두만강까지의 육로국경 통과 지점을 상세히 기술해 주는 것은 1886년 6월 10일(22일)부터 9월 21일(10월 3일)까지 조인된 9건의 노보키옴스크 의정서와 별첨 1 : 42,000 축척 지도들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지역은 1886년 획정되어 분수령선을 따라 통과했던 하산호 일대 국경의 모든 지형적 특성을 존중한다는 조건하에 중국령이 돼야 한다. 그러나 이때 위에 명시된 한키구와 우수리스크구

지도상에 나타난 육로국경의 특성을 비롯한 연해 변강주 육로국경 전 구간에 대한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연해 변강주의 여러 지역의 국경재설정 과정에 이중 잣대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 이중 잣대를 적용할 경우 19세기 체결된 러·중 간 영토·국경 분할에 관한 각종 조약문건의 내용과 상식에 위배된다. 기준은 단일하고 투명해야 한다. 따라서 연해 변강주 하산구(한카구와 우수리스크구 포함) 국경 통과 지점이 정확하다는 데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앞에 명시된 러시아 외무부 산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 고문서 보관소(장서분류 『조약집』)에 소장돼 있는 1 : 42,000 축척의 지형도를 토대로 실제로 동 구간을 통과하는 국경선에 대한 실사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분수령선을 따라 통과했던 국경 자체는 물리적 공간에 설정된 것으로, 그 위치는 자연적인 지형변화(여기서는 두만강 하상의 변화)와 무관하다. 따라서 국경은 이러한 지형 변화로 인한 공간상 변화를 겪게 된 두만강 수역을 통과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3국(러·중·북한) 간 교차점까지의 두만강 좌안은 중국령이었으나 일부가 침식되었다. 따라서 키레예프 대사의 주장과 달리 국경이 두만강 수역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두만강 자체가 국경 너머로 확장된 것이다. 그렇다 하여 이를 근거로 러시아에 해를 끼치면서 중국에 유리한 쪽으로 국경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

두만강 좌안의 폭이 좁고 긴 이 지대에는 중국인들이 하산호 주변의 자국령에 드나들 때 이용하는 좁은 육로가 나 있다. 이 지대는 강물에 의한 자연적인 침식현상으로 지속적으로 폭이 줄어들고 있고, 그 결과 지난 100년 동안 두만강 하상이 변하게 된 것이다.

하산 마을 인근 러·중·북한 3국 간 교차점에서 이간 꽃까지의

러·중 국경은 두만강 좌안을 따라 북쪽으로 14.6km 뻗어 있다. 동 구간 국경은 한때 광활했던 지대가 와해되고 남은 잔재로, 곳곳에 솟아 있는 고지대와 더불어 절대고도 10~20m의 낮은 분수령을 따라 이어진다.

코룻키 박사의 자료에 따르면 두만강 51.7m 고지(이간 꽃 이남)에서 하구까지의 하상은 굽이가 매우 급하다. 러·중 국경이 강물에 수몰되어 중국인들이 강둑을 쌓은 옌관린(Yanguanlin) 마을 동쪽으로 이동한 두 번째 굽이는 매우 완만하다. 이는 강물이 굽이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하류 쪽으로 75m의 투피안(Tupiyuan) 산과 173.2m의 힘캄산(Himkamsan)의 돌출부를 휘감아 돌고, 게다가 두만강 하상의 북쪽과 남쪽에 보가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하상의 굽이가 자연적으로 강 아래로 이동하는 현상은 강 좌안의 돌출부에 의해 차단된다. 따라서 코룻키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와 같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옌관린 마을 지역의 두만강 유로는 앞으로도 동쪽과 남동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sup>142</sup>

이러한 지구·물리학적 요인에 따라 중국령 두만강 좌안은 서서히 러·중 국경쪽으로 근접하고 북한령 두만강 우안 역시 동일 방향으로 서서히 이동해 지난 60년 동안 250m 동쪽으로 이동했으며, 그 결과 두만강 좌안의 중국 영토가 약 1km<sup>2</sup> 줄어들었다. 북한 영토의 확장 현상은 러·중 국경 ‘분쟁지역’ 남쪽 두만강 좌안을 따라 축소된 중국 측 제방 바로 맞은편에 있는 모래섬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 지역의 현재 지도와 1930년대의 지도나 특히 20세기 초반의 지도를 비교해 보면 분명하게 확인된다. 이처럼 자연적 요인에 의해 축소되는 중

142 코룻키(1991~1997), 「러·중 국경변경이 하산호와 엑스페디치야만에 미치는 환경영향」, 『러·중 국경설정 문제』, 60쪽.

국 영토를 반대로 계속해서 면적이 늘고 있는 북한 영토가 아닌 러시아 영토를 이용하여 보상하는 결과가 된다.

중국령 두만강 좌안을 따라 중국 국경수비대와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중국의 역내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일방적인 러시아 영토의 대중(對中) 양도는 시간문제이다. 여기서 우수리스크구를 흐르는 그라니트나야 강의 경우에서처럼 자국에는 해가 되고 접경국에는 이익이 되는 이중 잣대가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쨌든 영토문제에 따른 모든 논쟁에는 반드시 동일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현행 국제법 규범에 따르면 “국경 하천의 하상 통과 지점 자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국경선은 구 하상을 통과하는 것으로 보고 관련 당사국들은 하천을 구 하상으로 돌려 놓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각국은 건조 구간에 국경선을 표시하거나 국경이 신 하상을 통과하도록 합의한다.”<sup>143</sup>

이 지역의 영토·국경 문제는 중국과 소련(러시아)이 아닌 중국과 북한 간에 해결되었어야 했다. 이 경우 문제의 핵심은 중국 측으로 상당 거리 이동한 두만강 하상의 변경에 있고 자연적·지리적인 요인으로 하천을 구하상으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 양국은 두만강 좌안의 중국 영토 축소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모래섬을 따라 국경을 재설정해야 했다. 이 경우 중국은 옌관린 마을 인근 지역에서 모래섬까지, 그리고 모래섬에서 다시 비지까지 교량을 건설함으로써 자국령 비지 판추안(수이무)과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중국이 두만강

143 『외교사전』(1985), 2권, 459쪽.

좌안의 자국 영토가 자연현상으로 인해 축소된 후 북한과의 국경이 두만강 신 하상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은 중국의 영토 손실에 대해 소련(러시아)이 (그것도 2~3배의 규모로) 보상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 문제는 소련(러시아)이 관여하지 않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다.

1860년 베이징 조약과 이와 관련된 1861년, 1886년 문서에 따르면 두만강 하구에서 약 17km 지점에 있는 3국 간 교차점으로부터 위로 발원지까지의 강 좌안은 중국령이며 동 구간을 흐르는 강이 중국과 북한 간의 국경 하천이다. 3국 간 교차점으로부터 아래로 두만강 하구까지의 강 좌안은 러시아령이며, 동 17km 구간을 흐르는 강은 러시아와 북한 간 국경 하천이다.

러·중·북한 3국 간 교차점 이북 총연장 5.5km의 러·중 간 ‘분쟁지역’을 지나는 러·중 국경과 두만강 중국 측 하안 사이 중국 영토의 폭은 수십m에서 약 1km에 이른다.

1991년 5월 16일자 소·중 동부국경협정 제2조에 따라 이 두 구역에서 국경선을 수백m씩 러시아 영토 쪽으로 이전하기로 합의되었다. 언론에 인용된 다양한 평가에 따르면 이것은 사실상 러시아 영토를 300~330ha 중국에 양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립극동대학 라코프(V. Rakov)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sup>144</sup> 중국인들에게 양도한 러시아의 영토는 약 360ha이며, 코룟키 박사의 자료에 따르면 375ha였다.

이 지역 러시아 영토의 대중 양도는 아무런 보상 없이 이루어졌다.

---

<sup>144</sup> 라코프(V. Rakov)(1995. 2. 24~3. 3), “일곱 번 재라. 러시아의 내일”, 『블라디보스토크』, No.8, 2쪽.

이것은 러시아가 중국에 준 일종의 선물이다. 더구나 중국령 두만강 좌안의 영토 감소분에 대해 러시아 영토로 보상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1991년 5월 16일자 소·중 동부국경협정을 살펴보자. 양국 간 새로운 국경선은 동 협정 제2조에 다음과 같이 기술돼 있다.

국경선은 국경점 《No.28》[1886년 설치된 보조 국경표지 《No.2》 구역에 위치한 국경표지 《No.416》-필자]에서 남쪽으로 1.8km 국경점 《No.29》까지 직선으로 이어진다. 동 국경점은 소연방 영토 29.9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27.7고지로 표기됨) 남남서쪽 약 2.8km, 192.9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194.0고지로 표기됨) 서쪽 약 6.0km, 그리고 중국 영토 제1호 무명산(중국 측 지도에는 86.6고지로 표기됨) 남남동쪽 약 3.6km 거리에 위치한다.

국경선은 국경점 《No.29》에서 국경점 《No.30》까지 남동쪽으로 약 3.5km 직선으로 이어진다. 동 국경점은 소연방 영토 125.5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125고지로 표기됨) 서쪽 약 1.9km, 192.9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194.0고지로 표기됨) 북동쪽 약 2.3km, 그리고 중국 영토 제2호 무명산(중국 측 지도에는 77.1고지의 사차오핑[沙草峰]으로 표기됨) 동쪽 약 1.2km 거리에 위치한다.

국경선은 국경점 《No.30》에서 국경점 《No.31》까지 남쪽으로 약 1.8km 직선으로 이어진다. 동 국경점은 소연방 영토 125.5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125고지로 표기됨) 남서쪽 약 2.8km, 60.3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61.6고지로 표기됨) 북서쪽 약 4.7km, 그리고 중국 영토 제2호 무명산(중국 측 지도에는 77.1고지의 사차오핑[沙草峰]으로 표기됨) 동쪽 약 1.2km 거리에 위치한다.<sup>145</sup>

“국경선은 국경점 《No.31》에서 처음에는 하산호와 두만강(중국 측 지도에는 투먼장으로 표기됨) 사이의 분수령을 따라 대체로 남쪽으로 이어지다가 157.3고지의 자오제르나야(Zaozernaya) 산(중국 측 지도에는 155.1고지의 장구핑[張鼓峰]으로 표기됨)을 지나 남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국경점 《No.32》까지 이르고,” “이어 국경점 《No.32》에서 두만강(중국 측 지도에는 투먼장으로 표기됨) 좌안까지 남쪽으로 0.1km 직선으로 이어진 후 두만강 중앙 수로에 수직으로 국경점 《No.33》까지 이어진다.”<sup>146</sup> 동 국경점 《No.33》은 상기 수직선과 두만강 중심 수로의 교차점에 설치된다.

그 밖에 1991년 동부국경협정 제2조에 기술된 국경선은 동 협정에 불가분의 주요 문서로 첨부된 1 : 100,000 축척의 양국 지도에 붉은색으로 표기돼 있다.

연해주 하산구 지역의 국경 ‘분쟁지역’과 관련하여 인용된 1991년 동부국경협정의 일부 조항에는 4개 국경점 《No.28, No.29, No.30, No.31》의 정확한 좌표가 명시돼 있으며, 동 국경점들 사이의 국경선은 일정 방향의 직선으로 연결되고, 거리가 정확하게 명시돼 있다. 동 국경점들은 국경표지 《No.416, No.417, No.418, No.419》와 각각 일치한다. 아울러 19세기 체결된 양국 간 조약에 의해 동 지역 국경선으로 설정된 분수령선을 이탈한다. 하산호 지역의 분수령 산맥이 중국 측에 양도될 경우 이는 1860년 베이징 조약, 1861년 러·중 간 국경설정, 1886년 국경재설정의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될 것이다.

‘국경수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 300ha의 러시아 영토를 중국

<sup>145</sup> 트카첸코(1998), 151쪽.

<sup>146</sup> 트카첸코(1998), 152쪽.

에 넘겨줘야 한다는 러시아 외무부 특임대사, 러·중 공동 국경표지위원회 러시아 측 위원장 키레예프를 비롯한 러시아 외무부 관료들의 주장은 그 어떤 비난도 면할 수 없으며, 그저 실소를 자아낼 뿐이다. 이것은 억지로 꾸며낸 논거이자 더 정확히 말하면 간계이다.

중요한 것은 1991년 동부국경협정 제2조에 따르면 하산호 지역 국경선은 협정서 별첨 지도에 표기된 직선을 통과하게 되고 1860년 베이징 조약 제1조와 1860년 11월 2일자 베이징 추가조약 제1, 3조를 바탕으로 작성된 1861년 6월 4일(16일)자 ‘우수리 강에서 해안까지의 러시아제국과 대청제국 간 국경설명서’, 투리 로크 초소에서 서명된 ‘우수리 강에서 두만강 하구까지의 러시아제국과 대청제국 간 국경설정 설명서’, 1861년 노보키옴스크에서 체결된 1886년 6월 14일(26일)자 ‘양국 간 국경 정밀실사 대상 제1구간에 관한 의정서’ 등 후속 문건들에 의해 분수령 산맥에서 높지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하산호 북쪽에 추가로 설치되는 핵심적인 국경표주 《No.418》은 높지에 잠기고 말 것이다. 이 지역에 표주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이다. 또한 설치한다 해도 국경을 정상적으로 수비하기에는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불편이 뒤따를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태가 하산호 지역의 국경을 수비하기에 용이하다. 한편 두만강의 자연적 현상에 의해 이곳의 중국 영토가 일부 감소(북한 영토는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하여 그것이 러시아에는 아무런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 이는 북한과 중국 간의 문제로, 중국 영토의 감소로 인해 북한 영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해 변강주 하산구 러·중 국경 ‘분쟁지역’의 위치는 두만강 지역 러·중 국경 도면 그림 7과 하산호 지역 러·중·북한 간 국경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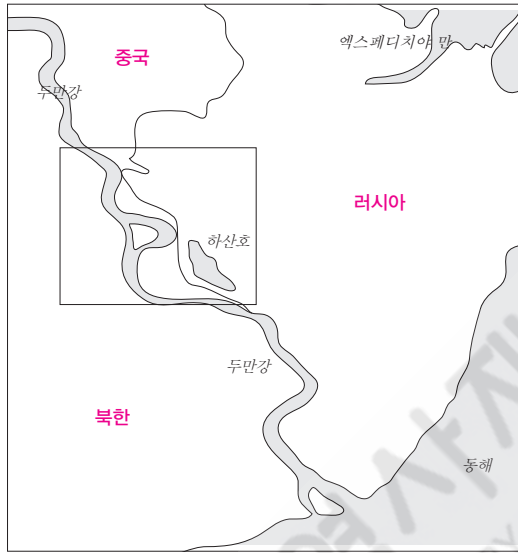


그림 7 두만강 지역 러·중 국경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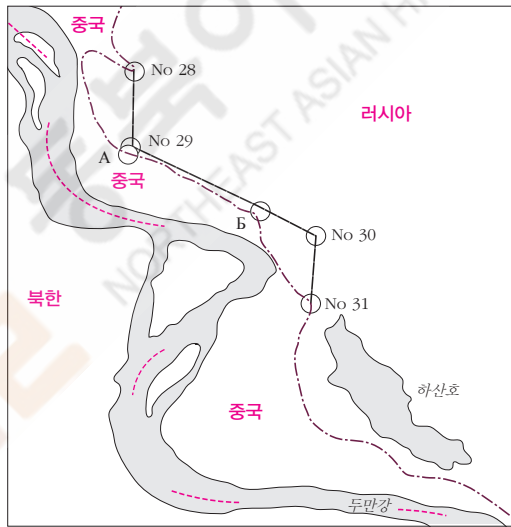


그림 8 하산호 지역 러·중·북한 국경 도면

- 실제 수비 중인 러·중 국경선
-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 따른 러·중 국경선
- 두만강 유역 북·중 국경선

그림 8에 제시돼 있다. 그림 8에는 국경점 《No.28~No.31》(국경표지 《No.416~419》)의 위치와 국경점을 연결하는 국경선이 1991년 동부국경 협정 제2조에 따라 명시돼 있다. 중국에 양도하기로 한 300ha가 넘는 러시아 영토는 19세기 체결된 각종 조약문건에 따라 현재까지 실제 수비 중인 러·중 간 실효적 국경선과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 따라 설정된 국경선 사이의 중간 지점에 있다. 이 땅은 사실상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부와 북부 두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분수령선을 따라 나 있는 좁은 띠로 연결돼 있다.

키레예프 대사는 1994년 12월 러시아 국가두마 국제관계위원회에서 이 지역의 경제적 관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하산구에서는 하산호의 취수장 외에 다른 지역은 전혀 쓸모가 없다.<sup>147</sup>

『이즈베스티야』지도 그의 견해에 동의하고 나섰다.

세 번째 구간인 하산 지역은 늪지대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경은 하산호와 두만강 사이의 분수령을 따라 설정되었다. 그러나 강 좌안의 지속적인 침식현상으로 인해 국경선이 하천 수역 가까이로 이동하게 되었다. 중국인들은 국경수비를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거나 우리 땅을 침범해야 했다. 이에 우리 측 국경수비대원들의 제안에 따라 국경을 수십m(?) 우리 쪽으로 이동하기로 했다. 이것이 문제의 본말이다(?).<sup>148</sup>

147 『블라디보스토크』(1995. 2. 9), No.24, 6쪽.

그러나 확신하건대 문제는 결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사와 한때 국내외 현안에 대한 객관적인 논평으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공식 일간지의 위 주장들은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다.

중국인들은 하산호 일대 러·중 국경 구간에 대해 항상 각별한 관심을 보여 왔으며, 동 구간에 언제나 큰 의미를 부여했다. 따라서 하산호 일대 동 국경 구간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1880년대 러·중 관계는 동북지역(만주)의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동해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획득할 목적으로 청국 정부의 포시에 트만 남부해안 지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한때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1886년 베이징 조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우수리스크 변강주 남부지역 러·중 국경을 확인한 국경재설정 작업을 통해 같은 해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었다. 국경변경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지고, 실제로 국경설정문건과 현지 지형에 국경선 통과 지점이 더욱 구체화되었다.

러·중 국경의 안정적인 상황은 1917년 이전까지 유지되었다.

국경수비대 예비역 중령 네스테로프의 증언에 따르면 혁명 전까지 이곳에는 러시아 지주들이 한인과 중국인들에게 임대하던 비옥한 경작지와 초지가 있었다. 소작인들은 토지 이용 대가로 크라스노예(Krasnoye) 마을 토지관리부에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불했다.

1913년경부터 러·중 국경선과 두만강 사이의 안쿠안핀 마을(현재 이 마을은 존재하지 않는다)에 거주하던 중국인과 한인들은 자레첸스

---

148 사벤코프(U. Savenkov)(1996. 4. 24), “대중국경, 두 개는 안 된다. 단 하나의 공동 국경이 필요할 뿐이다”, 『이즈베스티야』, No.77, 6쪽.

코(Zarechensko)-포드고르넨스크(Podgornensk) 협회에서 No.1008과 No.424 구역 토지를 임차했다. 이 마을 주민들은 1917년까지 러시아 당국에 토지세를 납부했다.<sup>149</sup>

그러나 러시아의 ‘혼란기’라 할 수 있는 1917년 10월 혁명 이후 발발한 내전과 외세간섭기 연해주 당국이 쇠약해진 틈을 타 중국인들이 하산호 지역 러시아 영토를 침탈한 후 무장 수비대를 배치했다. 중국인들은 러시아 영토의 침탈에 대항하는 러시아 농민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국경수비대원들을 사살했다.

1920~1921년 중국인들은 이 지역 국경표주들을 폐기해 버렸다.<sup>150</sup> 중국인들은 침탈 행위를 통해서 하산호 주변의 소작농지와 또 다른 땅을 약탈하여 1917년부터 1926년까지 무상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1923년 소·중 간 국경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당시 중국 측 ‘소작인’들은 중국경찰의 지원을 받아 보조 국경표주 《No.1》 구역의 토지를 침탈, 점유하는 등 소연방 토지 감독관들의 업무를 방해했다.

1923년 이후 중국 측은 소련 측에 보조 국경표주 《No.1》 구역 하산호 북쪽에 위치한 150ha의 소연방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 고문서 자료를 통해서 No.1008 구역 토지를 약탈하기 위해 중국인들이 국경표주 《No.1》을 파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sup>151</sup>

<sup>149</sup> 네스테로프(1996), No.58, 7쪽.

<sup>150</sup> Tikhii Okean-V(1995. 4. 7), “누구를 위해 진실을 은폐하는가?”, 『블라디보스토크』, No.14, 4쪽.

<sup>151</sup> 네스테로프(1996), No.58, 7쪽.

이듬해인 1924년 중국인들은 No.1008 토지에 재차 파종을 하고, 같은 해 11월 8일에는 또 다른 도발행위를 자행했다. 석제 국경표주 《No.1》을 짐마차에 실어 소련 영토를 침범, 소련 쪽 2베르스타 지점에 설치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인들이 새로 설치한 지점이 1991년 동부국경협정이 시행될 경우 현대적인 국경표주가 설치될 자리였다는 점이다.<sup>152</sup>

1924~1925년 중국 경찰은 이 지역 국경지대에 거주하던 소련 주민들을 체포하여 구타하고 그들의 가축과 농기구를 압수했다.<sup>153</sup> 1924년 국경의 현상유지를 명시한 소·중 정부 간 협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는 협정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1926년 소연방 국경수비대는 하산호 북쪽 ‘분쟁지역’ 문제와 동 구간의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측과 협상을 시도했다. 그러나 협상은 중국 측에 의해 결렬되고, 중국인들은 계속해서 동 구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 1927~1934년 중국인들은 체계적으로 국경을 침범했으며, 일부 국경지대에서 농사를 짓고 풀과 관목을 베어냈다.

국경지대 거주 중국인들의 소행을 1930년대 초반 만주를 점령한 일본인들이 그대로 답습했다. 1931년부터 중국의 동북지방(만주)은 일본군의 점령이 시작되어 결국 1932년 일본 괴뢰국가인 만주국이 선포되었다. 당연히 대소(對蘇) 접경지대에 거주하던 중국인들은 일본당국과 그들의 통제하에 있던 만주국 관리들의 허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

<sup>152</sup> Tikhii Okean-V(1995. 4. 7), “누구를 위해 진실을 은폐하는가?”, 『블라디보스토크』, No.14, 4쪽.

<sup>153</sup> 네스테로프(1996), No.58, 7쪽.

했다. 일·만(日·滿) 정권은 영토·국경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뜻을 같이 했다. 그들의 비호 아래 1936년까지 하산호 북쪽 동 ‘분쟁지역’에서 만주인들은 70ha에 이르는 소연방 영토에서 불법적으로 농사를 지었다.

1935~1936년 안쿠안핀 마을에 거주하던 중국인과 한인들은 수 차례에 걸쳐 하산호 북쪽 소련령 ‘분쟁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탄원서를 일본군 사령부에 제출했다. 일본군 사령부는 이 탄원서를 기반으로 이 문제의 ‘연구’에 착수하여, 1936년 소·만(蘇·滿) 국경은 국경표주 《T》에서 하산호의 동쪽을 따라 콕시코리(Pakshikori) 마을을 지나 바라노바 산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공표했다.<sup>154</sup>

1913년경부터 1917년 혁명 전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현지 제정러시아 당국은 하산호 지역의 제정러시아령 토지를 국경지대 주민들에게 소작을 허용했었다. 이것은 처음에는 중국과 만주인이, 이어서 일본 점령군이 20년만에 걸쳐 소연방 영토인 이 땅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결국 1938년 유혈 무력충돌로 끝을 맺게 되었다.

하산호 지역 소연방 영토 상당 부분에 대한 만주인과 일본인들의 영유권 주장은 결국 1936년 10월 11일 하산호 북쪽 지역에서 발생한 소연방 국경수비대와의 무력충돌과 국경분쟁으로 이어졌다.

하산호 구역과 No.1008호 구역의 국경 통과 지점이 잘못 설정되었다는 만주인과 일본인들의 주장은 1938년 하산사태 직전까지 지속되었다. 일본군은 사실상 장기 군사작전계획을 세워 위력정찰(威力偵察)을 마친 후 하산호 인근 소연방 영토를 공격했으나 1938년 7~8월 대

<sup>154</sup> 네스테로프(1996), No.58, 7쪽.

규모 국경충돌 결과 궤멸하고 말았다. 모스크바 주재 일본 외교관들은 하산호 인근 소연방 영토에 대한 침략 개시 2주 전인 1938년 6월 15일과 20일 동 국경지대에 대한 일본 영유권을 선포했다. 일본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동 지역이 만주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주국 영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산호 지역의 소연방 영토(무명산, 자오제르나야 산과 인접지역)에서 일본군이 퇴각하고 휴전이 선포된 후 국경을 설정할 때 이례적으로 소련 측이 제시한 공식문서가 적용되었다.<sup>155</sup> 이는 노보키예스크에서 체결된 1886년 6월 22일자 러·중 국경 일부 구간의 국경표주 실사에 관한 의정서와 1886년 6월 26일자 ‘양국 간 국경 정밀실사 대상 제1구간에 관한 의정서’ 및 별첨 지도에 따라 무명산과 자오제르나야 산(하산호에서 서쪽으로 이들 산의 정상까지)이 소련령이 되었다.

1945년 일본 관동군의 만주 궤멸 후 연해 변경주 소·중 국경 주도 적군(赤軍) 참모본부의 지휘에 따라 19세기 조약에 의해 소련령이었으나 한때 일·만 당국이 영유권을 주장했던 국경지대가 소연방의 수비 아래 놓이게 되었다.

러·중 국경지대 하산사태와 관련하여 일부 구간에 토목 구조물과 철조망이 설치되었다. 얼마 전까지도 소·중 국경에는 소연방이나 중국 측이 차지한 구간 모두 다양한 토목 구조물이 설치돼 있었다.

1947년, 1960년과 1983년 극동 군관구 전문가들과 군 측량기사들이 시행한 국경선 실사 결과는 이를 입증해 준다. 네스테로프의 자료에

---

<sup>155</sup> 「1938년 하산 분쟁」, 『외교사전』(1985), 3권, 530쪽; 『극동지역 국제관계』(1956), 495~496쪽.

따르면 오직 하산에서만 6곳의 특이 구간(총면적 21.4ha)이 밝혀졌는데, 이들 구간의 국경선은 실제 합의된 선과 달리 러시아 혹은 중국 쪽으로 이탈해 있었다.<sup>156</sup> 그러나 이 면적은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 따라 중국 측에 양도하기로 했던 소연방의 영토 300~375ha보다 훨씬 작은 규모이다.

하산 지역 러·중 국경에서 최근 100년 이상에 걸쳐 발생한 사건들을 분석해 보면 중국 측은 1880년대 초반에 이미 중국의 훈춘 시와 동해 사이의 연해주 남부 일부 러시아 영토, 즉 포시예트 만과 하산호 인접지역을 포함한 연해 변강주 하산구 남부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지역에 대한 중국 측의 영유권 주장은 일방적이었을 뿐이며, 중국 측 외교 당국자들이 이러한 일부 접경지역에 대해 ‘분쟁’을 야기한 것은 영토·국경 문제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소련) 측으로부터 별도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1886년 국경협상 과정에서 이 지역 국경선이 중국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었지만 중국은 동해 진출로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하산호 지역 소연방 영토의 ‘분쟁지역’을 획득하려는 시도는 1920년대 만주 정권을 침탈했던 중국 제국주의자들도 성공하지 못했다. 1930년대 국경지역 군사도발과 1938년 하산호 지역 국경지역의 무력충돌 당시 일·만 군대 또한 이 지역을 손에 넣지 못했다. 1960년대 초와 1964년 국경 문제 협상 과정에서 중국 마오쩌둥 정권 또한 이 지역 획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sup>156</sup> 네스테로프(1996), No.58, 7쪽.

그러나 이것은 1991년 가능하게 되었다.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독트린을 실현했던 소연방 외무부와 뒤이어 러시아의 반국익적 대외정책을 추진했던 러시아 외무부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체결된 1991년 러·중 동부국경협정 덕분이었다. 동 협정 체결 결과 ‘분쟁지역’ 혹은 마치 ‘무주공산’으로 비쳐졌던 국경 하천의 러시아령 도서들과 연해 변강주 한카구, 우수리스크구, 하산구의 러시아령 육상 ‘분쟁지역’이 중국으로 넘어간 것이다.

극동지역의 러시아 국익을 지키기 위한 연해 변강주 애국자들의 4년(1993~1997)간에 걸친 투쟁 끝에 연해 변강주를 통과하는 양국의 새로운 국경선에 관한 소연방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협정의 일부 항목이 이행되지 못했다. 이는 러·중·북한 3국의 국경이 교차하는 하산호 일대 국경 구간에 관한 것이다.

나즈드라텐코가 주지사로 부임한 1993년 여름 이래 1997년까지 연해 변강주 행정부는 당시 실제 수비 중이던 실효적 국경선을 유지할 것을 줄기차게 주장했다. 다양한 애국적 시민운동 단체와 카자크인들 및 학계 등 연해 변강주의 애국적 여론이 행정부의 이러한 주장을 강력히 뒷받침했다.

이와 같은 통합된 노력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1997년 7월 18일부터 8월 4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 러·중 공동 국경표지위원회 제7차 회의의 두만강 유역 연해 변강주 하산구 국경선 통과 지점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중국 측은 연해 변강주 ‘분쟁지역’에 관해서도 상호 양보하자던 완강한 주장을 철회한 것이다. 이러한 협상의 성과는 상당 부분 나즈드라텐코 연해 변강주 주지사의 강경한 태도와 변강주 주민들의 강력한 지지 덕분에 가능했다.

그 후 국경표지위원회 제7차 회의는 하산호 지역 러·중 국경 ‘분쟁 지역’에 대한 러·중 양측 간 일정한 타협안을 끝으로 타결되었다. 베이징에서는 1997년 8~9월에 러·중 실무그룹 회의가 열렸는데, 이때 1938년 하산호 전투 중 사망한 소련 병사들의 공동묘지는 러시아령으로 한다는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1997년 9월 말 중국은 연해주 하산구에 1860~1886년 양국 간 체결된 각종 조약 및 합의에 의해 설정된 실효적 국경선과 1991년 소·중 동부국경협정에 의해 설정된 국경선 사이의 중간 지점에 새로운 국경선을 설정하지는 러시아 측 제안을 수용했다.

그러나 1997년 9~10월에도 하산구 러·중 국경 ‘분쟁지역’에서는 공동 국경설정 실무그룹 제10차 회의가 열렸다. 러·중 국경변경에 관한 최적의 해결안을 모색하기 위한 체계적인 작업이 진행되었다. 하산호 지역 ‘분쟁지역’의 국경표주들 또한 이 문제에 관한 연해 변강주 행정부의 강경 입장으로 인해 1997년 10월 말까지 설치되지 못했다.

연해 변강주 행정부의 입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1860년 베이징 조약, 양국 외교가에 노보키옴스크 의정서로 알려진 1886년 양국 공동으로 시행된 국경실사문건들과 1983~1986년 ‘소·중 국경 단독실사 부처간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모든 역사적·법적, 실무적인 문건들을 고려할 때 비로소 동 국경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영토적·경제적 이익을 수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러·중 간 국경설정 작업을 성급히 끝내야 할 필요성은 전혀 없었다.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거대한 두 이웃 간의 4200km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은 수 세기에 걸쳐 설정돼 왔기 때문에 추후 발생 가능한 오해나 상호 영유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세

밀한 검증이 필요했었다.

그러나 모스크바 당국은 국경설정 과정을 급히 서둘렀다. 러시아 외무부 당국은 이미 1997년 10월 초 키레예프가 서명한 정부 서한을 연해 변경주에 발송하여 국경설정 과정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외무부는 이를 부인했다. 한편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는 국경설정 작업을 1997년까지 혹은 일정 기한 내에 완료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러시아는 동부국경협정 이행일정과 관련한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다.

러·중 간 동부지역 국경설정 작업은 옐친 대통령의 방중일정에 맞춰 서둘러 끝마쳤다. 방중 전 옐친 대통령은 새로운 국경표주를 1997년 11월 1일까지 모두 설치하라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러시아 국경수비대 소속 대원들은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군인 신분으로 당연히 이 명령에 따라야만 했다.

옐친 대통령의 방중 직전 국경설정 위원들과 지형 측량기사들이 모스크바 발 특별기를 이용하여 현지 국경지역으로 날아와 연해 변경주 행정부의 강경한 태도로 4년간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국경설정 작업을 순식간에 완료했다. 게다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측은 작업을 서두른 나머지 국경표주를 제대로 설치하지 못한 채 설치 예정 지역 늪지대 풀숲에 국경설정위원회 깃발만을 꽂았을 뿐이었다. ‘분쟁지역’의 경계표지들은 이런 상태로 1998년 초까지 유지되었다. 다시 말해서 러·중 공동성명을 채택한 옐친 대통령의 방중 후 2개월이 지나도록 현지 국경 구간의 국경설정 작업은 완료되지 않았던 것이다.

옐친 대통령은 1997년 11월 9~11일 이루어진 중국 국빈방문 중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리펑[李鵬] 국무원 총리, 차오스[喬石]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등과 회담을 가졌다.

회담의 주요 정치적 성과는 4200km의 러·중 간 동부지역 국경설정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러시아 대통령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의 공동 성명서였다. 언론은 흔히 동 성명을 베이징 조약이라고 칭하는 큰 오류를 범하곤 한다. 그 당시 그 어떤 새로운 베이징 조약도 체결되지 않았다. 그저 성명서만 채택되었을 뿐 결코 그 이상은 아니었다.

1997년 11월 10일 중국의 장쩌민 주석과 러시아의 옐친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공동 성명에 서명했다. 동 성명서는 특히 1991년 5월 16일자 소·중 동부국경협정에 따른 러·중 간 국경설정 작업에 관한 제반 문제의 타결을 선언한 것이었다.

공동 성명서 채택과 관련하여 국민 여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언론에 수많은 억측과 오보가 난무했다. 이에 러·중 간 국경설정에 관한 공동 성명서 원문을 직접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성명서 제3장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 양 정상은 양국 간 체결한 1991년 5월 16일자 소·중 동부지역 국경설정에 관한 협정 이행과 관련한 모든 문제들이 타결되었으며, 설정되는 러·중 간 동부지역 국경(약 4200km)은 양국 역사상 최초로 현장에 명확하게 표기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이것은 상호 노력과 존중, 상호 이익을 고려한 결과 달성한 금번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이다.

양측은 서부지역 국경설정(약 55km) 작업을 합의된 기한 내에 완료할 준비가 돼 있음을 선언한다. 양측은 양국 간 전 구간의 국경설정 작업과 관련한 일부 미해결 국경 문제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타결하기 위해

협상을 속개한다.

러·중 간 국경설정 문제가 성공적으로 타결된 것은 역사적으로 승계된 문제가 평등한 협상, 상호이해 및 양보의 정신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된 모범적 사례이다. 이것은 러·중 양국 간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녕, 안정과 번영뿐 아니라 양국 간 선린·우호관계 강화 및 역내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양국 국민 공동의 숙원이기도 하다.<sup>157</sup>

러·중 공동 성명은 총 5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성명서에는 러시아 열린 대통령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장쩌민 주석이 서명했다.

확신하건대 동 공동 성명서는 국가 간 조약이나 정부 간 협정이 아니다. 동 공동 성명서는 양측의 의무를 규정하지 않으며 비준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그저 러·중 양국의 사절단장인 대통령과 국가 주석이 서명한 양자 회동 결과에 관한 공동 성명에 불과하다. 양국 지도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경설정과 관련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현장에서 국경설정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엄숙히 선언했다. 이처럼 본 성명은 사실을 확인한 것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성명서는 이전에 채택된 양측의 의무사항에 아무것도 부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동 성명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건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본 성명서는 앞으로도 오직 이러한 차원에서만 검토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날(1997년 11월 10일) 러시아 정부를 대표한 넴초프(B. Nemtsov) 제1부총리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 리란칭(李嵐淸) 국무원 부총리가 서명한 러시아와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방 정부들 간 협력원칙에 관

157 「러·중 공동 성명」(1997), 『극동문제』, No.6, 4쪽.

한 양 정부 간 협정 제5조에는 특별히 다음과 같은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 명시돼 있다.

체약 쌍방의 요구에 따라 러시아와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방 정부들은 협력협정의 논의 및 체결 과정에 자국의 관련 법규 및 양국 간 체결된 국제협약들을 엄격히 준수한다. 러시아와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방 정부들은 각국이 관할하는 외교, 국방, 국경, 항공운항 관련 사안 및 국가주권과 영토 관련 문제를 논할 권한이 없으며 양 국가 간, 양국 정부 간 혹은 양국의 중앙 부처 간 체결된 협정을 수정하거나 그에 대한 이견을 제시할 수 없다.<sup>158</sup>

이는 마치 1993~1997년 러·중 간 국경설정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러시아 지자체장들의 강력한 저항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게 아닌가 싶다.

1991년 동부국경협정이 곧바로 이행되지 않고 국경수비대 철수 명령도 하달되지 않아 국경수비대는 기존의 국경을 수비하고 있었다.

연해 변강주 하산구 지역 러·중 간 새로운 국경선의 통과 지점은 전혀 알 길이 없다. 진실은 안개 속에 묻혀 있다. 현지 지방 및 중앙 언론에서는 이에 대한 오보와 억측을 쏟아 냈다.

‘슬그머니 이루어진 국경설정’이라는 제하의 이 초미의 관심사에 대한 최초 기사는 국경선 통과 지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노골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

---

<sup>158</sup> 『극동문제』(1997), No.6, 15쪽.

…… 마침내 국경선은 설정되었다. 그러나 이 국경선은 도대체 어디를 통과하는가? 이 의문은 최근 4년 동안 연해 변경주 애국자들의 주된 걱정거리였다.

…… 실제로 ‘분쟁지역’은 새로운 국경선에 의해 50대 50으로 나뉘었다. 모든 형태의 무덤과 하산호의 주요 집수구역이 러시아 쪽에 남게 되었다. 특히 집수구역 확보를 위해 환경운동가들의 노력이 컸다. 한편 중국 또한 이전에 마치 중국 ‘본토’에서 거의 분리된 구역에 접근할 수 있는 꽤 넓고 확실한 통로를 얻게 되었다.<sup>159</sup>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이겼다’라는 기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싣고 있다.

러·중 공동 국경표지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중국 측은 국경표지 《No.416~No.419》[국경점 《No.28~No.31》-필자] 사이 두 구간의 국경변경에 동의함으로써 우리 측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국제법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협정 일방이 서명·비준된 협정을 스스로 위반하면서 타협에 응한 것은 국제외교사상 전례 없는 일이다. 하산 지역의 집수구역, 레바제(Lebyazhe) 호수, 독특한 자연공원 및 러시아 전사자들의 공동묘지 또한 러시아령으로 남게 되었다. ……<sup>160</sup>

러시아 공산당 연해 변경주 출신 국가두마(하원) 그리시코프(V. V.

<sup>159</sup> 오스트롭스키(A. Ostrovsky)·오첸코(V. Oshchenko)·말리(S. Maly)(1997, 11, 12), “슬그머니 이루어진 국경설정. 러시아와 중국 양 정상들은 항구적 국경설정을 선언했다”, 『블라디보스토크』, No.210, 7쪽.

Grishkov) 의원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 정보에 따르면 실제로 일부 연해 변경주 영토가 중국에 양도될 것이며, 이로써 중국은 해양 진출로를 얻게 될 것이다. …… 일주일 전 나는 국경수비대원들과 면담을 가졌다. 처음에 60명 정도의 장교들과 만난 후 태평양 군관구 사령관을 면담했다. 그들은 이제 옐친 대통령이 병력 철수명령을 내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하산구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은 매우 분개하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현지 지방 정부 지도자들, 특히 연해 변경주 주지사 나즈드라텐코는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이곳 러시아 땅을 빼앗기면 쿠릴 열도 또한 양도하게 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다. 모든 주변 지역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하산호 범람원이 중국 측에 넘어가게 된다. 만일 이곳 범람원이 중국에 넘어가면 그들은 이 땅을 개간하여 벼농사를 짓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 깨끗한 물은 물론 호수의 연꽃도 더 이상 구경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곳은 온통 화학약품으로 뒤덮이게 될 것이다. 소연방 최고회의가 비준한 1991년 동부국경협정 제5조와 제9조[분수령을 따라 국경이 통과하는 각 하천과 구간에 대한 국경설정 및 국경점 《No.33》에서 두만강 하구까지의 강 하류와 동해까지의 중국 선박의 항행 관련 조항-필자에 의하면 이 협상은 10~15년을 끌면서 서두르지 않고 느긋하게 국경표주 하나하나 별도로 합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옐친 대통령은 독단적인 행동으로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sup>161</sup>

160 『노보스티』(1997. 11. 19).

러시아 국가두마 국제관계위원회 루킨 위원장의 러·중 간 국경설정 결과와 관련한 『크라스노예 즈나마』지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경은 두만강 좌안(하산구)의 두 구간(2.8km)에서 대략 현재의 국경선과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 따라 설정된 국경선 사이의 중앙 지점을 통과한다. 이때 국경수비 여건과 하산호 지역의 환경보호 문제가 고려되었다.<sup>162</sup>

‘제5차 러·중 정상회담 : 양국 간 고도의 신뢰가 조성되었으며, 우선과제가 경제분야로 이전되고 있다’는 러시아 외무부 라흐마닌(V. O. Rakhmanin) 아시아 제1부국장의 최종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국경설정 과정에서 현장(연해 변강주 하산구 두만강 좌안 국경지대의 두 구간, 연해 변강주 우수리스크구 국경표주 《II》 일대의 국경, 우수리 강 유역의 여러 도서지역 및 기타 문제)의 국경설정 작업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들이 발생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러·중 공동 국경표지위원회 회의(러시아 측에서는 하바롭스크 변강주, 연해 변강주 및 기타 국경 인접지역 대표들이 참석했음)에서 상호 수용 가능

161 「러시아연방 연방의회 국가두마 러시아연방 공산당 간행물」(1997), 『두마』, No.24, 3쪽.

162 루킨(V. I. Lukin)(1997. 12. 11),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 『크라스노예 즈나마』, No.140, 2쪽.

한 타협점을 찾기 위한 대대적인 준비작업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분쟁지역’의 국경설정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졌다.

두만강 좌안. 이 지역 두 구간의 국경선은 지형적 특성과 국경수비 여건 및 이 지역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새로 설정되는 국경선의 반은 기존의 국경선이 통과하던 분수령을 따라 이어진다. 중국 측은 하산 전투 영웅들의 공동묘지를 러시아령으로 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동의했다.<sup>163</sup>

앞의 내용은 사실과 일부 다른 점이 있다.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다.

하산호 인근 두만강 하구 지역 연해 변강주 하산구에 위치한 러시아 영토의 ‘분쟁지역’에 대해 국경설정 작업 최종 단계에서 동 지역에 새로운 국경을 설정하여 50대 50의 비율로 분할 결정이 채택되었다는 『블라디보스토크』지 기자들의 말을 믿는다면, 중국 측은 소·중 동부국경협정 제2조와 별첨 지도(1 : 100,000 축척)에 따라 다양한 산출법에 의해 확정된 300~375ha가 아닌 150~190ha의 러시아 영토를 얻게 된다. 국가두마 의원 루킨 또한 이와 유사한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 4월 30일, 1999년 3월 1~2일 연해 변강주 TV 제2 채널을 통해 방영된 하바롭스크 스튜디오의 시사 프로그램 「동부국경. 국경설정」에서 키레예프 대사는 연해 변강주 하산구 지역 국경변경 결

163 『극동문제』(1997), No.6, 20~21쪽.

과 중국에 280ha의 러시아 영토가 양도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마도 러시아 외무부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1997년 상반기 출간된 자료집 『러·중 국경 : 문서, 논거, 사실』의 ‘지도자료’ 항목에는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 따라 설정된 연해 변강주 지역 국경선 통과 지점이 표기된 지도가 게재돼 있다.<sup>164</sup> 이 지도에 따르면 하산구 국경변경 결과 2.7km<sup>2</sup>의 영토가 중국에 양도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그러나 이것은 1997년 9월 말 열린 러·중 공동 국경표지위원회 제7차 회의 중 양측 합의에 의한 1991년 동부국경협정 제2조의 원문 수정 이전에 발표된 것이다).

1997년 12월호 『극동문제』에 실린 라흐마닌의 기고문은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조명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기고문은 특히 “새로 설정되는 국경선의 절반은 분수령을 따라, 즉 기존의 국경선을 따라 이어진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하산구 ‘분쟁지역’을 대략 반으로 양분한다 하여 새로 설정되는 국경선의 절반이 분수령을 따라, 즉 기존의 국경선을 따라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주장은 『블라디보스토크』지 기자들의 보도나 『크라스노예 즈나냐』지에 실린 국가두마 국제관계위원회 루킨 위원장의 주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키레예프 대사가 시사 프로그램 「동부국경. 국경설정」 중 하바롭스크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행한 발언과 러시아 외무부 라흐마닌 아시아 제1부국장의 기고문을 근거로 판단하면, (문서를 열람할 수 없고, 국경설정 당시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국경점 《No.28》에서 《No.31》까지의 ‘분쟁지역’ 국경선 통과 지점은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국경선은 국경표지 《No.416》을 설치하려 했던 국경점 《No.28》에서

164 『러·중 국경 : 문서, 논거, 사실』(1997), 29쪽.

남쪽으로 분수령 산맥, 즉 1860~1886년 러·중 간 체결된 각종 조약문건에 따라 설정된 국경선에 위치한 가상의 국경점 《A》까지 이어진다. 국경점 《A》는 국경표지 《No.417》을 설치하려 했던 국경점 《No.29》와 동일한 것으로, 그와는 조금 다른 장소이긴 하지만 두만강과 하산호 사이의 분수령에 위치한다.

나아가 새로운 국경선은 가상의 국경점 《A》에서 출발하여 앞에 언급한 분수령, 즉 1997년 11월 이전까지 존재했던 국경선을 따라 분수령 산맥, 즉 러·중 간 체결된 각종 조약문건에 따라 설정된 국경선에 위치한 가상의 국경점 《B》까지 이어진다.

그 후 새로운 국경선은 가상의 국경점 《B》에서 출발하여 국경표지 《No.418》을 설치하려 했던 국경점 《No.30》까지 이어진다. 이어서 국경선은 국경점 《No.30》으로부터 필시 남쪽으로 국경표지 《No.419》를 설치할 예정이었던 국경점 《No.31》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가상의 국경점 《B》에서 국경점 《No.30》까지, 국경점 《No.30》에서 국경점 《No.31》까지 이어지는 국경선은 국경점 《No.29》에서 국경점 《No.30》까지, 그리고 국경점 《No.30》에서 국경점 《No.31》까지 직선으로 뺀 이전의 국경선과는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가상의 국경점 《B》는 국경점 《No.29》에서 국경점 《No.30》까지의 직선 국경선이 아닌 그보다 조금 남쪽에 있는 분수령선, 즉 구 국경선에 위치한다. 하산호 북쪽 국경점 《No.31》 부근에는 양측이 러시아령으로 합의한, 1938년 하산 전투에서 전사한 영웅들의 공동묘지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국경선은 이 구간에서만이라도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서 합의한 통과 예정 지점보다 약간 서쪽으로 이동해야 한다.

우리가 가상으로 기술해 본 새로운 국경선(국경점 《A》, 《B》와

《No.28~No.31》)과 연해 변강주 하산구 리·중 국경 ‘분쟁지역’의 위치는 첨부된 하산호 지역 리·중·북한 3국 국경 교차점 도면에 제시되어 있다(224쪽, 그림 8). 이 도면에는 국경점 《No.28~No.31》과 가상 국경점 《A》, 《B》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이 지역을 지나는 국경선의 위치는 이 도면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국경점 《No.28》에서 가상 국경점 《A》까지, 가상 국경점 《B》에서 국경점 《No.30》까지, 그리고 국경점 《No.30》에서 국경점 《No.31》까지 각각의 국경선들에 의해 결정된다. 가상 국경점 《A》에서 가상 국경점 《B》까지의 국경선은 분수령선, 즉 구 국경선을 통과한다.

중국에 양도하기로 한 270~280ha의 러시아 영토는 19세기 체결된 각종 조약문건에 따라 현재까지 실제 수비 중인 리·중 간 실효적 국경선과 1997년 9월 말 확정된, 우리가 가상으로 기술해 본 형태의 리·중 국경선 사이에 있다. 이 땅은 남부와 북부 두 구역으로 분리되어 있다.

만일 (키레예프와 라흐마닌의 주장을 근거로 한) 필자의 가정이 옳다면 1991년 협정 제2조에 따라 중국 측에 양도하기로 한 300~375ha의 러시아 영토 중 국경설정 결과에 따라 실제로 270~280ha가 중국에 양도된다. 따라서 연해 변강주 리·중 간 국경변경 문제에 대한 나즈드라텐코 주지사의 애국심과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연해 변강주 행정부의 노력으로 연해 변강주는 두만강 하류의 전략적 요충지인 국경지대 하산호 지역과 리·중·북한 3국 간 교차점의 20~105ha에 달하는 러시아 영토를 지켜 낼 수 있게 된다.

1997년 11월 12일자 『블라디보스토크』지에 실린 기자들의 주장과 이와 유사한 주장을 펴는 러시아 국가두마 국제관계위원회 루킨 위원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나즈드라텐코 주지사의 강경한 입장과 그가

이끄는 연해 변경주 행정부의 노력으로 연해 변경주는 전략적 요충지인 러·중 국경지대 약 150~190ha에 달하는 러시아 영토를 지켜 낼 수 있게 된다.

물론 연해 변경주 하산구 국경변경에 관한 최종 결론은 오직 이 지역 국경설정 도면이 포함된 정밀 지형도가 발간되고, 현장에서 국경설정 작업을 총괄한 공동 국경설정 실무그룹 제10차 회의 의사록과 속기록 등 관련 문서가 공개된 후에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현지 지방 및 중앙 언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해 변경주 하산구 새로운 러·중 국경선의 실제 통과 지점 문제와 관련, 『두마』지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연해 변경주 영토가 중국에 넘어가면 중국은 해양 진출로를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국가두마 의원 그리시코프가 옳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침부된 하산호 지역 러·중 국경 도면에는 중국이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 따른 국경변경 결과 해양 출구를 얻지 못하고 오직 하산호와 두만강 사이에 위치한 자국 영토의 접근로를 대폭 확장할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반면에 1991년 중국 측이 동부국경협정의 문구를 사실상 위반하고 “회담 막바지에 국경표지 《No.416~No.419》 사이 두 구간의 국경변경에 동의함으로써 우리 측 제안을 수용, 타협에 응한 것은 국제외교사상 전례가 없다”는 『노보스티』지 라스킨(U. Raskin) 기자의 보도가 옳다.

이와 관련, 러·중 양국이 1991년 동부국경협정을 1992년에 비준·발효된 문서로 간주하는 한, 러·중 공동 국경표지위원회는 활동 과정에서 소·중 동부지역 국경 전 구간의 통과 지점을 규정하고 항행 불가능한 하천을 포함한 모든 국경 하천과 국경선이 분수령을 통과하는 전 구간의 국경설정 작업 절차를 명시한 동부국경협정 제2조와 제5조를

결코 위반해서는 안 된다. 러·중 공동 국경표지위원회는 활동 과정에서 앞에 언급한 동부국경협정 제2조와 제5조를 비롯하여 동 협정 제4조를 준수해야 한다. 이들 조항이 규정하는 공동 국경표지위원회의 업무는 국경획정이 아니라 국경설정이다. 따라서 동부국경협정 제2조에 따라 이 지역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위치한 국경점 《No.28》, 《No.29》, 《No.30》과 《No.31》 사이에 직선으로 통과하는 국경선과는 다른 새로운 국경을 설정할 경우 반드시 1991년 동부국경협정의 승인 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승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1991년 5월 16일자 소·중 동부국경협정에 대한 추가 의정서 또한 비준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자 한다.

주권국가인 (국제조약상 소연방의 법적 승계자인) 러시아와 중국은 1991년 소·중 간 국경협정의 당사국으로서 양측은 협정문 수정에 전권을 가지며, 이때 수정(혹은 보충)된 협정문 또한 1991년 동부국경협정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단 한 가지 방법, 즉 하산호 지역 러(소)·중 간 국경변경 추가 의정서를 채택함으로써 가능하다. 러시아에서는 동 법안을 국가두마(하원)가 비준하고 연방회의(상원)와 대통령이 승인하며, 중국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비준해야 한다. 추가 의정서는 오직 1991년 동부국경협정 당사국인 러·중 양측 간 비준서 교환 후 비로소 발효된다.

1991년 5월 16일자 동부국경협정에 따른 러·중 간 국경변경 결과 하산호 이북 러시아 영토 중 러시아령으로 남게 된 지역과 중국 측에 양도한 지역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자.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 따라 중국에 양도하기로 했던 연해 변강주 하산구 관내 러시아 영토는 정상에서 수십km 멀리 블라디보스토크 시

까지 내려다보이는 고지 주변과 포트르대제 만에 위치한다. 한때 이 고지들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이들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1938년 하산호 지역에서 일·소(日·蘇) 간 유혈 국경분쟁이 발발했었다.

그 밖에 중국에 양도하기로 한 하산호 북쪽에 위치한 남쪽 구간은 1938년 일본 침략자들로부터 조국 땅을 수호하기 위해 수백 명의 적군(赤軍) 병사들과 국경수비대원들이 전사한 전투지역에 인접해 있다. 당시 이곳에서는 2개 보병여단이 전투를 벌였고, 이 구역 남단에서는 근접전도 벌어졌다. 그 결과 전사한 소련군 병사들의 공동묘지 일부와 미처 수습하지 못한 전우들의 유골이 떠도는 늪지대가 중국령이 되었다.

1991년 동부국경협정 제2조와 별첨 1 : 100,000 축척 지도에는 국경점 《No.28》에서 《No.31》까지의 하산호 북쪽 소·중(러·중) 간 국경선의 통과 지점(여기에 국경표지 《No.416~No.419》를 설치하기로 한 바 있다)이 직선으로 표기돼 있으며, 이 직선을 따라 국경이 설정될 경우 1938년 하산 전투 영웅들의 공동묘지가 중국에 넘어가도록 돼 있었다.

어쩌면 이 같은 터무니없는 상황은 저명한 ‘피스메이커’ 고르바초프가 낳은 ‘탁월한 외교관’ 셰바르드나제(E. A. Shevardnadze, 1987~1990년 소연방 외무장관 재직 당시 1991년 동부국경협정 체결 준비작업을 이끌었음) 휘하의 소연방 외무부 직원들의 국익 경시대도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아마도 당시 외교관들은 ‘원한다면 무엇이든 다 주겠다!’라는 생각으로 행동했을 것이다. 그들은 대중(對中) 동부국경협정문 작성 당시 국경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단 한 차례의 현지 답사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마도 하산호 근처에서 있었던 일본 침략자들과의 전투에

서 전사한 소련군 병사들이 묻혀 있는 공동묘지가 중국 측에 넘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한 행동은 파렴치하다고밖에 할 수 없을 듯하다.

만일 연해 변강주 하산구 관련 1991년 동부국경협정 조항이 전면 실현되었다면 러시아 측은 매년 맞이하는 1938년 하산사태 기념일마다 전사한 러시아 병사들이 잠들어 있는 공동묘지에 헌화하기 위해 중국 입국비자 신청과 함께 묘지 참배 허가를 중국 측에 요청해야 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을 것이다. 나즈드라텐코 연해 변강주 주지사의 분명하고 원칙적인 입장 덕분에 연해 변강주 주민을 비롯한 러시아 국민은 크나큰 민족적 굴욕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 주지사의 노력으로 러시아 외무부가 대중 협상 과정에서 주도권과 끈기를 발휘할 수 있었고, 중국 측은 결국 국경선 이동에 동의하게 되었다. 이로써 1938년 하산 전투 영웅들의 공동묘지가 러시아 영토로 남게 되었다. 이 사실에는 영원히 변치 않는 역사적·윤리적·심리적인 의미가 있다.

환경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 지역은 하산구를 비롯한 연해 변강주 전체의 환경 이익과 관련이 있다. 이 환경문제는 두만강, 하산호 및 그 인접지역 전반의 수문체계(水文體系)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지역 환경문제 분석을 위해 지표수문학(地表面文學)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보자.<sup>165</sup> 코룟키 박사의 견해에 따르면 이 지역의 지질구조상 특징은 모래 지반이 주를 이루고 모래층의 두께가 35~40m를 넘는다는 데 있다. 지질 단면의 주성분이 모래이기 때문에

---

<sup>165</sup> 코룟키(1991~1997), 59쪽.

토양의 침투능(浸透能)이 높고 지하수위가 낮으며 북쪽과 동쪽 방향 두 만강 물의 투과성이 매우 높다.

코룻키 박사의 말에 따르면 하산호는 지형 하부, 즉 자오제르나야 산과 고기단구(古期段丘) 사이에 위치한 깔때기 형태의 집수통로에 위치한다. 하산호는 지금까지도 경제활동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산호의 물은 높은 청정도와 수질을 자랑하고 이 지역, 즉 연해 변경주 하산구 남부 지역의 청정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코룻키 박사의 자료에 따르면 하산호의 수자원은 두 개의 공급원을 통해서 보충된다.

첫째,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 따른 국경선 통과 예정지역이었던 늪지대에서 소량의 표층수가 유입된다. 그러나 문제는 하산호로 표층수를 공급하는 늪지대가 중국 측에 넘어갈 뻔했다는 사실이다. 1991년 동부국경협정 제2조가 규정한 바대로 이 지역 러·중 국경선이 직선으로 설정될 경우 하산호로 유입되는 표층수 집수구역의 2/3가 중국 측에 양도될 뻔했다. 하산호에서 연해 변경주 남부지역에 필요한 급수가 이루어진다.

연해 변경주 행정부는 나즈드라텐코 주지사의 제안과 강력한 주장에 따라 러시아 외무부를 설득하여 러·중 공동 국경표지위원회와 제10차 공동 국경설정 실무그룹 차원의 대중 협의를 통한 국경설정 과정에서 하산호 지역의 생태균형을 유지하도록 했다.

둘째, 두만강 물의 유입을 통한 하산호의 수자원이 보충된다. 그러나 이때 두만강 물 자체가 호수로 직접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홍수기 범람으로 하산호에 두만강 물이 흘러들어 가는 상태이다. 두만강 물은 두꺼운 모래층을 통해 여과되어 깨끗한 상태로 호수에 유입된다.

코룻키 박사의 자료에 따르면 두만강과 카라시크(Karasik) 강 사이에 위치한 분수령의 고도는 낮다. 이것은 두만강이 지질학적 과거에 카라시크 강 하류곡(河流谷)을 따라 강물을 엑스페디치아 만으로 흘려보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라시크 강의 저지형(低地形)은 두만강의 노년곡(老年谷)으로 볼 수 있다. 카라시크 강의 현재 하상에 비해 매우 깊은 이 노년곡 단면의 깊이는 40~60m이며 모래와 양질의 점토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계곡을 따라 포시예트 만 방향으로 지하수가 흐른다.

코룻키 박사의 전망에 따르면 러·중 국경이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 따라 동쪽과 북동쪽 방향으로 이동한 후 동 협정이 하산호 일대 국경 구간에 대해 전면 이행될 경우 하산호 지역과 카라시크 강 생태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sup>166</sup>

첫째, 하산호 집수구역 상당 부분이 중국 측 경제활동 구역에 편입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중국인들의 논(약 80ha)에서 흘러나오는 오염수가 호수로 직접 유입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지역에서 흘러나오는 일부 오염 하수가 모래 지반을 쉽게 통과하여 지하수와 함께 호수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영농이 시작되기 전까지 초청정 저수지로 분류되었던 극동지역의 다른 소규모 저수지들에 대한 연구 결과 수생태계가 빠르게 파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영양화로 인한 급격한 수질오염 때문에 이들 저수지는 수자원 시설로서의 본원적 의미를 상실했다. 중국 농부들이 호수의 집수구역을 개간하고 나면 하산호의 운명도 이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산호가 이 지역 유일의 대규모 청정 담수 공급원이며

---

<sup>166</sup> 코룻키(1991~1997), 60쪽.

본질적으로 정지수(停止水)라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국제자연보호연맹이 지정한 희귀 패류가 서식하는 이 독특한 저수지는 급속하게(2~3년 내) 오염되고 말 것이다.

둘째, 두만강 둔치가 경제활동 목적으로 개발될 경우에도 하산호로 유입되는 표층수와 지하수가 오염되고 대규모 철새 이동경로에 위치한 수려한 자연경관이 훼손될 수 있다.

셋째, 오염된 표층수와 지하수가 낮은 분수령을 넘어 카라시크 강 계곡, 더 나아가 생물종이 매우 다양한 수중생태계가 조성된 엑스페디치아 만으로 유입될 수도 있다. 이러한 수중생태계가 붕괴될 경우 이 지역 양식업은 치명타를 맞게 된다. 그 외에도 오염된 물이 편남풍을 타고 극동해양보호구역으로 유입될 수 있다.

환경학자들의 자료에 따르면 러·중·북한 3국 교차점에 있는 연해변강주 하산구 최남단 늪지대는 생태학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곳은 특히 물새 이동의 중간 기착지이며 월동, 털갈이 및 번식기에 주로 몰려드는 도래지이다.<sup>167</sup> 두만강 삼각주에는 국제자연보호연맹에 등록된 36종의 희귀새들이 3건의 양자 간 협약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이 지역에는 조류 외에도 12종의 포유류와 양서류, 28종의 곤충, 40종의 유관식물(維管植物) 등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4종의 국가 천연기념물이 지정돼 있다. 이 지역은 염분이 많은 늪지대로 목본식물(木本植物)이 거의 자랄 수 없어 경제적인 용도로는 개발되지 않았다.

<sup>167</sup> Dalnevostochny ucheny(1997. 3. 5), “두만강 삼각주는 국립공원인가?”, No.7, 7쪽.

이 지역은 생태학적 의미 외에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한 곳이다. 이곳에서 신석기시대부터 중세시대까지의 고대 유적지 및 정착지 23곳이 발굴되었다. 이 지역 강가에는 수km에 달하는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어 휴양지로도 적합하다.

앞에 언급한 내용을 고려하여 연해주 자연보호위원회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프라모르니(Mramorny) 곳에서 두만강 하구까지의 너비 2~6.5km에 달하는 연안지대, 4곳의 천연기념물, 너비 1km의 인근해역, 카라시크 강에서 하산호 남단까지의 국경지역 및 로토스(Lotos) 호수와 자레치노예(Zarechnoe) 호수 주변 일대를 아우르는 국립자연생태공원이 들어설 수 있다.

1995년 라코프의 주장에 따르면 만일 러·중 국경선이 러시아 쪽으로 이전될 경우 중국인들은 침식되는 강안으로부터 도로를 이전하고 침수구역에는 교량을 건설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강둑 보강에 더 이상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산호 부근 남쪽 중국령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개설된 중국령 두만강 좌안 보강을 위한 중국 측의 지속적인 노력이 없다면, 두만강은 매년 강한 태풍으로 인해 러시아 쪽 구하상 쪽으로 범람하게 되어 두 번째 지류를 통해 공해(公海)가 아닌 엑스페디치아 만으로 유입될 것이다. 또한 러시아 쪽으로 범람하는 두만강 지류에 의해 40km<sup>2</sup> 이상의 방대한 주변 늪지대가 침수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국립극동해양보호구역에 인접해 있다. 따라서 환경재앙이 발생할 것이며 연해 변경주 남부지역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다. 그 외에 라코프의 견해에 따르면 두만강에 새로운 하상이 형성되어 심각한 국제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수백 년 전까지만 해도 두만강은 엑스페디치아 만으로 유입되고, 한반

도와 이웃국가들 간의 국경은 역사적으로 항상 하천의 주 향로를 통과했다. 따라서 향후 ‘역사적·법적 근거’에 따라 카라시크 강에서 남쪽 동해안까지의 하산구 남부지역에 대한 러시아 영유권 문제가 공론화될 수도 있다.<sup>168</sup>

사실 1997년 말 시행된 하산호 이북 지역의 러·중 간 국경설정 작업 결과 하산호 집수구역 대부분이 러시아령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연해 변경주 행정부가 국경설정 과정에서 기울인 최대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은 이 지역과 관련한 자신들의 주요 목표를 달성했다. 중국은 특히 하산호와 두만강 사이의 자국령 영토에 안전한 접근을 가능케 하는 약 10km<sup>2</sup>의 이동로를 확보하게 되었다.

국경설정 작업은 쌍방 간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대체로 이해할 만하다. 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오직 양국의 상호 의지가 있을 때에만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 측은 1991년 5월 16일자 소·중 동부국경협정을 전면 준수하는 가운데 연해 변경주 행정부, 특히 나즈드라텐코 연해 변경주 주지사의 제안과 강력한 주장에 따라 주어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다른 방안이 있었다면, 그것은 다름아닌 1991년 동부국경협정 자체에 대한 단호한 거부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연해 변경주 지역 차원이 아닌 연방정부 당국 차원에서 해결할 일이며, 이는 물론 연해 변경주 당국의 의지와 결코 관련이 없다.

이 지역 러·중 간 국경변경 결과 중국은 하산호 이북에 확장된 중국

168 라코프(V. Rakov)(1995. 2. 24~3. 3), “일곱 번 재라. 러시아의 내일”, 『블라디보스토크』, No.8, 2쪽.

령 영토를 지나 하산호와 두만강 사이에 위치한 비지를 중국 본토(지린성[吉林省])와 연결하는 철도노선과 안전한 자동차 도로를 건설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은 판추안(수이무) 마을의 이 비지에 두만강 하구를 통해 동해로, 더 나아가 동해를 통해 태평양을 지나 일본, 미국, 캐나다, 남미로 향하는 승객과 컨테이너 운송항로를 개척하기 위해 항만을 건설할 예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깃발을 게양한) 중국 선박들의 두만강 하구까지의 17km 구간과 너비 12해리의 러시아 영해를 지나 동해로 나가는 항행권은 1991년 동부국경협정 제9조에 명시돼 있다.

하산호 지역 러·중 간 국경변경 및 이에 따른 두만강 하구 북쪽 27~31km에 건설될 철도 및 자동차 도로와 두만강 하구 북쪽 17~27km에 건설될 중국 측의 항만이 러시아에 가져다 줄 부정적 환경영향평가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에 양도되는 하산호 이북 구간과 하산호와 두만강 사이의 동 구간 남쪽 지역에 산업시설물이 집중 건설되고 본격적으로 경제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첫째, 모래 지반을 통과한 오염된 물이 지하수의 흐름을 따라 곧바로 하산호로 흘러들 수 있다. 그 결과 하산호의 유동성 없는 수중생태계는 급속하게 오염될 것이다. 더구나 하산호는 러시아령이기 때문에 중국은 수자원 시설로서의 하산호 보호에 관심이 없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둘째, 대규모 철새 이동경로인 이 지역의 독특한 자연경관이 파괴될 수 있다.

셋째, 오염된 표층수와 지하수가 생물종이 매우 다양한 수중생태계가 조성된 엑스페디치아 만으로 확산될 수 있다.

넷째, 포트르대제 만에 위치한 극동해양보호구역, 포트르대제 만,

아무르 만 및 블라디보스토크 시 해역에 미치는 산업공해의 부정적인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중국의 두만강 항만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오염물이 해류를 따라 아무르 만과 블라디보스토크 시까지 흘러들으로써 블라디보스토크 시 앞바다 역시 극도로 오염되어 졸로토이로크 [Golden Horn] 만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현재 아직 철도와 자동차 도로, 항만 건설이 시작되기도 전에 중국 영토에서 발원하여 러·북한 국경을 따라 하류로 흐르는 두만강은 벌써 포트르대제 만으로 엄청난 양의 유해물질을 실어나르고 있다. 이는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블라디보스토크 해양생물학연구소 연구원들의 수년에 걸친 두만강 환경상태에 대한 연구 결과이다. 매년 폐놀, 중금속을 비롯한 많은 유해물질로 오염된 물 5.7km<sup>3</sup>가 두만강에서 동해로 유입된다. 극동지역 환경학자들의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유해물질은 주로 중국 영토에서 두만강으로 방출되고 있다. 러시아 측 두만강 접경지역은 거주 인구 수가 적다. 그러나 중국 측 두만강 연안은 인구 밀집지역으로 강을 따라 많은 공장이 들어서 있지만 관련 정화설비는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블라디보스토크 해양생물학연구소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르면 두만강의 오염된 물은 러시아 국립극동해양보호구역에서 겨우 20km 떨어져 있는 동해로 유입되며, 해류를 따라 블라디보스토크 시 앞바다로 밀려온다. 중국령 하산호 인근에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산업시설물이 건설되어 본격 가동되고 중국에 양도되는 하산호 이북 지역의 러시아 땅이 벼 농사용으로 개간될 경우 여기서 지적한 모든 부정적인 환경문제가 수시로 발생하게 될 것이다. 또한 두만강 하구 러·중·북한 3국 교차점에 유엔 경제특구 건설계획이 시행될 경우 이 환경문제는 반드시 해결돼

야 할 것이다.

하산 구간 러·중 간 국경설정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처럼 잠재적인 경제·전략적 손실 및 하산호, 포트르대제 만, 아무르 만과 블라디보 스토크 시의 환경파괴 등 러시아 국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부정적 요인이 실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 11. 두만강 하구 선박 항행규정 개정

열 번째 국경변경은 두만강 하구의 선박 항행규정과 관련이 있다. 1991년 동부국경협정 제9조는 “소련 측은 자국 관련 구간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깃발을 게양한) 중국 선박들이 본 협정 제2조에 명시된 국경점 《No.33》 아래 두만강을 따라 바다로 왕복 항행하는 데 동의한다. 동 항행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는 이해 당사국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sup>169</sup>

국경점 《No.33》은 두만강(투먼장, 투멘-올라, 투만간, 가올리잔, 투만나야) 중간 지점 러·중·북한 3국 교차점에 설치돼 있다. 국경점 《No.33》의 위치에 대해서는 1991년 동부국경협정 제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다.

동 국경점[《No.33》-필자]은 두만강 중앙 수로와 그에 대한 수직선의 교차점에 설치되며 동 지점은 소연방 영토 60.3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61.6고지로 표기됨) 남쪽 약 2.0km, 180.3고지(중국 측 지도에

<sup>169</sup> 트카첸코(1998), 154쪽.

는 182.0고지로 표기됨)의 골루비니우테스(Golubiny Utes)산 서쪽 약 9.2km, 중국 영토 제3호 무명산(중국 측 지도에는 58.5고지로 표기됨) 남동쪽 약 2.8km 거리에 위치한다.<sup>170</sup>

러·북한 간 국경을 이루는 두만강 하류에서 동해까지의 중국 선박의 자유항행 문제가 이미 113년 전 양자협상 과정에서 중국 측에 의해 제기된 바 있지만 러시아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해결책을 얻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는 1860년 베이징 조약에 따라 1861년 설정된 러·중 국경에 대해 1886년 시행한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1886년 6월 22일 서명한 노보키엡스크(현 연해 변강주 남부 하산구 크라스키노 마을) 의정서에 기록돼 있다. 동 의정서 제4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국경표주 《T》에서 두만강 하구까지의 30리 구간의 대조선(對朝鮮) 국경 하천 및 해역을 통과하는 중국 선박의 자유항행 협정이 체결돼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바라노프 소장이 러시아 외무부에 상정했으며 답신을 받은 후 동 의정서에 대한 추가문서가 작성될 것이다.<sup>171</sup>

제정러시아 외무부는 이 문제를 상세히 검토했으나 중국 측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중국 측의 요청을 거절한 데에는 분명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제정러시아 시대 러시아 외교의 현명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sup>170</sup> 트카첸코(1998), 152쪽.

<sup>171</sup> 트카첸코(1998), 103쪽.

78년이 지난 후 1964년 베이징에서 열린 국경 문제에 관한 양자협상 과정에서 중국 측은 중국 선박의 두만강에서 표트르대제 만까지의 자유항행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경설정과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문제로 간주되어 소련 측에 의해 거부되었다.

고르바초프 시대의 소련 외무부는 1991년, 즉 각각 105년과 27년이 지나 중국 선박의 두만강 자유항행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연이은 요청을 수용했다. 역설적인 것은 1991년 소연방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에 체결된 동부국경협정의 명칭은 ‘두만강 하류 선박항행 협정’이 아니라 ‘소·중 간 동부국경협정’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실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연해 변강주의 언론과 기타 대중매체는 중국 선박의 두만강 하류에서 동해까지의 왕복 항행 문제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러시아의 국익에 큰 손해라는 주장을 수차례 제기했다.

이러한 입장을 누구보다 강력히 주장한 사람은 나즈드라텐코 연해 변강주 주지사였다. 그는 연해 변강주 주지사 취임 후 두만강 하구에서 공해상으로의 중국 상선의 왕복 항행과 중국 측에 양도되는 하산호 인근 러시아령 지역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하항(河港) 건설 문제를 러시아의 국익수호 차원에서 강력히 반대했다. 나즈드라텐코 연해 변강주 주지사는 연해 변강주 영토(러시아 땅!)에서 잘려 나가는 한카호 구역, 우수리스크구와 하산호 구역 등 3개 지역 중 전략적 핵심지역은 당연히 하산 구역이라는 주장을 수차례에 걸쳐 분명히 했다. 연해 변강주 주지사는 중국이 이 지역을 얻게 되면 하항을 건설하여 두만강을 따라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진출로를 얻게 되는데, 이 경우 이 지역에 위치한 나훗카항, 블라디보스토크항, 자루비노(Zarubino)항 및 포시예트항 등 러시

아 향만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입장은 연해 변강주 TV 프로그램과 연해 변강주와 『블라디보스토크』지 등 현지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나즈드라텐코 연해 변강주 주지사는 『블라디보스토크』지에 실린 인터뷰 기사 ‘만일 내가 옳지 않다면 따져봅시다’에서 자신의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나는 상하이에서 돌아온 지금 이 순간도 1991년 결정사항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나는 지금까지 싸워왔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내게는 모스크바 쪽 관리들의 생각과는 달리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게 있어 이 문제는 연해 변강주의 미래를 좌우하는 순수 경제적인 문제이다. 두만강 영토문제 해결 결과에 대한 일부 전문가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나는 머지않아 이 문제가 연해 변강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신한다.<sup>172</sup>

나즈드라텐코는 또한 ‘두만강에 질게 드리운 안개’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나는 러·중 간 국경설정 문제가 언론의 관심 밖으로 사라지고 다시 외교관, 군사 및 기타 분야 전문가들의 보다 구체적인 논의 대상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파노프(A. Panov) 외무차관의 요설(饒舌)이 대중매체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게 되었다.

172 『블라디보스토크』(1996. 5. 6), No.82, 5쪽.

비록 일부 기자들은 신중한 발언과 조국에 대한 소속감에 크게 구애받지는 않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모두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실패한 포플리스트 주지사를 매우 신랄하게 책망한 직업 외교관의 말을 ‘100%’ 신뢰했다. 그렇다면 벽지에 처박혀 ‘출세’는 꿈도 꾸지 말지이다. ……

외무차관은 『이즈베스티야』지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중국 측에 양도되는 땅이 러시아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강변한다. “중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해양 출구를 얻지 못할 것이다. 두만강은 유량이 적고 수심이 얕아 대형 선박은 커녕 작은 보트조차도 겨우 통과할 정도이다. ……” 두만강 수량이 얼마나 적은지 파노프 차관이 직접 이 ‘개울’을 한번 헤엄쳐 건너보라고 하고 싶다. 이제 국경설정 작업의 기준인 1991년 동부 국경협정을 살펴보자. 제9조에 따르면 ‘소련 측은 자국 관련 구간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깃발을 게양한) 중국 선박들이 본 협정 제2조에 명시된 국경점 (No.33) 아래 두만강을 따라 바다로 왕복 항행하는 데 동의한다. ……’ 과연 전문 외교관이 우리가 이 땅을 잃게 되는 근거가 되는 협정서의 내용을 몰랐단 말인가? 그리고 어떤 선박을 말하는 것인가? 종이배를 말하는 것인가? 파노프 차관은 중국이 이 지역에 항만을 건설할 수도 있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면서 부인하고 있다. 역으로 중국의 동북지방에는 해양 진출로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환상일 것이다. 중국이 그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품고 있을 것으로는 결코 보지 않지만, 국익과 경제개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만은 분명하다.<sup>173</sup>

이에 러시아 외무부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카라신 외무차관이 베데르니코프 연해 변강주 두마 의장 앞으로 보낸 1996년 9월

173 『블라디보스토크』(1996. 5. 22), No.92, 14쪽.

3일자 서한의 발췌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돼 있다.

연해 변경주에는 국경표지 《No.416》~《No.419》 구간에 국경이 설정되면, 어쩌면 3~4년 내에 중국이 두만강 하구에 국제항을 건설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 문제 또한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우선 러·중 간 국경설정 문제는 중국의 해양 진출로 획득 가능성과 전혀 무관하다. …… 물론 중국은 자국 영토인 두만강 좌안에는 어디든 항만을 건설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다. 1991년 동부국경협정 제9조에서 중국 선박들의 두만강 항행권은 다음과 같은 단서를 주요전제로 하고 있다. ‘항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들은 이해 당사국(러시아, 북한, 중국?)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한다.’<sup>174</sup>

1991년 5월 1일자 『리테라투르나야 가제타』지에 실린 블라디보스토크 출신 세이나(N. Seina)의 소고에 대한 러·중 공동 국경표지위원회 러시아 측 부위원장 아르하로프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두만강의 수심은 겨우 0.5~1.5m밖에(?) 되지 않아 소형 보트와 범선을 제외한 기타 선박들은 운항 자체가 불가능하다.<sup>175</sup>

대중 국경협상에 정부 대표단 일원으로 참가했던 골루프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174 『러·중 국경 : 문서, 논거, 사실』(1997), 18쪽.

175 『러·중 국경 : 문서, 논거, 사실』(1997), 20쪽.

중국인들이 이 구역에 항만을 건설할 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하다. 가설적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인들은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이에 대해 그들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더구나 수심이 얇은 두만강에 항만을 건설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 두만강 하구의 17km 구간은 러시아와 북한 간 국경 구역이다. 북한 측의 동의 없이는 동 구간에 대한 중국 선박들의 항행규정을 만들 수 없다. 그들의 동의 없이는 중국의 ‘대규모 국제항’ 건설에 필요한 운하도 건설할 수 없다.<sup>176</sup>

키레예프 대사는 1995년 5월 12일 러시아 국가두마 청문회에서 러·중 양국 간 국경설정 과정에 대한 논의 중 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두만강과 중국의 자유로운 해양 진출에 관한 것으로, 하산구 관내 국경을 변경한다 해서 결코 중국의 해양 진출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러·중 국경 마지막 국경표지 《No.423》은 두만강 하구, 즉 바다 출구에서 17km 지점에 있고, 이 17km 구간은 러·북한 간 국경 구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바다로 나가기에 앞서 러시아 및 북한(?)과 관련 항행규정에 합의해야 한다. 그러한 규정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 문제 또한 적어도 현재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중국은 자유롭게 바다를 출입할 수 없다.<sup>177</sup>

176 『러·중 국경 : 문서, 논거, 사실』(1997), 21쪽.

177 러시아연방 하원(1995), 『회의 속기록』, 60쪽.

카라신 러시아 외무차관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국이 이 작은 지역에 대규모 항만을 건설할 것이라는 주장은 지도를 살펴볼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황당무계한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 지역에서 동해로 빠져나가는 데에는 러·북한 간 17km 구간의 국경 하천을 통과해야 하지 않는가. 다시 말해서 이 구간의 항행문제는 어떠한 경우든 러·중·북한 간 3국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한다(?). 한편, 중국은 이미 이 지역에 항만을 건설할 계획이 없음을 수차례 밝혀왔다(?).<sup>178</sup>

『지리백과사전』에 따르면 “두만강(한국식 명칭), 투먼장(중국식 명칭)은 북·중 간 국경 하천으로, 그 하류에서는 중·러 간 국경을 이룬다. 길이는 551km이며, 총 유역면적은 4만 1200km<sup>2</sup>이다. 동해로 흐른다. 하구에서 85km 구간은 선박 항행이 가능하다.”<sup>179</sup> 따라서 국경점 《No.33》에서 하구에 이르는 17km의 강 하류, 즉 러·북한 간 수로국경 구간에서는 선박 항행이 가능하다. 국립극동대학 라코프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하산호 지역 두만강의 수위 변동 폭은 6m가 넘고, 강폭은 300m에서 1km에 이르며, 평균 수심은 약 4m이다.<sup>180</sup> 두만강은 동해로 흐르는 가장 큰 강이다.

하산호 지역 러·중 간 국경변경, 두만강 하류의 중국 선박 항행, 하

<sup>178</sup> 『트루트(Trud)』(1997. 3. 11).

<sup>179</sup> 『지리백과사전』(1989), 지명, 제2차 개정 증보판, 모스크바 : 소비에트 백과사전, 48쪽.

<sup>180</sup> 라코프(1995), No.8, 2쪽.

산호와 두만강 사이 중국 영토에 예정된 항만건설 문제 등의 상관성이 대중매체에 의해서뿐 아니라 러시아 외무부 고위급 외교관들에 의해서도 복잡하게 뒤얽혀 있다. 정쟁 참여자들은 의도적으로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문제의 본질을 잘 모르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이 문제는 더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분석 과정에서 최후의 진실을 얻어 내지 못할망정 다음과 같은 상황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선박의 두만강 자유항행에는 일부 언론과 특히 외무부 고위 당국자들의 잘못된 주장과는 달리 북한 측의 동의가 전혀 필요치 않다.

1991년 동부국경협정 제9조를 상세히 살펴보자.

소련 측은 자국 관련 구간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깃발을 게양한) 중국 선박들이 …… 국경점 《No.33》 아래 두만강을 따라 바다로 왕복 항행하는데 동의한다.

‘두만강~동해’ 구간의 왕복 항행에 대해 소연방과 관련된 문제는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 국경 하천인 두만강의 소련령 구간, 즉 국경점 《No.33》에서 강 하구에 이르는 총연장 17km 구간의 강 하류 항행과 나아가 국제해양법에 따라 모든 국가의 자유항행 원칙이 보장되는 공해상 출구까지의 소련령 동해 12해리 (22,224km) 구간 항행에 대한 배타적 권한뿐이다. 두만강 일부 구간과 동해 일부 해역의 중국 선박 항행에 대한 북한 측의 동의는 결코 필요치 않다.

현행 국제법 규범에 따르면 국경 하천은 연안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

되며, 연안국의 주권은 해당국 소유의 강안과 국경선 사이에 위치한 국경 하천의 일부에만 적용된다. 이때 국경선은 통상 항행 가능한 하천이 국경을 이룰 경우 일반적으로 하천 주 항로의 중심 혹은 수심이 가장 깊은 최심선을 따라 획정되며, 항행 불가능한 하천의 경우 하천이나 주지류의 중앙선을 따라 획정된다.<sup>181</sup> 또한 국제해양법 규범에 따르면 연안국은 자국의 영토나 내수에 인접한 최대 폭 12해리 수역으로 영토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해(領海)에 대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sup>182</sup>

분명히 소연방은 입법, 사법, 행정권 등 국가주권을 온전히 행사해 왔던 수역(하천과 바다)의 중국 선박 자유항행권(自由航行權)을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 의거해 중국에 부여했다. 따라서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 따른 ‘두만강~동해’ 구간의 중국 선박 항행 문제는 1990년 9월 3일자 소연방과 북한 간 체결된 국경조약 제26조 제3항에 명시된 국경 하천 두만강의 수리구조물 설치 및 이용과 관련하여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북한 측의 합의는 필요하지 않다.

중국 상선들이 하산호 지역 두만강 중국령 좌안에서 러시아령 강 하구까지 총연장 17km 구간을 지나 공해상 출구까지 소련령 동해 12해리(22.224km) 구간을 항행하게 되면 중국 동북지방에서 랴오둥 반도, 황해와 동중국해, 대한해협과 동해를 거쳐 일본 서해안 지방에 이르는 항로가 크게 단축될 것이다. 이 경우 중·일 양국 간 직항로가 열리게 되어 양국은 경제적·전략적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나아가 러시아의 국익에 반하는 더욱 긴밀한 양자 간 협력에 더 많은 노력을 기

181 『외교사전』(1985) 2권, 458~459쪽.

182 『외교사전』(1985) 3권, 459~460쪽.

올이게 될 것이다.

1991년 동부국경협정 제9조의 시행과 관련하여 두만강 하류 중국 항만건설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중국의 항만은 실제로 건설될 것인가? 수많은 현지 및 중앙 언론과 러시아 외무부 관계자들조차도 실제로 중국인들에게 그러한 계획이 없으며, 항만건설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면서 그러한 가설적인 항만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인들의 발표문을 주목해 보자. 지린성사회과학연합 리샤오전(Lee Shaogen) 이사장과 지린성사회과학원 러시아연구소 귀옌쑤(Guo Yansun) 소장의 논문 중 '수상운송시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에는 두만강 하류에 아직 항만이 없으므로 두만강을 통한 동해까지의 수상운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동해를 운항하는 여객선과 컨테이너선 항로를 개설하기 위해 항만시설 건설은 필수적이다. 두만강 하류(판추안 마을)에 연간 40만 처리능력을 갖춘 하항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이 시설에는 3000만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sup>183</sup>

판추안(수이무) 마을은 하산호 인근 자오제르나야 산 동쪽 1.5km에 위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은 하산호 지역에 항만건설을 계획하고

---

<sup>183</sup> 리샤오전·귀옌쑤(1997), 「두만강 지역 중국과 러시아의 주요 기반시설, 세계사 속의 러시아 극동 : 과거에서 미래로」,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블라디보스토크, 201쪽.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설 비용 또한 전혀 터무니없이 큰 규모가 아니어서 중국으로서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금액이다.

연해 변강주 행정부 건축위원회 아니케예프(V. V. Anikeev) 부위원장은 「과연 두만강 하구에 중국 항만이 들어설 것인가?」라는 논문에서 중국이 판추안(수이부) 마을의 약 10km에 이르는 강변에 총면적 1000ha 규모의 항만을 건설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별첨 약도에는 58곳의 계류지 배치 공간, 중국 본토와 항만을 연결하는 철도와 자동차 도로의 통과구간, 선박 출입 및 17km 두만강 구간 항행을 위한 하상 확대 및 준설 구역, 하산역과 두만강역을 연결하는 러-북 친선교 통과구간 재건축 지점 등이 제시돼 있다.<sup>184</sup>

물론 중국 항만건설에는 중국령 판추안 마을 일대 약 10km<sup>2</sup>의 부지로 충분하다. 두만강 하구 인근 하산호 주변 연해 변강주 남부, 하산구의 300ha가 넘는 러시아령 부지는 두만강 하항과 중국 본토 간 통과 화물 운송에 필요한 철도와 자동차 간선 도로 건설에 필요하다. 이 부지의 일부는 1991년 동부국경협정 제2조와 1997년 말 시행된 이 지역 러·중 간 국경설정에 따라 러시아가 중국에 자발적으로 양보하게 된 땅이다. 이와 같이 1991년 동부국경협정 제2조에 따라 연해 변강주 하산구 지역 소(러)·중 간 국경선이 중국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는 것은 중국에 러시아 내수 및 영해 항행권을 부여하는 동 협정 제9조와 논리적으로 연관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항만은 배수량이 큰 선박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다. 만일 두만강에 앞에서 언급한 하천공사가 시

<sup>184</sup> Dalnevostochny ucheny(1997. 6. 11), 『블라디보스토크』, No.14, 6~7쪽.

행되지 않으면, 국경점 《No.33》에서 두만강 하구까지 17km 구간에  
는 공기부양선, 바지선 등 경흥수선(輕吃水船)만 운항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중국이 두만강에 이와 같은 수리구조물 공사를 시행하는 데  
에는 1991년 11월 27일 발효된 1990년 9월 3일자 소연방과 북한 간에  
체결된 국경조약 제26조가 걸림돌이 된다. 제26조 제3항은 특히 다음  
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경 하천 두만강 주 하상의 상태와 방향은 가능한 한 변경하지 않은 상  
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국경 하천 두만강에 새로운 교량, 제방, 댐과 기타  
수리시설물의 건조 및 이용은 사안별로 체약 쌍방 간 상호합의에 의해  
서만 가능하다. …… 강 하상의 청소는 체약 쌍방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부분에 대해 시행한다.<sup>185</sup>

따라서 중국의 이와 같은 수리구조물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러  
시아와 북한의 공동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특별 청문회에서 「러시아와 두만강프로젝트」라는 논문을 발  
표한 모스크바의 저명한 정치학자 쿠르기난(S. Kurginyan)의 주장에 따  
르면 대중매체와 여론에는 중국이 3~4년 내에 연간 약 1억t의 물류  
를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항만을 건설하여 러시아를 배제한 채 이 항  
만을 유라시아 대륙횡단 루트의 종착 기지로 개발할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해 있다. 연해 변강주의 일부 지방지 기자들은 이미 두만강 하구  
18~20km 지점 러·중·북한 3국 교차점 일대의 긴 저지대에 건설될

---

185 『러시아연방 법령집』(1997), No.21, 4087조.

세계 최대의 암스테르담 항구보다 더 많은 연간 1억 3000만의 잠재적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항만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sup>186</sup>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정보가 모스크바에서 연해주로 전해져 왔다는 사실이다.

이런 생각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만강에 건설될 예정이라는 중국의 하항이 대규모로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판추안 마을에 1단계로 연간 물류 처리능력 40만 규모의 하항을 가동하기 위해서도 두만강의 수리구조물 공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당연히 러시아와 북한의 관련 허가가 필요하며 중국은 아마 이들 국가로부터 공사 허가를 받게 될 것이다. 러시아는 정치적 독자성을 잃고 오래전부터 더 큰 강대국들이 벌이는 국제정치게임에서 표류하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권의 초강대국이다. 수십 년간의 우정과 사상기반의 공유 등 끈끈한 인연으로 맺어진 북·중 관계를 고려하면 북한이 아시아 초강대국 중국의 강력한 바람을 저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의 두만강 하항 건설문제는 결코 이론적인 성격과는 거리가 멀다. 두만강 하항이 중국에 필요한 것은 ‘두만강~동해’ 간 환적과 향후 중국 동북지방을 지나 본토 깊숙이 화물을 운송하고 아시아 대륙횡단 철도를 이용하여 몽골 이남 중국 북부지방과 서북지방을 거쳐 카자흐스탄과 유럽으로 향하는 철도운행을 위한 것이다. 이 노선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하는 기존 노선보다 약 1500km 짧아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하주(荷主)들이 더 선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벌써 30년째 운영되고 있는 러시아 극동·시베리아를 통과하는 컨테이너 운송은

<sup>186</sup> 연해주인(人), 『하산구 정치사회신문』(1997. 7. 10), No.77, 2쪽.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시베리아횡단철도의 물동량은 절반 이하로 감소하게 되고, 이것은 시베리아횡단철도 인접지역의 경제침체와 인구 이탈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중국은 아직 러시아에 대규모 영유권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30년 후에 중국은 공식적으로 러시아령인 극동지역과 심지어 동시베리아의 인구 희박지역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그 어떤 국제법이나 공인된 국경선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일본, 미국,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지 아래 집요한 외교적 압박을 기반으로 한 힘만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들 각국은 21세기에 들어서조차 러시아에 해묵은 영유권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이미 15년 정도 지나면 중국에서는 현행 러·중 국경의 부당성에 대한 논의가 서서히 시작될 것이다. 이처럼 21세기 중국 측의 영유권 주장을 목표로 서명된 1991년 동부국경협정은 러·중 국경의 획기적 재검토를 위한 중간단계 조치이다.

중국은 두만강을 통한 동북지방의 동해 진출을 위한 직항로를 얻으려는 욕심에서 조금씩, 그러나 일관되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듯하다. 중국은 초기에 하산호 인근에 이국적인 형태의 공기부양선, 바지선 등 배수량이 적은 경흥수선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항만을 건설할 것이다. 그 후 더 큰 선박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두만강 유역 수리구조물 건설공사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이로써 중국의 항만 자체가 확장될 것이다. 보다 장기적으로 보면 두만강 하구에서 국경점 《No.33》까지의 구간과 그 위, 즉 중국 하항까지의 구간에 특수운하 건설을 비롯한 수리구조물 공사를 통한 중국 해양 선박들의 항행보장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 양국에 두만강

을 연안국 외에 다른 국가들의 선박도 기항할 수 있는 국제하천으로 격상시키자는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하산호 이북 지역 러·중 간 국경변경 문제로 돌아가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언급하고자 한다.

중국은 150년 전에도 그랬으며 지금도 지린 성과 동북지방의 동해 진출을 위한 직항로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직항로는 연해 변경주 포시예트 지역의 러시아 최남단 영토를 획득하거나 하상 준설공사와 ‘두만강~동해’를 운항하는 하항의 건설을 통한 러·북한 간 국경하천 두만강을 통해서, 혹은 동해에 인접한 ‘훈춘 시(중국)~크라스키노(러시아)~자루비노항(러시아)’을 잇는 러시아 철도부지의 장기임차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 방안은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유엔개발계획)가 후원하는 ‘두만강프로젝트’ 국제컨소시엄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의 전략적 요충지가 ‘훈춘~크라스키노~자루비노’ 구간의 교통축 건설부지로 50년간 임대(차후 임대기간 연장 가능함)되어 파나마 운하와 같은 접근제한구역으로 전략하게 될 것이다. 이 두 지역 간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단지 한 국가가 아닌 강력한 초국적 국제기구가 러시아에 맞서게 된다는 것이다. 장차 이 지역에는 국제관할권이 적용되어 러시아는 이 지역을 영영 회복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바로 이곳에서는 유엔 산하 초국적 국제기구들의 지원으로, 혹은 유엔을 매개로, 특히 미국의 다국적기업을 비롯한 국제금융자본을 위한 각국의 국토운영 방안으로 공식 승인될 것이다.

두만강 하구 인근 하산호 일대의 앞에 언급한 러시아 영토가 중국에 양도될 경우 하산호와 두만강 사이에 들어설 하역 철도역을 갖춘 환적

센터 형태의 하항으로 이어지는 철도와 자동차 도로로 구성된 복합 운송로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두만강 좌안 중국 영토를 따라 이어지는 이 운송로는 중국의 두만강 하항을 동북지방과 연계해 준다. 중국이 얻게 될 동해 직항로는 중국 상품의 대일(對日) 운송로를 크게 단축시켜 중·일 양국 간 새로운 운송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이다. 중국은 동북지방의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고, 일본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지방의 경제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를 얻을 뿐만 아니라 중국 동북지방으로부터 값싼 원자재 수입을 위한 직통 채널을 확대할 수 있게 되어 동 프로젝트는 중·일 양국 모두에 상호 이익이 될 것이다.

바로 여기에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 따른 국경설정 작업 결과 중국에 양도되는 하산호 이북 지역의 작은 이 일대가 갖는 크나큰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연해 변강주 하산구 남부지역의 러시아 영토를 통과하여 동해~중국~카자흐스탄~유럽 노선을 따라 이루어지는 대외무역 운송은 극동지역, 특히 연해 변강주의 다른 항만들과 시베리아횡단철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철도운송에 바람직하지 못한 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들 항만과 철도를 이용하는 물동량 감축으로 이들 시설의 채산성 또한 하락할 것이다. 블라디보스토크항, 나훗카항, 보스토치니항은 화물운송 중계거점으로서 본연의 경제적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두만강의 안정적인 화물운송으로 두만강의 지위가 국경 하천에서 국제하천으로 격상되면 이 지역 러시아의 영해, 경제수역과 대륙붕 경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절대 있어서는 안 될 해양생물자원과 대륙붕 자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연해 변경주 남부 포트르대제 만의 러시아 영해 경계는 1956년 소연방 정부령에 따라 두만강 하구에서 포보로트니(Povorotny) 곳까지 직선을 따라 설정되었다. 따라서 포트르대제 만의 여러 수역에서 12해리를 넘어선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두만강 하류는 전략거점으로, 이 지역을 상실하면 통과운송 요충지를 잃게 되어 역내 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하산호 지역 두만강 국경의 전략적 요충지에서, 더구나 러시아가 자국 영토의 일방적인 대중 양보(양도)로 중국 영토가 확장되면 러시아의 영토 불가침권뿐 아니라 국가안보 및 방위력, 나아가 경제에까지 크나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눈앞의 '이익'에 현혹되지 않고 장기적인 지정학적 실리추구 관점에서 대외정책을 추진한다면 국가 지도부, 즉 러시아 외무부는 어떤 경우에도 이 같은 상황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고르바초프 말기 소연방 외무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의 국익을 위해 행동했으며, 현 러시아 외무부는 누구의 국익을 위해서 그토록 완고한 고집으로 대외정책을 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 12. 빼앗기는 영토

예측에 따르면 사실상 중국 측에 유리하게 국경이 변경된 연해 변경주 한카구, 우수리스크구 및 하산구의 육로국경 재설정 결과 러시아는 1375~1505ha(한카구 257ha, 우수리스크구 968ha, 하산구 150~280ha)를 잃게 되고, (하산구에서) 85ha를 얻게 된다. 즉 다양한 자료에 따르면

여기서 러시아 영토의 순손실 면적은 총 12.9~14.2km<sup>2</sup>에 이른다.

러시아가 잃게 되는 러시아령 순손실 면적은 연해 변경주 3개구의 12.9~14.2km<sup>2</sup>로만 그치는 게 아니다. 치타 주에서도 중국에 97km<sup>2</sup>의 영토가 양도된다.

최근 자료를 보면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 따라 국경 하천의 도서 분할 결과 러시아는 유대인 자치주 아무르 강에서 625km<sup>2</sup>, 우수리 강에서 144km<sup>2</sup>, 아르군 강에서 약 200km<sup>2</sup> 넓이의 도서를 중국에 양도하게 된다. 순가차 강과 아무르 강의 도서 외에 최소한 969km<sup>2</sup>의 영토를 잃게 된다. 따라서 예상 평가자료만 보더라도 러시아는 국경 하천에서 총면적 970km<sup>2</sup>가 넘는 도서를 중국에 양보하게 된다.

필자의 평가로는 러시아가 중국에 양도함으로써 잃게 되는 영토는 총면적 1080km<sup>2</sup>가 넘는다.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방대한 영토이다.

1992년 12월 러시아 외무부가 발표한 ‘러·중 간 동부국경 문제에 관한 해명서 초안’에 따르면 1986년에 소련 측에 의해 시행된 러·중국경 단독실사 과정에서 아무르 강, 우수리 강과 아르군 강에는 총면적 2150km<sup>2</sup>의 1845개 도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는 중국보다 러시아에 50여 개 도서, 150km<sup>2</sup>가 더 분할되도록 규정돼 있다.<sup>187</sup> 따라서 국경 하천에서 중국 측에 양도되는 도서의 총면적은 약 1000km<sup>2</sup>로, 이는 필자가 예상한 970km<sup>2</sup>와 일치한다. 1999년 3월 25일~4월 8일 개최된 러·중 공동 국경표지위원회 최종 회의에서

---

<sup>187</sup> 라린(V. L. Larin)(1998), 『90년대 상반기 중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 지역간 상호협력 문제』, 블라디보스토크 : Dalnauka, 224쪽.

확정된 국경 하천 국경설정 결과 러시아에 1163개, 중국에 1281개 등 총 2444개의 도서와 사주(沙洲)가 분할되었다. 양측에 분할된 도서의 총면적은 거의 비슷하다.

그 외에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 따라 하바롭스크 지역에 있는 총면적 350km<sup>2</sup>의 볼쇼이우수리스크 섬, 타라바로프 섬 등 대규모 도서 2개와 인근 소규모 도서들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발생했다.

이들 도서에 대한 러시아의 영유권은 베이징 조약 제1조에 따라 동 조약의 별첨 지도에 선명하게 표시된 붉은색 국경선이 입증해 준다. 이 지도에는 러·중 양국 전권대표들의 서명과 함께 양 제국의 국새가 찍혀 있다. 그러나 하바롭스크 지역의 이들 도서는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 따라 ‘분쟁지역’으로 분류되어, 앞으로 국경협상에서 잃게 될 수도 있다. 아르군 강 하류의 볼쇼이 섬(총면적 58km<sup>2</sup>)도 빼앗길 수 있다. 이와 같이 러시아가 빼앗길 수 있는 영토는 총 1490km<sup>2</sup>(혹은 14만 9000ha)에 달한다.

결국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정책과 오늘날 러시아 외교관들이 이행하고 있는 1991년 동부국경협정 대가로 잃게 되는 러시아 영토는 확인된 것만 해도 약 1500km<sup>2</sup>에 달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이처럼 자국 영토를 외국에, 그것도 아무런 물질적 보상 없이 ‘양보’한다는 것은 해당국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아울러 언론과 각 정당에서 논의해야 할 이슈일 뿐 아니라 국민 투표에 부쳐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일 것이다.

### 13. 소·중 동부국경협정의 법적 문제점

1991년 동부국경협정은 누가 어떻게 체결했는가? 동부국경협정 전문과 제10조를 살펴보자.

러시아와 중국 간 영토·국경 관련 조약 체결 역사상 처음으로(관련 조약이 30건 이상 서명되었음) 조약 전문에 서명자의 직책, 직위 및 성명이 명시돼 있지 않다. 오직 소·중 양국이 합의했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이다. 문서 서명란에 서명자의 직책과 성명 혹은 이니셜이 표기돼 있지 않다. 오직 누군가의 서명만 있을 뿐이다. 이 문서에는 이 서명을 입증하는 국새도 찍혀 있지 않다. 독자들은 이 부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1991년 동부국경협정문의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의 사본을 첨부한다(그림 9).

따라서 이 문서는 그 서명 형태로 보아 양국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국가 간 문서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비록 1991년 동부국경협정서 내용으로는 절대 알 수 없지만) 만일 소·중 양국 외무장관들이 실제로 이 문서에 서명했다면 이것은 향후 협정문을 조율하기 위해 양국 외무장관들 간 교환한 협정문 초안일 뿐 결코 국가 간 문서로는 간주할 수 없을 것이다. 협정서 조인 장소(모스크바)와 비준서 교환 장소(베이징)는 물론 조인 날짜를 손으로(!) 써 넣는 등 일련의 상황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과연 소연방 외무부나 모스크바 주재 중국대사관에는 해당 활자체에 맞는 일반 타자기가 없었다는 말인가?

어쨌든 국경조약과 같은 주요 국가 간 문서들은 필요한 의전 형식이 매우 엄격히 준수되는 가운데 작성되는 법이다. 그러나 이 문건은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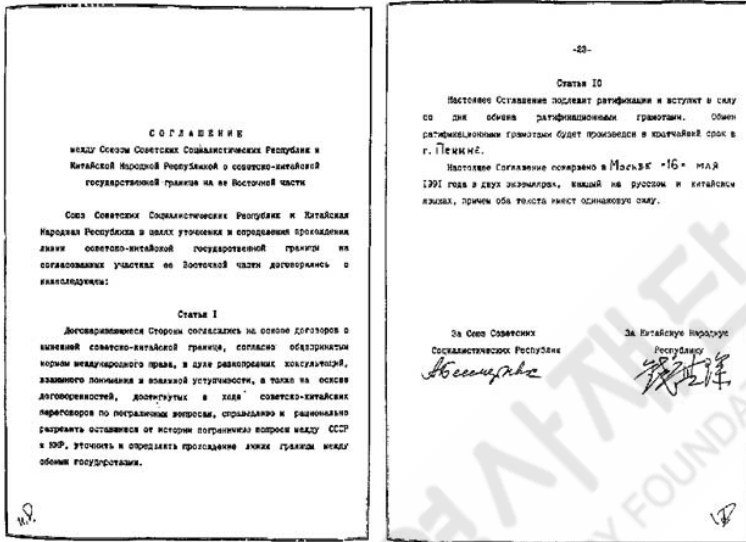


그림 9 1991년 소·중 동부국경협정 첫 페이지(왼쪽)와 마지막 페이지 사본

(그림 9의 번역본)

###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소·중 동부국경협정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양국 간 합의한 소·중 간 동부구간 국경선 통과 지점을 획정·설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합의했다.

#### 제1조

체약 쌍방은 현행 소·중 국경에 관한 각종 조약을 바탕으로, 공인된 국제법 규범과 평등한 협의 및 상호 이해·양보 정신에 따라 국경 문제에 관한 소·중 협상 결과 이룩한 합의를 기반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역사가 남긴 소·중 간 국경 문제를 해결하고, 양국 간 국경선 통과 지점을 획정·설정하기로 합의했다.

#### 제10조

본 협정서는 비준이 요구되며 비준서 교환일로부터 유효하다. 비준서는 이른 시일 내에 베이징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서는 1991년 5월 16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어와 중국어로 2부 작성되었으며, 각각의 문서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을 대신하여  
(서명)

중화인민공화국을 대신하여  
(서명)

중 아무것도 갖추고 있지 않다. 즉 서명자의 직책, 직위와 성명이 명시되지 않은 1991년 동부국경협정은 서명 당사자 간 개인적인 약정 외에 더 이상의 의미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문서의 서명 형태로 보아 이것은 소·중 양 국가 간 조약이 아니며 신원이 불확실한 두 개인이 서명한 소·중 국경설정 안(案)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 같은 개인 간의 상호 약정은 해당 국가에 아무런 국제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한가지 미세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는 국경설정 작업 시행일정이 언급돼 있지 않으며, 국경설정을 1997년까지 혹은 일정 기한 내에 완료한다는 규정도 명시돼 있지 않다. 반면에 공동 국경표지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 동 협정 제4조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다. 이 또한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 [1939년 몰로토프(Molotov)와 리벤트로프(Ribbentrov)가 서명한 소·독 불가침조약에서처럼] 비밀의정서라도 달려 있던 말인가? 그리고 만일 그와 같은 비밀 혹은 비공개 의정서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거기에는 1991년 동부국경협정 이행일정 외에 무슨 내용이 더 담겨 있을까? 혹시 연해 변강주나 극동의 다른 지역에 대한 중국의 특수이권을 인정하는 내용은 아닌가?

어쨌든 동부국경협정서를 양국이 비준한 국가 간 조약으로 간주하더라도 러시아는 동 협정의 이행일정과 관련한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다.

이와 관련, 또 다른 문서 ‘러·중 동부국경설정 작업 완료조치’에 관한 1996년 2월 21일자 러시아 대통령령 제77호를 살펴보자.<sup>188</sup> 여기에도 1991년 동부국경협정의 구체적인 이행일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188 『러시아연방 법령집』(1996), No.10, 2366조.

언급돼 있지 않다. 반면에 “향후 진행될 국경설정 작업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는 동 협정 틀 내에서 해결하라”고 지시돼 있지만 협정 자체에도 국경설정 작업 일정은 제시돼 있지 않다.

1992년 8월 10일자 러시아 정부 시행령에 따라 러·중 공동 국경표지위원회 러시아 측 대표단에 러·중 간 동부구간 국경설정 작업 일정이 5년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이 5년이라는 작업 일정은 양국 간 약정을 바탕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내부 지침으로 1991년 동부국경협정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다.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 따른 러·중 간 국경변경은 1858년 톨진 조약과 1860년 베이징 조약(톨진 조약에 대한 추가조약) 관련 조항에 대한 수정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91년 동부국경협정 체결 당시 국경설정이라는 미명하에 러시아의 일부 영토를 이웃나라에 양도하는 국경획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는 하산구 두만강 좌안을 통과하는 국경 일부 구간과 관련이 있다. 게다가 이는 연해 변경주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 몰래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1991년 5월 16일자 동부국경협정은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RSFSR) 최고회의에 의해 1992년 2월 13일 비준되었다. 비준된 문서는 1992년 3월 16일 베이징에서 교환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러시아는 동 협정 관련 소연방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1991년 5월 16일자 소·중 간 국경 동부국경협정 비준에 관한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1992년 2월 13일자 최고회의 결의는 1992년 2월 현재 발효 중이던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

국 헌법 제104조 및 1990년 6월 12일자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 공화국 국가 주권선언문 제5항과 제8항을 위반한 반헌법적인 것이다.

1991년 동부국경협정이 1992년 2월 13일 법률적으로 비준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1992년 2월 발효 중이던 러시아 헌법 제104조 제5항 후반부에 따르면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영토변경을 초래하는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국경변경 문제에 대한 심의는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인민대의원대회의 배타적 관할”에 속한다.<sup>189</sup> 동 헌법규범은 1989년 10월 27일부터 발효 중이다. 따라서 러시아 헌법에 따르면 러시아 최고회의의 176명의 의원은 소연방 국경에 관한 소·중 국가 간 협정의 비준권뿐 아니라 동 협정에 대한 사전심의권조차 없었다. 약 1050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된 러시아 인민대의원대회만이 관련 권한이 있었다.

대중 국경변경 문제는 러시아 인민대의원대회에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되었다. 이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은 하스불라토프(R. Khasbulatov) 의장을 비롯한 당시 러시아 최고회의 지도부가 져야 한다.

일부 법학자들의 무지 혹은 고의로 간과되고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언급하고자 한다. 1990년 6월 12일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국가 주권선언문이 발효되었다. 1992년 2월 13일 러시아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최고회의에서 소·중 국경협정 비준문

<sup>189</sup>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헌법(기본법) 개정 및 증보에 관하여,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법률. 1989년 10월 27일 제11대 러시아연방 최고회의의 11차 회의에서 채택됨,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최고회의 소식지』(1989. 11. 2), No.44, 1303조, 865쪽.

제를 심의한 것은 일차적으로 러시아 영토와 관련하여 “러시아 국부(國富)의 소유, 이용 및 관리는 국민의 배타적 권리에 속한다”<sup>190</sup>고 규정한 1990년 6월 12일자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국가 주권선언문 제5항과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영토는 국민 투표를 통한 국민의 의지 표시 없이는 변경될 수 없다”<sup>191</sup>는 동 국가 주권선언문 제8항을 위반한 것이다.

동 국가 주권선언문은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제1대 인민대의원대회 의원 800여 명의 찬성, 다시 말해 총 재적의원의 2/3라는 가중다수결(加重多數決)에 의해 채택되어 지금까지도 발효 중인 헌법적 효력을 얻게 되었으며 6월 12일은 국경일로 공식 지정되어 매년 러시아 독립기념일로 경축하고 있다. 따라서 1990년 6월 12일부터는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인민대의원대회조차도 전국적인 국민 투표를 통한 국민의 사전 동의 없이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의 영토변경을 초래하는 국경변경 문제를 심의할 권한이 없었다. 이처럼 연해 변경주, 하바롭스크 변경주, 유대인 자치주, 아무르 주와 치타 주의 일부 영토를 인접국에 양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각 구 및 해당 러시아 각 주체 차원의 주민투표와 전국적인 국민 투표를 시행해야 한다.

이처럼 1992년 2월 13일 소연방 최고회의가 채택한 소·중 동부국

<sup>190</sup>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국가 주권선언문,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인민대의원대회, 최고회의 소식지』(1990. 6. 14), No.2, 22조, 45쪽.

<sup>191</sup>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인민대의원대회, 최고회의 소식지』(1990. 6. 14), No.2, 22조.

경협정 비준 결의문은 법률적 효력이 없다. 그러나 옐친 대통령은 법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은 이 문서에 서명한 것이다. 옐친 대통령이 서명한 비준서에는 협정문이 첨부돼 있으며 비준기관의 심의를 통과했다는 사실이 명시돼 있다. 또한 비준서에는 해당국이 협정을 준수할 것이라는 성명과 함께 필요한 서명과 국새가 날인돼 있다.

1개월 후 1992년 3월 16일 베이징에서 비준서가 상호 교환되었다. 양상쿤(楊尙昆)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은 옐친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대통령이 서명한 법적 효력이 없는 비준서를 통해서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최고회의가 1991년 체결된 소·중 동부국경협정에 비준했다는 사실을 통보 받은 것이다. 국가 간에 어처구니없는 일종의 법률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아마도 옐친 대통령이나 양상쿤 국가주석은 이를 전혀 몰랐을 것이다.

이 사건은 하스블라토프가 이끌던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최고회의 의원들의 법률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시 ‘민주적으로 선출된 러시아 의회’ 의원들의 입법활동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들에게는 스탈린(Stalin) - 브레즈네프(Brezhnev) 시대 최고회의 의원들과 달리 이와 같은 무서운 법적인 실수가 다반사였다.

러시아 영토 보전성에 끼치게 될 손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이것이 만일 단순한 무능력이나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 고의적인 행동 탓이었다면, 법률에 따른 형사책임 문제도 발생한다. 그토록 넓은 면적의 러시아 영토를 외국에 양도하는 과정이 1991년 동부국경협정 서명에서부터 1992년 ‘비준’, 1993~1997년 국경설정 작업 그리고 앞으로 있을 영토의 대중 양도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이어진다 해도 문제의 핵심은 변하지 않는다.

일차로 베스메르트니흐 소연방 외무장관은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영토 약탈에 합의한 1991년 5월 16일자 동부국경협정에 서명함으로써 국가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이 있다. 이 문제는 협정 서명 당시 정부 당국과 합의가 없었다. 이는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주권을 정치적·경제적·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이 자발적으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관할로 이관한 문제를 제외한 국정 및 공공생활과 관련된 모든 문제 해결에 전권을 행사한다”는 1990년 6월 12일자 국가 주권선언문 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sup>192</sup>

1992년 2월 13일자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최고회의의 본 동부국경협정 비준 동의 결의안에는 하스불라토프 최고회의 의장이 서명했다.

1992년 2월 찬성 170표, 기권 6표, 반대 0표로 러·중 동부국경협정에 비준·동의한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최고회의 의원들은 자신들의 무능력 및 국가 운명과 ‘지극히 지역적인’ ‘사소한’ 문제에 대한 무관심 탓에 이 문제를 깨닫지 못했다.

물론 이 문제와 관련한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할 인사들은 누구보다 이 문제를 최고회의 국제관계위원회에 보고한 행정부 관리들과 최고회의에 비준·상정한 국제관계위원회 위원 자신들이다.

또한 이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은 러·중 공동 국경표지위원회 러시아 측 위원장, 러시아 외무부 특임대사, 러시아 특명전권대사 키레예프를 비롯한 대중 협상에 참여했던 러시아 측 대표단이다. 이

<sup>192</sup> 앞의 책.

들은 베스메르트니흐 장관이 서명하기에 앞서 1991년 동부국경협정의 세부사항을 작성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1993년 여름 동 협정 내용이 연해 변경주 현지 언론에 알려지고 이 문제에 관한 연해 변경주 행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이 분명하게 드러나자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키레예프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끝으로 1992년 3월 16일 베이징에서 비준서 교환 당시 중국 측에 전달된 비준서에 서명한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열린 대통령 또한 책임이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 따른 러시아 영토의 대중 양도 문제는 1990~1991년 동 협정 준비 및 서명, 1992년 협정 비준 과정에서 당시 연해 변경주 입법·대의 기능을 수행하던 연해 변경주 인민대의원대회와 단 한 차례도 협의된 적이 없다. 영토문제는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이다. 그러나 연해 변경주 영토의 대중 양도 문제는 변경주 당국의 결의 없이 은밀하게 처리되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한 구성 주체인 연해 변경주의 동의는 없었던 것이다.

1992년 3월 31일 연해 변경주는 다른 러시아 주체들과 함께 연방조약에 참여했다. 따라서 이 순간 이후 연방 당국과 연방조약에 참여한 연방 각 주체 간 법률적 상호관계는 연방조약 각 조항과 당시 발효 중이던 러시아 연방헌법 관련 조항에 의해 결정되었다.

1994년까지 발효 중이던 러시아 연방헌법 제84조 제9항에 따르면 “각 변경주 및 주의 영토는 해당 연방 각 주체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없다.”<sup>193</sup> 연방조약 별첨 의정서(러시아 당국과 각 변경주, 주, 연방 특별시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당국 간 관할 대상 및 권한 분배에 관한 조약) 제

1조 《C》항에 따르면 “각 변경주와 주의 경계변경은 연방 당국과 각 변경주 및 주 당국이 공동 관할한다.”<sup>194</sup> 이와 같은 내용은 당시 발효 중이던 러시아 헌법 제84조 제11항 《C》호에도 명시돼 있다.<sup>195</sup>

당시 발효 중이던 러시아 헌법 제70조 전반부에 따르면 “러시아연방의 영토는 분리 불가능한 단일 영토이다.”<sup>196</sup>

러시아 국내법의 이 모든 조항은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비준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반대의 경우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대통령이 서명한 비준서는 향후 1969년 국제조약법에 관한 빈 협정(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에 따라 채택 과정에서 연방 헌법 규범과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은 국제협약으로 해석되어 러시아에 아무런 법적 의무를 부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러시아에 들어서는 급진성향의 지도부라면 누구든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 따른 러시아 영토의 대중 양도에 대해 위법무효임을 선언하고 국제법 규범에 따라 영토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향후 러·중 양국관계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 영토를 인접국에 양도할 때는 반드시 관련 국내법과 국제법 규범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sup>193</sup> 러시아연방(러시아) 헌법(기본법). 1978년 4월 12일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제9대 최고회의 제7차 임시회의에서 채택됨(1989년 10월 27일, 1990년 5월 31일, 6월 16일, 12월 15일, 1991년 5월 24일, 11월 1일 개정, 1992년 4월 21일자 법률), 모스크바 : 이즈베스티야, 1992, 78쪽.

<sup>194</sup> 위의 자료, 97~98쪽.

<sup>195</sup> 앞의 자료, 32쪽.

<sup>196</sup> 앞의 자료, 19쪽.

앞에 언급한 내용을 요약하면 1991년 소·중 간 동부국경협정 기준 문제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1993년 10월 러시아 최고권력기관인 러시아 인민대의원대회가 해체된 상황에서 1991년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동부국경협정은 러시아의회 연방 국가두마(하원)의 심의와 기준을 거쳐 연방회의(상원)의 심의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물론 1991년 동부국경협정 기준 결의문은 법적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해 관련 절차와 러시아 헌법 규범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채택되었기 때문에 1992년 2월에 있었던 동 협정의 기준은 무효라는 사실을 중국 측에 통보해야 한다.

러시아 영토의 대중 양도는 1997년 종합적인 국경설정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나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1992년 4월부터 각 변경주와 주의 경계변경은 연방 당국과 각 변경주 및 주 당국이 공동 관할하도록 규정한 연방조약과 러시아 연방헌법 관련 법률 조항이 발효되었다. 연해 변경주가 참여한 연방조약은 지금도 유효하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 따른 연해 변경주 3개구(한카구, 우수리스크구 및 하산구) 일부 영토의 대중 양도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부정하며 1993년 여름 이래 동부국경협정의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는 연해 변경주 행정부의 입장은 법률적 근거가 뒷받침해 준다.

이러한 법률적 근거는 절대적이다. 문제는 무엇보다 러시아 국경변경 문제를 다룬 동부국경협정이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헌법 관련 조항에 규정된 인민대의원대회의 기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최고회의에 의한 1991년 동부국경협정의 기준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러시아소비에트사

회주의연방공화국 헌법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최고 입법기관, 즉 국가 최고의 입법권을 보유한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인민대의원대회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에서부터 1911년 치치하얼 협약에 이르기까지 222년 동안 러·중 간 영토·국경 문제에 관해 체결된 각 조약의 운명에 대해 또 하나의 법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시기에 체결된 각 조약은 유효기간이 없었다. 반면에 이들 조약이나 협정은 또 다른 후속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보충되거나 유지되었다. 이 모든 조약이나 협정은 러·중 양국 간 영토·국경 문제를 규정하는 단일 국제법적 토대가 된다. 그러나 이들 조약 중 그 어느 것도 1991년 소·중 동부국경협정에 의해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도 폐기되지 않았다. 게다가 1991년 동부국경협정 제1조는 동 협정이 “현행 소·중 간 국경조약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조약은 실제로 법적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1년 동부국경협정은 많은 조항에서 앞서 체결된 영토·국경 문제에 관한 러·중 간 많은 조약과 모순된다. 따라서 앞으로 체결 당사자 중 어느 누구든 다른 일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연해 변경주 하산구 국경변경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1년 동부국경협정 이행 당시, 즉 1997년 국경 설정 작업 과정에서 협정내용을 이탈해 동 협정 제2조 규정을 위반했다. 이처럼 사실상 본문 내용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1991년 5월 16일자 소·중 간 국경 동부국경협정에 대한 추가 의정서를 채택하여 협정서 내용을 수정하는 합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동 추가 의정서는 러·중 양국 의회의 비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양측은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앞서 체결된 러·중 양국 간 모든 영토·국경 관련 협정의 운명을 규정하는 러시아와 중화인민공화국 간 국경 관련 포괄적 조약의 체결 필요성을 늦게나마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조약 또한 양국 의회의 비준이 뒤따라야 하고, 1990년 6월 12일자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국가 주권선언문이 규정한 러시아 영토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991년 동부국경협정 관련 문서의 분석 과정에는 많은 의혹이 제기된다. 가끔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중에는 동부국경협정을 준비, 서명한 고르바초프 시대 소연방 외무부 관리들의 뇌물수수 비리가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국제적인 뇌물수수가 있었을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러시아는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 서명함으로써 국익에 손실을 입었다. 게다가 국가 지도부는 이 손실을 극복하고 1991년 외교관들이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 그게 아니라면 현 러시아 외무부 관리들의 입장을 설명할 길이 없다. 그들은 문서와 지도를 포함해 필요한 모든 정보와 외교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친중적(親中的)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니면 ‘이미 옆 질러진 물은 되담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외교관으로서 본연의 직무를 유지하고 ‘물살이 약한 길’을 따라 시류에 영합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되돌아갈 길은 있다. 국제법 규범에 따르면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는 그 가능성이 명시돼 있지 않은) 폐기통고(廢棄通告) 외에 국제조약의 효력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다.

양자 간 조약의 효력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국가가 스

스로 체결한 국제조약을 거부하는 조약파기(條約破棄)가 있다. 이때 조약파기는 조약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가능하며 일방적인 성격을 띤다. 조약파기의 적법성은 법률행위(法律行爲)의 무효(無效)와 같은 확고한 정치적·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국제관행에 맞는 절차에 따라, 즉 조약 상대방에 대한 사전 서면통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sup>197</sup> 국제조약의 파기 여부는 해당국의 입법기관이 결정한다.

1991년 5월 16일자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동부국경협정 비준동의안은 1992년 2월 13일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최고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그러나 비준 당시 발효 중이던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헌법 제104조 제5항에 따르면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영토변경을 초래하는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국경변경 문제에 대한 심의는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인민대의원대회의 배타적 권한에 속했다. 따라서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최고회의는 이 문제에 대한 행위능력(行爲能力)이 없었다. 바로 이 때문에 1992년 2월 13일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최고회의가 채택한 결의는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헌법에 위배되어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대통령이 서명하여 1992년 5월 16일 베이징에서 비준서 교환 과정에서 중국 측에 전달된 비준서 또한 정당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문제는 비준동의안 표결 절차가 아니라 다름 아닌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헌법을 위반한 데 있는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라

197 『외교사전』(1984) 1권, 모스크바 : 나우카, 299~300쪽.

면 1991년 동부국경협정을 모스크바 시의회에서도 ‘비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1991년 동부국경협정을 ‘비준’할 때 1991년 6월 12일 인민대의원대회 총 재적의원의 2/3라는 가중다수결로 채택된 러시아소비에트 사회주의연방공화국의 국가 주권선언문에 명시된 영토변경 규정이 전면 무시되었다. 국가 주권선언문 제8항은 국민 투표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 이러한 모든 형태의 영토변경 관련 국가적 행위를 금하고 있다.

사실상 국가기관이 러시아 인민대의원대회나 국가두마에 의한 관련 법 채택을 통해서 러시아의 영토를 변경하려면 유권자 명부에 등록된 1/2 이상의 유권자가 국민 투표에 참가하여 그 중 절반 이상이 동 법안에 동의해야만 가능하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의 국가 주권선언문은 헌법적 효력을 지니며 지금도 발효 중이다.

1991년 5월 16일자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동부국경협정 비준 문제는 미결 상태로 남아 있다. 1993년 9~10월 반헌법적 국가 쿠데타 결과 국가최고권력기구인 러시아 인민대의원대회가 해체된 상황에서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러시아 주체로서 중국과 접경한 각 변경주와 주 차원의 주민투표-전국적인 국민 투표-러시아 국가두마(하원)의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 대한 심의 및 비준-연방회의(상원)의 하원 비준법안 승인-러시아 대통령의 비준법 서명

대통령은 오직 이 과정을 거친 후에야 협정 비준사실과 해당국의 동

협정 이행약속을 확인해 주는 특별문서인 비준서에 비로소 서명할 수 있다. 이후 계약 쌍방은 비준서를 교환하고, 협정은 발효된다.

아직 국경은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소·중 동부국경 협정을 체결한 소연방 외무부의 과오를 바로잡는 것 또한 아직 늦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정치적 의지를 발휘해야 한다.

#### 14. 러시아-중국 : 미래에 대한 시각

러시아 연방의회 국가두마 안보위원회(State Duma Security Committee)의 일류힌(V. Ilyukhin) 위원장은 “러시아의 정치·경제·국방·지정학적 상황과 외교활동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가 안보위협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러시아의 경제적·군사적 잠재력이 점점 더 크고 심각한 규모로 파괴되고 있다. …… 이는 우리 국민의 독립성과 자유를 앗아가고, 국가를 반(半)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말 것이다”라고 주장했다.<sup>198</sup>

엘친 대통령이 계승하여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국제관계의 ‘신사고’ 정책을 토대로 추진된 대외정책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으로 지전략적(地戰略的)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붕괴되고, 영역 다툼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전쟁발발 위험성이 증폭되었다. ‘1995년 러시아 국가안보개념’ 작성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소연방 붕괴 후 발트 해에서 태평양에 이르는 유라시아 전역에 지전략적 진공상태가 형성되어 극동지역 ‘힘의 중심’인 일본과 중국의 활약이 증폭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에 심각한 잠재위협으로

198 『1995년 러시아 국가안보 개념』(1995), 모스크바 : Obozrevatel, 1쪽.

부각되고 있다.”<sup>199</sup>

바로 그러한 이유로 국가의 대외정책 효율성 분석과 외교조치가 낳은 결과에 대한 경제성 평가 문제는 복잡한 상호 이해관계, 정치, 경제, 군사·전략, 문화·민족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 의존성이 뚜렷한 러시아, 극동, 동북아 및 아태지역 각국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극동지역은 러시아에서 갈수록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 외교정책 기획국의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의 지정학적 상황은 소련방 때보다 열악하다.” 러시아는 바다로 나가는 많은 출구를 상실하고 유라시아 북동쪽 구석으로 밀려나 있다. 따라서 러시아 극동지역은 고도성장을 구가하는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교류의 장으로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국가통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연해 변강주 항만들은 러시아 해양 수출화물 중 60%를, 극동 철도는 철도를 이용한 수출화물 중 51%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연해 변강주의 항만과 시베리아횡단철도를 포함한 복합운송망은 (일정 수준의 현대화를 거치면) 아·태지역-서유럽 간 환적운송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어 서유럽행 컨테이너 물류의 약 30%, 즉 연간 100만 컨테이너의 물류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극동지역은 여전히 러시아의 가장 큰 천연자원의 보고로 남아 있다. 특히 이 지역의 많은 광물산지는 포스트 소비에트 시대에 들어와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이아몬드, 금, 은, 주석, 붕소, 텅스텐, 안티몬, 아연, 납과 희귀금속을 비롯한 다양한 광물자원이 다량 집중돼 있다. 이 지역에는 많은 양의 철광석, 석탄(150억t 이상),

199 『1995년 러시아 국가안보 개념』(1995), 91쪽.

원유(96억t), 천연가스(14조m<sup>3</sup>), 목재와 수자원이 매장돼 있다. 잠정평가에 의하면 극동지역의 대륙붕에는 290억t의 탄화수소 자원이 매장돼 있다.

극동지역의 군사·전략적 의미도 여전히 건재하다. 아·태지역에는 집단안보체제가 구축돼 있지 않다. 군비지출과 무기구매량의 증가율은 세계 평균수준을 웃돌며, 대량살상무기 확산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또한 영토문제, 정치·경제 및 종교·인종 간 대립으로 야기될 수 있는 지역 갈등의 근원지가 13곳에 이른다.

최근 10~15년 동안 아·태지역의 세계적인 위상은 크게 도약하고 있다. 현재 아·태지역은 거대한 수출 잠재력, 첨단기술 개발능력 및 문화발전을 보여 주면서 고도성장과 함께 가장 역동적인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세계 무역·금융 및 교통 허브가 자리 잡고 있다. 아·태지역에서는 완제품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별 발전 정도에 따라 대외무역에서 역내무역으로 방점이 이동하고 있다.

아·태지역에는 다극적 경제질서가 구축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중국, ‘신흥공업국’ 및 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등 각 경제중심이 역내 발전을 이끌고 있다. 이들 국가 간 경제 분야의 경쟁은 주기적으로 매우 첨예한 양상을 보이며, 대규모 초국가적 사업들은 경제전의 신흥 초정밀 무기로 발전하고 있다. 역내에는 중국, 홍콩, 타이완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거주 화교를 중심으로 점차 ‘중화시장(中華市場)’이 구축되고 있다.

러시아 안보회의(Security Council of the Russian Federation) 산하 학술위원회는 “극동지역의 러시아 안보는 매우 실제적인 위협에 직면하

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은 무엇보다 러시아와 인접국가 간 존재하는 인구, 경제 및 과학·기술 부문의 격차에서 비롯되어 극동지역의 ‘지정학적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었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인구밀도는 1km<sup>2</sup> 당 2.5명으로 인접 중국 지방 인구밀도의 1/10밖에 되지 않는다. 러시아 극동과 시베리아 지역의 인구 잠재력은 현지에 매장된 부존자원을 개발하고 어느 정도 경제가 발전한 인구 밀집지역을 조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구나 1992년부터 인구 급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마가단(Magadan) 주 인구는 1/4이, 캄차카(Kamchatka) 주 인구는 11% 각각 감소했다. 반면, 중국에서는 매년 1300만 명이 노동 가능 연령대로 진입하고 있다.

러·중 간 점차 증폭되고 있는 불균형적 잠재력은 세력균형의 중요한 요소인 중국 지배사회의 이론적 개념에 반영돼 있다. 1987년부터 중국 언론매체에는 미국의 ‘핵심적 이익’(Vital Interests)과 유사한 새로운 지전략적 doktrin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 doktrin은 두 가지 형태의 국경, 즉 법률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리적으로 공인된 국경과 ‘국가가 군사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국경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전략적 국경이 지리적 국경을 장기간 아우르게 되면 지리적 국경이 전략적 국경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초부터 중국에는 ‘해상국경’이라는 개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동 개념의 주창자들은 중국이 자국 내 울타리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되며, 주변 해상공간을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위해 해군력 현대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주요 외교 동반자로서 대러 관계 증진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현재 러시아가 겪고 있는 대내적인

어려움과 아시아 지역 구소련 동맹국들과의 관계변화로 아·태지역 정치·군사적 상황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 지도부는 새로운 지역판도 구축 과정에서 러시아를 2선으로 끌어내리려고 한다.

러·중 양국 관계에 있어서 중국은 매우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함으로써 일방적인 이익과 우위를 점하고 있다. 러시아가 ‘근거 없는’ 영유권 주장을 포기한 대가로 중국은 매우 구체적인 전리품을 얻게 된 것이다.

러시아는 아·태지역에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경제통합 과정에서 소외돼 있으며, 러시아 극동지역은 인접국들의 대규모 다차원적 팽창주의의 목표물로 전략했다. 연해 변강주를 원료공급기지화하고 극동 전 지역을 식민지화하여 반환경제 생산시설을 구축하려는 아·태지역 국가들과 미국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중국인들의 침투와 정착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대 극동지역 팽창주의 또한 두드러지고 있다.

러시아는 항만, 국제공항, 국경 역 등 많은 주요 운송 인프라를 상실하고 자동차운송·국제컨테이너복합운송·국제용선 등 시장에서 러시아 운송산업의 입지는 세계 여러 나라의 진출 확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극동지역은 의미가 매우 크다.

한편 중국은 집약적인 경제성장으로 상당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는 자연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중국의 1인당 삼림면적은 세계 평균의 1/7.5밖에 안 되고, 러시아 평균에 비해서는 1/30밖에 되지 않는다. 1인당 초지면적은 세계 평균의 1/3이며, 러시아 평균에 비해서 1/6.5밖에 안 된다. 중국 내 사막의 크기는 1949년 이후 두 배 증가했으며 토양이 급속도로 척박해지고 있다. 또한 삼

림은 대규모로 벌목되고 있다. 그 결과 자연재해의 규모가 대형화했다. 1950~1958년 연평균 1900만ha의 경작지가 자연재해로 손실을 입었으며 1975년 이후부터는 매년 4000만ha, 즉 농지의 1/4이 피해를 입고 있다. 환경문제는 해마다 더욱 악화되고 있다. 담수 또한 크게 부족하다. 중국 도시지역의 반 이상이 담수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공업폐수의 정화율은 30%에 불과하다. 하천의 하상 80%가 오염돼 있고 국민의 39%가 오염된 물을 사용하고 있다. 유해성 산업폐기물의 대기 중 방출량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측 입장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텅 빈 광활한 인접 극동지역을 초기에는 경제적 차원으로, 나중에는 영토적·정치적 팽창주의의 목표물로 삼으려는 중국의 야욕은 필연적인 것이다.

장기적·전략적 대중 협력 과정에서 중국 국내 정치상황의 긍정적인 시나리오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부정적인 사태 전개 또한 얼마든 가능하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 및 글로벌 패권주의 강화를 지향하는 민족주의가 중국 지도부를 장악할 수도 있다.

중국에 또 한 차례 사회구조적 위기가 폭발하면 중국의 사회·경제적 발전 과정은 멈출 수도 있다. 연안지방과 내륙지방 간 불균형적인 사회·경제 발전, 도농 간 대립 심화, 농촌의 생활여건 악화, 민족갈등의 심화 등 위기발생 여건이 무르익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중국 측의 영유권 주장은 무엇보다 이웃나라의 인내를 의도적으로 시험해 보려는 데 그 목표가 있다.

전반적으로 극동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지정학적 입지는 소연방 시대보다 약하며, 러시아가 또다시 영토·경제·군사적인 면에서 손실을

입게 된다면 이것은 러시아 전체의 급속한 쇠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 ‘러·중 동부국경설정 작업 완료조치’에 관한 1996년 2월 21일자 러시아 대통령령 제77호를 살펴보자.

대통령령 제77호의 마지막 제4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4항은 러시아 외무부와 러시아 해당 주체 행정부에 대한 명령으로, “러시아 국경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국경설정 작업 결과 서로에게 양도되는 일부 구간의 공동 운영에 관한 러·중 기본협정 서명 문제를 조속히 타결하라”는 내용이다.

대통령령 제77호 제4항은 ‘분쟁지역’을 양국이 공동 관리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흡사 일부 러시아 영토를 중국에 전적으로 양도하는 게 아니며, 더구나 러시아 국경주민들의 이익을 고려한 일부 구간에 대한 공동운영을 규정함으로써 사탕발림을 하고자 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 대통령령 제4항은 약 1500km<sup>2</sup>의 영토에 대한 사실상의 공동 소유체제, 즉 두 나라(혹은 여러 나라)에 의한 공동 관리체제를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옐친 대통령의 동 조항에는 곳곳에 적지 않은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공동 관리체제는 같은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두 국가(혹은 여러 나라)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립된다. 공동 소유체제는 분쟁지역이나 미분할 영토에 대한 한 국가의 주권수립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적 형태로 간주된다].

더 나아가 러시아와 중국 간 상호 영토관계는 옐친 대통령령 제4항에 의해 부분적으로 연해 변강주의 15km<sup>2</sup>(국경 하천의 도서 제외) 구역에 대해 사실상 1858년 아이훈 조약의 법적 기반으로 회귀하는데 동 조약 제

1조에 따라 “우수리 강에서 해안까지” 아무르 강 이남 영토에 대한 제정러시아와 중국 간 공동 관리체제가 수립된 적이 있다. 이는 우수리 강 동쪽 동해에 이르기까지 아무르 강 이남의 우수리 변강주 영토, 즉 현재 연해 변강주와 하바롭스크 변강주 남부 영토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법적 합의 절차에 따라 이 지역 영토를 공동 소유했던 기간은 1858년 5월부터 1860년 11월까지로 2년 반이 채 되지 못했고, 그 후 아이훈 조약은 베이징 조약으로 대체되었다. 동 조약에 따라 양국 간 수로국경은 아무르 강, 우수리 강, 순가차 강을 따라 결정되고 육로 국경은 연해 변강주 지역 조선과의 국경까지 이어졌다. ‘공동 소유’는 선언적일 정도로 연해 변강주와 하바롭스크 변강주 이남 지역의 경우 실제로 단 한 차례도 양국이 공유했던 적이 없으며, 더욱이 러·중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한 적은 결코 없었다.

1996년 2월 21일자 열린 대통령령 제77호 또한 향후 일부 러시아 영토의 공동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낳을 수 있다. 이유는 중국과 공동이용하게 될 러시아 영토의 규모가 1858년 아이훈 조약에 따른 경계까지 확장되고 뒤이어 아무르 강에서 동해까지의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동 통치, 나아가 공동 소유체제가 법적으로 명문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860년 베이징 조약의 관련 조항(제1조와 제3조)이 전면 수정되고 1858년 아이훈 조약의 국제법적 기반으로 회귀한다는 것은 러시아의 40만 km<sup>2</sup>에 달하는 영토에 대한 중국과의 공동 소유를 의미할 수도 있다.

이것은 필자의 근거 없는 상상이 절대로 아니다. 마치 러시아가 중국으로부터 150만km<sup>2</sup>의 영토를 탈취한 계기라도 되는 듯한 19세기 러·중 간 체결된 각종 협약이 위법이라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특히

러·중 간 국경표지위원회 협상 과정에서 20년 만에 처음 등장했다.

이와 관련해 ‘1995년 러시아 국가안보개념’을 수립한 다양한 분야의 석·박사, 학술원 정회원 및 준회원을 포함한 학자, 대장을 포함한 군인 등 총 95명으로 구성된 최고 권위의 전문가들이 밝힌 지정학적 전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아·태지역으로부터 오는 러시아 국가안보에 대한 대외정책적인 위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분명하게 드러내지는 않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중국의 극동지역 영유권 주장으로 러·중 상호관계는 장차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sup>200</sup>

바로 그러한 이유로 러시아가 대외정책 분야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국 영토를 중국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은 한 국가로서 러시아의 내부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며, 과거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힘을 실어줄 뿐이다.

오늘날 중국 지도부는 온건하고 신중한 실용주의적 정치인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지속되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1950년대 ‘소련과 중국은 영원한 형제’라는 구호 아래 유지되었던 양국 간 우호와 긴밀한 협력관계는 1960년대 들어 중국에 의해 군사적 대치상황으로까지 악화되었다. 국제정치를 비롯한 정치판에는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 이와 관련, 신중해서 결코 나쁠 것은 없다. 앞으로 중국 내 온건파 정치인들은 언젠든 패권주의자들로 교체될 수 있

200 『1995년 러시아의 국가안보 개념』(1995), 91쪽.

다. 이들은 영토확장을 포함한 대외 팽창주의를 통해서 국내문제를 해결하려 들 것이다. 이처럼 러시아 극동지역의 국제관계는 비관적인 시나리오에 따라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점은 대외정책의 전략적 기획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그리하여 먼 훗날 오늘날 러시아 ‘정치인들’과 ‘외교관들’이 저지른 실수와 위법적인 양보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군복을 입고 이웃 강대국과 전쟁을 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 아닌가?

이와 관련, 러시아 국가두마 국방위원회가 러시아 최고총사령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방위원장 로홀린 육군 중장이 작성한 대중 지정학적 전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좁은 땅으로 고통받는 인구 15억 명의 중국이 극동지역에서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중국은 제한된 공간에서 문자 그대로 질식하고 있다. …… 중국은 우리에게서 빼낼 첨단기술이 있는 한 앞으로 5년 정도는 더 우리에게 관심을 보일 것이다. 게다가 중국은 원료 공급기지로 서도 러시아가 필요하다. …… 귀하의 국방정책대로라면 2020년대 초 러시아는 극동, 시베리아, 우랄까지도 잃게 될 것이다.<sup>201</sup>

한 달 반 후 로홀린 장군과 ‘군, 장병, 방위산업과 국방과학 전리지 운동’ 조직위원들이 작성한 대국민 호소문에 “중국은 2010년까지는 우리에게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돼 있다.<sup>202</sup> 만일

201 『소비에트 러시아』(1997. 6. 26).

202 『소비에트 러시아』(1997. 8. 14).

이 예측이 정확하다면 앞으로 10~15년 정도 남았다.

전망에 따르면 중국이 현재의 고도성장세를 유지하면 21세기 초반에 이미 세계적인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중국은 러시아에 직접 위협을 가할 수 있고, 힘을 바탕으로 러시아와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력 증강에 전념하기 위해 대러 관계 현안 중 '영토문제'를 잠시 내려놓고 있을 뿐이다.

중국은 이 '평화기'에도 러시아 외교가 방조한 가운데 '분쟁지역'화한 국경 하천의 러시아령 도서, 두만강 하구 인근 하산호 일대의 전략 지역 및 연해 변강주 우수리스크구 타이가 지역 등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통해서 영토 확장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평화기'의 지속과 대러 군사 및 군 장비 분야 협력 결과 중국은 가까운 시일 내에 항공기, 미사일 제작 및 군함 건조에 필요한 첨단기술을 손에 넣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중국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 반면 러시아는 무기, 무기제조 면허 및 제조기술 판매를 통해서 사소한 이익을 얻는 데 그칠 것이다. 러시아는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대중 '협력'으로 예산적자를 메우기 위해 첨단무기를 판매함으로써 일시적인 눈앞의 이익에 만족하며 잠재적·전략적 적을 무장시키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서방 측은 첨단무기와 무기제조를 위한 첨단기술의 대중 판매에 자신들의 국방력이 심각한 손실을 보지 않는 모델로 한정시키는 등 매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나면 군사력을 급격히 증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순식간에 심지어 미국과도 경쟁

할 수 있는 세계적인 군사대국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모스크바~워싱턴~베이징이라는 ‘삼각형’에서 중국은 균형적인 실용정책에 맞춰 끊임없이 자신의 입장을 변화시켜 왔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중국은 1950년대에 광범위한 대소 경제협력을 추구함으로써 무엇보다 국가의 산업화를 가속화했다. 소연방 또한 당시 대중 협력을 공통의 정치적·이념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동맹관계로 간주했다. 그 후 1960년대 양국관계는 냉각, 악화되었다. 중국은 이 시기를 1970~1980년대 대미 협력관계로 보상받았다. 1980년대 말부터 중국과 소연방, 나아가 러시아와의 신(新) 데탕트가 도래하는 듯하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매우 실용적이고 뚜렷한 목적의식을 보인 반면 러시아의 대중 전략은 21세기 양국 간 전략공조에 관한 선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중국은 무엇보다 자신들의 국익수호 차원에서 일정한 선을 넘어 전략적 행동에 제약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이다.

21세기 러·중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테제는 매우 의심스럽다. 노쇠하여 기력을 잃어가는 장애인과 다이내믹한 세계적인 거인 사이에 무슨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역설적이지만 러·중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와 상호 협력에 대한 환상을 전파하는 것은 대통령 행정실이나 정부, 또는 외무부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같은 몽상가들은 국가두마나 심지어 애국주의 성향의 야권에도 활동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러·중 관계와 협력 발전을 위한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중국의 사회주의를 들기도 한다. 그러나 중국의 사회주의가 결코 대러 우호관계를 담보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1960~1980년대 다만스키 섬 일대 국경지역에서 발생한 사태를 회상해 보라.

중국의 사회주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동체 생활을 조직하기 위한 수단이다. 중국식 사회주의는 그들 특유의 민족사회주의 형태로 자국민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그들에게 만국 노동자들의 단결 문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중국은 엄청난 인적자원(13억 명의 인구, 세계 인구의 약 1/4)을 보유하고 있지만 농업용지는 전 세계의 7%에 불과하다. 그들의 바로 옆에는 인구는 줄어들어 (중국 측 입장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텅 빈 광활한 극동과 시베리아 지역이 있다. 더구나 러·중 간 국경선 총연장은 4000km가 넘는다.

앞으로 러시아에 1980년대 말 이래 지속돼 온 현재와 같은 정치·경제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2020~2030년대에는 중국, 미국, 러시아 그리고 통일 한반도 사이에 러시아 극동과 시베리아 지역을 두고 각축전이 벌어질 것이다. 만일 이들 나라 간 상호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미국은 추코카, 캄차카와 야쿠티야(Yakutiya)를 갖고 일본은 쿠릴 열도와 사할린을 갖게 될 것이다. 통일 한반도는 자신의 몫으로 연해 변강주를 요구할 수도 있다. 나머지는 모두 거대 중국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1996년 베이징과 1997년 모스크바에서 21세기 전략적 상호 협력에 관한 공동 성명이 서명되었다. 러시아 대통령은 21세기 대중 전략적 상호 협력을 목표로 평등과 신뢰에 기반을 둔 동반자관계 발전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노선을 승인했다. 필시 이를 위해 정부는 (극동지역, 특히 연해 변강주의 심각한 전력난에도 불구하고) 동시베리아의 값싼 전력을 중국에 공급하기 위한 대규모 송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극동지역 경제는 당연히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시베리아 경제 또한 중국의 경제성장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물론 러·중 양국관계는 대결이 아닌 선린과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러시아와 서방, 남쪽의 이슬람권 혹은 일본과의 마찰과 관련하여 중국이 러시아 편에 설 것이라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대중 선린관계는 (1997년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 결과 2000년 이후 열린 대통령이 극동 전 지역과 시베리아에 배치할 예정인 1개 사단의 전문 용병이 아니라) 대러 침략 가능성이나 무력압박 정책을 억지할 수 있는 강한 군사력이 발판이 되어야 한다.

러·중 간 국경선을 변경한다는 것은 1858년 톈진 조약과 1860년 베이징 조약(톈진 조약에 대한 추가조약)의 관련 조항들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 따라 국경표주가 신규 설치된 후 “국경표지 설치 후 양국 간 국경선은 영원히 변경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한 베이징 조약 제1조 또한 전면 위반되어, 사실상 재검토될 수도 있다. 결국 1861년 설치되고 1886년 복원된 일부 국경표주들이 러·중 간 국경재설정 작업을 통해서 이전될 수 있다. 이처럼 급진성향의 중국 지도부라면 누구든 러시아에 관련 영유권을 제기하면서 1860년 베이징 조약의 법적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물론 열린 대통령은 1996년 2월 21일자 대통령령 제77호에 서명하면서 이들 압초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이란 항상 전문가들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던가?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누구이며 러시아를 어디로 끌고 간단 말인가? 앞의 내용을 통해서 최소한 다음과 같은 중요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베스메르트니흐 외무장관 재임 당시 서명된 1991년 (번역본 p.193 참조) 동부국경협정은 19세기 러·중 간 체결된 각종 영토·국경 관련 조약을 수정한 것으로, 이에 따라 아무르 강

및 우수리 강을 비롯한 국경 하천의 도서들과 연해 변경주 육로 구간의 러시아 영토가 중국 측에 양도된다. 이러한 각종 조약의 수정과 동부국경협정의 비준 절차는 국제법 규범과 국내 헌법규범 측면에서 근거가 없거나 의심스럽다.

둘째, 동부국경협정은 협정문 서명 준비와 실질적인 이행 과정에서 러시아 외교의 내부 약점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러시아 국익에 상치된다.

셋째, 소·중 간 동부국경협정 준비 과정에서 인접국에 러시아 영토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직접적인 경제손실, 간과된 이익 및 러시아 국경변경에 따른 법적 기반, 연해 변경주, 하바롭스크 변경주, 유대인 자치주, 아무르 주, 치타 주 주민들의 이해관계 등 중요한 문제를 고려해야만 한다.



제 3장

극동지역 러시아

영토수호를 위한 연해  
변강주 행정부의 투쟁



126년 전 제정러시아의 학자이자 사회평론가 베뉴코프(M. I. Venyukov)는 연해 변강주, 특히 변강주 남부지역이 러시아에 기여하는 지전략적·경제적·정치적·군사적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sup>1</sup>

세계를 향한 출구와 거리가 먼 광활한 러시아 영토에서 ‘아무르 강 하구 ~두만강 하구’ 구간의 동쪽 변방만큼 위대한 미래를 약속해 주는 땅은 없다. 러시아는 이곳 동부지역에 유럽지역이 제공하지 못하는 바다를 향해 열린 창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기에 러시아는 전 세계적 패권 장악에 여념이 없는 적과의 투쟁에 힘을 결집해야 한다. …… 미국, 순다 열도(Sunda Islands), 인도 등 전 세계에서 장기간 고갈되지 않은 부의 원천과 자유로운 해상무역을 위한 필수적인 항구를 확보할 수 있는 땅은 오직 이곳뿐이다. 한마디로 핀란드 만이나 흑해 연안, 캅카스 동쪽이나 시르(Syr) 강 연안 등 러시아의 아시아나 유럽지역 중 그 어느 국경지역도 연해 변강주만큼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과 장차 눈부신 경제성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유리한 여건을 제공하지 못한다. 또한 광대한 러시아 그 어느 곳의 영토를 잃는다 해도 이 지역의 땅을 잃는 것보다는 슬프지 않을 것이다. 영국이 아스콜드(Askold) 섬에 신(新) 홍콩을 건설하거나 중국이 포시예트 만을 점령한다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평가가 갖는 근본적인 의미는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sup>1</sup> 베뉴코프(M. I. Venyukov)(1873), 『러시아 아시아지역 국경에 대한 군사적 개관』, 상트페테르부르크, 63쪽.

20세기 말 일본, 한국, 중국 등 동북아시아 각국의 역동적인 경제성장으로 연해 변강주 남부지역은 이들 국가 간 전략적 이권을 확보하기 위한 각축장으로 탈바꿈했다.

중국은 주요 지경학적(地經學的) 요인으로 러·중·북한 3국 국경의 교차점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헤이룽장 성[黑龍江省], 지린 성과 같은 중국 동북지방과 네이멍구 자치구의 집약적인 경제성장은 교통·운송 요인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다. 이들 지방은 직통 해양 진출로가 없기 때문에 중국 동북지방의 화물운송으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다롄[大連]~하얼빈[哈爾濱]’ 구간의 철도에 화물운송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최근 15년 동안 동북지방의 동해 진출로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중국이 이러한 직통 해양 진출로 확보를 통해서 얻게 될 경제효과는 실로 막대하다.

중국 외교는 1991년 자국에 유리한 대소 국경변경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중국 동북지방의 동해 운송로를 확보하기 위한 당·정 지도부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이 협정에는 중국 선박이 두만강 소연방 구간 및 동해 소연방 영해를 지나 공해상으로 나갈 수 있는 항행권이 명시돼 있고, 두만강 하구 17km 중국령에 하항을 건설할 수 있도록 소·중 간 국경선 또한 수정되었다.

1991년 5월 서명된 소·중 간 동부국경협정은 사실상 비밀에 부쳐져 오랫동안 여론의 이목에서 벗어나 있었다. 1991~1993년 쿠즈네초프(V. S. Kuznetsov)가 주지사로 근무한 연해 변강주에서조차 이에 대해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쿠즈네초프 자신은 동 협정에 대해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소·중 양국 외무장관의 협정 서명 이전과 동 협정 비준 이전

문건에 동의한다는 서명까지 한 바 있지만 자신이 집행위원장으로 있던 변강주 인민대표자회의에도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

1990년대 초반 코지레프가 이끌던 러시아 외무부가 러·중 간 국경선 변경에 관한 모든 정보를 사실상 비밀에 부쳤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외무부는 최근 300년 동안 러·중 간 있었던 영토·국경 분할에 관해 양국 간 조인된 각종 문서조차 국가기밀이라는 덮개를 씌워 버렸다. 그러나 이들 문서는 원칙적으로 더 이상 국가기밀이 아닌 역사적인 사실이다.

순수 부처 간 이해관계가 아닌 광범위한 사회적 관심사인 정부의 대외활동 현안에 관한 주요 논의과정의 공개원칙이 깨진 것이다. 당연히 러시아의 학계와 일반 국민 등 여론은 당면한 대중 국경변경에 대해 알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영토문제는 국민의 주요 이해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모든 정부 활동 중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게다가 중국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가장 큰 이웃이다. 따라서 러시아 영토의 대중 양도 문제는 순수한 영토 측면뿐 아니라 정치·경제, 심지어 도덕적·심리적 측면까지도 내포하고 있다.

연해 변강주 주민들은 대중 국경설정 사실 자체와 러시아 영토의 대중 양도 가능성에 대해 우연히 알게 되었다. 이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한 사람은 연해 변강주 우수리스크구 구청장 리트비노프(N. I. Litvinov)였다. 그는 우수리스크구의 일부 영토가 중국에 양도될 것이라는 사실을 국경수비대로부터 직접 전해 들었다. 구청장 리트비노프는 1992년 우수리스크구 영토 960여ha의 양도를 규정한 국경설정 작업 시행에 관한 소·중 간 협정 서명 사실을 인지한 후 태평양 국경관구 사령관, 러시아 인민대의원 바리빈(M. A. Barybin)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리트비노프 구청장은 바리빈 사령관에게서 안심할 만한 답변을 얻어냈다. 그러나 실제로는 러·중 공동 국경설정 실무그룹은 이미 활동을 시작한 상태였다.

연해 변경주 주민들에게 변경주 영토 1600ha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린 것은 『크라스노예 즈나마』지였다. 당시 이 신문의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시 국경수비대 사령관, 변경주 의회 대의원 즈두노프(A. Zhduinov) 대령은 이 사실을 접하자마자 당시 변경주 주지사 쿠즈네초프에게 도 대체 지방의 영토문제가 어떻게 지방정부를 배제한 상태에서 결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쿠즈네초프는 즈두노프를 제1부지사 체르난스키(I. Chernyansky)에게 보냈다. 체르난스키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래, 뭐가 어떻다는 겁니까? 생각해 봐요. 겨우 16km<sup>2</sup>밖에 되지 않아요!’

조국 땅에 대한 범죄행위나 다름없는 이 같은 무심한 발언을 어찌 심판할 수 있을까!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3개구 구청장들이 먼저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거의 1000ha에 이르는 경작지와 삼나무숲이 잘려 나간 우수리스크구 구청장 리트비노프는 현 연해 변경주 주지사 나즈드라텐코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우수리스크구 행정부는 러시아 최고회의에 러·중 간 국경설정에 관한 문건들이 발송되었음을 알린다. 우수리스크구, 우수리스크시와 인접 지

역구 주민들은 우리 러시아 영토 960ha의 대중 양도를 결정한 정부 간 국경표지위원회의 결정을 단호히 반대한다.

구 행정부와 주민들은 이 문제를 검토하여 우수리스크구 관내 러·중 간 국경선을 변경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이와 동일한 편지들이 특히 국경선 변경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하산구와 한카구에서 변강주 당국에 발송되었다.

현 연해 변강주 당국은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 변강주 당국은 제법 분명하고 일관되게 상황에 대처해 왔다. 지체 없이 변강주 부지사 벨추크(I. Belchuk)를 모스크바로 파견했다.

변강주 행정부는 동시에 러시아 외무장관 코지레프와 러·중 공동 국경표지위원회 러시아 측 위원장 키레예프에게도 서한을 발송했다.

각 구 행정부와 인민대의원회의 및 주민들은 경제적인 관점에서뿐 아니라 도덕적인 관점에서도 대중 영토 양도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 상기 변강주 각 구는 농지와 고가의 수종(樹種)을 포함한 삼림이 풍부하여 변강주 경제에 일익을 담당한다.

변강주 인민대의원회의 제11차 회기는 연해 변강주 당국의 입장을 만장일치로 지지했다. 나즈드라텐코 주지사는 자신이 발송한 서한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했다.

주민들의 대규모 소요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상기 관내 영토에 관한 쟁점 사안들이 해결되기 전에는 이들 구간의 러·중 국경설정 작업이 시행

दै서는 안 된다.<sup>2</sup>

연해 변강주 우수리스크구 주민들은 국경변경에 대해 매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각 농촌소비에트는 ‘이 땅은 태고 이래 러시아 땅으로 단 한 뼘도 중국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서명운동을 펼쳤다. 우수리스크구 행정부는 이들 농촌소비에트의 입장에 대한 지지 결의문을 작성하여 연해 변강주 인민대의원회의의 소위원회에 발송했다. 주민들의 지지로 1993년 7월 주지사로 부임한 나즈드라텐코 연해 변강주 당국 지도부의 확고한 입장 덕분에 변강주 관내 국경설정 작업을 시행한 총 3차(제 8~10차)에 걸친 러·중 공동 국경설정 실무그룹의 활동은 1993년 여름 중단되었다.<sup>3</sup> 이것은 연해 변강주 나즈드라텐코 주지사가 이끄는 연해 변강주 당국의 지원으로 현지 각 지자체가 나서서 얻어낸 성과였다.

또한 1993년 5월 5일 우수리스크구 행정부는 연해 변강주 인민대의원회의에 서한을 보내 구 대의원들에 대한 지지와 현행 국경 유지 결의안의 소위원회 채택을 요청했다. 그러나 9월까지 이 문제는 심의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1993년 8월 초 연해 변강주 행정부의 제안으로 이 문제에 대한 현장 실사를 하기 위해 우수리스크구 구청장 리트비노프와 연해 변강주 부지사 벨추크가 태평양 국경관구 관계자들과 함께 우수리스크구 관내 대중 양도 예정 지역을 방문했다.

현지답사 결과 연해 변강주 인민대의원회의의 소위원회는 이 문제를

2 글루시코프(S. Glushkov)(1993. 7. 24), “새로운 국경설정은 도발의 냄새가 난다”, 『크라스노예 즈나먀』.

3 글루시코프(1993. 8. 7), “국경획정 작업은 중단되었으나 대단위 연해 변강주 영토의 탈취 위협은 여전히 있다”, 『크라스노예 즈나먀』.

검토하여 '1991년 5월 16일자 소연방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동부국경 협정 이행을 위한 연해 변경주 관내 리·중 간 국경설정 과정에 관한' 1993년 9월 15일자 제329호 결의문을 채택했다. 소위원회는 동 결의문에서 러시아 중앙 당국에 호소하여 동 국경협정 문제를 재검토하여 상응하는 결의를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소위원회 결의문은 1991년 동부국경협정의 위헌성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동 결의문은 모스크바로 보내졌지만 익히 알고 있는 사태(1993년 9월 21일~10월 4일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 동 사건으로 러시아 인민 대의원대회와 러시아 최고회의가 해산되고 장기간 러시아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정지되었다)로 인해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이 건에 대한 아무런 결의도 채택되지 않았다. 거의 1년 반 동안 연해 변경주의 입법부가 구성되지 못하고 2년 동안 러시아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됨으로써 이 일은 오랫동안 추진되지 못했다.

이 기간 연해 변경주와 중앙정부에 합법적인 관련 당국의 부재로 1991년 소·중 간 동부국경협정의 철회가 불가능했다. 따라서 연해 변경주 행정부는 이 문제에 관한 연방회의(상원)의 정책에 따라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1994년 7월 4일 연방회의 연방위원회 위원장 타라센코(V. G. Tarasenko)에게 연해 변경주 부지사 스테그니(V. Stegny)가 서명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한이 발송되었다.

1991년 5월 서명된 '소·중 간 동부국경협정' 및 리·중 간 국경협정문에 따라 연해 변경주 관내 상당한 영토가 아래와 같이 중국 측 관할로 양도될 예정이다.

- 한카구-410ha
- 우수리스크구-960ha
- 하산구-330ha

상기 지역은 연해 변강주 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한다. 상기 각 구(區) 행정부와 주민들은 경제적인 관점에서뿐 아니라 도덕적인 관점에서도 대중 영토 양도에 대해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연해 변강주 행정부는 이들 각 구 행정부와 의견을 같이하며 러시아 땅의 양도에 동의할 수 없다. 연해 변강주 행정부는 상기 언급된 지역을 중국 측에 양도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으며, 더구나 이에 대해 당 행정부에 통지된 바도 없다. 연해 변강주 행정부 및 각 구 당국의 입장과 주민들의 여론을 고려할 때 이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중국 측과 원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이와 같은 연해 변강주 행정부의 입장은 1995년 3월 3일 비공개로 진행된 러·중 간 동부국경설정 과정에 관한 의회 청문회에 보고되었다. 동 청문회에서 행한 연해 변강주 행정부의 보고서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언급되었다.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 따라 중국에 양도될 수 있는 연해 변강주 관내 3개 국경 구간에 대해 몇 가지 의문과 함께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이의를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역사적 정의를 바탕으로 해결돼야 한다. 예를 들면 연해 변강주 하산구 관내 두만강 연안지대 300ha 이상을 중국에 양도하도록 돼 있다. 이 구간은 결코 단 한 차례도 중국

령으로 편입된 적이 없다. 1860년 조약에 따라 국경선은 강 좌안을 통과했다. 그러나 지난 100년간 두만강에 변화가 일어나 국경선이 사실상 강 수역을 통과하게 됨으로써 중국 측은 국경수비에 곤란을 겪게 되었다. …… 러시아 측 국경설정 위원들은 일부 러시아 영토를 중국 측에 내주기로 순순히 합의했다. 원활한 국경수비를 위해서는 폭 20m를 내주는 것으로 충분한데도 말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 측에 양도하기로 한 영토에 공동묘지와 1998년 60주년을 맞이하는 하산 사태 때 전사한 수많은 무명용사의 묘지가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양도 예상 지역은 강기슭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며, 따라서 국경선이 이동하면 연해 변강주 남부지역 집수구역인 하산호와 레베디노예(Lebedinoe) 호수가 환경위협에 처하게 된다. 한편 중국인들이 두만강 하구에 항구를 건설하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해양출구를 얻게 됨으로써 그들에게 러시아 항만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될 것이다. 게다가 지린 성에는 이미 ‘지린 성 철도 및 항만 본부’가 설립되었다.

우수리스크구에서는 968ha의 삼림지대가 중국에 양도된다. 연해 변강주 학자와 전문가들이 실시한 1991년 5월 16일자 동부국경협정 해당 조항에 대한 분석과 현지 지형 실사 결과는 상기 지역이 법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러시아령임을 입증해 준다.

하산구에 새로운 국경이 설정되면 약 700ha의 러시아 영토가 중국에 양도되는 반면에 러시아가 얻게 되는 중국 영토는 약 300ha이다. 새로운 국경선은 직선으로 이어지는 현행 국경선과 달리 굴곡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양국 모두에 국경수비뿐 아니라 토지이용 또한 어렵게 된다.

이미 언급한 연해 변강주 관내 모든 구역은 1860년 11월 2일자 베이징 조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러시아령이며 134년 동안 어떠한 논쟁도 제기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연해 변강주 지도부의 입장은 분명하고도 일관적이다. 연해 변강주 관내 러·중 국경설정은 특히 1991년 5월 16일자 동부국경협정 제1조를 비롯한 국경선 통과 지점을 규정한 역사적인 조약문건들을 토대로 이행돼야 한다. 이들 조약을 재검토할 경우 국경지대에 긴장이 조성되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

국경설정 과정에서 역사적 정당성이 준수된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입증해 줘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러시아 최고위 입법 및 행정당국에 국경표지위원회 러시아 측 대표단 차원의 외교교섭을 통해서(이것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혹은 국경표지위원회 차원에서 연해 변강주 하산구와 우수리스크구의 두 구역이 역사적으로 러시아령임을 입증하거나, 혹은 이들 지역을 국경설정 과정에서 제외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국경설정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극동지역 러시아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연해 변강주 행정부의 노력에 러시아 연해 변강주 대통령 전권대리인도 합류했다. 러시아 연해 변강주 대통령 전권대리인 이그나텐코(V. A. Ignatenko)는 대통령 행정실 국토담당 국장 카자코프(A. I. Kazakov)에게 보낸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안타깝게도 무슨 이유로 러·중 간 국경설정 문제가 야기되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1980~1983년 중국인들이 당시 국경

선의 정확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단독 측량을 시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83~1985년 소연방 측에서도 유사한 작업을 시행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당시 외무부, 소연방 참모본부, 국경수비대 및 해군 관계자들로 구성된 부처간 특별위원회 역시 소·중 국경에 대해 단독 실사를 시행했다. 위원회의 과제는 합의된 국경과 국경선 통과 지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1886년 체결된 다양한 노보키엥스크 의정서’가 상기 부처간위원회의 실사기준이었다. 부처간위원회 전(前) 위원으로 연해 변경주 관내 국경을 담당했던 네스테로프는 “수십 년 동안 양국 국경에서 발생한 사건 전모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한 후 지형 측량에 착수했으며 최고의 전문 측량기사들이 당시로써는 최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지형을 측량했다. 따라서 실수란 있을 수 없으며 국경은 1cm까지 정밀 측정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인이 아는 한 부처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는 발표되지 않았다.

대중 국경협상은 1964년부터 1991년까지 수차례의 중단과 함께 약 30년간 지속되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시기 소연방 외무부가 주도한 1991년 동부국경협정은 예정돼 있던 소·중 양국 지도자 간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서둘러 마련되었으며, 1983~1985년 부처간위원회의 활동결과가 1991년 동부국경협정 작성자들에 의해 무시되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머지않아 현재 러시아령으로 남아 있는 하산과 동해 연안 사이 16km의 하안에 대해 중국 측이 영유권을 주장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앞으로 있을 국경변경에 대해 설명한 상기 자료를 통해서 이번 국경변

경은 국경설정이 아니라 중국 측에 유리한 러·중 국경획정(이양)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에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 1) 정치적인 면

1991년 동부국경협정은 1860년 베이징 조약 각 조항과 ‘영구불변 국경’에 관한 1861년 6월 16일자 의정서 각 조항에서 일정 수준 후퇴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러시아 영토의 대중 양도는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에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게도 선례로 작용할 것이다.

### 2) 경제적인 면

중국은 머지않아 두만강 하구의 항만 건설에 착수하게 될 것이다. 그 경우 러시아 극동·시베리아를 경유하는 ‘아·태지역~유럽’ 간 물류 체계가 필연적으로 재편될 것이다. 이는 곧 시베리아횡단철도와 밤(BAM : 바이칼~아무르 선) 철도 권역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고 연해 변강주 남부 지역 러시아 항만들의 존립근거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두만강 경제특구 건설계획에 대한 정통한 소식 또한 이에 대한 우려를 더해 준다. 동 프로그램 차원에서 러·북한 국경 쪽으로 철도부설공사가 이미 완공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 3) 군사적인 면

중국이 두만강 하구에 하항을 건설하고 나면 동해에 상설 해군기지를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인 위협이 조성될 수 있다. 이 경우 일본과

한국, 나아가 미국까지도 해군력 증강을 통한 대응이 불가피해진다.

#### 4) 생태적인 면

하산호 집수구역 상당 부분이 중국 측 경제활동 구역에 편입될 것이다. 농지에서 흘러나오는 오염수가 호수로 직접 유입될 것이다. 일부 오염 하수는 모래 지반을 쉽게 통과하여 역시 불가피하게 하산호로 유입될 것이다. 참고로 하산호는 이 지역 유일의 대규모 청정 담수 공급원이다.

중국인들이 해산물 어획을 활성화할 때 포시예트 만 일대 우리 측 해양보호구역의 생태에 적지 않은 손실을 끼칠 것이라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 5) 도덕적인 측면

중국에 빼앗기는 하산호 일대 영토와 우수리 강의 다만스키 섬은 연해 변경주 주민들의 기억 속에 조국의 영웅적인 역사로 살아 있는 산화한 국경수비대원들의 명예 및 그들이 문헌 묘지와 관련이 있다. 자오제르 나야 산 일대에 문헌 영웅 700여 명의 희생이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생각은 비단 연해 변경주 주민들만의 것이 아닐 것이다.

대중 국경설정 작업 소식에 대한 연해 변경주 행정부, 언론매체와 주민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상기 언급한 내용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995년 3월 3일 러시아 연방회의 각종 위원회에서 열린 의회청문회에서 연해 변경주 행정부 관계자들은 연해 변경주는 단 한 차례도 러·중 간 국경협정 폐기통고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형태의 동부국경협정 내용에는 변경주 행정부나 주민들, 특히 국경

설정 작업이 진행될 각 구 주민들 중 누구도 전적인 동의는 할 수 없다. 도대체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 비록 폐기통고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을 지라도 상황이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해결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외무부와 연방회의의 관련 위원회, 그리고 우선적으로 러·중 공동 국경표지위원회 러시아 측 대표 단장은 1991년 5월 16일자 동부국경협정에는 결함이 있으며, 이는 본인이 보기에 동 협정에 1886년 ‘노보키엡스크 의정서’와 ‘노보키엡스크 의정서’를 실사기준으로 채택한 1983~1985년 부처간위원회의 활동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먼저 새로이 밝혀진 사실(‘노보키엡스크 의정서’와 특히 1983~1985년 부처간위원회의 활동결과와 미반영)을 인정하고, 중국 정부에 1991년 5월 16일자 동부국경협정에 주요 조항을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해 변강주, 나아가 러시아 전반의 이익을 현재보다 좀 더 고려해 줄 수 있는 추가조항 삽입을 제안해야 한다.

셋째, 1991년 동부국경협정 추가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이 아는 한 1983~1985년 부처간위원회는 결과 보고서에서 분쟁 지역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그룹은 ‘합의된 국경선과는 다른 실제 수비 중인 러·중 간 실효적 국경 구간’이며, 이러한 구간은 양국 합해서 총 100곳에 이른다. 그중 일부 구간은 중국인들이 개간하여 이용해 왔으며, 다른 구간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었다. 두 번째 그룹은 ‘협정에서 벗어나 양측에 의해 점유, 이용되고 있는 구간’이다. 이러한 구간은 총 30여 곳으로 러시아 측이 약 10곳, 나머지는 중국 측이 점유,

이용하고 있다. 1983~1985년 부처간위원회 활동 기간에 이들 각 구간에 대한 도면과 설명서가 작성되었다. 이들 각 구간에 대한 도면과 설명서는 러·중 국경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찾아내 연구해야 한다고 본다. 어쩌면 이 자료는 앞으로 있을 1991년 동부국경협정 추가조항의 작성 근거와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991년 동부국경협정을 준비하던 국경표지위원회는 100곳 이상의 각 구간에 대해 중국인들과 함께 분석하는 대신 좀 더 빠르고 쉬운 길을 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공동 국경표지위원회 러시아 측 대표단은 실제 수비 중인 실제 국경선을 확정하고, 이 과정에서 오랜 숙원이었던 협정 서명에 합의해 준 대가로 러시아 영토 1500ha를 중국에 양도했을 것으로 감히 확신한다. 따라서 만일 본인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면 우리 외교관들은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가두마 국제관계위원회 루킨 위원장의 ‘우리가 아직 힘이 미약한 향후 10~20년간 국경의 안전은 확보될 것이다’라는 발언은 너무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그렇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곳 연해 변강주에서는 중국인들이 선례를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매우 절실하다. 중국인들이 세 구간을 얻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중국에서도 역시 국경을 조사했으며, 그것이 조약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알고 있다.<sup>4</sup>

1994년 12월 러시아 외무부는 자신들이 작성한 대 정부 보고서 초안과 국경설정 결과 상대 측에 양도되는 영토의 양국 공동이용에 관한

<sup>4</sup> 「러시아연방 연해 변강주 대통령 전권대리인」(1991~1997), 『러·중 국경설정 문제』, 23~26쪽.

대중 협상 관련 러시아 정부령 초안을 외무부 제1차관 체르니셰프(A. S. Chernyshev)가 서명한 서한과 함께 연해 변경주 나즈드라텐코 주지사에게 보내 동의를 요청했다.

특이한 것은 러시아 외무부가 작성한 러시아 정부령 초안은 오랫동안 현지 주민들의 전통적인 경제활동 무대였던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큰 국경설정 해당 영토 구간을 양국 공동 관할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대부분 구간의 영토는 전통적인 경제활동(건초재배, 목축, 농업, 임업 등) 목적으로 이용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중개 무역과 상업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했다. 공동 경제활동과 관련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간 공동(!) 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공동 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양국 국민을 위해서 국내용 여권이나 신분 증명서를 이용한 국경횡단 규정을 포함한 국경횡단 간소화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사실상 러시아 관할 구간에 대해서만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데 있었다. 따라서 동 정부 간 협정에는 중국 땅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사실상 수백km에 달하는 러·중 국경에 일종의 ‘틈새’를 만들어 수만, 수십만 명의 중국 중개 무역상과 상인들이 새로운 땅에 마치 자기 땅인 양 밀고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다.

코지레프가 이끄는 러시아 외무부의 이 모든 대 정부 제안은 당시 진행 중이던 국경설정 작업에 대한 해당 국경지역 주민들의 격한 반응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었으리라. 사실상 러시아 극동지역 땅에 중국 측 ‘트로이 목마’를 잠입시키자는 것이다. 이러한 코지레프 외무장관의 제안은 장차 방대한 영토 상실을 동반한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적 손실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지정학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연해 변경주 행정부와 나즈드라텐코 주지사는 이 문제를 파

악, 국경설정 작업 대상 구간에서의 대중 공동 경제활동 가능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대 정부 보고서 초안과 러시아 정부령 초안에 대한 답변을 서둘러 달라는 1995년 1월 중순 연해 변강주 행정부에 발송된 러시아 외무부 아시아 제1국장 아파나시예프가 서명한 외무부 독촉장에 대한 변강주 당국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체르니셰프 외무차관에게 보낸 1995년 1월 19일자 연해 변강주 행정부의 답변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해 변강주 당국은 전부터 국경설정 결과에 따른 변강주 영토 1500ha의 대중 양도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중 양도 구간에서 어떻게 공동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우리의 반대 의견을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

별첨 : 11쪽.

1주일 후 나즈드라텐코 연해 변강주 주지사는 러시아 체르노미르딘(V. S. Chernomyrdin) 총리에게 특히 다음과 내용의 1995년 1월 25일자 서한을 보냈다.

절박한 심정으로 귀하에게 도움을 청한다. 국경설정 결과 역사적으로 명백한 러시아 땅인 일부 연해 변강주 영토를 내주기로 한 데 대한 우리 측의 반대에 러시아 외무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바 이는 필시 그들이 국경획정 과정에서 범한 과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1991년 5월 16일자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과 중국인민공화국 간

동부국경협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러·중 국경설정 과정에서 총면적 1500ha 이상 많은 구간의 연해 변강주 러시아 영토가 중국으로 넘어갈 처지에 있다.

상기 동부국경협정에 따라 1969년 3월 수십 명의 소비에트 병사들이 전사한 달네레첸스크(Dalnerechensk)구 우수리 강의 다만스키 섬이 중국에 넘어가게 된다.

새로운 국경이 설정되면 한카구의 러시아 영토 769ha가 중국에 양도되는 반면, 중국 영토 299ha가 러시아에 양도된다. 새로운 국경선은 직선으로 이어지는 현행 국경선과 달리 굴곡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양국 모두에 국경수비뿐 아니라 토지이용 또한 어렵게 된다.

우수리스크구에서는 주로 삼나무로 이루어진 968ha의 삼림지대가 중국에 양도된다. 연해 변강주 학자와 전문가들이 실시한 1991년 5월 16일자 동부국경협정 해당 조항의 분석과 현지 지형 실사 결과는 상기 지역이 법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러시아령임을 입증해 준다.

두만강 연안 지역의 하산구에서는 총면적 300ha 이상의 두 구간이 중국에 양도된다. 1860년 조약에 따라 국경선은 강 좌안을 따라 이어졌다. 지난 100년간 두만강에 변화가 일어나 국경선이 사실상 강 수역을 통과하게 됨으로써 중국 측은 국경수비에 곤란을 겪게 되었다.

…… 양측은 일부 러시아 영토를 중국에 양도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 양도 구역은 강기슭에서 떨어져 있으며, 따라서 국경선 자체가 이동하면 연해 변강주 남부지역 집수구역인 하산호와 레베디노예 호수가 환경위협에 처하게 된다. 해당 영토가 ‘두만강프로젝트’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경제문제가 발생한다.

이미 언급한 연해 변강주 관내 모든 구역은 1860년 11월 2일자 베이징

조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러시아령이며, 134년 동안 어떠한 이의도 제기되지 않았다. …… 이 모든 문서는 러시아와 중국 양측에 의해 서명·날인되어 양국 고문서 보관소에 소장돼 있다.

연해 변경주 지도부와 주민들의 입장은 분명하고도 일관적이다. 러시아 영토의 대중 양도는 근거가 없으며, 허용될 수 없다. 연해 변경주 관내 러·중 국경설정은 특히 1991년 5월 16일자 동부국경협정 제1조를 비롯한 변경주 국경선 통과 지점을 규정한 역사적인 조약문건들을 토대로 이행돼야 한다. 이들 조약을 재검토할 경우 국경지대에 긴장이 조성되고 영토 일체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 문제 해결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러시아 정부의 답변은 4개월 이상 지나서야 나왔다. 그러나 답변은 체르노미르딘 총리가 아니라 외무장관 코지레프가 보낸 것이었다. 소 연방 시절 지방에서 상급기관에 올린 진정이나 청원에 대해서는 해당 상급기관이 아니라 진정이나 청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인사가 대응하는 것이 전통적인 관행이었다.

연해 변경주 주지사 나즈드라텐코 앞으로 온 1995년 6월 6일자 러시아 외무차관의 편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금년 1월 25일자 귀하의 서신(No. 8-3/211)과 관련하여 체르노미르딘 총리의 위임을 받아 대중 국경조정 문제에 관한 러시아 외무부, 국방부 및 연방 국경수비대의 입장을 귀하에게 통보한다.

1991년 동부국경협정이나 개별 조항을 재검토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 동부국경협정은 1860년 베이징 조약을 포함한 기존의 각종

러·중 간 국경협정 및 현행 국제법 규범을 전면 준수한 가운데 체결되었다.

변강주 당국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연해 변강주 세 구간에서 국경설정 작업이 2년 이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 기간 상기 세 구역에서 실제 수비 중인 실효적 국경선을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설득력 있는 법적 논거도 제기되지 않았다. 연해 변강주의 국경설정 작업 지연은 국경표지 위원회 활동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1년 5월 16일자 협정은 각종 러·중 간 국경협정 조항에 전적으로 일치한다.

연해 변강주 당국의 과제로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 따라 중국에 양도되는 우수리스크구와 한카구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역사적 권리를 확실한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입증한 전문가들의 연구 보고서가 마치 작성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러시아 외무부에 발송되지도 않은 듯 했다.

러시아 총리에게 보낸 연해 변강주 주지사 나즈드라텐코의 청원서 외에 러·중 국경 문제에 관해 연해 변강주 행정부와 러시아 외무부 간 직접적인 담판도 진행되었다.

코지레프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보내는 나즈드라텐코 연해 변강주 주지사의 1995년 3월 15일자 서한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해 변강주 행정부는 러·중 간 동부국경설정을 추진하는 각 연방기관에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고 있음을 귀하에게 알려 드린다. 우리는 1991년 5월 16일자 동부국경협정 이행을 방해

할 의도가 전혀 없으며, 이 문제에 관한 아무런 공식성명도 발표하지 않았다. 왜 러시아 외무부는 상황을 왜곡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건설적이고 현명한 대중 협상 대신 지방 행정부에 타격을 주려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1년 반 동안 수차례에 걸쳐 러시아 최고위 입법 및 행정당국에 연해 변강주 하산구, 우수리스크구, 한카구 등 세 국경 구간의 국경설정에 대한 우리의 반대입장을 고위층에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관내 국경설정 구간의 총연장은 전체 국경선의 0.3%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중 협상 과정에서 객관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1500ha의 러시아 땅을 중국 측에 넘겨주는 역사적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양원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장 포도프리고라야(V. N. Podoprigroraya)와 루킨을 단장으로 연해 변강주를 방문한 연방회의(상원)와 국가두마(하원) 의원들은 우리의 반대의견에 대한 정당성을 인식하여 의회 청문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한 추가 검토에 착수했다. 러시아 연방국경수비대 역시 연해 변강주 관내 국경설정과 관련한 여러 문제의 해결 방안이 대중 협상 과정에서 모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변강주 당국을 지지하고 있다.

안드레이 블라디미로비치, 연해 변강주 당국은 대중 우호관계 발전과 무역 및 노동협력에 매우 관심이 많지만 왜 베이징 조약 채택 이후 130년 이상 국경변경이나 영유권 주장이 없었으며 왜 하산사태 60주년을 코앞에 둔 시점에 수비대원들의 묘지가 있는 우리 땅을 중국에 넘겨주어야 하는지를 주민들에게 해명하기 어렵다.

외무부에 지시하여 협상 과정의 외교적 경험을 살려 동부국경협정을 수정하지 않고 연해 변강주 땅이 러시아령이라는 사실에 대해 역사적 정

당성을 입증해 주도록 요청하는 바이다.<sup>5</sup>

연해 변경주 관내 러·중 국경변경문제와 국경설정 결과 상대 측에 양도되는 상당수 러시아 국경 구간의 공동이용 가능성에 대한 연해 변경주 나즈드라텐코 주지사의 원칙적 입장은 크렘린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나즈드라텐코 주지사는 1995년 1/4분기에 러시아 대통령 행정실 필라토프 실장으로부터 엄중한 경고장을 받았다. 경고장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합의된 협정의 현 이행 단계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러시아 측 공식 인사들에 의해 정부의 단일 의견과 다른 '돌출의견'이 표출되면 심각한 정치적 파장을 낳게 된다.

이와 관련, 극동지역의 러시아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 행정부 최고위층과의 대립을 두려워하지 않은 연해 변경주 지도자 나즈드라텐코 주지사의 개인적인 용기를 치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업무상 직접적으로뿐 아니라 연방예산 지역 할당제도나 또 다른 채널에 의해서도 행정부 고위층에 종속관계에 있다. 또한 극동지역 러시아 영토 수호를 위한 투쟁 과정에서 대중 접경지역 모든 연방 주체 지도자들 중 연해 변경주 나즈드라텐코 주지사만 사실상 외톨이가 되었던 상황도 강

<sup>5</sup> 「연해 변경주 주지사가 러시아연방 외무장관 코지레프에게 보내는 1995년 3월 15일자 서한, No.8-3/721」(1991~1997), 『러·중 국경설정 문제』, 29쪽.

조하고자 한다. 그 결과 연해 변경주 나즈드라텐코 주지사만이 후에 일정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1995년 3월 말 러시아 대통령 행정실 필라토프 실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변서가 발송되었다.

존경하는 세르게이 알렉산드로비치,

이 지역 주지사나 연해 변경주 두마, 그리고 주민들 중 누구도 ‘러시아의 국제협정 이행능력과 대처’ 문제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으며 지금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귀하에게 전한다.

우리는 연해 변경주 관내 국경설정 작업을 결코 방해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는 우리 관내 국경설정 작업에 최대한 협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1991년 동부국경협정 준비 과정에 변경주 행정부는 어떤 식으로도 참여하지 못했고, 외무부가 작성한 문서들은 변경주 당국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이들 문서에는 변경주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일부 외무부 관리들과 중앙 언론매체들이 우리에게 옳아매는 분리주의와는 관계가 없으며, 러시아 대통령의 정책에 충실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것은 러시아 신 헌법 채택과 체첸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정책 설명 등과 관련하여 우리가 연해 변경주 관내에서 수행한 방대한 작업에 의해 확인된다. 우리는 러시아의 불가분성, 번영과 힘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아울러 1991년 동부국경협정 틀 안에서 연해 변경주 관내 국경설정 문

체에 대한 객관적인 해결방안을 대중 협상 과정에서 모색함으로써 특히 조만간 대규모 중국 하향 건설이 예정된 하산구 관내 국경지역을 비롯해 1500ha의 러시아 땅을 중국 측에 넘겨주는 역사적 오류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것은 당장 아·태지역의 생산력 재분배와 연해 변강주 소재 러시아 항만들의 급속한 쇠락을 가져올 것이다.

이 외에도 경제 위기, 도처의 산업생산 하락, 이와 관련된 실업자 양산 문제 등의 도덕적인 측면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문제는 베이징 조약 채택 이후 130년 이상 왜 국경변경이 없었으며 왜 영유권 주장이 없었는지, 그리고 왜 하필 하산사태 60주년을 앞두고 러시아 국경수비대원들의 묘지가 있는 우리 땅을 중국에 양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변강주 주민들에게 결코 해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존경하는 세르게이 알렉산드로비치,

외무부에 지시하여 협상 과정의 외교적 경험을 살려 동부국경협정을 수정하지 않고 연해 변강주 땅이 러시아령이라는 사실에 대해 역사적 정당성을 입증해 주도록 다시 한 번 요청하는 바이다.

우리 측에서는 변강주 행정부와 변강주 두마, 연해 변강주 러시아 대통령 전권대표부가 기한 내에 국경설정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중국 측에 양도될 예정인 두 국경 구간에 대한 극동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른 추가 자료를 조만간 귀하에게 발송하겠다.

1991년 협정에 따른 3곳의 연해 변강주 관내 분쟁지역 러·중 국경 설정 문제에 대한 러시아 외무부와 연해 변강주 행정부의 서로 다른 접

근방안은 국가 최고위층의 개입을 초래했다. 코지레프 장관이 이끄는 러시아 외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체르노미르딘 총리는 1995년 10월 9일 열린 대통령에게 대중 동부국경 설정 작업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1993~1995년 국경표지 설치장소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 측량작업이 완료되어 국경표지 대부분이 설치되고 국경 하천 아르군 강, 아무르 강, 우수리 강의 지도제작이 마무리단계에 있다. 1995년 7월에는 러·중 공동 국경표지위원회 협상이 또 한 차례 열렸다.

각하의 지시에 따라 러시아 대표단은 대중 협정을 바탕으로 환경보호 분야에 대한 우리 측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러·중 국경설정 작업에 참여하는 전문가와 학계 대표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연해 변경주 행정부의 입장 탓에 우수리스크구와 하산구 두 구간에서 국경설정 작업이 지금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유대인 자치주 구간 아무르 강 국경설정 문제도 난관에 봉착해 있다. 자치주 입법회의는 아무르 강 유역 8개 도서를 러시아에 귀속시키기 위한 대중 협상에 착수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1991년 5월 16일자 동부국경협정에 따라 대중 국경설정 작업의 속개 필요성에 대한 각하의 확고한 입장이 연해 변경주 당국에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무부 보고에 따르면 연해 변경주 당국 지도부는 여전히 대중 협정이행을 방해하고 있다.

1991년 동부국경협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정해진 기한에 크게 어긋남 없이 러·중 국경설정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러시

아연방 안보회의에서 연해 변경주와 유대인 자치주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러·중 간 동부국경설정 문제를 논의해 줄 것을 제안한다.

1996년 2월 21일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러·중 동부국경설정 작업’에 관한 대통령령 제77호에 서명했다.<sup>6</sup> 이에 따라 러시아 국경표지위원회 대표단에는 “연해 변경주 우수리스크구, 하산구 및 유대인 자치주 국경 구간을 포함한 러·중 간 동부국경, 특히 포포프 섬, 사벨리에프 섬, 사자니(Sazany) 섬, 수호이 섬, 나스트보라흐(Na-Stvorax) 섬, 예브라시하 섬, 아무르 강의 니즈네펬트롭스키(Nizhnepetrovsky) 섬 지역의 국경설정 작업을 1991년 5월 16일자 소·중 간 동부국경협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 정해진 기한에 크게 어긋남 없이 마무리하라”, 외무부와 주체 행정부(연해 변경주, 하바롭스크 변경주, 유대인 자치주, 아무르 주 및 치타 주 단체장들)에는 “국경설정 결과 상대 측에 양도되는 영토의 양국 공동이용에 관한 대중 협정체결 문제를 조속히 타결하라”는 명령이 각각 하달되었다.

연해 변경주 나즈드라텐코 주지사는 옐친 대통령령을 결코 무시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연해 변경주 두마가 연해 변경주의 러시아 영토 수호를 들고 나왔다.

1996년 3월 13일 연해 변경주 두마는 1996년 2월 21일자 ‘러·중 동부국경설정 작업’에 관한 러시아 대통령령 제77호를 심의한 후 ‘동 대통령령 제77호에 대한 입장에 관한’ 결의안 제296호를 채택했다. 연해 변경주 두마는 이 결의안에서 대통령령 제77호가 러시아의 국익에 상

6 『러시아연방 법령집』(1996), No.10, 2366조.

치되며, 연방의 한 주체인 연해 변경주의 영토적·경제적 및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행위로 간주했다.

1991년 5월 16일자 소·중 동부국경협정에 관한 1992년 2월 13일자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최고회의의 비준결의와 관련하여, ‘1991년 5월 16일자 소·중 동부국경협정에 관한 1992년 2월 13일자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최고회의 비준결의의 위헌성에 관한’ 연해 변경주 두마의 결의안 제295호 또한 러시아 최고회의의 관련 비준법안이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위헌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 1992년 2월 발효 중이던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헌법 제104조 제5항을 위반했다. 헌법 제104조 제5항에 따르면 러시아연방의 국경변경 문제에 대한 심의는 러시아 인민대표원대회가 배타적으로 관할한다.
-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영토 내에서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헌법과 법률의 우위와 국민 투표를 통한 국민의 의지 표시 없이 영토 변경 불가를 규정한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국가 주권선언문 제5항과 제8항을 위반했다.

이와 관련, 연해 변경주 두마는 헌법재판소에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최고회의의 1991년 동부국경협정 비준 결의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연방회의와 국가두마에는 해당 협정의 심의를 요청했다.<sup>7</sup>

<sup>7</sup> “연해 변경주 두마 : 국경 재검토는 없다!”, 『러시아의 아침』(1996. 3. 20),

그러나 연해 변경주 두마의 러시아 헌법재판소에 대한 헌법소원은 아무런 성과 없이 종결되었다. 최고재판소는 역시 구실로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최고회의의 1991년 동부국경협정 비준 결의안에 대한 연해 변경주 두마의 헌법소원을 심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현지 언론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짤막한 보도가 실렸다.

헌법재판소 비서국에서 베데르니코프 두마 의장 앞으로 온 편지에는 “러시아 헌법재판소의 법률 위헌심판 근거는 해당 법률의 현행 헌법에 대한 저촉 여부이다. 그런데 연해 변경주 주민들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헌법에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밖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검토 대상 법안의 본문(이 경우에는 1991년 동부국경협정과 최고회의 비준 결의안)과 연해 변경주 당국은 국제 납부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연해 변경주 대의원들은 이들 문서를 첨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연해 변경주 주민들이 상기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재차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sup>8</sup>

앞에 헌법재판소의 궁색한 변명은 연해 변경주 두마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법적 근거를 갖추었음을 확인해 준다. 만일 해당 헌법소원의 법적 근거가 미약했다면 헌법재판소는 아무런 의심이나 비난받을 만한

---

No.53, 1쪽.

<sup>8</sup> “헌법재판소는 연해 변경주인들을 거부했다”, 『블라디보스토크』(1996. 4. 8), 2쪽.

근거를 남기지 않은 채 헌법소원을 기각했을 것이다. 헌법소원 자체에 대해 기각할 수 없게 되자 헌법재판소는 편법을 동원해서 심의를 피해 갔다.

동부국경협정은 러시아사회주의연방공화국 인민대의원대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 최고입법기관의 비준도 받지 못한 것이다.

바로 그 시기 연해 변경주 두마는 뚜렷한 목표의식과 끈기를 보여 주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만일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현행 법률이 현행 헌법을 저촉했는지 여부만을 심판한다면 연해 변경주 두마는 헌법소원 형식을 ‘1991년 동부국경협정의 1993년 헌법규범 저촉여부’로 변경할 수 있었을까? 물론 아니다. 왜냐하면 동부국경협정은 국가두마의 비준을 받지도 않았으며, 연방회의의 승인을 받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문제의 심의를 회피하자마자 역으로 ‘불공정한’ 헌법재판소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도 있었다.

1996년 4월 11일 옐친의 중국 국민방문(4월 24~26일) 2주 전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서 러·중 간 동부국경설정 문제에 대한 연해 변경주 나즈드라텐코 주지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러·중 간 동부지역 국경설정 문제는 이미 2년 이상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로조프(V. Rozov) 장군의 성명과 관련하여 이 문제에 또다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러·중 간 동부지역 국경설정 문제에 관한 연해 변경주 나즈드라텐코 주지사의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

1991년 5월 16일자 소·중 간 국경협정에 따라 하산구 일대 두만강 하구 지역 두 구간의 총면적 330ha를 포함하여 약 1500ha의 러시아 영토

가 중국에 양도된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코룟키 박사의 예측에 따르면 이 땅을 중국 측에 양도하면 조만간 청정지역 하산호와 레베디노에 호수의 물이 중국 측 논에서 유입되는 오수로 인해 오염될 것이며 '이 지역 영농 과정에서 경관이 파괴되고' 극동해양보호구역에 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산구 관내 국경 문제에 대해 연해 변경주 주지사가 취하고 있는 강경 입장의 주 요인은 연해 변경주와 극동지역 전반에서 차지하는 이들 국경 구간의 지전략적, 경제적 중요성에 있다.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해 확인된 주지사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두만강 유역 총면적 330ha에 이르는 두 구간을 얻게 되면 하상 준설공사를 통해서 동해로 나가는 출구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현재 중국은 필요한 작업을 통해서 두만강을 항행 가능한 하천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충분한 노동자 자원과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정치학자 쿠르기난이 보고서 「러시아와 두만강프로젝트」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중국은 3~4년 내에 연간 약 1억t의 물류를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항만을 건설하여 러시아를 배제한 채 이 항만을 유라시아 대륙 횡단 루트의 종착 기지로 개발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서유럽과 아·태 지역 국가들 간 연결 고리로서의 연해 변경주의 지정학적 입지는 급속히 쇠락하고 러시아의 여러 항만은 일거리가 없어 문을 닫고 말 것이다. 연해 변경주에 절실히 필요한 외국인 투자 유치와 지역 인프라 개발 사업인 '두만강프로젝트'에 거는 우리 모두의 기대 또한 물거품이 될 것이다. 그 결과 '극동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적·경제적 입지는 약화될 것'이며 극동지역은 아·태지역의 한 변방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 나즈드라텐코의 견해다.

연해 변경주 주지사는 러·중 간 국경선 변경이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경설정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의 권익 수호를 위한 일관적이고도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양국 간 체결된 1991년 동부국경협정 본문을 낭독한 후 지방 의회에 국경설정 문제를 상정하고, 연해 변경주 행정부는 주도적으로 외무부와외 교섭과 회의에 참여하면서 러시아 연방회의와 정부,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수차례에 걸쳐 작성했다.

행정부의 주 활동목적은 상기 언급한 지역의 러·중 국경에 관한 협정 결과를 현지 여론을 고려하여 재검토하도록 촉구하는 것이었다. 연해 변경주 두마는 주지사의 입장을 지지하여 최근 러시아 헌법재판소에 러·중 간 동부국경협정의 적법성을 검토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1991년 동부국경협정은 논란이 되고 있는 영토를 러시아령으로 유지할 수 있는 조항을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협정 제7조에 따르면 ‘국경 하천의 자연적인 변화’—두만강의 경우 하상 변화를 의미—는 쌍방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국경선의 변경요인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외무부의 이전 지도부는 바로 이 지침에 따라 330ha의 땅을 중국에 양도하는 데 동의한 것이다.

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중국 공식방문이 임박한 가운데 공식방문 사절단에 연해 변경주 나즈드라텐코 주지사가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옐친 대통령의 국경설정 작업 완료조치에 관한 대통령령이 발표되었다는 것은 동부국경협정 체결 결과 발생한 자신들의 과오를 덮으려는 외무부 관리들이 대통령에게 러·중 동부국경 상황에 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어제 있었던 대통령

면담에서 나즈드라텐코 주지사는 하산구 관내 두 구간의 중요한 전략적 의의에 대해 대통령에게 직보했다. 이에 따라 옐친 대통령은 두만강 하구의 국경설정 작업을 중단시킬 것을 약속했다.

연해 변강주 주지사는 러·중 관계가 상호 영유권 주장이 아닌 건설적인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연해 변강주 행정부는 일관적인 대중 화해정책을 펴고 있다. 국경 통과지역의 개방과 현대화, 수많은 거래 약정은 이를 잘 뒷받침해 준다. 그러나 나즈드라텐코 주지사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고유의 영토가 다른 국가의 관할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기회가 주어지는 한 최대한의 투쟁을 불사할 것이다.<sup>9</sup>

그러나 1996년 4월 25일 베이징에서 서명된 러·중 공동선언문을 통해 양측은 1991년 5월 16일자 러·중 동부국경에 관한 협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이며 “가능한 한 이른 시간 내에 상기 협정에 규정된 국경설정 작업을 완료하고 국경설정 결과 상대 측에 양도되는 일부 접경 구역의 양국 공동이용에 관한 회담을 병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선언했다.

8개월이 지나 연해 변강주 행정부는 관내 러·중 국경설정 문제에 대한 러시아 연방회의(상원)의 논의를 끌어냈다. 변강주 행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연방회의 차원의 논의를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으나 수차례에 걸쳐 연기된 바 있다.

연해 변강주 주지사 나즈드라텐코와 러시아 외무부 관계자들은 연

---

<sup>9</sup> 「러·중 동부국경 설정 문제에 관한 연해주 주지사 나즈드라텐코(E. Nazdratenko)의 입장」(1991~1997), 『러·중 국경설정 문제』, 27~28쪽.

방회의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보고할 수 있게 되었다. 연해 변경주 행정부는 안보회의를 통해서 대부분의 관계부처 및 의회 위원회와 연해 변경주 관내 분쟁지역의 국경설정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경주 당국의 제안을 조율할 수 있었다. 이 무렵 코지레프가 러시아 외무장관직을 떠나고 프리마코프(E. M. Primakov)가 그의 뒤를 이었다. 그러나 러·중 공동 국경표지위원회의 러시아 측 대표단장직과 이 문제에 관련된 외무부와 다른 정부부처 및 국가 기관의 선임 고문역은 1991년 동부국경협정의 소련 측 주 작성자이기도 했던 키레예프가 계속해서 맡고 있었다.

이 연방회의의 총회는 1996년 12월 4일 개최되었다. 그러나 사전에 의사일정에 포함되었던 러·중 간 동부국경설정 문제는 연방회의의 총회에 앞서 연방회의의 스트로예프(E. S. Stroyev)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 과정에서 의제에서 삭제되고, 정보를 참고하여 국경설정에 관한 모든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극동지역에 실무그룹을 파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 문제는 같은 날 연방회의의 국가안보 및 국방위원회에서 심의되었다. 동 회의에는 연해 변경주 나즈드라텐코 주지사, 변경주 대외관계 담당 부지사 스테그니, 그리고 주지사의 고문 예비역 육군 소장 로조프가 참석했다. 연해 변경주 대표단은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베스메르트니흐가 서명한 일련의 문건 작성에 참여한 인사로 구성된 국경설정 실무그룹 전 구성원을 키레예프와 국방부 지형 측량기사들만 남기고 전면 교체할 것.

둘째, 국경설정 실무그룹에 대중 접경지역 러시아 각 주체의 두마 의장

들을 포함시킬 것.

여기에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두마는 잘 보호받을 수 있지만, 연방 주체 수장들은 외부로부터의 영향과 협박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나즈드라텐코 주지사는 국가안보 및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1991년 동부국경 협정에 따라 300ha 이상이 되는 러시아 고유의 영토를 중국 측에 양도하도록 돼 있는 러·중 국경지역 하산구의 경계 및 전략적 중요성에 특히 많은 관심을 할애했다.

역시 동 위원회 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주지사 고문 로조프는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오늘 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는 분명 국가 최대의 현안으로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과 관련이 있다. 현재 국경설정의 기준이 되고 있는 동부국경협정에 따르면 러시아는 중국에 두만강 유역 일부 구간을 양도하도록 돼 있다.

본인은 우리 땅을 중국에 양도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확신한다. 본인은 연방 국경수비대장의 위임을 받아 1년 반 전 동부국경협정 제2조의 국경점 《No.33》에 대한 설명서가 어디서 유래했는지, 어떤 이유로 이 땅이 중국 측에 양도되는지 그 근거를 찾기 위해 고문서 보관소에서 특별 근무한 적이 있다. 이 땅을 양도할 만한 근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전 소연방 국경수비대 사령관, 고(故) 지랴노프 중장이 국경의 직선화에 대해 동의했다는 설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경선의 직선화 논의는 절대 있을 수 없다. 현재 국

경선이 습지를 통과하고 있어 국경표주를 세운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직접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말한다. 본인이 이곳에서 직접 만나본 중국 측 실무그룹조차 우리 측과 우리의 제안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었다. 봄에 그들은 국경설정 결과 중국 측에 양도될 러시아 영토 구간을 보여줄 것을 요청해 왔다. 모두가 현재 국경표지 《No.416~No.419》를 설치해야 하는 이 지점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들 국경표지를 설치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국경선을 직선화할 수 있다는 것인가?

첫째, 이것은 국경설정의 기본이며 동부국경협정에 명시된 1860년 11월 2일자 베이징 조약의 제1조에 어긋난다. 베이징 조약 제1조에는 국경선이 ‘분수령을 따라’ 통과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현재 그곳에 국경수비대가 이동할 수 있는 분수령은 단 한 곳뿐이다.

그렇다면 두만강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강기슭이 침식되어 국경이 5.8ha 정도 우리 쪽으로 이동했다. 중국인들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곳에서 누군가 공격을 한다거나 우리 쪽으로 넘어오려 한다는 얘기는 없다. 그들 스스로 앞으로 양국 간 국경을 횡단하지 않고 국경선 좌우로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를 따라 제방을 축조했다. 축조된 제방을 따라 양방향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 이것은 중국인들이 오로지 자국 국경을 따라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제방을 쌓았을 뿐 우리 측으로부터는 동일한 선물을 기다리거나 예상하지도 않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

여기에는 ‘항행 불가능한 하천의 그 어떤 하상 변화도 국경선 통과 지점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국제법 규범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국제

법 규범은 현재 우리의 협정에도 명시돼 있다. 그러나 양국 간 협정에는 ‘양측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그런데 이 ‘별도의 합의’는 마련되지 않았다. 누가 ‘별도의 합의’에 동의하겠는가? 국가두마와 정부이다. 누가 ‘별도의 합의’를 합법화할 수 있을까? ‘별도의 합의’란 다름 아닌 우리 고유의 영토를 내준다는 의미가 아닌가?

현재 국경선의 직선화를 전제로 공단이 건설되고 있다. 그리고 이 지역에 항구가 필요하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자도 있다. 이곳에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이미 건설되어 교량전차, 건설장비들이 실려와 있다. 이 모든 것이 이곳에 집중돼 있다. 우리는 중국의 인근 마을에서 헬기를 타고 이 모든 것을 관찰했다. 중국인들은 먼저 우리를 이 구간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 줬다. 여기서 나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나즈드라텐코 주지사는 절벽이 벌써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나는 블라디보스토크, 포시예트 항구 관계자들과 러시아 해군 함장 비코프(Bykov)와 함께 위로 올라가 관찰했다. 비코프는 당장 “여기 이 구석에는 블라디보스토크 항구가 들어설 것이고, 여기에는 나훗카와 보스토치니(Vostochny) 항구가, 그리고 저기에는 바니노(Vanino) 항이 들어설 것이다. 연해 변경주 관내 모든 항만의 물류를 완전히 흡수할 수 있는 10만t급 선박이 기항할 수 있는 항만을 건설하기에 충분한 곳이고, 저기에는 연간 1억t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항만을 건설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곳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다. 이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이제 다른 측면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구간과 관련한 역사를 좀 더 언급하겠다. 1927년 일본 총리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는 일본 천황에게 보내는 외교단신에서 이 구간을 획

득하여 나진항과 나란히 그곳에 항구를 건설하면 총성 없이 블라디보스토크를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보고했다. 문자 그대로의 기록이 관련 부서에 남아 있다.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과 중국인민공화국 간 ‘소·중 동부국경협정’ 자체에 따르면 국경은 33개 국경점을 따라 통과하며, 국경표지 《No.423》이 마지막 국경점 《No.33》 구간에 세워진다”는 주지사의 발언은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중국 국경은 국경점 《No.33》 밑으로 단 한 뼘도 이어지지 않는다. 동부국경협정 제9조에 ‘소련 측은 자국 관련 구간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깃발을 게양한) 중국 선박들이 …… 국경점 《No.33》 아래 두만강을 따라 바다로 왕복 항행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우리가 무슨 권리로 끼워 넣을 수 있었겠는가. 문제는 러·중 국경에 관한 것인데, 이곳은 중국 국경이 아니다. 이것은 협정의 명칭 자체와 본질에 전적으로 모순된다. 따라서 본인은 문제제기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누군가에게는 이 문제가 그저 연해 변강주의 바람이며 연해 변강주의 문제이자 연해 변강주 행정부의 돌출행동이라고 왜곡해서 전하는 것이 이로우 수도 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주지사가 항상 강조해 왔듯이 이곳은 바로 러시아 땅이다. 강조하건대 만일 그가 아니었다면, 국경표주는 이미 오래 전에 설치되었을 것이다. 나는 엘친 대통령의 중국 방문 열흘 전 국경표지 설치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확보하여 공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나는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 병사들이 목숨 바쳐 지켜낸 땅에 말뚝을 박고 이를 위해 전사한 그들이 묻힌 땅을 중국 측에 내준다는 것은 절대 인간의 도리가 아니며 내 심장을 도려내는 것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면 키레예프 위원장이 “발레리 미하일로비치, 이 협정은 전 구간에 걸쳐 한 치도 빠뜨림 없이 정밀 측정된 끝에 맺어진 것이며, 매우 심사숙고한 끝에 채택된 협약이다”라고 했을 때 나는 위원장에게 “어떻게 측정하였기에 우리 전우들의 묘지를 중국인들에게 내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측정했기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가?”라고 되물었다. 바로 이것이 동부국경협정 체결 준비 과정을 말해 주는 단적인 일화이다.

이 모든 것은 중국의 동해 진출로 확보를 돕기 위해 이 땅을 내주려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옳은 판단이다. 110여 년 전 6월 22일 노보키옴스크 마을에서 연해주 총독 바라노프 장군은 러시아 정부에 동해 진출로 문제를 제기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후 결코 누구도 아무런 협상을 진행한 적이 없다. 그런데 여기 이 모든 것을 내주기로 결정한 친절하고 착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제 두 번째 구간에 대해 간단히 말하겠다. 나즈드라텐코 주지사는 아무런 얘기를 안 했을 뿐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겠다. 국경표주 《II》 일대-이곳은 매우 독특한 지역으로, 968ha(1000ha)에 달하는 아름다운 곳이다. 그런데 이 땅이 현재 ‘내줘야 한다’는 명분하에 중국 측에 넘어 가게 돼 있다. 왜 넘겨줘야 하는 것인가?

키레예프 위원장은 “국경표주 《II》를 최초로 설치한 사람은 투르빈(Turbin) 대위(참모본부 지형 측량기사)인데 이것은 우리 러시아인들이 잘못된 일이다”라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우리가 발굴한 문서에 따르면 현재의 국경표주 《II》는 훈춘 연대장 남기엔에 의해 설치되고 러시아와 중국 양측이 서명·날인한 설명서와 지형도가 작성되었다. 이 지형도의 사본은 이곳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다.

이것이 우리의 잘못이란 말인가? …… 결코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전문가 감정을 해 보라”는 말을 들을 때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어떠한 전문적인 감정도 필요치 않다고 본다. 어제 여기서 실무 그룹 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문가들의 감정 보고서도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도 있을 뿐 아니라 각료회의의 결정에 따라 부처간위원회도 설립되었다. 1986년 모든 부처가 동 위원회에 참여하여 이들 구간에 대한 실사를 거쳐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도면과 설명서를 첨부했다. 이 모든 문서는 현재 모스크바에 있다. 우리는 이 문서를 3년째 요청해 왔지만 단 한쪽도 내주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내가 직접 이들 문서를 발굴하여 간직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의 문서이다. 여기에는 우수 전문가들의 감정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다. 참모본부, 국방부, KGB, 국경수비대 등 모든 주요 전문가들이 모여 있으며 사진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국경표주 《II》 일대의 98ha, 두만강 유역의 5.8ha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연해 변경주 나즈드라텐코 주지사의 제안은 관내 분쟁지역의 러·중 국경설정 과정 문제를 논의하기로 예정된 연방회의 총회 전날 『두호브노예 나슬레디예』지 1996년 12월호에 발표되었다.

러·중 국경이 설정된지 130년이 넘었다. 바로 1860년 베이징 조약 서명 당시 동시베리아 총독 무라비요프-아무르스키(Muraviyov-Amursky)는 중국 측과 함께 “지금부터 ‘영원히’ 이곳에 양대 제국의 국경이 설치된다”라고 선언했다. 바로 그렇게 ‘영원히’라고 당시 외교관들은 기록했다.

그러나 19세기에 ‘영원히’ 설정되었던 것을 이제 우리 시대에 들어 재검토하도록 결정되었다. 그것도 중국 측에 유리한 쪽으로 말이다. 우수리스크구에 위치한 이른바 국경표주 《II》 일대의 러시아 땅 960ha의 양도를 확정짓기 위한 작업이 사실상 완료된 상태이다. 조만간 하산호 일대

국경선도 변경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전부터 ‘영원한’ 러시아 소유로 여겨왔던 300ha의 땅을 또 잃게 될 것이다. 왜 또인가?

애초 1991년 5월 16일자 소·중 간 동부국경협정에서 러·중 양국 외교관들이 국경을 획정한 바에 따라 우리는 중국에 우리 영토 1000ha 이상을 양도해야만 한다.

대체로 ‘국경설정’이란 일정 기간 발생한 지면의 변화 및 하천의 하상 변화 등과 관련하여 이미 설정된 지역의 국경을 더욱 확실하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바로 우리의 경우에는 국경설정이란 현행 국경선의 수정과 재검토로 이해된다. 약 4000km에 달하는 러·중 간 국경에 대한 이 작업이 끝나려면 약 1개월 정도 남아 있다. 이러한 기한은 러·중 간 동부국경협정에 명시돼 있다.

양국 간 국경에서의 국경설정 작업은 실제로 일정한 필요에 의해 시행되었음을 미리 밝혀 둔다. 예를 들면 두만강 분수령은 러·중 국경의 기준이었으나 지난 130년 동안 하천의 하상이 전위되어 지금은 러시아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 밖의 경우 러시아 측이나 중국 측에 의해 설치된 국경표지가 매년 문서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국경설정 시 수m 너비의 일부 구간이 재검토될 것이라고 합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반복하건대 국경설정의 변수는 19세기에 이미 확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91년 5월 동부국경협정의 준비와 서명 과정에서 러시아 외교관들은 웬일인지 순수 국경설정 관점에서 볼 때 수용할 수 있을 만한 몇 m<sup>2</sup>가 아니라 수백ha의 러시아 영토를 양보했다. 유감스럽게도 이후 현지 국경설정 작업 과정에서도 이러한 시각이 팽배해 있었다. 게다가 모든 러시아 전문가들이 이미 서명된 협정을 묵묵히 지지하는 것만은 아

니다. 예를 들면 국경설정위원회 고문인 육군 소장 로조프는 그러한 결정에 대한 항의 표시로 1996년 4월에 사표를 냈다. 3대에 걸쳐 러시아 국경수비를 담당하던 그가 자신을 ‘매국노’라 칭하며 조국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거부했다.

도대체 러·중 간 국경에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동부국경협정에 따라 300ha 이상의 러시아 영토 두 구역이 중국 측에 양도될 두만강 유역의 국경변경에 러·중 양측 모두 특히 주목하고 있다.

이들 두 구역의 양도로 인해 아·태지역에 유지되고 있는 정치·경제적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 왜냐하면 이 두 구역이 러시아령으로 남아 있는 한 중국은 이곳에 대규모 항만을 건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항구를 건설할 만한 구역은 러·중·북한 3국 교차점에 접해 있으나 현재 항구를 건설할 수 없는 요인은 단 하나인 동 교차점에 도달하기 위한 도로를 낼 만한 땅이 없다는 데 있다. 항구 건설에 필요한 영토는 중국령이다. 그러나 자동차 도로와 철도를 부설할 수 있는 영토는 러시아령이다. 두만강 유역 러시아령의 두 구역을 중국에 양도하게 되면 이곳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항만 건설을 가로막는 마지막 장애물이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동부국경협정은 역사적으로 러시아령인 이 구역을 중국령으로 인정할 뿐 아니라 일방적으로 중국에 국경점 《No.33》 아래 두만강을 따라 동해까지의 왕복 항행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두만강 항만 건설 예정지로부터 러·북한 간 국경 구간인 나머지 17km 구간을 따라 동해로 나가는 진출로가 중국에 합법적으로 보장되었다.

항만의 연간 잠정 물동량은 1억이다. 이와 같이 중국이 얻게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해 진출로와 그에 뒤이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으로 향하는 해상 교역로 확보. 둘째, 이들 국가로부터의 역물류. 이제 기존의 중국 철도로 운송되는 아·태지역 발 화물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나 나훗카 항을 지나 밤(BAM : 바이칼~아무르 선) 철도를 경유하는 것이 아니라 두만강 항구를 지나 동중국철도를 경유하게 될 것이다. 이 노선은 러시아 경우 노선에 비해 약 2000km 단축되고, 따라서 당연히 업계에 더 매력적이다. 이로써 러시아 연해주 항만과 더불어 밤 철도는 쇠락하는 반면 중국 항만들은 날로 번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동부국경협정 자체에 문제의 영토 상당 부분을 러시아 관할로 유지해줄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권력 상층부, 특히 조만간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연방의회에서 관련 결의를 채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동부국경협정은 이러한 가능성, 즉 이미 이룩한 합의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에 따르면 모든 문제는 러·중 공동 국경표지위원회의 활동 과정에서 해결하도록 돼 있다. 유감스럽게도 상기 언급한 구역의 국경은 러시아의 국익에 반하는 쪽으로 획정되었다. 이것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선조들에게 받은 가장 큰 유산은 조국 러시아의 영토이며 우리는 이를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sup>10</sup>

연해 변강주 관내 일부 러시아 땅의 대중 양도 문제에 대한 나즈드라텐코 주지사의 원칙적인 입장은 권력 상층부에도 알려졌다. 필시 러시아 외무부 관련 인사들이 부추겨 다음과 같은 내용의 1996년 12월

<sup>10</sup> 나즈드라텐코(1991~1997),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러·중 국경설정 문제』, 4~5쪽.

31일자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공식 경고가 나즈드라텐코에게 발송된 듯하다.

러·중 관계 문제에 대한 귀하의 성명과 관련하여 향후 연방헌법 규범을 엄격히 준수하고 러시아의 국제관계에 관한 모든 성명은 반드시 러시아 외무부와 사전에 조율할 것을 요망함.

그러나 현행 러시아 헌법 제72조 《O》항에 따르면 “러시아의 국제조약 이행은 러시아와 연방 각 주체(연해 변경주도 그 중 하나임)가 공동 관할한다.” 따라서 러시아 연방헌법 규범을 위반한 것은 연해 변경주 주지사 나즈드라텐코가 아니었다.

이와 관련, 연해 변경주 주지사 고문인 예비역 육군 소장 로조프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1997년 1월 9일 『더 러시아인 뉴스』가 보도한 바와 같이 옐친 대통령은 ‘연해 변경주 나즈드라텐코 주지사에게 러시아의 국제관계에 관한 모든 성명은 반드시 러시아 외무부와 사전에 조율할 것을 강요했다.’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는 공식 통지문에서 볼 수 있듯이 1991년 서명된 국경설정에 관한 러·중 동부국경협정의 폐기통고를 주장하는 듯한 다양한 성명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연해 변경주 나즈드라텐코 주지사나 그의 측근 동료들 중 누구도 폐기통고에 대한 문제, 즉 동 협정의 파기나 재검토 문제를 결코 제기한 적이 없다. 다만 동부국경협정에 명시된 러시아의 영토 보전성을 수호·유지하기 위한 기회를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문제는 동부국경협정에 따라 국경설정 과정에서 러·중 국경이 확립되고 문서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동 협정 이행을 위한 준비작업 과정에서 일련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 그 결과 국경설정 완료 후 총면적 1300ha에 달하는 러시아 영토를 부당하게 중국에 양도하게 돼 있다.

러시아 측 문서에 따르면 중국에 양도하게 돼 있는 영토는 당연히 러시아 땅이다. 그러나 국경설정 준비 단계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 고문서들이 모두 다 반영된 것이 아니었다. 그 결과 러시아 외무부 지원으로 연해 변강주 우수리스크구와 하산구 일대 영토 1300ha를 중국에 양도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문제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그저 무의미한 땅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물론 사람이 거주하던 하지 않든 국가의 영토를 내주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에 양도될 하산구 일대 땅에는 도로와 철도망 건설이 가능하며, 이로써 중국은 이곳에 대규모 국제항을 건설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이 땅을 양도하지 않으면 항만 건설과 운영은 불가능하며, 중국으로서는 모든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이곳에 그러한 항구가 들어서게 되면 블라디보스토크나 나훗카 항과 같은 대규모 항만들은 '파산'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이 문제의 복잡성을 잘 알고 있는 연해 변강주 지도부는 다양한 수준에서 수차례에 걸쳐 협정 폐기통고가 아니라(우리 역시 국경설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지지한다) 러시아에 좀 더 유리하게, 즉 러시아 영토를 중국에 양도하지 않고 국경설정 작업을 완료하자는 제안을 해 왔다. 다들 동의하겠지만 이것은 협정의 폐기나 파기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그런데 본인 생각으로는 러시아 대통령은 연해 변강주 지도부의 입장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접하지 못했거나 정통하지 못한 것으

로 보이며, 바로 이 때문에 열린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나는 이미 작년 봄 리·중 국경설정 문제에 대한 정보가 대통령에게 단편적으로만 전달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바로 그즈음 1996년 4월 러시아의 국익을 침해하는 대중 영토 양도 결정에 동의할 수 없어서 러시아연방 국경설정 국제법 전문위원직에서 사퇴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리·중 간 국경 문제에 대한 대통령과 여론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했다.

유감스럽게도 대통령 측근들이 대통령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협정의 운명에 대한 대통령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연해 변경주 당국과 나즈드라텐코 주지사는 협정의 폐기통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협정이 이행되기를 원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극동지역의 국익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sup>11</sup>

1997년 1월 우수리스크구와 하산구 일대 리·중 국경설정 완료에 대한 연해 변경주 행정부의 종합적인 제안이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리·중 간 선린관계 구축은 러시아의 국익에 부합한다. 그러나 리·중 관계의 발전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근거해야 한다. 첫째, 극동지역(더 넓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이해관계와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 그 중요성. 둘째, 양국관계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득실의 전반적인 균형.

<sup>11</sup> 로조프(1997. 1. 15), “대통령에게 왜곡된 정보가 보고되었다”, 『트루트』; 『리·중 국경설정 문제』(1991~1997), 30~33쪽.

## 1. 중국의 대 러시아 극동정책

러시아 극동지역은 인접국들이 끊임없이 노리고 있는 팽창주의의 목표물이다.

중국은 여기에 매우 적극적이다. 중국의 팽창정책에는 객관적, 주관적인 동기가 있다. 객관적인 동기는 인구학적·생태학적인 것이다. 중국 동북지방 농촌은 실업률이 30%에 달하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도시 지역 절반 이상이 물 부족을 겪고 있으며, 인구 1인당 삼림 및 초지 면적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주관적인 동기는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과 외교정책 독트린이다. 베이징 당국은 자국민의 러시아 접경지역 이주를 장려하고 있다(‘고용 및 노동자원 분배 안정화 조치에 관한’ 중국 국무원령). 이 정책은 중국의 종합전략 중 일부로, ‘지전략적 국경’ 개념(1987년 이후)과 ‘해상국경’ 개념(1991년 이후)을 통해 그 성격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개념은 두 가지 형태의 국경에 공존 근거를 부여한다. 즉 ‘법률적 합의를 바탕으로 공인된 국경’인 지리적 국경과 ‘국가가 군사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국경’으로 규정되는 전략적 국경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다. 만일 전략적 국경이 지리적 국경을 장기간 아우르게 되면 지리적 국경이 전략적 국경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상국경’ 개념은 주변 해상공간(960만km<sup>2</sup> 이상)의 적극적인 개발을 전제로 한다.

1993년부터 연해 변강주를 통해서 러시아에 입국한 중국인은 30만 7000명이 넘으며, 이들은 10명 중 1명이 현지에 체류하고 있다. 현지 체류 중인 중국인 4명 중 1명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강력한 범죄단체를 구성하여 위법행위를 일삼아 러시아의 국부를 훼손

하고, 또한 대러 첩보활동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연해 변강주 인근 대러 국경지역에 강력한 군사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국에서 가장 전투력이 뛰어나며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최정예 부대인 선양 군관구 부대(병력 66만 5000명, 탱크 2284대, 화포와 박격포 5538문, 대전차 무기 4300대, 대공장비 3400기, 핵무기 발사체 144기를 포함한 전투기 932대 보유)가 소속돼 있다. 선양 군관구 소속 부대는 중국의 '신속 대응군'에 편제돼 있다.

중국 동북지방은 마약의 불법 유통 체계에 편입돼 있다. 러시아와 아편마약 유통 방지 협약을 체결한 중국은 극동지역에 날로 확산되고 있는 '에페드린 중독'과의 전쟁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중국에는 에페드린이 확산되지 않았다. 따라서 에페드린 생산자들은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 대신 당국의 묵인 아래 대러 국경 인접 지역에서 가동 중인 일부 에페드린 공장은 연해 변강주와 하바롭스크 변강주에 마약 원료를 대규모로 공급하고 있다.

중국은 주요 외교 동반자로서 대러 관계 증진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현재 러시아가 겪고 있는 대내적인 어려움과 아시아 지역 구소련 동맹국들과의 관계변화로 아·태지역 정치·군사적 상황변화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중국은 협력과 안보와 관련된 새로운 지역 판도 구축 과정에서 러시아를 2선으로 끌어내리려고 한다.

## 2. 연해 변경주 관내 러·중 간 국경설정 과정의 제문제와 지정학적·경제적·생태학적 영향

1991년 5월 16일자 소·중 간 동부국경협정에 따른 러·중 간 국경 설정 과정에서 연해 변경주 관내 여러 구역의 러시아 땅이 중국 측에 넘어갈 수 있으며, 그 면적은 총 1268ha이다.

두만강 연안의 하산구에서는 총면적 300ha 이상의 두 구역이 중국에 양도될 예정이다.

현재 수비 중에 있는 이 지역 국경은 1860년 11월 2일 베이징에서 체결된 ‘추가조약’, ‘우수리 변경주 러·중 국경지도 및 국경설명서 교환 의정서(1861년 6월 16일)’, ‘양국 간 국경 정밀실사 대상 제1구간에 관한 의정서(1886년 6월 26일)’에 따른 것이다.

1983년 2월 3일자 소연방 각료회의 결정(No.113-48)에 따라 구성된 ‘소·중 국경 단독실사 부처간 특별위원회’는 1983년 동 지역 현장 실사 완료 후 ‘두만강 하안의 전위 결과 국경이 소연방 쪽으로 이동하여 형성된 영토의 면적은 5.8ha이다’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1962년부터 소·중 국경대표들 간에 중국인들의 대소 한시적 이주 절차가 합의되었다. 1980~1983년 중국은 국경을 침범하지 않고 국경에 인접한 자국 땅에 중국인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두만강 좌안을 따라 제방을 축조했다. 각료회의 결정 결론 부분에는 중국과의 공동 국경설정 과정에서 다양한 합의문에 따라 동 구역은 소련령, 즉 러시아령으로 한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이유로 1991년 5월 16일자 동부국경협정의 준비, 채택 과정에서 이는 이행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 상황이 전개되었다.

앞의 동부국경협정 제2조에 따라 두 구역(남쪽과 북쪽)에서 총 300ha가 넘는 대규모 소연방(러시아) 땅을 중국 측에 넘겨주도록 결정되었다.

하산구 일대 구역이 중국에 양도될 경우 중국은 이곳에 3~4년 내에 연간 약 1억의 물류를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항만을 건설함으로써 동해 진출로를 얻게 된다. 이것은 국경설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1991년 동부국경협정 제9조에 따른 것이다. 이것은 중국인들의 막연한 숙원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대외정책 전략의 일부이다. 더구나 지금은 그러한 항만 건설에 유리한 국제정세가 조성돼 있다.

중국의 동해 진출로는 중국 상품의 대일 직항로를 열어주며, 새로운 중·일 관계를 구축해 준다. 동 프로젝트는 중국이 ‘풍요롭고 다이내믹한’ 남부와 ‘빈곤한’ 북부 간의 사회·경제적 불균형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본에도 유리하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자국 서부지역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고 중국 동북지방에서 값싼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직통채널을 구축, 확대할 수 있다. 중국이 건설하는 항구는 일본의 중국과 유럽시장 침투에 유용한 중계기지 구실을 할 수 있다. 한국도 항만 건설에 다른 나라들 못지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륙국 몽골도 마찬가지로 해양 진출을 위한 더 빠른 길을 얻을 수 있다.

손해를 보는 쪽은 오직 러시아뿐이다. 1500~1800km 운송 거리를 단축시켜 줄 수 있는 신 항만이 건설되면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들의 매력은 떨어지고, 나아가 시베리아횡단철도 대부분의 구간에서 물동량이 현저히 감축될 것이다. 주요 간선 교통망과 연계된 연해 변강주와 하바롭스크 변강주는 동북아 노동분배에 있어서 고유의 역할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동해 진출로는 법적 규제와 연관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법률적 합의를 바탕으로 공인된 국경과 전략적 국경이 불일치하게 되면 난사군도[南沙群島, Spratly Islands]를 둘러싼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회원국들 간의 갈등처럼 분쟁의 씨앗이 된다. 동해에서도 유사한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다.

국경이 러시아 영토 쪽으로 이동하면 연해 변강주 남부지역 집수구역 인 하산호와 레베디노예 호수가 환경위협에 처하게 된다. 우수리스크구에서는 국경표주 《Ⅱ》 일대 총면적 968ha의 삼림지대(전나무, 삼나무)를 중국에 빼앗기게 된다. 연해 변강주 학자와 전문가들이 실시한 1991년 5월 16일자 동부국경협정 관련 조항의 분석과 현지 지형 실사 결과는 위 지역이 법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러시아령임을 입증해 준다.

현재 수비 중인 러·중 간 국경선은 1860년 11월 2일자 베이징 조약, 국경설명서(1861년)와 별첨 지도에 의해 설정되었다. 국경표주 《Ⅱ》의 위치는 러·중 공동 실무그룹에 의해 설정되었다. 러시아 국경수비대 중앙 고문서 보관소의 자료에 따르면 연해 변강주 우수리스크구 대 중 국경지대에 1877년 러시아 측의 동의에 따라 훈춘 연대장 남기옌이 단독으로 국경표주 《Ⅱ》를 복원했으며, 이것은 러·중 양측 전권대표들이 서명·날인한 의정서와 지형도에 의해 확인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부처간위원회는 1986년 3월 19일 소·중 간 국경선 단독실사 결과 중국 측이 소연방 영토를 510m 침범한 상태에서 방화선을 구축함으로써 중국 측에 넘어간 92ha의 러시아 영토를 동 구간 국경설정 과정에서 돌려받아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1991년 5월 16일자 협정에 의하면 역으로 러시아가 거의

1000ha에 이르는 땅을 중국에 양도하도록 돼 있다.

앞에서 언급한 연해 변경주 관내 모든 구역은 1860년 11월 2일자 베이징 조약에 따라 러시아령으로 확정되어 130년 이상 어떠한 논쟁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동부국경협정 제1조에서 러·중 양측이 합의한 ‘국경표지 설치 후 양국 간 국경선은 영원히 변경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다.

이 모든 문서는 러시아와 중국 양측에 의해 서명·날인되어 양국 고문서 보관소에 소장돼 있다.

연해 변경주 행정부 및 하산구, 우수리스크구 지도부와 변경주 주민들의 입장은 분명하고 일관적이다.

러시아 땅의 대중 양도는 근거가 없으며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1991년 5월 16일자 동부국경협정 제1조를 비롯한 변경주 국경선 통과 지점을 규정한 역사적인 조약문건들을 토대로 이행돼야 한다. 이들 조약을 재검토할 경우 국경지대에 긴장이 조성되고 영토 일체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

### 3. 결론과 제안

1) 소연방의 붕괴와 더불어 러시아의 지정학적 입지는 약화되었다. 러시아가 또다시 영토·경제·군사적인 면에서 손실을 입게 된다면 이것은 러시아 전체의 급속한 쇠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러시아 극동지역은 인접국들의 대규모 다차원적 팽창주의의 목표물로 전략했다.

3) 경제력과 군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핵심 전략거점들을 관리하

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흔히 이것이야말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도 하다). 바로 두만강 하구는 이러한 전략거점이며, 러시아는 이 지역을 보유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

연해 변강주 하산구와 우수리스크구 일대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영유권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소·중 양국 간 체결된 1991년 동부국경협정 틀 내에서 모색되어야 하며,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 국경설정 과정에서 국경선의 구체적인 통과 지점 문제를 해결 가능케 해 주는 1991년 동부국경협정 제5조에 명시된 방안을 활용할 것(한카구 국경선 변경의 전례).
- 하산구 일대 영토 양도에 따른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
- 국경설정 완료 이전에 러시아, 중국, 북한 간 3자협상에서 두만강 선박항행 규정 및 절차를 확정하고 1991년 동부국경협정 제9조를 구체화할 것.
- 중국 측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우수리스크구 관내 국경표주 《II》 일대의 영유권을 규정한 문서들을 심층 분석할 것.

다양한 방안은 양측의 상호 타협 의지를 전제로 한 1991년 동부국경협정의 문안뿐 아니라 협정의 정신에도 근거해야 한다.<sup>12</sup>

러·중 동부국경 설정 문제에 대한 현지 실사와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된 연방회의 총회에 제출할 권고안을 작성하기 위해 극동지역 관련

12 「우수리스크구와 하산구 관내 러·중 국경설정에 대한 연해 변강주 행정부의 제안」(1991~1997), 『러·중 국경설정 문제』, 30~33쪽.

변강주 및 각 주 주지사와 연방회의 안보 및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는 특별 실무그룹이 결성되었다. 외무부, 연방국경수비대, 국방부, 연방 보안위원회 및 기타 관계 부처 관계자들도 작업에 참여했다. 동 실무그룹은 1997년 1월 연해 변강주를 방문하여 하산구 관내 분쟁지역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현장 조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연방회의 정기 회의에서 다루이지 않고 계속해서 연기되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연해 변강주 두마는 1997년 2월 18일 연해 변강주 두마의 관내 국가건설, 지방자치 및 합법성 상임위원회 의장 겔베르(V. F. Gelver)의 ‘러·중 간 동부국경설정 작업 완료조치에 관한’ ‘1996년 2월 21일자 러시아 대통령령 제77호에 대한 연해 변강주 두마의 입장에 관하여’라는 1996년 3월 13일자 제296호 결의 이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청취한 후 1996년 3월 13일자 결의를 다시 논의했다. 동 문제 심의 결과 연해 변강주 두마는 러시아 연방의회 연방회의 스트로예프(E. S. Stroev) 의장에게 보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러·중 동부국경 설정 문제에 관한 호소 결의문 제558호를 채택했다.

최근 러·중 국경설정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연해 변강주 지도부, 사회단체 인사 및 정치인들에 대한 압력이 강화되었다. 여기에는 언론매체뿐 아니라 국경 문제 관련 주지사의 의사 표현을 금하는 대통령의 명령까지도 동원되고 있다. 무엇보다 러시아연방 외무부 일부 관리들이 극동지역 주민과 전 국민을 기만하면서 국익에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국경을 설정하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1996년 3월 연해 변강주 두마는 연방회의에 1991년 5월 16일자 소·중

동부국경협정 문제의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문제는 연방회의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으며, 계획된 회의는 매월 연기되고 있다. 차기 연방회의 총회에서 러·중 동부국경설정 문제를 논의해 줄 것을 귀하께 간청한다.

1996년 3월 13일자 제295호 연해 변경주 두마의 결의에 따라 1996년 3월에 채택된 연해 변경주 두마의 러시아 헌법소원 재청구 대책도 마련되었다. 실무차원에서 연해 변경주 두마 사무처는 연해 변경주 두마 그네즈딜로프(V. S. Gnezdilov) 대의원과의 사전 합의에 따라 1997년 3월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 조르킨(V. P. Zorkin) 위원에게 러·중 동부국경설정 문제에 관한 아래와 같은 서류를 발송하여 조사 및 검토를 요청했다.

- 1996년 2월 21일자 러시아 대통령령 제77호
- 1996년 3월 13일자 연해 변경주 두마 결의문 제295호
- 1996년 3월 13일자 연해 변경주 두마 결의문 제296호
- 1978년 러시아 헌법 발취
- 1990년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국가 주권선언문 발취
- 1996년 3월 27일자 러시아 헌법재판소 답변서 제2087호
- 1991년 5월 16일자 소·중 동부국경협정문
- 1996년 3월 15일자 프리마코프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보낸 서신 제06-12-159호
- 1996년 6월 17일자 러시아 외무부 답변서 제148호
- 1996년 7월 12일자 러시아 외무차관에게 보낸 서신 제06-12-570호

- 1861년 국경표주 《Π》 일대의 도면
- 국경표지 《No.416~No.419》 (하산구) 구간 도면
- 1860년 베이징 조약 별첨 국경지도 일부(국경표주 《Π》)
- 1996년 9월 3일자 러시아 외무부 답변서 제217호
- 국경표주 《Π》 일대의 지형 조사 및 문서 분석 결과

나즈드라텐코 연해 변경주 주지사는 러·중 국경설정 문제에 관한 자신의 적극적인 입장을 계속 고수했다. ‘러시아 대통령령 및 지시, 러시아 정부령과 결의에 따라 결성된 실무그룹 및 각종 위원회 소속 위원 변경에 관한’ 문제의 검토 중 1997년 4월 16일 러시아 연방의회 연방회의 총회에서 연해 변경주 주지사는 연방회의 의원 자격으로 1991년 5월 16일자 소·중 동부국경협정에 따라 구성된 러·중 공동 국경표지 위원회 러시아 측 대표단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안했다. 나즈드라텐코는 자신의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나는 1991년 러·중 동부국경협정에 따라 구성된 국경표지위원회에 대한 본인과 연해 변경주, 애국 시민단체들의 불신임을 제안하기 위해 이 연단에 서게 되었다. 본인은 동 위원회 활동이 러시아의 국익에 전적으로 위배되며, 위원회의 업무능력은 어리석은 반역행위로 귀착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국익을 쪼먹는 내부 부패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준엄하고 일관적이어야 하며, 또한 중요한 것은 시기적절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의원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러시아인은 무엇인가라고 묻고 싶다. 러시아인은 바로 국가이다. 국가는 우리의 피와 살이며 우리의 뇌, 우리의

심장이다. 국가가 살아있는 한 이 심장이 뛰고 뇌가 활동하기에 삶의 의미가 있다. 우리가 국토를 양도하거나 팔아넘긴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 러시아인들을 파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답은 단 하나,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파괴 과정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연방회의는 조국의 영토를 타 열강들에 내주는 광란의 유희를 중단시켜야 한다. 과거 연방정부는 이미 베링 해와 태평양 연안의 러시아 영해를 내준 바 있다. 이 해역에서는 매년 15만t 정도의 고급 어종이 어획되지 않았던가? 그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은 매우 유망한 유전지대이기도 하다. 베링 해에 매장돼 있는 전 세계 원유가스 추정 매장량의 약 16%를 미국에 넘겨줬다. 러시아는 또한 차세대 유망 광물인 값비싼 해저 철망간 단괴 산지를 상실했다. 결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예는 세바스토폴(Sevastopol), 흑해 연안, 북카자흐스탄 등 얼마든 열거할 수 있다.

우리는 국경을 끝까지 지켜 내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 영토를 파괴, 탕진하여 나누어 주었다.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유일한 것은 다름 아닌 우리 땅이다. 이것은 우리 것도 아니다. 다름 아닌 우리 후손들의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후손들 앞에 이 땅을 처분할 어떠한 도덕적 권한도 부여받지 않았다.

러시아는 이반 칼리타(Ivan Kalita) 시대 이래 수세기에 걸쳐 주변의 영토를 개척해 왔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왜 우리는 갑자기 이러한 전통을 저버린 것인가? 우리 영토를 기를 쓰고 중국에 넘겨주려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어떤 논거가 필요하단 말인가? 국가예산? 그렇다면 한번 따져보자. 중국은 3~5년 후면 우리가 오늘 무상으로 넘겨

주게 될 구역에 연간 1억t의 물류를 처리할 수 있는 항만을 건설할 예정이다. 이것은 주 항로의 준설작업이 매우 쉬운 17km 하구 밖에 있는 동해로 진출입하는 기지가 될 것이다. 이미 항만 설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발전 속도와 그 위력으로 나훗카 항, 블라디보스토크 항, 보스토치니 항, 자루비노(Zarubino) 항 등 러시아 항만의 운명은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연해 변강주와 극동지역 경제 전반이 이 몇 안 되는 부동항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데 있다. 지금도 이미 이들 항구는 아·태지역 그 어느 나라의 항구와도 경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두만강에 250억 달러를 투자하여 자유경제지대를 만든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연해 변강주 항만들은 러시아 북부지역을 왕래하는 직자 노선만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연해 변강주, 이 지역은 러시아 전초기지로 역내 항만들의 문제는 비단 변강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시베리아 출신의 의원들께 호소한다. 중국은 새로운 개념의 최첨단 실크로드 부흥에 나서고 있다. 항만이 건설되고 여기에 내륙을 잇는 철도가 부설되어 유럽까지의 운송기간이 10~15일로 단축될 경우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고스란히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항만들뿐 아니라 시베리아를 경유하는 운송망까지도 잃게 될 것이다. 국가재정은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러한 손실은 어떻게든 산출할 수 있다. 그러나 연해 변강주 고유의 자연경관 및 해양보호구역의 훼손과 하산호의 오염에 따른 손실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문제는 중국이 자신들이 얻게 될 지역에 대해 경제활동 구역으로 편입하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런데 국제협약에 따르면 그러한 지역에서는 일절 경제활동이나 항구는 물론 모든 종류의 교통 인프라 건설이 금지돼 있다. 이에 러시아

또한 일찍이 루츠크이(Rutskoy)가 서명한 이 협약을 엄수하고 있다. 모호한 지정학적 논리를 동원하여 우리를 설득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스크~모스크바~베이징’을 잇는 가상 축 시나리오가 이 슈화되고 있다. 우리 땅 1500ha를 내주고 이웃나라 중국의 뜨거운 애정을 얻어 내자는 것이다. 중국은 러시아와 지정학적 동맹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으며, 그들에게 있어 우리는 더 이상 동반자가 아니다. 우리 러시아는 저가 중국 상품의 판로이자 원료 시장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숲, 우수리스크의 삼나무 숲이지 결코 우리의 우정이 아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한 이틀이나마 연해 변강주로 초청하고 싶다. 상하이에 잠시 들러 보자. 오늘날의 중국은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용(龍)’이며 경제적으로 이미 연해 변강주와 러시아의 극동지역 전체를 집어 ‘삼켜 버릴’ 준비가 돼 있음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여행은 우리의 잠재력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한 참호에 있는 러·중 양국 병사들을 지켜본 사람들의 뜨거운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언론매체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러·중 동맹 가능성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한 적이 없으며, 더구나 중국 측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는 아무도 국경설정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중국 신문과 TV 또한 이 문제에 입을 다물고 있다. 우리는 우리만의 문제로 스스로 패배주의에 빠져 상대방이 원치도 않는 것마저 내주려 하고 있다.

우리는 거의 우랄 산맥까지 유럽인들과 친교를 맺어 왔다. 이제 중국인들과의 ‘친교’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우랄 산맥 동쪽 지역이다.

1938년 하산에서 전사한 우리 병사들의 묘지를 내주고 강대국의 뜨거운 환심이나 존경심을 얻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이다. 공자는 ‘자식이 효도하지 않으면 나라도 망한다’고 했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우호가 아닌 멸시이며 역내 안정이 아닌 새로운 영유권 주장이 될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영유권 주장은 단지 연해 변경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쿠릴 열도, 칼리닌그라드 주, 발트 해 연안 등 러시아 국경 전반에 걸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위에 열거한 모든 논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시기를 놓쳐가면서 논의에 매달릴 이유가 전혀 없다. 국경은 우리 몰래 등 뒤에서 양도될 것이다. 나는 누군가 우리를 논란에 빠뜨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고의로 논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

현지 국경설정을 위해 설립된 소위 ‘국경설정위원회’의 월권행위는 극에 달해 있다. 위원회는 두만강의 주 항로를 통과하는 국경선을 수정하는 대신 연해 변경주 한 곳에서만 태고 이래의 러시아 영토 1500ha를 넘겨주는 것을 자신의 권한으로 착각하고 있다.

측량기사들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채 거대 정책에 휘말리고 말았다. 여론, 지면, 논평 등 우리는 모두 그들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다. 참 잘하는 것이다! 중국인들은 ‘작은 개미가 모여 큰 독을 무너뜨린다’고 말한다. 만약 오늘 우리가 ‘노(NO)’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일개 측량기사들이 온 나라를 산산조각 내고 말 것이다.

여기는 국경설정위원회 위원들의 행위 동기를 규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들은 매우 실리적일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년 4월까지 국경설정 작업을 완료하라는 대통령령을 이행할 수 없었던 위원회의 권한 전반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다.

물론 동 위원회 위원들은 ‘우리는 단지 우리가 직접 서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전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은 채 서명된 동부국경협정의 조항을 이행하고 있을 뿐인데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미워하는가?’라고 물을 수 있다.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1991년 소·중 동부 국경협정 제6조는 자국 이익의 적극적인 수호를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의 국익 수호는 관리들의 직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경설정 위원’ 나리들은 역으로 대중매체까지 동원해서 러시아 땅의 양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사회와 국가의 이익에 손실을 끼치는 직무상 월권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연해 변강주 행정부가 하산구와 우수리스크구 관내 러·중 국경설정 문제에 관해 연방회의에 제출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1991년 5월 16일자 소·중 동부국경협정은 반드시 이행돼야 하나 러시아 국익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두만강 좌안 일대 소규모 영토(3.2km<sup>2</sup>)의 대중 양도와 동부국경협정 범위를 넘어서는 제9조는 중국에 동해 진출로를 열어준다. 이로써 러시아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고 아·태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입지가 전반적으로 약화된다.

러시아 외무부가 제시하는 안에 따라 국경설정이 완료되면 중국은 두만강에 최단기간 내에 물동량이 연해 변강주 관내 러시아의 모든 항만을 능가하는 대규모 하항을 건설할 예정이다. 이미 항만 부지 조성 공사와 교통 인프라 건설이 진행되고 있고 항만 책임자가 임명되었다. 중국은 항만 건설에 매우 적합한 구역의 대중 양도 문제가 이미 해결됐으며 항만 건설 및 중국 선박의 두만강 항행 문제에 관한 대북한 합의를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뤄낼 것으로 판단하고 러시아와의 운송 공동사업 실행을 거절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다양한 분야에서 심각한 손실을 입게 된다.

- 두만강 하구에 대규모 항만이 건설되면 극동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중국, 일본, 한국, 몽골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부분적으로 일치하게 된다.
- 극동지역 러시아 항만들과 시베리아횡단철도의 물동량이 급감하고, 러시아 극동지역의 동북아 경제권 통합은 어렵게 된다.
- 중국의 동해 진출로 역내 군사·전략적 상황은 복잡해지고, 러시아는 태평양 함대 확장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 땅과 물 부족에 시달리는 인구 밀집지역인 중국 동북지방으로부터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인구학적 압력이 증대된다(최근 3년 동안에만 러시아 정착을 위해 연해 변경주에 이주한 중국인의 수는 3만 명이 넘는다).
- 러시아에서 활동 중인 국제범죄집단의 온상이 될 또 하나의 마약, 해산물, 천연자원의 불법 유통 거점이 연해 변경주에 조성된다.
- 결국 연해 변경주 주민은 연방 국가기관의 경제적 이권 및 국가 영토 보전 능력에 실망하게 된다.
- 유일한 대규모 담수원인 연해 변경주 남부의 하산호와 엑스페디치아만 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 심각한 오염 위협에 처하게 된다.
- 러시아의 일방적인 대중 양보 의지는 4개 남쿠릴 섬을 탈취하고자 하는 일본의 입장과 러시아 남부와 서부에 위치한 이웃 나라들의 영유

권 주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연해 변경주 행정부는 러시아 외무부에 하산구와 우수리스크구 관내 러시아 영토의 대중 양도에 따른 부정적인 여파에 대해 고려할 것을 수차례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국익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대중 양도 정책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1991년 동부국경협정 이행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제안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 1) 러·중 간 국경설정 작업 완료 전 동부국경협정 제9조에 따라 러시아의 국익 수호 차원에서 두만강(국경점 《No.33》 아래) 선박 항행 절차에 관한 러·북·중 3자협약을 체결할 것.
- 2) 국경표지 《No.416~419》(하산구) 구간의 러·중 간 국경설정 과정에 1860년 베이징 조약, 우수리 변경주 국경지도 및 국경설명서 교환에 관한 의정서(1861년 6월 16일), 부처간위원회의 소·중 간 국경선 단독실사 결과(1986년 9월 16일)를 엄격하게 준수할 것. 또한 1991년 5월 16일자 소·중 동부국경협정(1992년 2월 13일 비준)의 제5조와 제7조에 명시된 기회를 활용할 것.
- 3) (예외적으로) 절충안도 가능하다. 양측이 국경표주 《II》 일대(우수리스크구)의 영토 9.68km<sup>2</sup>가 러시아령임을 확인한 후 국경표지 《No.416~419》(하산구) 구간의 국경에 대해 1860년 조약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설정한다는 조건하에 동 구간을 중국에 양도할 것. 이러한 구상은 향후 대중 교섭 과정에 협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국경설정 작업 완료 이전에 연해 변강주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1991년 동부국경협정 이행 관련 전 부문에 걸쳐 극동지역의 러시아 안보와 국익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시행할 것.

1997년 5월 14일 러·중 간 동부국경 설정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연방회의가 개최되었다. 하산구와 우수리스크구 관내 러·중 간 국경설정에 관한 연해 변강주 행정부의 제안이 보고·채택되었으며, 연방회의에 의한 동 문제의 심의 결과 ‘러·중 간 국경설정 과정에 관한’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후 동 결의문은 시행되지 않았다.

1996년 12월 4일 연방회의가 구성한 국경설정 실무그룹 회의(러시아 외무부 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1997년 5월 13일 연방회의 총회 전날 개최됨)에서 향후 대중 교섭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 입장을 채택했다.

하산구에서는 중국에 300ha를 양도할 근거가 전혀 없으며, 우수리스크구에서는 과거 국경표지 《Π》의 위치 설정 과정에서 러·중 양측에서 오류를 범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와 968ha 양도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르다고 간주할 만한 근거도 없다. 우리로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타협안을 모색해야 한다.

러시아 외무부는 연해 변강주 당국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기로 했다. 러·중 공동 국경표지위원회 러시아 측 대표단에도 동일한 입장이 전달되었다. 변강주 행정부 공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섭 과정에서 새로운 국경선이 예전의 국경선, 즉 현재 수비되고 있는 국경선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하기 위해 습지에 있는 국경표주를

이동하지 않고 분수령을 모색하는 작업이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sup>13</sup>

연해 변강주 주지사 나즈드라텐코가 러시아 외무부를 비롯한 중앙 통치기관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동안 언론과 학술 서적에서조차 연해 변강주 관내 일부 영토의 대중 양도에 관한 나즈드라텐코의 견해가 크게 왜곡되곤 했다.

1998년 라린(V. L. Larin)의 단행본 『90년대 상반기 중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 지역 간 상호협력 문제』에는 1991년 소·중 동부국경협정 비준에 나즈드라텐코가 참여했다는 허위 사실이 실렸다. 저자는 이 저서에서 (1995년 3월 16일자 『로시이스키예 노보스티』지를 인용하여) “러시아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최고회의가 (중국과의 국경에 관한) 해당 협정을 비준한 당일 연해 변강주 출신 최고회의 대의원들은 태평양 국경관구 사령관 바리빈(M. Barybin), 변호사 베렘추크(V. Veremchuk), 전 소련공산당 변강주 위원회 제1서기 볼린체프(A. Volyntsev), 검사 고랴체바(S. Goryacheva), 광업회사 ‘보스토크(Vostok)’ 사장 나즈드라텐코였다”고 주장했다.<sup>14</sup> 저자는 이 같은 주장을 근거로 “이로써 ‘러시아 땅 투매’에 대한 모든 책임을 모스크바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 위에 언급된 연해 변강주인들도 이 일에 관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991년 5월 16일자 소·중 동부국경협정이 비준되었던 1992년 2월 바리빈 사령관, 볼린체 제1서기, 고랴체바 검사, 나즈드라텐코 사장은 러시아 최고회의 대의원이 아니라 러시아 인민대의원이었

<sup>13</sup> “국경설정 : 외무부 연해 변강주의 논거 수용”, 『블라디보스토크』(1997. 5. 21), 13쪽.

<sup>14</sup> 라린(1998), 『90년대 상반기 중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 지역 간 상호협력 문제』, 198쪽.

다. 당시 러시아 인민대의원은 약 1050명이었으며, 그들 중 1/4정도(약 250명)가 로테이션 방식으로 최고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이 최고회의 대의원들은 모스크바에 상주하며 법안을 발의하고 국제협약을 포함한 각종 법률안을 비준했다. 따라서 단행본 저자가 언급한 인사(M. 바리빈, A. 볼린체프, S. 고라체바, E. 나즈드라텐코)는 연해 변강주 출신의 러시아 인민대의원이었지 표결권을 갖는 최고회의 대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절대 ‘러시아 땅 투매’에 관여할 수 없었다.

극동지역 러시아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연해 변강주 행정부와 나즈드라텐코 주지사가 개인적으로 기울인 노력은 변강주 관내 한카구와 하산구에서 일정한 성과로 나타났다.

연해 변강주 한카구에서는 1991년 소·중 동부국경협정 및 별첨 1 : 100,000 축척 국경획정지도에 따라 러시아 영토 769ha를 중국에 넘겨주고 중국령 299ha를 받게 돼 있어 러시아 영토의 순손실 면적이 470ha에 달했었다. 그러나 연해 변강주 행정부와 제8차 소·중 공동 국경설정 실무그룹 구성원으로 참여한 연해 변강주 관계자들이 국경설정 작업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의 결과 1995년 합리적인 분수령선을 찾아낼 수 있었으며, 이를 기준으로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 첨부된 국경획정지도에 명시된 국경선과는 다른 새로운 러·중 간 국경선이 설정되었다. 그 결과 러시아는 중국에 러시아 영토 257ha를 내주고 중국 영토 85ha를 받게 되어 러시아의 영토 순손실 면적은 172ha로 줄게 되었다. 이와 같이 연해 변강주 행정부 주도로 행해진 1991년 동부국경협정 수정 결과 한카구에서 러시아 땅 300ha를 지켜낼 수 있게 되었다.

연해 변강주 하산구에서는 1991년 소·중 동부국경협정과 별첨 1 : 100,000 축척 국경획정지도에 따라 여러 전문가들의 산출에 의하

면 하산호 이북 지역의 러시아 영토 300~375ha가 중국에 넘어가게 돼 있었다. 연해 변강주 행정부와 제10차 소·중 공동 국경설정 실무그룹 구성원으로 참여한 연해 변강주 관계자들이 국경설정 작업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의 결과 1997년 지형적 특성과 국익, 국경수비 여건 및 생태환경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국경선을 새롭게 설정하게 되었다. 새로운 국경선의 반은 기존의 국경선이 통과하던 분수령을 따라 설정되었으며, 1938년 하산전투에서 전사한 영웅들의 묘지는 러시아령으로 남게 되었다. 이 절충선을 따라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 첨부된 국경획정 지도에 명시된 국경선과는 다른 새로운 러·중 국경선이 설정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정보에 따른 필자의 계산에 따르면 중국에 양도되는 러시아 영토는 300~375ha가 아니라 150~280ha이다. 이와 같이 연해 변강주 행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1991년 동부국경협정 수정 결과 하산 구에서 지켜 낼 수 있게 된 러시아 영토는 20~190ha에 이른다.

# 별첨문서





## 별첨 1

### 1991년 5월 16일자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소·중 동부국경협정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양국 간 동부국경 합의 구간의 국경선 통과 지점을 획정·설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합의했다.

#### 제1조

체약 쌍방은 현행 소·중 국경에 관한 각종 조약을 바탕으로 공인된 국제법 규범과 평등한 협의 및 상호 이해·양보 정신에 따라 국경 문제에 관한 소·중 협상 결과 이룩한 합의를 기반으로 역사가 남긴 소·중 간 국경 문제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양국 간 국경선 통과 지점을 획정·설정하기로 합의했다.

#### 제2조

체약 쌍방은 소연방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소·중 동부국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했다.

소·중 동부국경 제1 국경점은 645.0m의 타르바간다흐 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646.7고지로 표기됨)이다. 동 국경점 《No.1》은 소연방 영토 708.5고지 남쪽 약 3.6km, 709.5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709.4고지로 표기됨) 남서쪽 약 4.8km, 그리고 중국 영토 877.0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831.7고지로 표기됨)의 다관산우라[達關山烏拉] 산 북서쪽 약 18.7km 거리에 위치한다.

국경선은 국경점 《No.1》에서 국경점 《No.2》까지 남동쪽으로 약 30.4km 직선으로 이어진다. 동 국경점 《No.2》는 소연방 영토 844.0고지의 크루글라야(Kruglaya) 산(중국 측 지도에는 850.6고지로 표기됨) 남남서쪽 약 3.0km, 863.4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872.2고지로 표기됨)의 텔레폰나야(Telephonnaya) 산 서남서쪽 약 5.2km, 그리고 중국 영토 791.0고지 북쪽 약 8.2km 거리에 위치한다.

국경선은 국경점 《No.2》에서 국경점 《No.3》까지 동남동쪽으로 약 16.8km 직선으로 이어진다. 동 국경점 《No.3》은 소연방 영토 822.3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822.8고지로 표기됨) 남동쪽 약 4.0km, 749.9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750.5고지로 표기됨)의 크루글라야 산 남서쪽 약 5.3km, 그리고 중국 영토 724.1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723.2고지의 자쯔산[架子山]으로 표기됨) 북쪽 약 2.3km 거리에 위치한다.

국경선은 국경점 《No.3》에서 국경점 《No.4》까지 동쪽으로 약 14.4km 직선으로 이어진다. 동 국경점 《No.4》는 소연방 영토 763.8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767.2고지의 커루타야산[克魯塔亞山]으로 표기됨) 서쪽 약 2.5km, 그리고 중국 영토 667.0고지의 테시우라(鐵西烏拉) 산(중국 측 지도에는 666.0고지의 테시산[鐵西山]으로 표기됨) 북쪽 약 4.2km, 693.0고지 북북서쪽 약 6.4km 거리에 위치한다. 동 구간에서 국경선은 소련 철도 자바이칼스크(Zabaikalsk) 역과 중국 철도 만저우리(滿洲) 역 사이의 철로를 가로지른다.

국경선은 국경점 《No.4》에서 국경점 《No.5》까지 동남동쪽으로 약 13.7km 직선으로 이어진다. 동 국경점 《No.5》는 소연방 영토 606.4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607.1고지로 표기됨)의 베르블류자(Verblyuzhya) 산 남서쪽 약 3.7km, 그리고 중국 영토 695.8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696.3

고지로 표기됨)의 다무산[達穆山] 동쪽 3.5km, 729.8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731.5고지로 표기됨) 북북동쪽 약 1.2km 거리에 위치한다.

국경선은 국경점 《No.5》에서 국경점 《No.6》까지 동남동쪽으로 약 13.2km 직선으로 이어진다. 동 국경점 《No.6》은 무트나야프로토카(Mutnaya Protoka) 천(川) 서안에 설치된다. 동 지점은 소연방 영토 610.6고지의 몰로칸카(Molokanka) 산(중국 측 지도에는 611.4고지의 아바가이투이산[阿巴該圖山]으로 표기됨) 남서쪽 약 3.9km, 중국 영토 578.0고지의 얼류산[二柳山](중국 측 지도에는 576.9고지의 얼쯔산[二子山]으로 표기됨) 동북동쪽 약 2.9km, 중국 영토 678.4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677.7고지로 표기됨)의 자나산[加納山] 동쪽 약 6.9km 거리에 위치한다.

국경선은 국경점 《No.6》에서 직선으로 동일 방향으로 무트나야프로토카 천 수류 중심으로 나온 후 동 하천의 중심을 따라 북동쪽으로 국경점 《No.7》까지 이어진다. 동 국경점 《No.7》은 소연방 무트나야프로토카 천(중국 측 지도에는 다란어뤄무허[達蘭鄂洛木河]로 표기됨) 하구의 수류 중심에 설치된다. 동 지점은 소연방 영토 610.6고지의 몰로칸카 산 남쪽 약 0.4km, 637.1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637.6고지로 표기됨) 동남동쪽 약 4.5km, 그리고 중국 영토 574.0고지 서북서쪽 약 7.3km 거리에 위치한다.

국경점 《No.8》은 아르군 강(중국 측 지도에는 어얼구나허[額爾古納河]로 표기됨)의 수류 중심에 설치된다. 동 지점은 소연방 영토 604.8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605.4고지로 표기됨)의 모굴차크(Mogultsak) 산 남쪽 약 3.2km, 그리고 중국 영토 573.0고지 북북서쪽 약 3.7km, 563.0고지 서쪽 8.1km 거리에 위치한다.

국경선은 국경점 《No.8》에서 아르군 강 수류 중심, 혹은 이 강의 주

지류 중심을 따라 강 아래 북동방향으로 국경점 《No.9》까지 이어진다. 동 국경점 《No.9》는 아르군 강 수류 중심과 아무르 강(중국 측 지도에는 헤이룽장[黑龍江]으로 표기됨) 주 항로 중심의 교차점에 설치된다. 동 지점은 소연방 영토 309.6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310.1고지로 표기됨) 동쪽 약 2.1km, 610.0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611.2고지로 표기됨) 남동쪽 약 4.3km, 그리고 중국 영토 410.7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414.0고지로 표기됨) 북동쪽 약 1.8km 거리에 위치한다.

국경선은 국경점 《No.9》에서 아무르 강 주 항로 중심을 따라 국경점 《No.10》까지 강 아래로 이어진다. 동 국경점 《No.10》은 아무르 강 주 항로 중심에 설치된다. 동 지점은 소연방 영토 41.1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41.2고지로 표기됨) 남동쪽 약 6.3km, 39.9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40.4고지로 표기됨) 남남서쪽 약 2.5km, 그리고 중국 영토 266.5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266.5고지로 표기됨)의 이리가산[伊里嘎山] 동북동쪽 약 9.0km 거리에 위치한다.

국경점 《No.11》은 우수리 강(중국 측 지도에는 우수리허[烏蘇里河]로 표기됨)의 주 항로 중심에 설치된다. 동 지점은 소연방 영토 353.5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366.1고지로 표기됨)의 트료흐글라바야(Tryokhglavaya) 산 서북서쪽 약 5.6km, 949.4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950.0고지로 표기됨)의 볼쇼이헤흐치르(Bolshoy Khekhtsir) 산 북서쪽 약 949.4km, 그리고 중국 영토 58.6고지 북동쪽 약 18.3km 거리에 위치한다.

국경선은 국경점 《No.11》에서 우수리 강 주 항로를 따라 대체로 남쪽으로 국경점 《No.12》까지 위로 이어진다. 동 국경점 《No.12》는 우수리 강 주 항로 중심과 순가차 강(중국 측 지도에는 쑹아차허[松阿察河]로 표기됨) 수류 중심의 교차점에 설치된다. 동 지점은 소연방 영토 131.6고

지(중국 측 지도에는 132.0고지로 표기됨) 북서쪽 약 9.9km, 그리고 중국 측 좌표 52, 68 상의 도로 교차점(중국 측 지도에는 66.6고지의 도로 교차점으로 표기됨) 동남동쪽 약 6.6km 거리에 위치한다.

국경선은 국경점 《No.12》에서 순가차 강 수류 중심, 혹은 강 주 지류 중심을 따라 국경점 《No.13》까지 위로 이어진다. 동 국경점 《No.13》은 한카호(중국 측 지도에는 싱카이후[興凱湖]로 표기됨)에서 비롯되는 순가차 강 발원지 주위의 수류 중심에 설치된다. 동 지점은 소연방 영토 70.9고지 북동쪽 약 0.6km(중국 측 지도에는 70.3고지 북북동쪽 0.6km로 표기됨), 그리고 중국 영토 67.0고지 서남서쪽 약 4.2km 거리에 위치한다.

국경선은 국경점 《No.13》에서 국경점 《No.14》까지 북서쪽으로 약 0.7km(중국 측 지도에는 0.6km로 표기됨) 이어진다. 동 국경점 《No.14》는 한카호에 설치된다. 동 지점은 소연방 영토 70.9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70.3고지로 표기됨) 북북서쪽 약 0.9km, 그리고 중국 영토 69.1고지 남서쪽 약 12.8km, 71.0고지 남남서쪽 6.3km 거리에 위치한다.

국경선은 국경점 《No.14》에서 한카호를 따라 서남서쪽으로 국경점 《No.15》까지 직선으로 0.5km 이어진다. 동 국경점 《No.15》는 한카호에 설치된다. 동 지점은 소연방 영토 70.9고지 북서쪽 약 1.0km, 그리고 중국 영토 71.0고지 남남서쪽 약 6.3km, 80.0고지 남남동쪽 17.5km 거리에 위치한다.

국경선은 국경점 《No.15》에서 한카호를 가로질러 서북서쪽으로 국경점 《No.16》까지 직선으로 약 69.8km 이어진다. 동 국경점 《No.16》은 투르 강(중국 측 지도에는 바이링허[白稜河]로 표기됨) 하구 수류 중심에 설치된다. 동 지점은 소연방 영토 166.9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167.4고지로 표기됨)의 카찰롭카(Kachalovka) 산 북쪽 약 13.8km, 그리고 중국 영토

99.3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102.6고지로 표기됨) 남서쪽 약 7.7km, 127.4 고지의 링시타이산[嶺西台山] 동남동쪽 약 5.0km 거리에 위치한다.

국경선은 국경점 《No.16》에서 투르 강(중국 측 지도에는 바이린허로 표기됨) 수류 중심, 혹은 투르 강 주 지류 중심을 따라 북서쪽으로 국경점 《No.17》까지 위로 이어진다. 동 국경점 《No.17》은 투르 강 수류 중심, 서쪽에서 유입되는 무명천(중국 측 지도에는 무명계곡으로 표기됨) 하구 맞은편에 설치된다. 동 지점은 소연방 영토 170.4고지 북동쪽 약 0.8km, 그리고 중국 영토 217.5고지 남남동쪽 약 2.6km, 229.2고지 남서쪽 약 2.7km 거리에 위치한다.

국경선은 국경점 《No.17》에서 상기 무명천을 따라 대체로 서쪽으로 약 0.8km 이어진 후 남측 계곡을 따라 서쪽으로 국경점 《No.18》까지 이어진다. 동 국경점 《No.18》은 소연방 영토 170.4고지 서북서쪽 약 2.1km 지점의 176.0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176.5고지로 표기됨), 그리고 중국 영토 217.5고지 남서쪽 약 2.6km, 179.4고지의 양쯔산[楊子山] (중국 측 지도에는 쌍딩산[雙頂山]으로 표기됨) 동쪽 약 3.6km 거리에 위치한다.

국경선은 국경점 《No.18》에서 무린허 지류와 한카호로 유입되는 강들 사이의 분수령을 따라 대체로 남서쪽으로 202.4고지의 파블로바슈카(Pablova Sopka) 산(중국 측 지도에는 203.1고지의 바푸뤄와산[巴夫羅瓦山]으로 표기됨), 184.8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185.3고지로 표기됨), 382.6고지, 525.8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525.8고지로 표기됨)의 카메누시카(Kamenushka) 산, 545.5고지의 켄추지나(Zhemchuzhina) 산(중국 측 지도에는 완바오산[萬寶山]으로 표기됨), 554.2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552.2고지로 표기됨), 770.8고지, 532.9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553.4고지로 표기

됨), 554.8고지, 654.6고지를 지나 국경점 《No.19》까지 이어진다. 동 국경점 《No.19》는 상기 분수령, 소연방 영토 775.7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776.9고지로 표기됨) 서남서쪽 약 4.5km, 736.9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737.5고지로 표기됨)의 메드베자(Medvezhya) 산 서북서쪽 약 6.1km, 그리고 중국 영토 663.9고지의 평핑산[峰平山] 남동쪽 약 8.9km 거리에 위치한다.

국경선은 국경점 《No.19》에서 샤오쑤이펀허[小綏芬河] 지류들과 한 카호로 유입되는 강들 사이의 분수령을 따라 대체로 남동쪽으로 901.0고지, 932.4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933.1고지로 표기됨)를 지나 국경점 《No.20》까지 이어진다. 동 국경점 《No.20》은 상기 분수령의 758.9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759.4고지로 표기됨), 소연방 영토 726.5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727.9고지로 표기됨)의 코자(Kozya) 산 북서쪽 약 3.5km, 그리고 중국 영토 1,008.3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1,008.3고지로 표기됨)의 툰룽산[天龍山] 동남동쪽 약 8.2km, 917.3고지 동쪽 약 4.8km 거리에 위치한다.

국경선은 국경점 《No.20》에서 소연방 철도 그로데코보(Grodekovo) 역과 중국 철도 쑤이펀허[綏芬河] 역 사이의 철로를 가로질러 국경점 《No.21》까지 남남동쪽으로 약 73.0km 직선으로 이어진다. 동 국경점 《No.21》은 라즈돌나야 강(중국 측 지도에는 쑤이펀허로 표기됨) 왼쪽 지류 좌안, 소연방 영토 239.8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240.9고지로 표기됨) 북서쪽 약 5.8km, 236.0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236.7고지로 표기됨) 남쪽 약 2.5km, 중국 영토 415.3고지 동쪽 약 2.9km 거리에 위치한다.

국경선은 국경점 《No.21》에서 직선으로 동일 방향으로 폴로빈카(Polovinka) 섬과 페스차니(Peschany) 섬(중국 측 지도에는 다미더양다오

[大密得揚島]로 표기됨)을 가로질러 국경점 《No.22》까지 이어진다. 동 국경점 《No.22》는 이 직선과 라즈돌나야 강 우측 지류 수류 중심의 교차점, 소연방 영토 239.8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240.9고지로 표기됨) 서북서쪽 약 4.4km, 104.8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105.4고지로 표기됨) 북쪽 약 2.1km, 그리고 중국 영토 415.3고지 동남동쪽 약 3.9km 거리에 위치한다.

국경선은 국경점 《No.22》에서 라즈돌나야 강 우측 지류를 따라 위로 국경점 《No.23》까지 이어진다. 동 국경점 《No.23》은 라즈돌나야 강 우측 지류 수류 중심과 그라니트나야 강(중국 측 지도에는 후부투허[瑚布圖河]로 표기됨) 수류 중심의 교차점에 설치된다. 동 지점은 소연방 영토 239.8고지 서쪽 약 5.7km, 104.8고지 북서쪽 약 2.1km, 그리고 중국 영토 415.3고지 남동쪽 약 3.0km 거리에 위치한다.

국경선은 국경점 《No.23》에서 그라니트나야 강을 따라 위로 수류 중심, 혹은 주 지류 중심을 따라 대체로 남쪽방향으로 이어지다가 드보이노이(Dvoynoy) 천(중국 측 지도에는 무명천으로 표기됨)을 따라 위로 이어진 후 남남서쪽으로 계곡을 따라 위로 국경점 《No.24》까지 이어진다. 동 국경점 《No.24》는 그라니트나야 강, 친니바허(Tsinnivahe), 암바강 사이 분수령들의 교차점에 설치되며, 동 지점은 소연방 영토 741.1고지의 플로가야 산(중국 측 지도에는 742.2고지의 쌍두가평[桑杜嘎峰]으로 표기됨) 서남서쪽 약 4.4km, 694.6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695.1고지로 표기됨) 북북서쪽 약 2.4km, 그리고 중국 영토 770.5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770.5고지의 쉬바터우거우산[許霸頭溝山]으로 표기됨) 동쪽 약 10.3km 거리에 위치한다.

국경선은 국경점 《No.24》에서 훈춘 강으로 유입되는 각 지류와 바

다로 유입되는 여러 하천 사이의 분수령을 따라 대체로 남쪽으로 이어지며, 698.0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700.2고지로 표기됨), 666.2고지, 541.7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542.3고지로 표기됨), 538.7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538.4고지로 표기됨), 509.0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511.8고지로 표기됨)를 지나 국경점 《No.25》까지 이어진다. 동 국경점 《No.25》는 상기 분수령(381.4고지)에 설치되며, 동 지점은 소연방 영토 473.0고지의 시콜나야(Shkolnaya) 산(중국 측 지도에는 473.9고지의 투리안마커러산[土利安瑪柯勒山]으로 표기됨) 서남서쪽 약 3.6km, 505.2고지의 라잔카(Ryazanka) 산(중국 측 지도에는 507.4고지의 쑹창마커러산[宋長瑪科勒山]으로 표기됨) 북북서쪽 약 2.2km, 그리고 중국 영토 507.0고지 남동쪽 약 4.9km 거리에 위치한다.

국경선은 국경점 《No.25》에서 상기 분수령을 따라 대체로 서쪽으로 이어지다가 남쪽으로 방향을 꺾은 후 다시 서쪽으로 596.5고지, 593.4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595.5고지로 표기됨), 418.7고지의 울릿카(Ulitka) 산(중국 측 지도에는 425.4고지로 표기됨), 876.4고지, 830.4고지의 볼샤야티그로바야(Bolshaya Tigrovaya) 산(중국 측 지도에는 833.9고지의 선셴딩쯔산[仙頂子山]으로 표기됨)을 지나 국경점 《No.26》까지 이어진다. 동 국경점 《No.26》은 상기 386.8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388.8고지로 표기됨)의 야블로코(Yabloko) 산 분수령에 설치되며, 동 지점은 소연방 영토 280.0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282.3고지로 표기됨)의 코로티시카(Korotyshka) 산 서남서쪽 약 1.9km, 그리고 중국 영토 301.9고지의 홀룬산(Holunshan) 산(중국 측 지도에는 휘룡산[火龍山]으로 표기됨) 동남동쪽 약 6.5km, 467.0고지의 둔초산(Duntszoshan) 산(중국 측 지도에는 동차오산[東草山]으로 표기됨) 북동쪽 약 4.8km 거리에 위치한다.

국경선은 국경점 《No.26》에서 상기 분수령을 따라 대체로 서쪽으로 약 1.6km 이어나가 남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서쪽으로 투만나야 강(중국 측 지도에는 투먼장[圖們江]으로 표기됨)으로 유입되는 강들과 동쪽으로 바다로 유입되는 강들 사이의 분수령을 따라 371.7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374.2고지로 표기됨)와 697.7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694.6고지로 표기됨)의 볼샤야체르토타(Bolshaya Chertova) 산을 지나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국경점 《No.27》까지 이어진다. 동 국경점은 상기 121.5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123.6고지로 표기됨)의 포그라니치나야(Pogranichnaya) 산 분수령에 설치되며, 동 지점은 소연방 영토 87.3고지의 사하르나야 골롭카(Saharnaya Golovka) 산(중국 측 지도에는 89.9고지의 싸하얼나야저 튀푸카[薩哈爾那亞哥洛夫卡]로 표기됨) 서남서쪽 약 3.3km, 176.5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177.8고지로 표기됨)의 레드트(Redut) 산 남쪽 약 6.4km, 그리고 중국 영토 274.3고지 동쪽 약 2.0km 거리에 위치한다.

국경선은 국경점 《No.27》에서 상기 분수령을 따라 대체로 남쪽으로 107.1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89.2고지로 표기됨)의 카메니스타야(Kamenistaya) 산을 지나 303.5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303.3고지로 표기됨)의 바라바샤(Barabasha) 산으로 이어진다. 그 후 국경선은 상기 분수령을 따라 처음에는 대체로 서쪽으로 약 3.5km 이어나가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국경점 《No.28》까지 이어진다. 동 국경점은 상기 분수령에 설치되며, 동 지점은 소연방 영토 29.9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27.7고지로 표기됨) 서남서쪽 약 1.4km, 192.9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194.0고지로 표기됨) 서북서쪽 약 6.2km, 그리고 중국 영토 제1호 무명산(중국 측 지도에는 86.6고지로 표기됨) 남동쪽 약 2.0km 거리에 위치한다.

국경선은 국경점 《No.28》에서 남쪽으로 1.8km 국경점 《No.29》까

지 직선으로 이어진다. 동 국경점은 소연방 영토 29.9고지 남남서쪽 약 2.8km, 192.9고지 서쪽 약 6.0km, 그리고 중국 영토 제1호 무명산 남남동쪽 약 3.6km 거리에 위치한다.

국경선은 국경점 《No.29》에서 국경점 《No.30》까지 남동쪽으로 약 3.5km 직선으로 이어진다. 동 국경점은 소연방 영토 125.5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125고지로 표기됨) 서쪽 약 1.9km, 192.9고지 북동쪽 약 2.3km, 그리고 중국 영토 제2호 무명산(중국 측 지도에는 77.1고지의 사차오핑[沙草峰]으로 표기됨) 동쪽 약 2.3km 거리에 위치한다.

국경선은 국경점 《No.30》에서 국경점 《No.31》까지 남쪽으로 약 1.8km 직선으로 이어진다. 동 국경점은 소연방 영토 125.5고지 남서쪽 약 2.8km, 60.3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61.6고지로 표기됨) 북서쪽 약 4.7km, 그리고 중국 영토 제2호 무명산 동쪽 약 1.2km 거리에 위치한다.

국경선은 국경점 《No.31》에서 처음에는 하산호와 두만강(중국 측 지도에는 투먼장으로 표기됨) 사이의 분수령을 따라 대체로 남쪽으로 이어지다가 157.3고지의 자오제르나야 산(중국 측 지도에는 155.1고지의 장구핑[張鼓峰]으로 표기됨)을 지나 남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국경점 《No.32》까지 이어진다. 동 국경점은 두만강 좌안에 설치되며, 동 지점은 소연방 영토 60.3고지 남남동쪽 약 1.9km, 180.3고지(중국 측 지도에는 182.0고지로 표기됨)의 골루비니우테스(Golubiny Utes) 산 서쪽 약 9.0km, 그리고 중국 영토 제3호 무명산(중국 측 지도에는 58.5고지로 표기됨) 동남동쪽 약 2.8km 거리에 위치한다.

국경선은 국경점 《No.32》에서 두만강 좌안까지 남쪽으로 0.1km 직선으로 이어진 후, 두만강 중앙 수로에 수직으로 국경점 《No.33》까지 이어진다. 동 국경점은 상기 수직선과 두만강 중심 수로의 교차점에 설

치되며, 동 지점은 소연방 영토 60,3고지 남쪽 약 2.0km, 180,3고지의 골루비니우테스 산 서쪽 약 9.2km, 그리고 중국 영토 제3호 무명산 남 동쪽 약 2.8km 거리에 위치한다.

위에 기술된 소·중 간 국경선은 1 : 100,000 축척의 소·중 양국 지도에 붉은색으로 표기된다. 동 국경선 기술에 사용된 모든 거리는 동 지도를 기준으로 측정되었다.

소·중 간 국경선을 붉은색으로 표기한 상기 지도들은 러·중 동부국경협정에 있어 불가분의 일부로 동 협정에 첨부된다.

### 제3조

체약 쌍방은 동 협정 제1조에 따라 양국 간 국경점 《No.7》에서 국경점 《No.8》까지, 그리고 국경점 《No.10》에서 국경점 《No.11》까지의 양국 간 동부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 제4조

체약 쌍방은 동 협정 제2조에 명시된 소·중 간 국경선을 설정하기 위해 대등한 조건으로 공동 국경표지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국경설정 업무를 위임한다. 국경 하천 주 항로 중심, 하천 혹은 하천 주 지류 중심의 정확한 위치 설정, 동 협정 제5조에 따른 국경하천 도서의 영유권 결정, 국경표지 설치, 국경설정 관련 문서 초안 작성, 정밀 분계지도 작성 및 상기 과제 이행에 따른 제반 문제 해결 등.

### 제5조

체약 쌍방은 동 협정 제2조에 기술된 소·중 간 국경선은 항행 가능

한 하천의 경우 주 항로 중심, 항행 불가능한 하천의 경우 하천의 중심이나 주 지류의 중심을 통과한다는 데 합의했다. 주 항로와 국경선으로 인정된 주 항로의 중심, 하천, 혹은 하천 주 지류 중심의 정확한 위치와 그에 따른 하천 각 도서의 영유권, 국경선이 통과하는 분수령선은 양국 간 국경설정 작업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주 항로의 폭, 곡선반경과 수심을 주 항로 결정을 위한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주 항로 중심은 주 항로의 관련 두 등심선 사이 수면선의 중심을 의미한다.

하천의 주 지류 결정을 위한 주요 기준은 하천의 평균유량이다.

#### 제6조

체약 쌍방은 현지에 설정된 소·중 국경선은 영공 및 지하 공간 또한 수직 방향으로 분계한다는 데 합의했다.

#### 제7조

쌍방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국경 하천에 발생 가능한 어떤 자연적인 변화도 설정된 소·중 국경선의 위치는 물론 각 도서의 영유권을 변경시킬 수 없다.

국경선 설정 이후 국경 하천에 형성된 도서의 영유권은 설정된 국경선 위치에 따라 결정되며, 설정된 국경선 바로 위에 형성된 도서의 영유권은 체약 쌍방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별첨 2

### 러·중 동부국경설정 작업 완료조치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

1. 러·중 국경설정위원회 러시아 측 대표단은 연해 변경주 우수리스크구, 하산구 및 유대인 자치주 국경 구간을 포함한 러·중 간 동부 국경, 특히 포포프 섬, 사벨리에프 섬, 사자니 섬, 수호이 섬, 나스트보라흐(Na-Stvorax) 섬, 예브라시하 섬, 아무르 강의 니즈네페트롭스크 섬 지역의 국경설정 작업을 1991년 5월 16일자 소·중 동부국경협정에 따라 정해진 기한에 크게 어긋남 없이 마무리 지을 것. 향후 국경설정 작업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는 동 협정 틀 내에서 해결할 것.

2. 러시아 환경부와 어업위원회는 외무부와 합의하여 3개월 내에 기존의 양국 간 합의를 고려하여 특히 국경설정 후 중국에 귀속되는 지역에 대한 환경보호, 환경위험지역 내 경제활동 제한 및 어족자원 보호 대책에 관해 추가로 체결 가능한 합의 제안서를 제출할 것.

3. 연해 변경주와 하바롭스크 변경주, 유대인 자치주, 아무르 주, 치타 주 단체장들은 다음과 같은 지시를 이행한다.

- 연방 행정기관, 러·중 공동 국경표지위원회 러시아 측 대표단이 동부국경협정에 따라 국경설정 작업을 시행·완료하는 데 전면 지원한다.
- 국경설정 작업의 필요성과 전망에 대해 적극적인 주민 설득작업을 시행한다.
- 일정 기한 내에 국경설정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경제활동 및 자연보호 문제를 공동 해결하기 위해 중국 측 해당 접경지역과 협력한다.

4. 러시아 외무부와 동 명령 제3항에 열거된 러시아의 관련 행정주체는 러시아 국경 주민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고려하여 국경설정 작업 결과 서로에게 양도되는 일부 구간의 공동 운영에 관한 러·중 기본협정 서명 문제를 조속히 타결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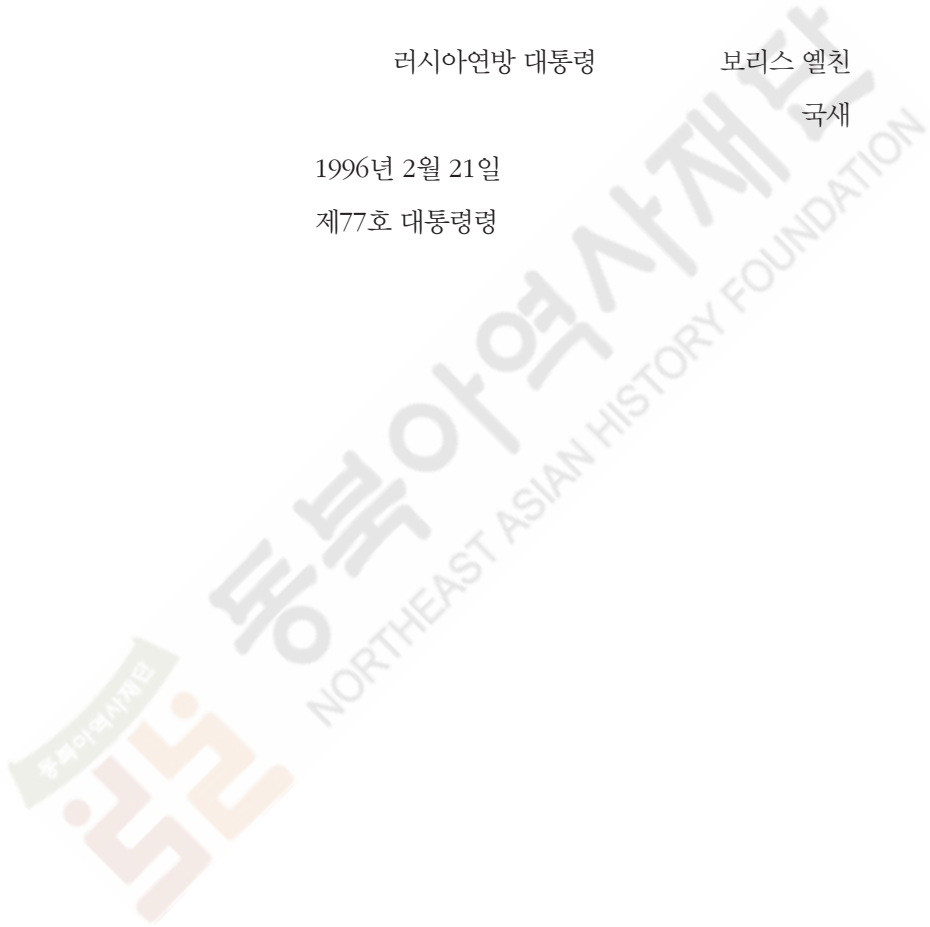
러시아연방 대통령

보리스 옐친

국새

1996년 2월 21일

제77호 대통령령



### 별첨 3

#### 국경 인접 구역과 국경표주 《П》 일대의 지형연구 및 문서분석 결과

- 전문위원회 구성원 :
  - 위원장 : 코룟키(A. M. Korotky) 지리학 박사(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태평양 지리연구소)
  - 위원 : 국립극동대학 지구물리학부 학장 지리학박사 부교수 조노프(Yu. B. Zonov), 역사학박사 부교수 디신(A. V. Dyshin), 우수리스크구 부구청장 아켄티예프(V. I. Akentyev), 극동 군관구 파르티잔스크 측지부대 이바노프(I. N. Ivanov) 대변인

1994년 9월 19일부터 1995년 3월 24일까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국립극동대학, 극동 군관구 파르티잔스크 측지부대, 연해 변경주 우수리스크구 구청, 제9차 국경설정 실무그룹 소속 학자 및 전문가(구성위원-별첨1)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는 1858~1995년 작성된 (연해 변경주 구간) 대중(對中) 국경분쟁 및 국경설정에 관한 문서들을 검토했다. 이 문제에 관해 국제·외교·영사법 교수이자 법학박사인 미하일로프(V. S. Mikhailov)와 국경 단독실사 부처간 특별위원회 전 위원 네스테로프(P. A. Nesterov)가 협의했다. 동 위원회는 세 차례(가을, 겨울, 봄)에 걸쳐 현지 실사를 실시했다.

#### 1. 검토 문서

국경표주 《П》 일대 우샤고우 강(그라니트나야 강) 발원지를 통과하는 러·중 국경선에 관한 이견은 1860년 11월 2일 베이징에서 체결된 ‘추

가조약'(러시아연방 외무부 산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 고문서 보관소, 장서분류 《조약집》, 목록 466, 문서번호 881/457, 1~14쪽), 1861년 6월 16일 체결된 '국경설명서'(러시아연방 외무부 산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 고문서 보관소, 장서분류 《조약집》, 목록 466, 문서번호 883), '1861년 국경표주 설치 설명서'(러시아연방 외무부 산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 고문서 보관소, 장서분류 《조약집》, 목록 466, 문서번호 884), 1886년 6월 22일자 '국경표주 실시 의정서', 1886년 9월 20일자 노보키예프스크에서 체결된 '양국 간 국경 정밀실사 대상 제3구간에 관한 의정서'(러시아연방 외무부 산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 고문서 보관소, 장서분류 《조약집》, 목록 466, 문서번호 905/159, 13~15쪽) 본문의 새로운 해석에 기인했다. 이 문서들은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서 관련 지역의 최신 지형정보에 근거하여 해석되고 있다.

## 2. 중국 측 요구사항

중국 측의 주장에 따르면 국경표주 《II》는 현재와는 다른 곳, 즉 수이펀허(이 경우 우샤고우 강-홉투 강-후비투 강)와 동해로 유입되는 강(이 경우 압바 강-압바벨라 강-자나드보롭카 강), 그리고 두만강 지류 혼춘 강(1957년 판 축척 1:200,000 지도상의 명칭) 유역을 분리하는 분수령 산맥에 위치한 우샤고우 강(그라니트나야 강) 발원지에 위치해야 한다. 국경표주 《II》의 이동 예상지점은 691.5고지와 일치하며, 현재의 장소에서 국경선을 따라 3.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 따른 러·중 국경선은 그라니트나야 강과 드보이노이 천 하상을 따라 위에 언급한 고지에 이르도록 돼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우샤고우 강 남동쪽 발원지 좌안 전체가 중국 측에 양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문서 분석 결과

일부 러시아 영토가 중국에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국경표주 《Π》의 위치 이동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 1) 1991년 이전에 체결된 협정서, 1861년의 ‘국경설명서들’, 1861년, 1866년, 1886년의 ‘의정서’ 본문 분석
- 2) 붉은 선이 표시된 지도 참고(1860년 ‘추가조약’ 제1조)
- 3) 현대적 개념에 따른 우샤고우 강의 주 발원지를 밝혀내기 위한 집수구역 구조 및 상류지형 기록의 특성 연구

텐진 조약(1858년 6월) 제9조를 이행하기 위해 체결된 1860년 10월 2일자 추가조약(이하 베이징 조약이라 함) 제1조는 후비투 강 하구에서 두만강까지의 국경 구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후비투 강(홉투 강) 하구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훈춘 강과 바다 사이의 산을 따라 두만강까지 이어진다. 여기서 동쪽의 영토는 러시아령, 서쪽의 영토는 중국령으로 한다.”(러시아연방 외무부 산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 고문서 보관소, 장서분류 《조약집》, 목록 466, 문서번호 881/457, 1~14쪽).

또한 “텐진 조약 제9조를 이행하기 위해 ‘국경선을 더욱 선명하게 하기 위해 국경선을 붉은 선으로 표시하고, 그 방향을 러시아 철자 A~Y로 표기한 지도가 승인’되었다.”

베이징 조약 제1조 마지막 단락은 “국경표지 설치 후 양국 간 국경선은 영원히 변경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베이징 추가 조약’ 제1조, (러시아연방 외무부 산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 고문서 보관소, 장

서분류 《조약집》, 목록 466, 문서번호 881/157, 1~14쪽].

알 수 없는 이유로 동 구간의 러·중 국경선은 ‘국경설명서’(러시아연방 외무부 산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 고문서 보관소, 장서분류 《조약집》, 목록 466, 문서번호 883)에 의거하여 다르게 설정되었다. “�투 강 하구에서 출발한 국경선은 강을 따라 위로 최정상까지 이어지며, 이어서 ‘조약’에 명시된 대로 분수령을 따라 이어진다.” ‘추가 조약’과 ‘국경설명서’의 분석을 통해서 ‘조약에 명시된 문자 그대로’라는 표현은 후반부, 즉 ‘이어서 분수령을 따라’라는 내용의 후반부에만 해당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참고 : ‘추가조약’ 제1조)

‘추가조약’은 국경선의 위치를 단지 전체적인 틀에서만 정하고, 그 구체적인 통과 지점은 ‘국경설명서’에 의해 결정된다는 러·중 국경회담 러시아 측 전문가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국경설명서’에 명시된 국경선의 위치와 홉투 강 하구에서부터 훈춘 강과 바다 사이의 산을 따라 이어진다고 정확하게 명시된 ‘추가조약’상의 국경선의 위치 사이에는 너무 큰 차이가 난다. ‘홉투 강’은 추가조약에 국경설정 기준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다른 곳에서는 하바롭스크 변강주와 연해 변강주 러·중 국경선은 정확하게 추가조약 원문을 바탕으로 설정되었다. “계속해서 우수리 강 하구로부터 헨카이 호수까지 국경선은 우수리 강과 순가차 강을 따라 이어지고 …… . 그 후 순가차 강 발원지에서 출발한 양국 간 국경선은 헨카이 호수를 가로질러 벨렌허(투르 강)까지 이어지며, 벨렌허의 하구에서부터는 산맥을 따라 홉투 강(후비투 강) 하구 쪽으로 이어진다 …… .” 여기서 다시 한 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추가조약’에 반하여 설정된 국경선은 후비투 강 하구에서 691.5고지까지의 구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분수령선이 언급돼 있는 추가조약을 인용한 것을 논거로 간주할 수는 없다. 문제는 분수령선의 위치가 ‘국경설명서’를 작성한 전문가 그룹에 의해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투르 강 하구에서 홉투 강 하구에 이르는 국경선 또한 산맥을 따라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 설명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국경선이 후비투 강 하구에서 강을 따라 정상까지 이어지게 된 데에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샤고우 강(그라니트나야 강)의 발원지를 통과하는 국경선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붉은 선으로 표기된 지도상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더욱이 ‘국경설명서’(1861년)에서는 국경선 위치에 대해 “지도에 그려진 붉은 선을 기준으로 양국 국경선이 바르고 정확하게 표기되었으며, 이를 위해 ‘국경설명서’가 작성되었다”고 언급돼 있지 않은가.

#### 4. 최신 지형도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

‘추가조약’(1860년) 제1조와 달리 국경선의 위치가 크게 변경된 점과 관련하여 홉투 강(후비투 강) 하구에서 최정상까지의 국경 설정과 바로 그 위치에 국경선이 설정된 근거를 주목해야 한다. 이 경우 도대체 무엇을 후비투 강(홉투 강)의 주 정상으로 간주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국경설명서’(러시아연방 대외정책 고문서 보관소, 장서분류 『조약집』, 목록 466, 문서번호 883)에서 어느 발원지를 이 강의 주 발원지로 삼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수리 전통에 따라 이 강의 시발점으로 간주해야 하는 후비투 강의 대규모 3개 정상이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홉투 강(그라니트나야 강-우샤고우 강)의 유역구조를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 a) 그라니트나야 강 상류는 3개의 독립적인 집수구역, 즉 길이 18km의 남서쪽 집수구역(베이싼차허), 길이 26km의 남쪽 집수구역(난싼차허)과 길이 16km의 남동쪽 집수구역(우샤고우 강)으로 이루어졌다. 길이가 가장 짧고, 유역면적과 유량이 가장 적은 남동쪽 발원지는 관련 국제규정으로 볼 때 후비투 강의 주 발원지로 볼 수 없다.
- b) 동 국제규정에 따르면 후비투 강의 주 발원지는 남쪽 집수구역, 즉 난싼차허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19세기 지도에는 대중 접경지역의 수로망이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거나 반영 상태가 미약하다.

### 5. 그라니트나야 강 상류의 국경선 분석을 통한 결론

이 경우 동 구간의 국경은 홉투 강의 시발점이기도 한 주 발원지들의 합류지점에서부터 일부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대체로 남동쪽 발원지와 남쪽 발원지 사이의 분수령을 따라 통과하며, 소베츠키 천하구(현재의 지도)에서 비롯되어 쉰이편허 유역에서 훈춘 강 유역을 연결하는 작은 길이 나 있는 구릉으로 이어진다(《의정서》, 러시아연방 대외정책 고문서 보관소, 장서분류 『조약집』, 목록 466, 문서번호 905/159, 리스트. 7~10).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는 국경표주 《Π》가 훈춘 강, 암바 강과 그라니트나야 강의 3개 집수구역 합류지점과 일치하는 691.5고지에 위치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 1886년 9월 20일자 《의정서》를 인용하고 있는데, 의정서에는 “국경표주 《Π》는 훈춘 강 및 암바벨리 강 정상과 우샤고우 강(홉투 강)의 지류 사이에 있는 뤽쓰링 분수령

산맥에 설치된다. 동 표주로부터 2개의 작은 길이 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남서쪽 중국의 훈춘으로 이어지며, 다른 하나는 우샤고우 강(홉투강) 계곡으로 이어진다”고 기술되어 있다. 작은 길이 나 있다는 지적은 곧 1866년과 1886년 의정서에 설명된 장소가 현재 국경표주 《Ⅱ》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 대한 설명이지 쉰이편허 유역에서 훈춘 강 유역으로 이동하기에는 기복이 험난한 691.5고지에 대한 설명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해 주고 있다. 연해주 총독, 총참모부 소장 바라노프, 프리아무르주 군관구 측지과장, 총참모부 소장 술긴, 연해주 참모장, 총참모부 대령 클라도, 남 우수리스크 변경주 국경수비대장, 6등관 마투닌과 중국 측 관계자들이 서명한 「국경 도면」에 나타난 국경표주 《Ⅱ》의 위치 또한 동 표주의 현재 위치와 일치한다. 본 지형도에는 1886년 ‘의정서’에 언급되어 있는 작은 길이 표시되어 있다.

본 국경설명서와 「국경 도면」에는 국경표주 《Ⅱ》가 691.5고지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나타나 있지 않다. 이른바 뽀쓰링 산맥의 북쪽 구간은 실제로 훈춘 강과 암바 강 집수구역을 우샤고우 강 발원지(지류)의 집수구역과 분리하며, 난산차허 발원지에서 산두가(Sanduga) 강 발원지까지 펼쳐진다. 만일 (중국 측 주장대로) 1886년 9월 20일자 《의정서》에 집수구역 3곳의 합류지점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면, 구체적인 지류가 명시되거나 집수구역 합류지점의 정확한 위치가 언급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언급이 없고 구체적인 지점도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수령산맥에 ……”라는 표현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광활한 고원으로 이루어진 동 구간은 실제로 3개 유역을 분리하며, 이는 “국경표주 《Ⅱ》는 후비투 강 발원지 부근의 분수령에 설치된다”(1861년 6월 16일자

‘국경설명서’, 러시아연방 외무부 산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 고문서 보관소, 장서분류 《조약집》, 목록 466, 문서번호 883)는 국경표주 《II》의 위치에 대한 설명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 주 발원지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채 다만 표주가 분수령선이 아니라 ‘분수령’에 위치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을 뿐이다.

투르빈(Turbin) 대위가 측정한 국경표주 《II》의 좌표(북위 43도 27분 45초, 동경 148도 42분 05초)는 현재 위치와 맞지 않는다. 현행 지도에 표시된 경도와 투르빈 대위가 측정한 경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당시 러시아 측량국이 그리니치 서경 약 17.5도 상에 위치한 대서양 카나리아 제도 페로 섬의 본초 자오선을 기점으로 측정했기 때문이다. 1861년 ‘국경설명서’에는 국경표주 《II》의 위치가 훈춘 강, 쑤이펀허 유역 및 바다로 유입되는 문구 강 사이의 분수령으로 명시돼 있다. 국경표주 인근의 산맥에서 북서쪽으로는 홉투 강의 남동쪽 상류, 남쪽으로는 훈춘 강의 지류 훈치 강이 흐른다. 따라서 동 ‘국경설명서’(1861년)에는 목제 표주가 결코 691.5고지가 아니라, 포그라니치니 천과 친니바허의 한 지류를 분리하는 안부(鞍部) 경사면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언급돼 있다. 1861년 ‘국경설정 설명서’에 따라 차라리 국경표주 《II》를 홉투 강(우샤고우 강)과 훈춘 강의 분수령 안부로 이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국경표주 《II》가 설치된 구간을 통과하는 국경선을 서쪽, 소베츠키 천과 훈춘 강 발원지(친니바허) 및 난싼차허 발원지를 분리하는 분수령선으로 각각 이전해야 한다. 국경표주 《II》를 691.5고지로 이전하고, 베이징 조약에 의거해 분수령을 따라 국경을 설정할 경우에도 국경선은 훨씬 더 서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 6. 국경표주 《Ⅱ》 구역의 국경선 기술

국경표주 《Ⅱ》는 소베츠키 천과 포그라니치니 천의 발원지를 분리해주는 분수령 고개에 설치돼 있다. 국경표주 《Ⅱ》는 그라니트나야 강 남동쪽 발원지, 친니바허(훈춘 강 발원지) 유역과 난싼차허(우샤고우-그라니트나야 강의 주 발원지) 수역을 분리해 주는 주 분수령에서 방위각 240도 방향으로 1250m, 방위각 180도 방향으로 850m 떨어져 있다. 국경표주 《Ⅱ》의 절대고도는 693.7m이고, 포그라니치니 천 집수구역 바닥으로부터의 상대고도는 33m이다. 포그라니치니 천 최심선 수로 쪽으로의 평균 경사도는 3도이며, 분수령 쪽으로는 1도 미만이다(즉 표면이 거의 수평선과 일치한다). 국경의 주향방위각은 334도이며, 이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 시 북북서 방향에 해당하고, 전체적으로 소베츠키 천 계곡과 일치한다. 이러한 국경선의 주향(走向)은 ‘국경설명서’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국경표주 《Ⅱ》의 위치가 설치 이후 변경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국경표주 《Ⅱ》의 좌표는 북위 43도 28분 30초, 동경 131도 16분 56초이다.

691.5고지는 중국 측에 의해 국경표주 《Ⅱ》가 설치될 장소로 검토되고 있으며, 좌표는 북위 43도 27분 12초, 동경 131도 18분 08초이다. 동 구간의 국경은 주향방위각 345도로 북북서쪽을 통과한다. 691.5고지에서 시작되는 수류의 방위는 주향방위각은 26도로, 즉 북북동쪽을 향하며 이는 ‘국경설명서’와 상치된다. 국경표주 《Ⅱ》는 적색자료목록(The Red Data Book)에 수록된 많은 멸종위기의 수종과 함께 삼나무, 전나무 등 잘 보전된 침엽수림 지대에 설치돼 있다. 국경표주 《Ⅱ》 남서쪽 수십m 지점에 방화선이 구축되어 있고, 그 뒤로 중국 영토에는 심

하게 변형된 이차식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동 방화선은 중국 측에 의해 구축된 것으로 러시아 영토를 500m 정도 침범한 상태이며, 그 면적은 약 90ha에 이른다. 동 방화선이 러시아 영토에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K-52-23-Г 지형도(1983년)에도 나타나 있다. 상기 언급한 러시아 영토는 알 수 없는 이유로 1991년 ‘동부국경협정’ 체결 과정에서 러시아에 반환되지 않았다.

## 7. 결론

1) 동 구간의 러·중 국경선은 1860년 11월 2일자 베이징 조약을 바탕으로 설정되었다. 1861년의 국경설명서와 국경표주 《II》의 현 위치에 관한 별첨 지도는 러·중 공동위원회가 작성했다(1861년 ‘국경설명서’, 1861년 ‘국경설정 설명서’). 국경표주 《II》의 위치, 좌표와 유지상태는 25년 후 재점검되었다(1886년 9월 20일자 ‘의정서’). 동 의정서에서 표주의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고, 목제표주를 석제표주로 교체하기로 하는 결정이 공동으로 채택되었다. 동 의정서에는 러·중 양측의 전권대리인들이 서명·날인한 지형도면이 첨부되었다.

2) 국경선이 드보이노이 천을 따라 691.5고지까지 설정돼야 한다는 중국 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유는 ‘국경설명서’에 후비투 강 정상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

3) 중국인들은 국경선 통과 지점과 국경표주 《II》의 위치에 대해 130년 이상 의혹을 제기한 적이 없으며, 이 문제에 대해 그 어떤 주장도 제기한 적이 없다.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 따라 968ha의 러시아 영토를 중국에 넘겨주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전략적으로도 허용할 수 없다.

4) 러·중 양국 관리들은 ‘조약’(베이징 조약)과 ‘국경설명서’의 기록을

바탕으로 국경표주 《II》의 위치를 현장에서 독자적으로 획정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시행되었다.

#### 8. 문서 작성에 활용된 주요 문서

- 1860년 11월 2일 러시아 황제와 중국 황제 사이에 체결된 베이징 추가 조약(러시아연방 외무부 산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 고문서 보관소, 장서분류 《조약집》, 목록 466, 문서번호 881/457, 1~14쪽)

- 1861년 6월 16일 벨렌허 하구에서 체결된 우수리 변강주(Kray) 국경지도 및 국경설명서 교환에 관한 의정서(러시아연방 외무부 산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 고문서 보관소, 장서분류 《조약집》, 목록 266, 문서번호 882)

- 1860년 11월 2일 체결된 베이징 추가조약 제1, 3조를 바탕으로 작성된 우수리 강에서 해안까지의 러·중 동부지역 국경설명서(러시아연방 외무부 산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 고문서 보관소, 장서분류 《조약집》, 목록 466, 문서번호 883)

- 1861년 우수리 강에서 두만강 하구까지의 러·중 국경표지설명서(러시아연방 외무부 산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 고문서 보관소, 장서분류 《조약집》, 목록 466, 문서번호 884)

- 1886년 9월 20일 노보키예스크에서 체결된 양국 간 국경 정밀조사 대상 제3구간에 관한 의정서(러시아연방 외무부 산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 고문서 보관소, 장서분류 《조약집》, 목록 466, 문서번호 905/159, 13~15쪽)

- 1991년 5월 16일자 소연방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러·중 동부국경협정

## 9. 필요한 추가 문서

-1861년 6월 16일 벨렌허 하구에서 체결된 ‘우수리 강에서 바다까지의 국경지도’

-1964년 서명에 대비하여 작성된 소·중 국경획정선 지도첩(키레예프 러·중 공동국경표지위원회 러시아 측 위원장이 수차례 인용한 자료)

-소·중 국경 단독실사 부처간 특별위원회의 국경표주 《Ⅱ》와 두만강 구간 단독실사 자료(1983~1986년)

-러시아연방 국경수비대 중앙 고문서 보관소, 장서분류 14, 목록 215, 보관 단위 61, 리스트 29~31

-1991년 동부국경협정서, 특히 국경표주 《Ⅱ》와 두만강 관련 내용 작성 시 중국 대표단 통역 속기록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태평양 지리연구소 소장, 지리학 박사 코룻키 교수

## 별첨 4

### 국경표주 《Ⅱ》 설명서

1861년 러·중 간 국경설명서에 따라 1877년 6월 5일 제정러시아 측의 동의에 따라 훈춘 연대장 남기엔이 단독으로 목제 국경표주 《Ⅱ》를 복원했다(러시아연방 국경수비대 중앙 고문서 보관소, 장서분류 14, 목록 215, 보관 단위 61, 리스트 29~31).

그 후 1886년 제3 구간의 양국 간 국경에 대한 정밀실사 후 목제 국경표주 《Ⅱ》는 석제(회색 현무암으로 제작)로 교체되었다.

국경설명서(1886년 9월 20일자 의정서)에 따르면 국경표주 《Ⅱ》는 훈춘 강 및 암바벨리 강 정상과 우샤고우 강(그라니트냐야 강)의 지류 사이에 있는 뤼쓰링 분수령 산맥에 위치한다. 국경은 국경표주 《Ⅱ》에서 북서쪽으로 하천을 따라 우샤고우 강 유입 지점까지 2.5베르스타 130사젠 이어진다.

이어서 국경은 우샤고우 강(홉투 강)을 따라 계속해서 북서쪽으로 중국 측 2개 하천의 우샤고우 강 유입 지점까지 9베르스타 이어진다(모든 기술은 남쪽에서부터 시작된다).

중국인들은 동 구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본의 만주 점령기였던 1941년 7월 18일 일본군 병사들이 국경표주 《Ⅱ》의 남측 면을 만주 방향으로 15도 돌려놓았으며, 1948년 4월 30일 태평양군 사령관의 지시로 국경표주 강화작업이 이루어졌다.

1983~1985년(1985년 6월 9일) 국경선 단독실사 과정에서 부처간 위원회 위원들은 국경표주 《Ⅱ》가 설치된 구역이 각종 조약문과 달리 중국 측에 의해 점령되었음을 밝혀냈다. 국경표주는 중국 쪽으로 45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1965년 중국인들이 구축한 방화선에 설치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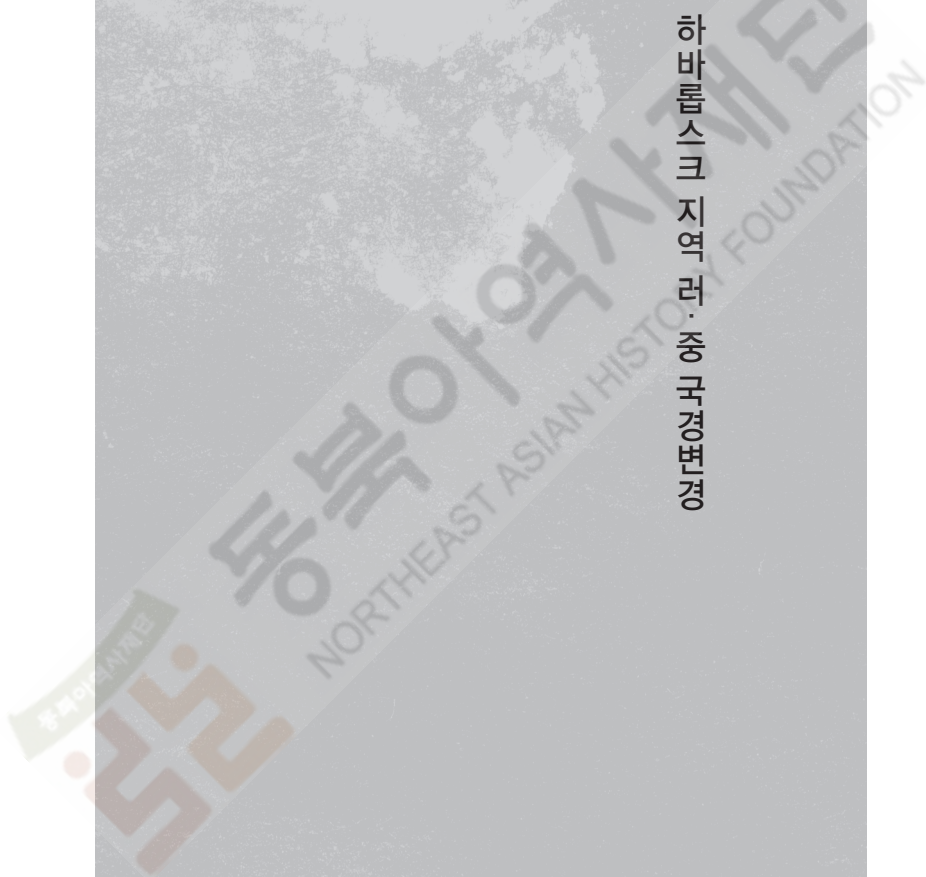
네스테로프(P. Nesterov)

1995년 3월 23일



# 보론

하바롭스크 지역 러·중 국경변경





2004년 10월 14일자 러·중 동부국경 추가협정 이행 결과 하바롭스크 변강주, 하바롭스크구, 아무르 강 우측(남쪽) 지류인 카자케비체보 수로에서 국경이 변경되었다.

1991년 동부국경협정 제3조에 따르면 러·중 양국은 “동 협정 제1조에 따라 양국 간 국경점 《No.7》에서 국경점 《No.8》까지, 그리고 국경점 《No.10》에서 국경점 《No.11》까지의 양국 간 동부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sup>1</sup> 국경점 《No.10》은 아무르 강 주 항로 중심(카자케비체보 수로 발원지 주위)에 있고, 국경점 《No.11》은 우수리 강 주 항로의 중심(우수리 강 하구)에 있다.

2004년 10월 14일자 러·중 동부국경 추가협정 서명과 2005년 5~6월 비준, 승인 및 비준서 교환 이전까지 동 30km(아무르 강 지류 카자케비체보 수로의 발원지에서 우수리 강 하구까지) 구간은 1860년 베이징 조약<sup>2</sup>(정확하게는 베이징 조약 별첨 붉은 선이 표시된 국경지도), 1861년 6월 4일(16일)자 한카 의정서(베이징 조약 추가조항)<sup>3</sup> 및 그 부속서-‘1860년 11월 2일자 베이징 추가조약 제1, 3조를 바탕으로 작성된 1861년 6월 4일(16일)자 우수리 강에서 해안까지의 러시아제국과 대청제국 간 국경 설명서’<sup>4</sup> 및 1886년 7월 2일(14일)자 ‘하바롭스크 의정서’<sup>5</sup>에 의해 관리되었다.

1 1991년 5월 16일자 소·중 동부국경협정 ; 트카첸코(1998), 『17~20세기 러·중 동부국경 조약 및 협정서』, 블라디보스토크 : 극동대학교 출판부, 152~153쪽.

2 트카첸코(1998), 83~86쪽.

3 트카첸코(1998), 86~89쪽.

4 트카첸코(1998), 89~91쪽.

5 트카첸코(1998), 124~125쪽.

그러나 1991년 동부국경협정에서 다루지 않고 미제로 남겨졌던 하바롭스크 관내 우수리 강의 아무르 강 유입 지점 일대 국경선 통과문제는 2004년 동부국경 추가협정 서명 전까지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

1992년 2월 13일 러시아 최고회의 제4차 회의에서 1991년 5월 16일자 동부국경협정 비준 당시 동 협정을 상정한 국제관계위원회 루킨 위원장은 러시아 최고회의 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밝혔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추가 협상 의제가 될 것이다. 아르군강과 하바롭스크 지역에 관한 문제는 상당 부분 우리의 국경과 국익에 관한 문제로, 이에 관한 협상은 국가 주권선언문에 따라 최고회의뿐 아니라 인민대의원대회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본다.<sup>6</sup>

루킨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의 영토변경을 초래하는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국경변경 문제에 대한 심의는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인민대의원대회가 배타적으로 관장한다”고 규정한 당시 발효중이던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헌법의 관련 조항(2부 제104조 제5항)<sup>7</sup>과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영토는 국민 투표를 통한 국민의 의지 표시

6 『러시아연방 최고회의의 4차 회의 속기록』(1992. 2. 13), 공보 No.34, 16쪽.

7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헌법(기본법) 개정 및 증보에 관하여//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법률. 1989년 10월 27일 제11대 러시아연방 최고회의의 11차 회의에서 채택됨.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최고회의의 소식지』(1989. 11. 2), No.44, 1303조, 865쪽.

없이는 변경될 수 없다”고 규정한 1990년 6월 12일자 러시아소비에트 사회주의연방공화국 국가 주권선언문 조항(제8항)에 근거한 것이다.<sup>8</sup>

동 회의에서 1991년 동부국경협정 문제에 관해 발언한 대중 국경문제 협상단 소연방 측 부단장 네슈모프 국경수비대 중장은 이 문제와 관련, 러시아 최고회의 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하바롭스크 인근 볼쇼이우수리스크 섬 및 타라바로프 섬 문제와 아르군강의 볼쇼이 섬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유는 중국 측이 제기한 이들 도서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일면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강점은 첫째, 이들 도서를 현재 우리가 점하고 있고, 둘째, 이들 도서에 대한 영유권 주장 근거가 중국 측에 비해 약하지 않다는 데 있다. 반복하건대 주 원인은 이들 문제를 규정한 문건이 완벽하지 못한 데 있다.<sup>9</sup>

러시아 외무 차관 파노프는 1995년 3월 3일 연방의회 국가두마와 연방회의 국제관계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러·중 동부국경설정 과정에 관한 합동 청문회에서 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밝혔다.

유일하게 국경이 분명한 곳은 카자케비체보 수로이다. 이것은 하바롭스크 인근 볼쇼이우수리스크 섬과 타라바로프 섬에 대한 영유권이 러시아

<sup>8</sup>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국가 주권선언문,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인민대의원대회, 최고회의 소식지』(1990. 6. 14), No.2, 22조, 45쪽.

<sup>9</sup> 『러시아연방 최고회의 4차 회의 속기록』(1992. 2. 13), 공보 No.34, 20쪽.

에 있다는 주장을 가능하게 한다. (중략)

그럼에도 우리는 회담에서 하바롭스크 인근 불쇼이우수리스크 섬과 타라바로프 섬, 그리고 아르군 강의 불쇼이 섬을 지나는 두 국경 구간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당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현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1960년대 말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어떻게든 합의를 통해서 4300km에 달하는 동부국경을 법적으로 획정해야 하는가?’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국 중국 측은 불쇼이우수리스크 섬, 타라바로프 섬, 그리고 불쇼이 섬을 미해결 지역으로 간주하지만, 협정을 채택하는 쪽으로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것은 이들 도서가 우리에게 남게 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변화도 기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점 또한 고려해야 한다.<sup>10</sup>

이 문제는 특별한 검토가 필요하다.

1991년 동부국경협정은 소(러)·중 양국 간 국경선이 국경 하천의 주항로를 통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하바롭스크 지역에 있는 총면적 350km<sup>2</sup>의 불쇼이우수리스크 섬, 타라바로프 섬 등 대규모 2개 도서와 인근 소규모 도서들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는 협상 과정에서 중국 측이 우수리 강이 하바롭스크 시 인근에서 아무르 강에 유입된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아이훈 조약에 의해 “우수리 강 하류까지의 아무르 강 우안은 대청제국(중국)령”으로 결정되고,<sup>11</sup> 베이징 추가조약에 의해 “양국 간 동부국경은 …… 아래로 아

10 『러시아연방 최고회의 4차 회의 속기록』(1992, 2, 13), 공보 No.34, 10·12쪽.

11 트카첸코(1998), 80쪽.

무르 강을 지나 아무르 강과 우수리 강 합류지점까지 이어지며,” 이때 “아무르 강 좌안(북쪽)의 영토는 러시아령으로, 우안(남쪽), 우수리 강 하구까지의 영토는 중국령”으로 결정되고 “[우수리 강과 순가차 강] 동쪽(우안)의 영토는 러시아령으로, 서쪽(좌안)의 영토는 중국령”으로 결정되었다.<sup>12</sup> 따라서 중국 측 주장대로라면, 중국에서 푸위안 델타[서쪽의 카르마(Karma) 곳 인근 현 중국의 푸위안 시에서 동쪽의 하바롭스크 시까지의 아무르 강 주 하상과 삼각형의 남서쪽과 남동쪽 변을 이루는 카자케비체보 수로] 내의 영토는 중국령이 되고, 양국 간 국경선은 수십km 러시아 영토 깊숙이 이동하게 돼 있다.

1991년 동부국경협정 제3조에서 하바롭스크 지역의 일부 ‘영토문제’를 공식화한 것은 단기적 전망에서 볼 때 러·중 양국 관계에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1964년 2월부터 10월까지 베이징에서 있었던 소·중국경회담 중 소연방 외교관들에 의해 검토된 적이 있었다. 당시 소연방은 아무르 강과 우수리 강 수역의 붉은 국경획정선이 항해도에 선명하게 표시된 주 항로를 지나는 선박 통행로와 일치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하면서 중국 측에 일부 영토를 양보할 의향이 있었다. 그러나 하바롭스크 지역의 총면적 350km<sup>2</sup>에 달하는 2개의 큰 섬과 인근 소규모 도서들에 대한 중국 측의 지나친 요구로 국경재설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중국 측 대표단은 아무르 수로의 국경선 문제, 나아가 하바롭스크 지역 도서들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1964년 회담에서 다루지 말고 미제

<sup>12</sup> 트카첸코(1998), 84쪽.

로 남겨 향후 회담에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 문제는 양측 간에 이견이 없거나, 혹은 일정 부분의 영토를 양보함으로써 중국 측과 합의할 수 있는 다른 구간의 국경재설정과 연계하여 일괄타결해야만 했다. 그러지 않으면 후속 회담에서 소연방 측은 350km<sup>2</sup>의 영토에 대한 중국 측의 영유권 주장에 전혀 대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부나마 상호 균형적 기반이 아닌 전면적 혹은 부분적(‘타협적’) 양보를 통한 소연방(러시아) 측의 희생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소연방 측 협상 수석대표 소연방 국경수비대 사령관 지라노프(P. I. Zyryanov) 대장은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우선 카자케비체보 수로 문제를 해결한 후 사전에 조건부로 합의한 다른 지역 국경 문제에 관한 제2, 3, 4차 실무그룹 협정에 서명해야 한다.<sup>13</sup>

이것이 소연방 대표단의 원칙적인 입장이었다. 소연방 대표단은 중국 측이 향후 소연방 측에 제기할 수 있는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없애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라노프가 언급한 바처럼 “중국 대표단은 아무르 강 국경선 수정작업 기간 내내 양국이 합의한 지도에 표기된 붉은 선은 합의된 국경선이 아니며, 개략적이고 불분명하고 바르지 못한 선이라고 완강하게 주장했다.”<sup>14</sup>

13 마스니코프(V. S. Myasnikov)(1997), 「조약문에 의한 확인」, 『17~20세기 러·중 국경외교사』, 하바롭스크, 386쪽.

중국 측의 이러한 입장을 당시 러시아 외교고문-국경수비대 중장 네슈모프와 러시아군 참모본부 중령 골루프의 다음과 같은 주장과 비교해 보자.

조약에는 축척 1 : 1,050,000 지도가 첨부돼 있다. 이 지도의 붉은 국경 획정선은 표시된 경계만을 반영할 뿐 자동적으로 지형에 적용할 수는 없다.

이들은 이어 붉은 선은 “추후 발생한 오해의 원인이 되었다”며, 따라서 조약문이 지도에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sup>14</sup>

그러나 문제는 베이징 조약은 국경선이 카자케비체보 수로를 통과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그러나 베이징 조약 별첨 지도에는 국경선이 카자케비체보 수로를 통과하는 것으로 표시돼 있다. 그런데 1964년 중국 측은 1861년 자신들의 대표단이 서명한 붉은 선이 표시된 이 지도를 문서로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더구나 소연방 외무부는 1991년 이 문제에서 중국 측의 입장을 지지했다. 그들은 영토문제와 같은 중대한 외교문제에서 문서에 근거하지 않고 중국 측의 입장을 옹호함으로써 국익에 해를 끼쳤다. 그 후 러시아 외무부는 고르바초프의 소연방 외교노선을 견지했다.

러시아 외무부 아시아 제1국장 아파나시예프와 외무부 특임대사 키

<sup>14</sup> 마스니코프(1997), 386쪽.

<sup>15</sup> 『러·중 국경 : 문서, 논거, 사실』(1997), 모스크바 : 네자비시마야 가제타 (Nezavisimaya Gazeta), 6쪽.

레예프는 1991년 동부국경협정을 ‘러·중 간 역사적인 문건’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두 곳의 ‘분쟁지역’(하바롭스크 지역과 아르군 강 상류)에 대한 문제를 금번 협정 차원에서 해결하지 않고, 이 두 구간과 나머지 구간에 대한 문제를 분리하여 해결하기로 한 것은 ‘러·중 국경 대부분에 대한 합의방안을 제시한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한다.<sup>16</sup>

1964년의 입장을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영토회담 진행과정에서 심각한 양보를 초래하게 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자신들의 승리로 착각한 러시아 외무부의 심각한 오산인 것이다. 중국 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언제든지 하바롭스크 도서지역 영토문제를 ‘보류’ 상태에서 끄집어 내 1991년 동부국경협정을 근거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결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세기 말 21세기 초 발생한 사건들은 실제로 이와 관련한 최악의 우려를 확인해 주었다.

이 시기에 이미 하바롭스크 일대 국경선 변경 문제에 관한 중국 측의 입장이 강화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 측은 타라바로프 섬과 볼쇼이우수리스크 섬 전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이 지역 영토의 전체 면적은 정확하게 346.4km<sup>2</sup>다.

2000년 초 베이징 당국은 헤이룽장 성 지도부에 특별 훈령을 하달하여 현지 각 부처 관계자들의 국경 지역 활동과 대러 입장을 통제했다. 이를 통해서 러·중 간 합의문건을 포함한 모든 문건에 (현재 러·중 간 국경선이 통과하는) ‘카자케비체보 수로’ 대신 ‘푸위안 수로’라는 문구 사용을 관철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그런데 푸위안 수로는 중국의 내

16 『러·중 국경 : 문서, 논거, 사실』(1997), 10~11쪽.

륙하천으로, 이곳에서의 경제활동이나 기타 모든 활동은 중국 측의 허락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다. 훈령에서 베이징 당국은 만일 러시아 측이 ‘푸위안 수로’라는 문구 사용을 거절할 경우 ‘오늘날의 상황에 따른 일시적 성격임’을 강조하도록 권고했다.

당시 중국 정부의 이 훈령은 적극적으로 이행되었다. 예를 들어 2000년 6월 17일 중국 측의 제안으로 푸위안 시에서 러시아 니즈네스파스크 지역 국경과 중국의 푸위안 지역 국경 관리자들 간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중국 측 단장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5~6월 러시아 측 국경 순시선들이 수차례에 걸쳐 추안허(Tsuanhe) 섬(러시아 지도에는 무명섬으로 표기돼 있으며, 국경선이 통과하는 즈메이카 수로 중국 측 하안에 인접해 있다) 지역 국경을 침범하고, 러시아 병사들이 푸위안 수로(카자케비체보 수로)에서 중국인 어부들을 여러 차례 억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카자케비체보 수로의 영유권과 관련, “중국은 이 수로가 자국의 내륙하천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히고 “러시아 측의 행동은 불법적인 것으로 중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고 안보를 위협하며, 중국 국민의 경제적 이익과 양국 국민들의 전통적 우호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2000년 9~10월 러·중 정부 간 ‘국경하천 아무르 강과 우수리 강의 수중 생물자원 보호, 관리 및 복원 협약’ 준수 여부를 공동 실시하던 중 1992년 이래 러시아 측 어업 보호선에 승선하여 카자케비체보 수로에서 감시활동 중이던 중국 대표단이 처음으로 감시활동을 거부했다.

중국 측의 이러한 행동은 오직 “카자케비체보 수로는 중국령으로 본 협약과 무관하다”는 확신에서 비롯되었다. 아울러 중국 측 어업 보호선에 승선하여 감시활동 중이던 러시아 측 대표단이 수차례에 걸쳐 카

자케비체보 수로의 어로활동을 감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중국인들의 제안으로 러시아 대표단은 푸위안(아무르 강)에서 우수젠(우수리 강)으로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고, 러시아 측 대표단이 타고 있던 중국 측 어업 보호선 또한 그들을 태우지 않은 채 카자케비체보 수로를 따라 우수젠으로 이동했다. 이러한 중국 측의 행동은 “중국의 내륙 하천에서 국제적인 감시활동을 펴서는 안 된다”는 논리에서 비롯되었다. 과거에는 카자케비체보 수로의 공동 감시활동이 일상적인 관행이었으며, 중국 측 또한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

국경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려는 중국 지도부의 변함 없는 의지 및 국가 정책이 2000년 출판된 중국 지도 책(베이징)과 제4판 하이룽장 성 지도 책(하얼빈 지도 출판사)을 통해서 확인된다.

이상이 하바롭스크 시 지역 국경선 변경을 위해 20세기 말 21세기 초 중국 지도부가 취한 조치이다.

동부국경협정 제3조는 “동부국경협정 제1조에 따라” 이 문제에 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규정하고 있으며,<sup>17</sup> 동부국경협정 제1조는 “체약 쌍방은 현행 소·중 국경에 관한 각종 조약을 바탕으로 공인된 국제법 규범과 평등한 협의 및 상호 이해·양보 정신에 따라, 또한 국경 문제에 관한 소·중 협상 결과 이룩한 합의를 기반으로 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역사가 남긴 소·중 간 국경 문제를 해결하고 양국 간 국경선 통과 지점을 수정·확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명시하고 있다.<sup>18</sup>

<sup>17</sup> 트카첸코(1998), 152쪽.

<sup>18</sup> 트카첸코(1998), 14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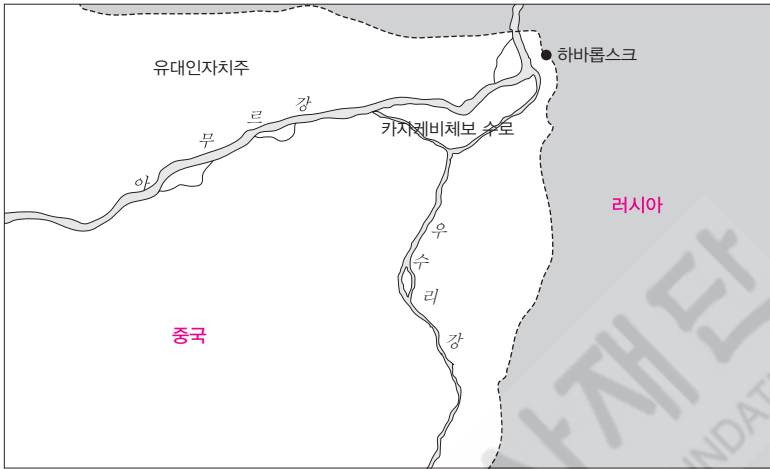


그림 1 아무르 강, 우수리 강 및 카자케비체보 수로의 러·중 국경 도면

동부국경협정 제5조는 “체약 쌍방은 소·중 간 국경선은 항행 가능한 하천의 경우 주 항로를 통과하고, 항행 불가능한 하천의 경우 하천의 중심이나 하천 주 지류의 중심을 통과한다는 데 합의했다. 주 항로와 국경선으로 인정된 주 항로의 중심, 하천, 혹은 그 지류 중심의 정확한 위치와 그에 따른 하천 각 도서의 영유권은 소연방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국경설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주 항로의 폭, 곡선반경과 수심을 주 항로 결정을 위한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주 항로의 중심은 주 항로의 상응하는 두 등심선 사이 수면선의 중심을 의미한다. 하천의 주 지류 결정을 위한 주요 기준은 하천의 평균유량이다”<sup>19</sup>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아무르 강 좌측(북쪽) 지류가 주 지류이다. 수문자료에 따르면

<sup>19</sup> 트카첸코(1998), 153쪽.

60%의 유량은 주 하상으로, 나머지 40%는 아무르스카야 혹은 카자케비체보 수로라 불리는 아무르 강 우측(남쪽) 지류로 흐른다. 그림 1은 아무르 강, 우수리 강 및 카자케비체보(아무르스카야) 수로의 양국 간 국경을 보여준다.

러시아 측이 적당히 타협할 경우 중국 외교관들은 향후 회담에서 우수리 강이 하바롭스크 인근에서 아무르 강에 유입된다는 점을 큰 어려움 없이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중국 측은 아마도 이를 목적으로 카자케비체보 수로를 천수화하기 위해 수로변경 등 일련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바롭스크 영화제작소가 제작하고 1998년 4월 30일 연해 변강주 TV 제2채널을 통해 방영된 시사 프로그램 「동부국경. 국경설정」에서 이샤예프(V. Ishaev) 하바롭스크 변강주 주지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중국 측은 아무르 강에서 비롯되는 카자케비체보 수로 발원지 인근에 모래를 실은 바지선들을 침몰시켰다. 그 결과 카자케비체보 수로는 그 발원지에서 우수리 강 하구까지 퇴사 및 천수화되고 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카자케비체보 수로에 일어난 변화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이와 관련, 『이즈베스티야』지 특파원과과의 대담에서 밝힌 키레예프 대사의 발언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하바롭스크 주민들은 인근 도서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인위적인 천수화 관련 소문은 조작된 것이다. 이곳 수계는 예전 그대로이며, 카자케비체보 수로는 아무르 강의 다른 지류들과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얕아지기도 하고 깊어지기도 한다. 이것은 다만 계절에 따른 자연적인 변화일 뿐이다.<sup>20</sup>

뒤이어 발생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카자케비체보 수로에 대한 중국 측의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났다. 2005년 11월 쑹화 강변 지린(吉林)시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약 100t의 유독성 벤젠이 쑹화 강으로 누출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중국 측은 벤젠이 하바롭스크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다는 구실로 구조물 설치 작업에 대한 러시아 측의 동의를 얻어 카자케비체보 수로 입구에 보를 쌓아 수로의 중국 측 하안과 타라바로프 섬을 연결했다.

10년 전 필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다.

조만간 카자케비체보 수로는 결국 바닥을 드러내 수로의 우안(중국 측)이 좌안(러시아 측)과 맞닿게 되어 더 이상 중국 영토와 러시아령 타라바로프 섬 사이에는 수로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 측은 타라바로프 섬과 볼쇼이우수리스크 섬 지역에 대한 국경 획정회담에서 우수리 강 하구는 하바롭스크시 지역에 있으며, 따라서 이 도서들은 베이징 조약에 따라 당연히 중국령이 돼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을 펴게 될 것이다.<sup>21</sup>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우수리 강 하구의 위치가 하바롭스크 지역, 즉 아무르스카야(카자케비체보) 수로와 아무르 강 합류지점이라는 주장은 향후 전략적·국제정

<sup>20</sup> 사벤코(Yu. Savenko), “러·중 국경엔 도처에 말뚝뿐 ……: 33년간 국경문제에 현신한 키레예프(Kireev)와의 대담”, 『이즈베스티야』(1998. 3. 28), No.57.

<sup>21</sup> 트카첸코(1999), 『러시아-중국: 문서와 사실에 나타난 동부국경』,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 102쪽.



그림 2 하바롭스크 인근 아무르 강과 아무르스카야 수로

치적인 면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그렇게 되면 국경선이 러시아 영토 깊숙이 하바롭스크 쪽으로 40~50km 이동하게 될 것이다. 하바롭스크 지역 대중 국경선은 이 지역 아무르 강변을 따라 설정되어 국경표주가 설치되고, 중국 측 국경수비대원들이 개를 끌고 다니며 국경을 감시하게 될 것이다. 이 지역에서 두 강의 물줄기가 만나 형성된 볼쇼이 우수리스크 섬과 타라바로프 섬 및 수많은 소규모 도서들은 중국 영토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곳 도서 상공에서 민간 항공기 및 군용기가 이착륙 훈련을 해 왔다. 그 밖에 볼쇼이우수리스크 섬에는 아무르 강 철교의 비상시에 대비한 철도 부교가 부설돼 있다. 문제의 도서들이 중국령이 되면 전략적 의미가 큰 아무르 강 철교, 이 지역 시베리아횡단 철도 구간 및 하바롭스크시 등은 상대 측의 군사적 표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지역 도서들의 형성 및 운곽의 변형 과정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자료에 따르면 하바롭스크 지역 아무르 강의 수류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아무르스카야(카자케비체보) 수로 우안의 모래톱이 축적되어 또 다른 하나의 섬이 형성될 수 있다. 이 모래톱은 축적과정이 지속될 경우 아무르 강 철교 쪽으로 이동하여 향후 섬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그림 2는 하바롭스크 인근 아무르 강과 아무르스카야 수로를 보여준다. 아무르 강과 아무르스카야(카자케비체보) 수로의 하상은 매우 불안정하여 끊임없이 혹은 주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내륙 하천의 수문 자료에 따르면 아무르 강 중·하류 지역에서 너비 10~25km 규모의 잦은 범람이 발생한다. 1991년 동부국경협정 제3조의 이행을 위한 중국 측과의 협상 결과 아무르스카야(카자케비체보) 수로와 아무르 강 합류지점으로 결정된 아무르 강 하구의 위치가 약 50년이 지나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아무르 강 철교 밑이나 철교 북쪽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전략적인 의미가 큰 아무르 강 철교 및 아무르 강을 지나는 시베리아횡단철도는 중국 영토에 놓이게 되어 그 결과 많은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 이 경우 우리 후손들은 1991년 5월 16일자 소·중 동부국경협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협정문 작성자와 서명자들의 경솔함과 이적행위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어쨌든 베이징 조약에 서명한 19세기 중반 제정러시아 외교관들은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정책에 입각하여 본 조약을 반(反)국익적으로 ‘수정한’ 1980년대 말의 외교관들과 달리 냉철한 실리적 사고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하바롭스크시 인근 지역의 러·중 국경선은 1860년 베이징 조약(제1조) 및 1858년 톈진 조약 제9조를 이행하기 위해 작성된 베이징 조약 별첨 지도(1861년 서명)에 의해 획정되었다.

특히 베이징 조약 제1조는 지도에 “국경선을 더욱 선명하게 붉은색

으로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22</sup>

하바롭스크 시 지역 아무르 강에서 우수리 강 하구에 이르는 국경선의 위치와 방향이 지도상에 일목요연하게 표시돼 있다. 국경선은 아무르 강의 카르마 곶(중국 푸위안시 인근)에서 카자케비체보 수로를 따라 우수리 강 하구(카자케비체보 마을 인근)까지 이어진다. 이 사실은 러시아어와 만주어로 작성되어 러시아 외무부 산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 고문서 보관소(『조약집』)에 소장된 앞의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우수리 강 하구 문제 및 우수리 강과 아무르 강 합류지점 문제가 회담과정에서 외교적 관심을 끄는 이유이다.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리적·역사적 정보를 동원해야 한다.

우리의 관심사인 우수리 강 하구에 관한 소연방 기상청의 공식자료에 따르면 “우수리 강은 카자케비체보 마을 인근에서 아무르 강 지류 중 하나인 카자케비체보 수로(이하 ‘아무르스카야 수로’)로 유입된다. 순가차 강의 유입 지점에서 우수리 강 하구까지는 대중(對中) 국경 하천이다.”<sup>23</sup>

이 공식자료는 아무르스카야 수로와 우수리 강의 특징을 보여 준다. 이 자료의 <표 2> 설명서 No.5140에 따르면 아무르스카야 수로의 발원지는 니즈네스파스크 마을 위 9.5km 지점의 아무르 강이다.<sup>24</sup> 또한 <표 2> No.5140에 따르면 총연장 70km인 아무르스카야 수로는 아무르 강 우측 지류로, 강 하구로부터 966km 지점에서 아무르 강에 유입되며 각각의 길

22 트카첸코(1999), 102쪽.

23 『소연방 지표수자원』(1972) 제18권, 극동, No.3, 프리모리에, 레닌그라드 : Gidrometeoizdast, 310쪽.

24 『소연방 지표수자원』(1966) 제18권, 극동, No.1, 아무르, 레닌그라드 : Gidrometeoizdast, 245쪽.

이가 10km 미만인 가운데 총연장 65km의 33개 지류가 동 수로에 유입된다.<sup>25</sup> <표 2> No.5142에 따르면 우수리 강은 아무르스카야 수로의 우측 지류로 강 하구로부터 39km 지점에서 아무르스카야 수로에 유입되며, 수류의 총연장은 588km이다.<sup>26</sup> 또한 <표 2>의 No.5142에서는 우수리 강이 아무르스카야 수로에 유입되는 지점을 우수리 강 하구로 보고 있다.<sup>27</sup>

공식자료를 볼 때 아무르 강 우측(남쪽) 지류는 아무르스카야 혹은 카자케비체보 수로로 불리는 반면에 그 발원지(아무르 강)로부터 우수리 강 하구까지의 수로(카자케비체보 마을 인근, 우수리 강이 아무르 강 우측 지류로 유입되는 지점)는 카자케비체보 수로라 불리고, 그 아래 우수리 강 하구로부터 아무르 강 우측 지류와 아무르 강이 합류하는 지점까지의 수로(하바롭스크시 지역 대부분의 아무르 강 유역)는 아무르스카야 수로라 불린다.

유량은 카자케비체보 마을 인근에서 아무르 강 지류(아무르스카야 수로)와 우수리 강이 합류함으로써 증가한다. 그 결과 카자케비체보 마을에서 하바롭스크시까지의 구간에서 물의 흐름이 거세진다. 더구나 카자케비체보 수로(카자케비체보 마을 인근, 그 발원지로부터 우수리 강 하구까지)의 수리적 특성으로 볼 때 우수리 강의 유량이 더해지면 이 구간의 강물은 역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리 강의 유량은 2개의 지류(서쪽 지류와 동쪽 지류)로 나뉘어 아무르 강에 유입된다.

25 『소연방 지표수자원』(1966) 제18권, 168쪽.

26 『소연방 지표수자원』(1966) 제18권, 168쪽.

27 『소연방 지표수자원』(1966) 제18권, 245쪽.

이 지역에는 두 강줄기가 합류하여 우수리 강 하구 정반대편의 불쇼이우수리스크 섬을 비롯한 크고 작은 많은 도서가 형성되었다. 도서들이 꾸준히 형성되고 있으며, 그 윤곽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1987년 트카첸코 역사학 박사가 밝혀낸 다음과 같은 역사·지리적 사실은 아무르스카야 수로의 수계가 매우 불안정함을 지적해 준다.<sup>28</sup>

소연방 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역사학·고고학·민속학연구소 도서관 동양장서 코너에 중국 학자 치자오난[齊召南]의 연구서 『수이다오티강』(水道提綱:수로 해설서, 1776)이 소장돼 있다.

본 연구서 25장 ‘아무르 강에 유입되는 커루론히, 쑹화 강, 닌 강, 우수리 강’에는 아무르 강과 우수리 강 합류지점에 대해 설명돼 있다. 필자에 따르면 우수리 강은 아무르 강에 2개의 지류로 나뉘어 유입된다. 서쪽의 주 지류는 아무르 강으로 유입되고, 인근 동쪽 지류는 북동쪽으로 흘러 아무르 강물과 합류한다.

이처럼 18세기 중국의 학자는 우수리 강 서쪽 지류(현 카자케비체보 수로)를 우수리 강의 주 하상으로 언급하고 있다. 물론 1858년 5월 아이훈 조약문을 작성할 때, 1859년 부도고스키 대령이 이끄는 지형탐사대가 국경표지를 설치할 때, 1860년 베이징 조약문을 작성할 때에도 러·중 국경선은 서쪽 수로를 따라 획정되었다. 이는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국경을 표시할 때 우수리 강 서쪽 지류, 즉 카자케비체보 수로가 주 경계선으로 인정된 것이다. 카자케비체보 수로를 지나는 하천국경이 현재

28 크루샤노프(A. I. Krushanov)·솔로비요프(F. V. Solovyov)·트카첸코(G. I. Tkachenko)(1987), 「하바롭스크 지역 러·중 간 국경획정 전 ‘우수리 강 하구’의 중국 측 개념에 대하여」, 『태평양 지도』 No.8, 블라디보스토크, 45~46쪽.

까지도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간 각종 협정에도 부합한다.

끊임없이 혹은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아무르 강, 아무르스카야 수로와 우수리 강의 수계는 1860~1861년 획정된 이 지역 국경 하천의 러·중 국경과 결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러시아 외교관들 또한 러시아의 국익과 양국 간 국경의 견고함을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앞에서 언급한 역사·지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230년 전에 현 카자케비체보 수로(카르마 곳에서 우수리 강 하구까지)를 따라 강물이 역류했으며, 중국인들은 이 서북쪽 하상을 현 우수리 강 하구로부터 현재 하바롭스크 시가 위치한 지역까지의 동북쪽 지류에 맞서 우수리 강의 주 하상이라 불렀다.

인접국 간 국경 하천의 국경설정에 필요한 국제협약에 규정된 보편적인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스테파노프(E. D. Stepanov)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국경 하천과 관련, 1919년 파리 강화회의 후 인접국들은 국경을 설정함에 있어 관례적으로 항행 불가능한 하천의 국경은 하상의 중심을 통과하고, 항행 가능한 하천의 국경은 주 지류의 중심을 통과하는 것으로 합의하게 되었다.<sup>29</sup>

플로트니코프(A. Yu. Plotnikov) 또한 동일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

<sup>29</sup> 스테파노프(E. D. Stepanov)(2007), 『정치는 국경에서 시작된다. 20세기 하반기 대중 국경문제』, 모스크바 :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16쪽.

이 주장한다.

국제법과 관련해 항행 불가능한 하천의 중심이나 혹은 항행 가능한 하천의 주 항로를 따라 수로국경을 획정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안으로서 권고적인 것이며, 결코 강제력을 갖지 않는다. 모든 문제는 양측 간 합의에 따라 해결하며, 그에 따라 국경선도 결정된다.<sup>30</sup>

이 경우는 조약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일반 국제법 규범에 관한 것이다. 일반 규범은 국제법의 원천으로 그 기저에는 모든 국가 혹은 일부 국가가 인정하는 국제 관례가 있으며, 이는 특정 행동 양식 혹은 행동을 자제함으로써 표현된다.

국제법(이 경우 국제 관례)은 항행 불가능한 하천의 중심 혹은 항행 가능한 하천의 주 항로를 따라 국경을 획정하는 데 있어 합목적성만을 규정할 뿐 절대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 관련 당사국들은 구체적인 국경 통과 지점을 조약에 명시함으로써 별도의 합의를 이룰 수도 있다. 러·중 양국의 비준 후 체약 당사국들에 대해 법적 효력을 갖게 된 1860년 베이징 조약은 다른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수십 년 동안에 걸쳐 개정된 국제법(이 경우 국제 관례)은 소급력이 없다. 즉 개정된 국제법이 19세기 국제협약에 강제 적용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경 하천의 국경획정을 위한 우선적인 조건은 국제조약(체약 당사자 간 협정)의 조항에 따른다. 이것은 그로티우스(H. Grotius)<sup>31</sup>와 오펜하임

---

<sup>30</sup> 플로트니코프(A. Yu. Plotnikov)(2007), 『18~20세기 상반기 러시아 극동지역 국경. 러시아의 극동진출 250년』, 모스크바: KomKniga, 166쪽.

(L. Oppenheim)<sup>32</sup>의 주장에 근거한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빈 협정(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은 국제법의 원천으로서의 조약의 점증하는 중요성을 인정하고, “약속은 준수되어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규범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에 유의하며, “관습국제법의 제 규칙은 동 협정의 제 조항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제 문제를 계속 규율할 것”을 확인함으로써<sup>33</sup> 국제관계에 있어 국제관례에 대해 조약 우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빈 협정 제26조(‘약속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유효한 모든 조약은 그 당사국을 구속하며, 또한 당사국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sup>34</sup>

자연적 요인은 변동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항행 가능한 국경 하천의 주 항로를 국경획정의 합리적 기준으로 정한 현대 국제법의 빈약한 근거에 따르면 자연의 지구·물리학적 요인의 변화에 따라 국경선의 재검토 요인이 발생한다. 자연적인 수로국경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면 국경분쟁, 영유권 주장 등 분쟁의 씨앗이 발생한다. 그래서 정확한 측량을 통해서 얻은 국경선의 좌표기록이 더욱 인정을 받게 된다. 이것이 곧 항행 가능한 하천의 주 항로와 항행 불가능한 하천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한 국경획정 원칙을 버리고 위도와 경도가 분, 도까지 정확하

31 그로치(G. Grosz)(1994),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모스크바 : Ladomir, 224쪽.

32 오펜하임(L. Oppenheim)(1949), 『국제법』 1권, 모스크바 : Inostrannaya literatura, 105쪽.

33 『국제법. 문서집』(2000), 모스크바 : Yuridicheskaya Literatura, 78쪽.

34 『국제법. 문서집』(2000), 86쪽.

게 표기된 좌표를 이용하여 국경점을 정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렇게 되면 국경선을 체계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도 없을 것이고, 아울러 국경선 변경 및 재검토에 따른 분쟁의 씨앗 또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우수리 강 하구는 카자케비체보 마을 인근에 있다. 반면에 총연장 70km의 아무르스카야 수로는 니즈네스파스크 마을 위 아무르 강에서 발원하여 하바롭스크시 인근에서 다시 아무르 강에 유입되며, 이 과정에서 우수리 강의 합류로 물의 흐름이 거세진다.

국경 하천 우수리 강은 카자케비체보 마을(예전의 카자크 마을) 인근에서 끝난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우수리 강 하구는 지도상에 철자 《E》로 선명하게 표시되었고, 1861년 국경표지작업 중 카자케비체보 카자크 마을 맞은편 우수리 강 좌안(중국 측)에는 목제 국경표주 《E》가 설치되었다.

우수리 강 하구(좌안, 중국 측 하안)에 국경표주 《E》를 설치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이는 우수리 강 하구의 위치가 베이징 조약 서명 당시의 해석처럼 우수리 강과 아무르 강 우측(남쪽) 지류인 카자케비체보 수로와의 합류지점 주위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우수리 강에서 해안까지의 양 제국 간 국경설명서’에 기록돼 있다.

우수리 강 하구에 대해 위에 언급한 ‘국경설명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베이징 조약 제1조는 문자 그대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우수리 강 하구에서 한카호까지의 국경선은 우수리 강과 순가차 강을 통과한다. 동 조약 제3조는 즉각 시행된다. …… 이들 하천에는 지반이 견고한 우수리 강 하구와 순가차 강 발원지 좌안의 국경표주 《E》 및 《I》 외에 다른

국경표주는 설치하지 않는다.<sup>35</sup>

러시아 외무부 제정러시아 대외정책 고문서 보관소의 자료에 따르면 “국경실사 후 중국 측 국경획정 전권대표들은 러시아 측 전권대표들에게 우수리 강 하구의 국경이 정확하게 설정되었다”<sup>36</sup>고 서면 통지했다.

국경표주 《E》의 위치는 현 하바롭스크 시 남동쪽 50km 지점 우수리 강 하구, 즉 우수리 강이 아무르스카야 수로에 유입되는 지점이었다. 좌표는 북위 48도 16분 20초, 동경 152도 37분이었다.<sup>37</sup> 경도는 당시 러시아 측량국에서 통용되던 자오선 측정방법에 따라 그리니치 서경 약 17.5도 상에 위치한 대서양 카나리아 제도 페로 섬의 본초 자오선을 기점으로 측정되었다.

이같이 상세하고 면밀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1860년 베이징 조약에 첨부된 국경지도상에 표시된 붉은 선이 카자케비체보 수로(카르마 곶 혹은 중국의 푸위안 시에서 국경표주 《E》가 설치된 우수리 강 하구까지)를 통과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국경이 이 지역을 통과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사실은 볼쇼이우수리스크 섬과 타라바로프 섬, 그리고 이들 주변의 작은 도서들이 중국령이 아닌 러시아령이라는 점을 입증해 준다.

필자는 1996년 4월 열린 대통령의 방중 직전 연해 변경주 두마 의

<sup>35</sup> 트카첸코(1998), 89~90쪽.

<sup>36</sup> 『러·청 국경 형성』(1970) 2책, 모스크바, 353쪽.

<sup>37</sup> 렵킨(G. Levkin), “중국인들이 하바롭스크인들 틈 밑에서 수영을 하고 싶어한다 혹은 《우수리 강 하구 문제에 대하여》” Dalnevostochny uchyeny, 『블라디보스토크』(1995. 6. 12), No.12, 8~9쪽.

장 베데르니코프(V. Vedernikov)와 함께 러시아 외무부 관리와의 회담에 참석할 수 있었다. 회담 중 외무부 관리는 회담 참가자들에게 1860년 베이징 조약 별첨 붉은 선이 표시된 실물 크기의 지도 사본을 배포했다. 이 지도 사본은 컬러 프린팅된 것으로, 지도로서 갖춰야 할 모든 특성을 갖추고 있었다.

이 지도는 러시아어와 만주어로 각각 2부씩 작성되었다. 갈레오노비치(Yu. M. Galeonovich,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모스크바)에 따르면 중국 측 만주어본은 다른 여러 가지 역사적·법적 외교문건과 함께 청조 멸망 후 1912년 선포된 중화민국의 타이베이로 반출되었다. 이와 관련해 1997년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동방학 연구소에서 개최된 중국 통일 문제에 관한 학술회의에서 타이베이 출신 학자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중국은 관련 고문서들이 타이완으로 반출되어 협상에 필요한 법적 문서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 러시아 측과 협상을 할 수 없다. 베이징 당국이 타이완 측에 이 문건들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sup>38</sup>

이 지도를 알고 있는 필자는 다음과 같이 입증할 수 있다. 이 지도상에 나타나 있는 러·중 간 동부국경은 붉은 잉크로 그려진 가늘고 붉은 선에 의해 매우 명확하고 분명하게 표시돼 있다. 국경선은 실카 강과

---

<sup>38</sup> 갈레오노비치(Yu. M. Galeonovich)(2002), 『모스크바-베이징, 모스크바-타이베이』, 모스크바 : Izografus, 620쪽.

아르군 강 합류 지점의 아무르 강 발원지에서 사실상 아무르 강 전 구간에 걸쳐 위도 방향으로 강 남안(중국 측)을 따라 이어지며, 나아가 남동쪽으로 돌아 카자케비체보 수로 중국 측 하안을 따라 우수리 강 하구에 이르고, 이어서 남쪽으로 돌아 우수리 강 중국 측 하안을 따라 이어진다. 그 후 순가차 강 중국 측 하안을 따라 한카호에서 비롯되는 순가차 강 발원지까지 이어지며, 이어서 위도 방향으로 한카호를 따라 이어지고, 그 후 남쪽으로 연해 변강주 육로 국경으로 이어진다.

위에 언급한 지도에는 제정러시아와 대청제국 전권대표들의 서명 및 양국 정부의 국새가 날인돼 있다. 따라서 붉은 선이 표시된 1860년 베이징 조약 별첨 지도는 국경 하천을 통과하는 국경선에 대한 명백한 문건임을 입증해 준다.

궁극적으로 1860년 베이징 조약과 별첨 지도에 따르면 볼쇼이우스리스크 섬과 타라바로프 섬, 그리고 하바롭스크 지역의 삼각형 ‘카자케비체보 수로(수로의 발원지에서 카자케비체보 마을 인근 우수리 강 하구까지)~아무르스카야 수로(우수리 강 하구에서 하바롭스크까지)~아무르 강(카자케비체보 수로의 발원지에서 하바롭스크 인근 카자케비체보 수로의 아무르 강 유입지점까지)’ 내에 있는 이들 섬 주변의 작은 도서들은 러시아령인 것이다.

카자케비체보 마을에서 하바롭스크 구간의 아무르스카야 수로는 국경 하천이 아니다. 이유는 베이징 조약과 조약의 주요 일부인 별첨 국경지도(국경선을 더욱 선명하게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그 방향을 러시아어 철자 A~Y로 표기했음)에 서명하고, 국경선과 각 국경표주의 위치를 표시한 정밀 지형도가 첨부된 ‘국경설명서’를 작성했던 1860~1861년에 그렇게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당시에 또한 베이징 조약 제1조는 “국경표지 설치 후 양국 간 국경선은 영원히 변경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제15조는 베이징 조약 각 조항의 “항구적이고 신성한 이행”을 규정하고 있다.<sup>39</sup> 조약은 당시 합당한 절차에 의해 비준되었다.

1886년 하바롭카(현 하바롭스크) 시에서 국경재설정(즉 이미 설정된 국경선을 점검하고, 훼손된 국경표지를 복원하거나 교체하는 작업) 당시 1886년 7월 14일자 하바롭스크 의정서가 작성되었다. 하바롭스크 의정서는 ‘완전히 파손된 형태’로 카자케비체보 마을 위 우수리 강 좌안에 서 있던 목제 국경표주 《E》를 같은 장소에 석제 국경표주로 교체하되 구 목제표주와 동일하게 방향을 틀어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국경표주 교체작업은 1886년 7월 9일 러·중 공동위원회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의정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우리(제정러시아) 측의 참관하에 교체작업을 착수, 시행, 완료했다.”<sup>40</sup> 하바롭스크 의정서는 각 측에서 5명씩 총 10명의 러·중 공동위원회 위원들에 의해 서명되었다.

그러나 1906년 중국 측은 하바롭스크 지역 군도에 대한 영유권과 하바롭스크를 지나는 러시아 내륙하천에 대한 중국 선박의 항행권을 처음으로 선언했다. 중국 측은 1917년 제정러시아에 발생한 두 차례의 혁명 후 내전과 극동지역에 대한 외세간섭 등으로 러시아의 세력이 약화된 틈을 타 국경표주 《E》를 제거해 버렸다. 아마도 이 국경표주가 누군가에게 매우 큰 장애가 된 듯했다. 특히 향후 하바롭스크 지역 국경감시에 방해가 되는 듯했다. 이와 관련해 이미 1918년 중국 측 국경수

<sup>39</sup> 트카첸코(1998), 85~86쪽.

<sup>40</sup> 트카첸코(1998), 125쪽.

비 당국은 볼쇼이우수리스크 섬과 타라바로프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편 1919년 1월 백위군 당국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국경표주 《E》를 하바롭스크 맞은편, 즉 우수리 강 하구에 설치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러시아 국경수비대는 1919년 국경표주 《E》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1919년 1월 8일 유즈노우수리스크 변경주 국경수비대장은 베이징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중국 측에 의한 국경표주 《E》의 제거 사실을 통보했으며, 중국 측에 이에 대한 서면 항의서를 전달했다.<sup>41</sup>

위의 모든 문건은 러시아 대외정책 고문서 보관소에 소장돼 있다. “소련방과 러시아 외무부의 누구에게, 왜 하바롭스크의 텅 빈 곳에 ‘영토문제’를 야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2004년 10월 14일 러시아 푸틴(V. V. Putin) 대통령의 방중 기간 중 러시아와 중화인민공화국 간 동부국경 추가협정이 서명되었다.<sup>42</sup> 협정서에는 랍로프(S. Lavrov) 러시아 외무장관과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외교부장이 서명했다. 그 밖에 ‘러·중 선박의 타라바로프 섬과 볼쇼이우수리스크 섬 인근 수역 항행에 관한 양국 정부 간 의정서’, ‘국경 도서 공동이용에 관한 정부 간 협정 부속서’, ‘현행 협정의 신규 국경획정구간 적용에 대한 러·중 정부 간 양해각서’ 등이 서명되었다.

동부국경 추가협정에 따라 러·중 간 국경은 하바롭스크 지역과 아무르 강 우측(남쪽) 지류인 카자케비체보 수로에서 변경되어야 했다.

<sup>41</sup> 마스니코프(1997), 380쪽.

<sup>42</sup> 「러시아연방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동부국경 추가협정」, 『국제조약집』(2005), Ofitsialnoye Izdanie, No.11, 76~79쪽.

그러나 러·중 간 동부국경 추가협정과 국경 문제에 관한 세 가지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바롭스크와 극동지역 주민, 러시아 국민 등 여론에는 전혀 통보되지 않았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동부국경 추가협정에 따라 타라바로프 섬과 볼쇼이우수리스크 섬 등 두 개의 대규모 섬을 포함한 하바롭스크 지역 군도 350km<sup>2</sup> 중 거의 전부에 가까운 337km<sup>2</sup>의 러시아 영토가 중국에 넘어가도록 돼 있었다.<sup>43</sup>

2005년 5월 20일 동부국경 추가협정은 러시아 국가두마에서 찬성 307표, 반대 80표, 기권 2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비준되어 5월 23일 러시아 연방회의에서 승인되었다. 이어 5월 31일 동 협정 비준법안이 러시아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고(2005년 5월 31일자 연방법안 No.52-Φ3),<sup>44</sup> 6월 2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중 간 비준서가 교환됨으로써 동부국경 추가협정은 발효되었다.

하바롭스크 인근 타라바로프 섬과 볼쇼이우수리스크 섬의 국경설정 작업이 2008년 7월 완료되고, 2008년 7월 21일 베이징에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부장이 아무르 강 국경 설정에 관한 '러·중 동부국경 추가 서술-협의서'에 서명했다. 이어서 2004년 10월 14일자 러시아와 중화인민공화국 간 동부국경 추가협정

<sup>43</sup> 스베틀로바(L. Svetlova)·미로시니코프(I. Miroshnikov)(2004. 10. 16), “러시아가 중국에 섬 1개 반을 양도한다. 하바롭스크 변경주 면적이 337km<sup>2</sup> 줄게 될 것이다”, 『콤포스카야 프라우다』; 압첸코(V. Avchenko)·오스트롭스키(A. Ostrovsky)(2004. 10. 19), “우리에겐 러시아 측 안이 필요없다”, 『블라디보스토크』.

<sup>44</sup> 「러시아연방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동부국경 추가협정 비준에 관한 연방법」, 『국제조약집』, Ofitsialnoye Izdanie(2005), No.7, 80쪽.

에 따라 재설정된 국경 추가 서술-협약서는 2008년 8월 초 베이징에서 교환되었으며, 2008년 10월 14일 양국 공식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하바롭스크 인근에 국경표주를 설치함으로써 양국 간 국경설정이 완료되었다.

하바롭스크 지역 군도를 양보하면 러시아는 무엇을 잃게 되는가? 러시아 외무차관 알렉세예프(A. A. Alekseev)는 연방의회 국가두마 의원 즈다카예프(I. A. Zhdakaev)에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항행 가능한 하천 아무르 강과 우수리 강 분할 기준으로 국제법적으로 인정된 주 항로의 중심이 채택되었다. 하바롭스크 인근 군도 수역을 흐르는 아무르 강과 우수리 강의 주 항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경선은 동부국경 추가협정에 따라 아무르 강 주 항로 중심에서 볼쇼이우수리스크 섬을 지나 우수리 강 하구까지 획정된 가운데 볼쇼이 우수리스크 섬 중 러시아인들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성(聖) 빅토르 순교자 사원을 포함한 우리의 주 활동 지역이 러시아 측에 남게 된다. 러시아 측의 또 다른 우려도 고려되었다. 이와 같이 관내 도서지역에 대한 공동 분할이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러시아 국가두마 안보위원장 바실리에프(V. A. Vasiliev)는 ‘인민의지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모로조프(V. V. Morozov)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국경이 수면뿐 아니라 섬을 가로질러 육로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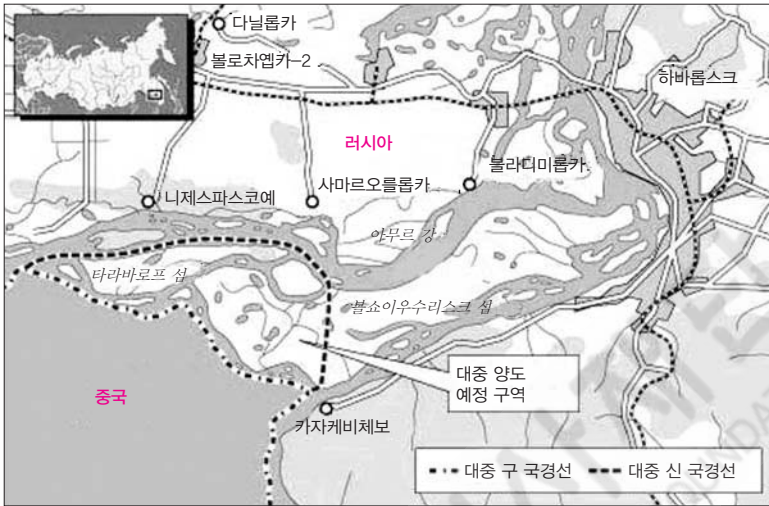


그림 3 하바롭스크 지역 군도 최적 분할 방안



그림 4 하바롭스크 지역 군도 분할 방안 2안

이어진다는 것뿐이며, 분쟁지역(약 370km<sup>2</sup>)의 영토가 반씩 분할되어 러시아는 예부터 현지 주민들이 점하고 있는 전 구역을 남김 없이 갖게 된다.

예로 든 정부 공식 인사들의 답변이 외형적으로는 매우 합리적이고 문제가 없을 듯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알렉세예프 차관의 답변 중 ‘볼쇼이우수리스크 섬을 지나 우수리 강 하구까지’ 이어지는 국경선의 출발지점인 ‘주 향로의 중심’이라는 표현이 매우 불분명하다. 그렇다면 그 지점은 볼쇼이우수리스크 섬 북쪽 아무르 강 전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며, 이 길이는 약 30km에 이른다.

하바롭스크 인근 군도 분할도가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서 유포되고 있다.<sup>45</sup> 이에 따르면 새로운 국경선은 카자케비체보 마을에서 정북 방향으로 볼쇼이우수리스크 섬을 가로질러 섬의 서부 지역을 중국 측에 양도하게 된다(그림 3).

또 다른 분할도에 따르면<sup>46</sup> 하바롭스크 주민들의 다차(Dacha) 촌이 위치한 아무르 강둑 맞은편 섬 동부 지역 하안 가장자리만 러시아령으로 남게 된다(그림 4). 게다가 사실상 모든 출판물에 중국에 양도하게 될 영토의 면적이 337km<sup>2</sup>로 언급되고 있다. 만일 다양한 자료에 따른 군도의 면적이 350~370km<sup>2</sup>라면 두 번째 분할도가 사실과 일치하는 것이다. 즉 (바실리에프가 답변 중 밝힌) 군도의 절반(175~185km<sup>2</sup>)이 아닌 거의 전부(337km<sup>2</sup>)가 중국 측에 넘어가게 된다. 공식 답변조차 사실

45 스페틀로바·미로시니코프(2004), 앞의 글.

46 압첸코·오스트롭스키(2004), 앞의 글.

과 맞지 않는 모순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러·중 국경문제 전문가 이와시타(A. Iwasita) 또한 이 같은 상황에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3개 도서에 관한 정보는 엄격하게 통제되었으며, 정확한 정보는 지금까지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일부 자료 중 주목을 끄는 것은 2004년 10월 16일자 『콤포스몰스카야 프라우다』지와 2004년 11월 1일자 『콤포메르산트-블라스티』지의 기사이다. 이 두 기사는 중국에 337km<sup>2</sup>가 양도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콤포스몰스카야 프라우다』지와 『콤포메르산트-블라스티』지 모두 타라바로프 섬이 중국에 넘어가는 것으로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두 기사에 첨부된 볼쇼이우수리스크 섬 관련 지도는 상이하다. 타라바로프 섬 양도 사실은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진술로 확인되었지만, 두 기사에 인용된 수치의 신뢰도는 높지 않다. 만일 중국에 337km<sup>2</sup>가 넘어간다면 볼쇼이우수리스크 섬과 타라바로프 섬의 총 면적을 고려할 때 러시아에는 사실상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171km<sup>2</sup>를 얻게 되고, 러시아에는 164km<sup>2</sup>가 남게 되었다. 만일 ‘50대 50’ 원칙에 따른다면 이 수치는 비록 두 개 도서의 총 면적과는 차이가 있지만 사실에 근접한다(중국도 정보를 통제한다. 따라서 중국 측 연구자들 중 누구도 정확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sup>47</sup>

하바롭스크 지역 러·중 국경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2007년 8월 22일 ‘블라고베센스크 43채널’에서 방영된 ‘페테르부르크 5채널’

<sup>47</sup> 이와시타(A. Iwasita)(2006), 「문제의 4000km」, 『러·중 국경』(일본어 번역문), 모스크바 : ACT : Vostok-Zapad, 53~54쪽.

방송국 리포트 「대중 국경설정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다음은 리포트의 일부이다.

아무르 강의 불쇼이우수리스크 섬과 타라바로프 섬에 새로운 국경이 설정되어 거의 300km<sup>2</sup>의 영토가 중국 관할로 양도된다. 국경수비대는 새로운 분계선을 설치하고, 농민들은 드넓은 대지로 건초와 농기계를 실어내고 있다. 농장 지배인 페투호프(L. Petukhov)에 따르면 자신의 초원에 세워진 경계표지가 11개에 이른다. 경계표지는 러·중 국경설정위원회 관계자들이 설치했다. 국영 농장기업 ‘자랴’의 지배인 페투호프에 따르면 ‘나머지 불쇼이우수리스크 섬과 타라바로프 섬이 전체 면적의 15%만 남고 모두 중국에 넘어갔다. 우리 농장의 경우 건초 밭에서만 1300ha의 면적을 잃었다. 이 두 섬에서는 변강주 최상품의 건초와 옥수수를 수확해 왔기 때문에 농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 이제 마지막 수확을 하면서 장비를 철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국경수비대는 이미 러·중 육로국경 설정에 착수했다. 우수리 강 하구에서 아무르 강 하안에 이르기까지 우수리스크 섬 전 구간에 걸쳐 철책과 출입금지구역이 설치되었다.<sup>48</sup>

2004년 추가협정에 따르면<sup>49</sup> 1991년 5월 16일자 소·중 동부국경협정 제2조에 설명되어 있는 국경점 《No.10》에서 국경점 《No.11》까지의 러·중 국경선은 다음 구간을 통과한다.

국경선은 아무르 강 주 항로 중심에 위치한 국경점 《No.10》으로부터 대

<sup>48</sup> 대중 국경 설정-농민들의 고통. [www.5-tv.ru/news/5581/](http://www.5-tv.ru/news/5581/) 참조.

<sup>49</sup> 국제조약집(2005), Ofitsialny Izdanie, No.11.

체로 동쪽 방향으로 주 항로 중심을 따라 강 아래로 이어져 아무르 강 주 항로 중심선과 국경점 《No.10/2》로부터 하안에서 수직으로 이어지는 선의 교차점에 설치돼 있는 국경점 《No.10/1》에 도달한다. 국경선은 다시 국경점 《No.10/1》로부터 위에서 언급한 수직선을 따라 남쪽 방향으로 국경점 《No.10/2》(대략적인 직교좌표 :  $x=5\ 358\ 650$ ,  $y=23\ 482\ 570$ )에 도달한다. 동 국경점은 불쇼이우수리스크 섬에 설치돼 있다. 국경선은 다시 국경점 《No.10/2》에서 직선으로 남남동쪽으로 불쇼이우수리스크 섬을 따라 국경점 《No.10/3》(대략적인 직교좌표 :  $x=5\ 358\ 300$ ,  $y=23\ 482\ 740$ )에 이른다. 국경선은 국경점 《No.10/3》에서 직선으로 남남서쪽으로 불쇼이우수리스크 섬을 따라 국경점 《No.10/4》(대략적인 직교좌표 :  $x=5\ 349\ 820$ ,  $y=23\ 479\ 010$ )에 도달한다. 국경점 《No.10/4》를 출발한 국경선은 직선으로 남동쪽으로 불쇼이우수리스크 섬을 따라 국경점 《No.10/5》(대략적인 직교좌표 :  $x=5\ 349\ 790$ ,  $y=23\ 479\ 040$ )에 이른다. 국경선은 다시 국경점 《No.10/5》에서 직선으로 남동쪽으로 불쇼이우수리스크 섬을 따라 국경점 《No.10/6》(대략적인 직교좌표 :  $x=5\ 349\ 650$ ,  $y=23\ 479\ 140$ )에 달하며, 국경점 《No.10/6》에서 다시 직선으로 남쪽으로 이어져 우수리 강 주 항로 중심에 위치한 국경점 《No.10/11》까지 이어진다. 국경점 《No.10/1》과 《No.10/11》은 각각 아무르 강과 아무르 수로의 주 항로 중심선에 위치하고, 국경점 《No.10/2》와 《No.10/6》은 각각 아무르 강과 아무르 수로 하안에 위치하고 있다.

국경점 《No.10/2》의 직교좌표 ‘ $x=5\ 358\ 650$ ’은 동 국경점이 적도에서 서쪽으로 5358.650km 떨어진 곳에 있음을 의미한다. 또 ‘ $y=23$



그림 5 하바롭스크 지역 군도 최종 분할 방안

482 570'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리니치 자오선으로부터 23번째 좌표 지대, 즉 동경 132°와 138° 사이, 동 좌표지대 중앙(본초) 자오선과 적도의 교차점에서 482.570km 거리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각 좌표지대의 폭은 위도마다 다르다 : 적도-약 670km, 위도 40°-510 km, 위도 50°-430km, 위도 60°-340km이다. 2004년 추가협정에 명시된 국경점들의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직교 좌표계를 이용하여 작성된 지형도가 필요하다. 게다가 2004년 추가협정에는 상기 국경점들의 직교좌표가 10m까지 정밀하게 명시돼 있다. 즉, 1 : 10,000 축척 지도가 첨부돼 있다(지도상 1cm는 실제 거리 100m, 지도상 1mm는 실제 거리 10cm에 해당한다). 이 정도의 정확도를 지닌 축척지도는 보안관리 대상으로, 일부라도 연구자나 언론에 노출될 수 없다. 볼쇼이우수리스크 섬을 통과하는 첫 국경점 《No.10/2》와 마지막 국경점 《No.10/6》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3.43km 이동한 가운데 두 국경점 간 거리는 남북으로

9km로 대체로 남남서 방향으로 꺾어진 직선이 형성된다(직선의 첫 구간과 마지막 구간에서 남남동쪽으로 구부러진다). 그 형태(그림 5)는 하바롭스크 지역 군도 분할도 2개안(그림 3, 4) 중 어느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공식적인 정보의 부재, 문제에 대한 침묵과 왜곡, 중국 측에 대한 러시아 측의 승리로 미화하려는 노력, 상반되는 도서 분할 방안들의 보도 등은 우리 모두의 예감을 악화시킬 뿐이다.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정확한 지도가 없는 상황에서 섬의 어느 부분이 우리 것으로 남게 되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제 타라바로프 섬 전부와 볼쇼이우리스크 섬 상당 부분이 중국에 넘어간다는 것은 분명하다. 러시아에는 하바롭스크 중심에 가까운 하바롭스크 주민들의 다차 촌이 형성돼 있는 섬 지역만이 남게 된다. 중국에는 이들 두 섬의 영토뿐 아니라 인근 수역과 도서 상공의 영공까지도 넘어간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바실리에프의 답변에서는 또다시 모순이 발견된다. 바실리에프는 “지금까지 러·중 국경선은 수로뿐 아니라 육로로도 이어져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예로 자바이칼 지역의 약 90km에 이르는 육로국경(몽골과의 국경으로부터 아르군 강까지)과 연해 변경주 한카호 남쪽의 약 500km를 열거했다. 그 밖에 “이제는 국경이 수면뿐 아니라 섬을 가로질러 육로로도 이어지도록” 한 합의를 러시아 외교의 성과로 간주하는 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일이다. 태고 이래 국가 간 국경은 자연적인 경계, 즉 하천·산맥·분수령 등을 따라 설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바롭스크 지역 하천 도서들은 러시아 전역과 극동지역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들 도서는 아무르 강을 따라 40km 펼쳐져 있는 하바롭스크에도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볼쇼이우리스크 섬에는 유사

시 중국의 공격을 하바롭스크 인근에서 격퇴하기 위한 강력한 요새가 구축돼 있다. 이 요새는 1969년 우수리 강 다만스키 섬 사건 이후 구축되었다. 이 요새는 사격진지, 보루, 매복 스탈린 전차(JS), 지뢰밭과 기타 군사 시설물을 두루 갖추고 있다. 이 요새는 지금까지 도시를 효과적으로 방호해 왔기 때문에 중국군이 큰 손실 없이 이 요새를 차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 요새의 임무에는 인근 도시의 방어 및 아무르 강과 지류의 적 함대 항행 차단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에 빼앗기는 섬들은 도시 방어를 위한 최후의 보루였다. 볼쇼이우수리스크 섬에 있는 하바롭스크 방어 체계가 모두 중국 측에 남게 되었다.

타라바로프 섬과 볼쇼이우수리스크 섬 요새 마지막 사령관의 정보에 따르면 “이 요새는 23km의 종합 군사 시설물, 다양한 장벽 및 지뢰밭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상의 거대한 성이다. 이 모든 것이 제대를 이루고 있으며, 겹겹이 둘러싸여 은폐된 채 서로를 방호하고 있다. 요새의 중심 화력은 기관포 대대, 전차중대, 포탄을 장전한 스탈린 전차(JS-2)가 매복해 있는 콘크리트 벙커 등이다. 이들 벙커 접근로는 회전형 기관총 진지에 의해 엄호되었다. 고류노프 기관총이 영구진지 내에 수직으로 설치되고, 총신은 총 안에 직각으로 설치되었다. 이 기관총을 분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기관총들은 주변 2km 내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다. 또한 수륙양용탱크(PT-76)로 무장한 독립 탱크대대와 미사일 대대도 배치되었다. 이 요새의 방호 아래 하바롭스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었으며, 오랫동안 특히 대중 국경지역에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곧 이 요새들이 하바롭스크를 수호했다. 중국과의 협정으로 타라바로프 섬 전체와 볼쇼이우수리스크 섬의 일부가 중국 측에 넘어갔다. 이에 따라 우리 손으로 요새를 해체해야만 했다. 무기와 각종 장비는

창고에 보관되고, 기타 군사 시설물은 폭파했다.”<sup>50</sup>

볼쇼이우수리스크 섬과 타라바로프 섬에는 2개의 러시아 국경초소가 운영되었다. 이들 국경초소 또한 해체하고, 그 중 하나는 하바롭스크 도심 맞은편 볼쇼이우수리스크 섬 동단에 있는 다차 촌으로 이전해야 할 것이다.

볼쇼이우수리스크 섬에는 유사시 하바롭스크의 아무르 강 철교가 붕괴될 경우 시베리아횡단철도 예비 선로 건설용 제방이 구축돼 있다. 이로써 향후 현재와 같이 모든 화물열차가 낮은 속도로 수십km의 도시 전 구간을 통과하지 않고 화물 운송 시간을 현저히 단축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볼쇼이우수리스크 섬과 타라바로프 섬 상공에는 극동지역 최대의 하바롭스크 공항에 항공기 이착륙을 위한 활공로가 통과한다. 활공로를 잃게 되는 것만으로도 하바롭스크의 모든 항공 운항은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현재의 풍배도(風配圖)에 의하면 하바롭스크 공항을 이륙한 항공기는 이들 도서 상공에서 속도를 내기 때문이다. 하바롭스크 항공기들은 어떻게 이륙할 수 있을 것인가? 이들 도서를 중국 측에 넘겨주고 나면 이 지역 상공을 이용하는 모든 항공 운항은 중국 측의 동의를 얻어야 할 뿐 아니라 그들의 영공 이용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항공 운항 자체가 금지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공항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바롭스크 공항은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여기에는 적지 않은 재정이 별도로 소요될 것이다.

---

<sup>50</sup> 슈리긴(V. Shurygin)(2008. 4), 「태평양 사람들」, 『내일』, 모스크바, No.14, 5쪽.

타라바로프 섬 상공에는 하바롭스크 주둔 러시아 공군 및 대공방어 시스템 11군 소속 전투기들의 이륙경로가 지나고 있다.

중국의 타라바로프 섬과 볼쇼이우수리스크 섬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갖는 진정한 의미는 이들 도서의 독특한 지리적 위치 때문이다. 2004년 10월 14일 러·중 동부국경 추가협정 서명으로 귀착된 연방 당국의 결정 후 양국 간 국경선이 사실상 하바롭스크 하안, 시 인근의 아무르 강 백사장을 통과하게 되지 않았던가. 동 협정에 따라 시계(市界)의 절반, 특히 가장 발달된 지역인 공업지구가 국경지대에 편입된다.

과거에 중국 측이 보여준 행동은 미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중국인들은 카자케비체보 수로의 항행을 막고, 수로의 천수화 및 건조화를 통해서 러시아 도서를 자신들의 영토로 편입하기 위해 타라바로프 섬 주변에 모래를 실은 바지선을 침몰시켰다. 새로운 여건이 조성됨으로써 하바롭스크 군도 수역의 하상 변화 과정에 대한 중국인들의 영향력 행사 기회는 훨씬 증대될 것이다. 하바롭스크 도서지역이 사실상 모두 중국 측에 양도됨으로써 일부 아무르 강 하상에 인접한 우수리강 하구에 대한 관할권을 얻게 되는 중국인들은 다양한 수리시설물 공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방향으로 아무르 강 하상을 변경하고 하바롭스크의 아무르 강 철교가 갖는 전략적 의미를 훼손하게 될 것이다.

아무르 강 주 하상이 분명히 하바롭스크로부터 멀리 펴멘스카야(Pemzenskaya) 수로로 물러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또 다른 두 개의 도시지역(센트랄니, 키롭스키)이 국경지대를 이루게 되어 하바롭스크의 2/3가 국경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군사·정치적 전략에 있다. 이들 도서를 법적·실효적

으로 지배하는 중국은 러시아의 극동 거점 도시이자 러시아 극동지역의 행정수도인 하바롭스크, 나아가 극동지역 남반부 전 지역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이를 통제하에 둘 수 있고 극동지역 전역의 경제·군사·정치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볼쇼이우수리스크 섬에는 부레야(Bureya)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 에너지를 연해 변경주에 공급하는 500kV 송전망이 통과하고 있다. 이 섬을 지나는 ‘동시베리아-태평양’ 구간의 송유관 건설도 계획 중이다.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하바롭스크는 화포뿐 아니라 박격포와 심지어 기관총의 사정거리에 들게 된다. 러시아 측의 대중 국경문제는 항상 가변적이지만 중국 측은 러시아를 상대로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표나 계획을 드러내지 않는다. 국가 간 협정은 협정 당사국들의 국익에 부합할 때까지 이행된다. 극단적인 경우 이러한 국가 간 협정은 이행되지 않거나 쉽게 파기될 수도 있다.

볼쇼이우수리스크 섬과 타라바로프 섬은 우수리 강 하구 맞은편 아무르 강 범람원에 자리하고 있다. 이들 두 섬은 주변의 소규모 섬들과 함께 50여 개 섬으로 구성된 범람지대를 이룬다. 군도의 전체 길이는 40km가 넘는다. 아무르 강은 이 군도에 의해 두 개의 지류로 분리된다. 군도의 북쪽은 아무르 강 주 하상에 의해, 남쪽은 아무르 강 카자케비체보(아무르스카야) 수로에 의해 각각 차단된다. 지표수문학(地表水文學) 자료에 따르면 아무르 강 남측 지류가 서쪽(우수리 강과의 합류지점 이전)에서는 카자케비체보 수로로 불리고, 동쪽에서는 아무르스카야 수로로 불린다. 카자케비체보 수로에는 2008년 10월까지 러시아 국경이 통과했다.

이들 도서는 수천 년 전에 형성되었다. 이들 도서는 끊임없이 그 크기

와 외형을 변모시켜 왔다. 불쇼이우수리스크 섬은 강 하류 부분에서 팽창하면서 아무르 강을 따라 하바롭스크 중심부 쪽으로 이동 중에 있다.

아무르 강 범람원의 도서들은 오랜 옛날부터 프리아무르 지역 원주민들에 의해 이용되었다. 1996~1997년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학자들의 심도 있는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들 도서에 만주족이나 중국인들이 거주했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17세기 포야르코프(Poyarkov)와 하바로프(E. Khabarov)의 원정 당시부터 아무르 강 범람원은 비옥한 토양과 광활한 목초지, 동·식물계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으로 주목을 끌었다. 이들 도서는 하바로프의 원정 결과 1651년 러시아에 편입되었으며, 아이훈 조약 체결 후 1858년부터 적극적인 개척이 시작됐다. 먼 옛날 러시아인들의 개척활동을 방해한 것은 단 한 가지, 잦은 범람이었다.

하바롭스크 지역 도서를 제정러시아, 소연방, 러시아가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19세기 러시아와 중국 간 극동지역 영토의 평화적인 분할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는 1860년 베이징 조약, 1861년 한카 의정서 및 1886년 하바롭스크 의정서에 따라 합법적이고 국제법적인 절차에 의해 획정된 것이다.

이들 도서는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거주하며 상당 수준 개발돼 있는 상태이며, 하바롭스크시와 하바롭스크 변강주의 모든 개발계획에 포함돼 있다. 가까운 장래에 이곳 불쇼이우수리스크 섬과 하바롭스크 간 거리는 더욱 좁혀질 예정이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대규모 교량건설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뿐이다.

2000년 2월 하바롭스크 변강주 이사예프 지사는 회의를 열어 하바롭스크 수계 아무르 강 하상 변화에 따른 부정적인 과정을 해소하기 위

한 문제를 논의했다. 회의 결과 시급히 취해야 할 대책들이 수립되었다. 이에 앞서 하바롭스크 시 당국은 시와 인접한 볼쇼이우수리스크 섬, 타라바로프 섬 및 기타 여러 섬들의 개발계획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주택, 교통, 환경, 레크리에이션 등 많은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서지역 이용 개념을 정립하지는 결의가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아무르 강 준설작업이 시작되었다.

이샤예프 주지사는 볼쇼이우수리스크 섬에 대한 독자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있었다. 게다가 하바롭스크 종합 개발 계획에 따르면 시 영토 확장을 위한 주요 대상지로 볼쇼이우수리스크 섬과 타라바로프 섬이 선정되었다. 볼쇼이우수리스크 섬 면적은 현재의 하바롭스크 면적과 비슷하다. 변강주 이샤예프 주지사는 이들 도서와 하바롭스크 간에 단 하나가 아닌 세 개의 교량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2003년 볼쇼이우수리스크 섬에 부교가 건설되고 적지 않은 개발자금이 투입되었다. 이제 이 모든 일은 헛수고로 판명되고, 하바롭스크 시의 개발계획은 의문의 대상이 되었다.

중국에 내준 하바롭스크 섬들은 천연자원이 풍부하다. 도서의 자연과 동물계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프리아무르 지리학회에서 도서지역 영토를 볼세헤흐치르스키 국립생태공원과 연계할 것을 요청할 정도로 풍요롭고 다양하다.

토양자원의 가치 또한 매우 높다. 도서지역 영토의 70%를 경작지, 건초재배지 및 목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홍수가 일어나지 않는 한 범람원에서 많은 양의 감자, 야채 및 건초 등을 수확할 수 있다.

도서지역에는 고가의 모피 동물, 유제류(有蹄類) 동물, 물새 등이 서식한다. 이곳에 서식하는 극동흑두루미, 일본흑두루미, 만다린오리, 거

위, 장수거북 등은 국제자연보호연맹, 소연방, 중국의 적색자료목록에 수록돼 있다.

아무르 강과 그 수로 및 월류지에는 물고기가 많다. 많은 물고기 중에는 검정잉어, 쏘가리 등 보호종도 있다. 도서 주변에는 불가 강 유역보다 더 많은 물고기가 서식한다. 섬 주변으로는 가을연어와 칠성장어가 이동한다.

프리아무르 지리학회에서 발간한 안내서에는 도서지역 개발에 관한 자료가 소개돼 있다.<sup>51</sup> 이미 20세기 초 타라바로프 섬에는 최초의 정착민의 성씨[Tabarov]를 딴 정착촌 타바롭카(Tabarovka)가 건설되고, 1945년부터 볼쇼이우수리스크 섬에 있는 우수리스크 마을이 번성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기 볼쇼이우수리스크 섬에는 아무르 선박회사의 수리소들이 들어서고, 도로와 송전선이 부설되었다. 1970년대에는 7500ha 규모의 협동농장(자랴)의 홍수 방지를 위한 제방이 축조되었다. 또 국경방어를 위한 요새가 구축되고, 병력 배치에 따른 군사도시가 건설되었다. 시 당국은 이곳에 휴양지를 조성하고, 많은 시민들은 텃밭을 일구고 다차를 지었다. 이 섬들은 하바롭스크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섬은 하바롭스크에 인접한 동부지역이 더 잘 개발되는 등 불균형적으로 개발되었다. 홍수 방지용 높은 제방을 쌓아 61km<sup>2</sup> 넓이의 매립지가 조성되었다. 이곳에서는 연간 4000t의 감자가 생산되고, 여름에는 1500마리 이상의 가축이 사육되며, 연간 1700t의 우유가 생산된다. 매립지 확장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51 『볼쇼이 우수리스크 섬과 타라바로프 섬 안내서』(2000), 하바롭스크.

이 땅을 중국에 양도하기 전까지 168km<sup>2</sup>의 초지에서 5개 농장기업이 연간 총 1만 2000~1만 3000t의 건초를 생산했다. 볼쇼이우수리스크 섬에는 두 개의 마을과 수십 개의 다차 촌이 조성돼 있다. 최근까지 이곳 도서지역에는 10개의 농장과 일부 기업의 휴양지가 있었다. 이곳에는 또한 하바롭스크 주민 전체의 육류와 우유를 공급하는 4개 농장의 목장이 있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중국 측에 넘어갔다.

이 섬에는 국영 농장기업 '자랴'의 목장, 축사 및 농지가 있었다. 감자, 당근, 토마토, 옥수수, 사탕무 등 많은 농작물을 재배하던 들판도 중국 측에 넘어갔다.

이들 섬은 휴양지로서의 의미 또한 컸다. 특히 매력적인 것으로 이곳 한 호수에 자라고 있는 매우 이국적인 연꽃을 들 수 있다. 볼쇼이우수리스크 섬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바롭스크 주민들의 주말 농장이 운영되고 있다. 많은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러 오는 이곳 주말 농장은 그들에게 충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하바롭스크 아무르 강변 맞은편에 있는 이 섬에는 1만 6000채의 다차가 있다. 346.4km<sup>2</sup>에서 중국령으로 선언되어 그들에게 넘어가는 도서 면적 337km<sup>2</sup>를 빼면 9.4km<sup>2</sup>가 남는다. 이것은 곧 1만 6000채의 다차 넓이(다차 한 채의 넓이는 0.06km<sup>2</sup>)와 비슷하다. 이들 다차는 6만~8만명의 하바롭스크 주민들이 1990년 이전에 받은 것으로, 그들의 먹을거리로 조달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이 지역은 국경법과 관련부처의 지침에 따라 국경수비대의 감시대상 지역으로 편입되어 이 다차 촌은 더 이상 방문할 수 없게 된다.

도서지역 영토의 대중 양도에 따라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주로 섬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하바롭스크 주민들이다. 하바롭스크 주민들

의 다치는 러시아령으로 남지만 나머지 영토는 모두 중국에 넘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볼쇼이우수리스크 섬 소재 수많은 다차들은 국경지역을 벗어날 수 있을까? 주민들이 국경통제소를 우회하여 자신들의 다차를 방문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국경법은 국경 일대의 경제활동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다. 이들 다차 촌에도 이동식 국경초소가 배치될 것이다. 결국 이 지역은 국경지역으로 변모하여 그로 인한 온갖 파장을 낳게 될 것이다.

타라바로프 섬은 중국에 거의 송두리째 넘어간다. 그런데 이 섬의 개발권은 스톨리핀(P. A. Stolypin) 총리의 개인농지 소유권 보장을 통한 자영농 육성 계획에 따라 1912년 러시아 정부로부터 이 섬을 사들인 러시아 농민 타라바로프(S. M. Tarabarov)에게 있다.<sup>52</sup> 이 섬에는 다차는 없지만 일부 기업의 시설물이 있다. 섬들 전체 면적 약 350km<sup>2</sup> 중 337km<sup>2</sup>가 중국인들에게 넘어갈 운명이다. 아무르 연어의 산란장소인 카자케비체보 수로 또한 고스란히 중국령으로 귀속된다.

오늘날 볼쇼이우수리스크 섬과 타라바로프 섬에서 하바롭스크 주민들이 잃게 된 1만 6000채의 다차와 수천ha의 경작지, 건초 재배지, 목장 등을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이들 도서를 잃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이곳에 투자한 모든 재원은 직접적인 손실로 이어진다. 그 액수 또한 적지 않다. 현지 경제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볼쇼이우수리스크 섬과 타라바로프 섬의 대중 양도로 인해 러시아가 입게 되는 손실 규모는 이미 투자된 자원, 하바롭스

<sup>52</sup> 필로노프(A. M. Filonov)·오피토티츠크(S. M. Opytovshchik)(2004), 「타라바로프」, 『극동의 학문과 자연』, No.1, 82~88쪽.

크 공항 이전 비용, 요새 폐쇄 및 새로운 국경시설 구축 비용 등 총 30억~40억 달러에 달한다.

물론 2004년 3월 14일 러·중 동부국경 추가협정에 따라 중국에 양도된 볼쇼이우수리스크 섬과 타라바로프 섬은 경제적인 의미 외에 하바롭스크와 연해 변강주, 나아가 러시아 극동 전 지역에 대해 군사·전략적·지정학적 차원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밖에 2004년 10월 14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국빈 방중 기간 서명된 '러·중 선박의 타라바로프 섬과 볼쇼이우수리스크 섬 인근 수역 항행에 관한 양국 정부 간 의정서'에 따라 러·중 양국은 동등한 아무르강~우수리 강 왕복 항행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제 군함을 비롯한 모든 중국 선박은 러시아 내륙하천 운항에 따른 러시아 당국의 허가서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중국 측은 일관된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여 그 결과 하바롭스크 지역 국경회담 과정과 국경설정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러시아 영토를 아무런 대가 없이 획득함으로써 중요한 외교적 성과를 얻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트카첸코(B. I. Tkachenko)

## 저자와 역자 소개

- 보리스 이바노비치 트카첸코(B.I.Tkachenko)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산하 '극동지역 민족 역사·고고학 및 민족지학 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모스크바 국립대 경제학부와 소련 과학아카데미 산하 경제연구소 대학원을 졸업하고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81년부터 1992년까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경제 및 국제 해양문제 연구소를 거쳐 1992년부터 현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저자의 주요 연구과제는 국제관계, 현대 러시아 정치·경제론 등으로 2010년 현재 10여 권의 단독 저서를 포함, 4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 중 대표적인 저작은 『러시아-중국 : 문서와 사실에 나타난 동부국경』 외에 『17~20세기 러·중 동부국경 조약 및 협정서』(1998), 『러-미 해양 경제수역 문제』(2008), 『쿠릴열도 문제 : 역사, 법률, 정치와 경제』(2009) 등의 단행본으로, 러시아 주변국들과의 국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성중환(成鍾煥)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어과와 동 대학 통역·번역대학원을 졸업하였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겸임교수를 거쳐 현재 국제회의 통역·번역사로 활동중이다.  
역서로는 『차밀라』(1990, 도서출판 영웅), 『동방특급열차-김정일과 함께한 24일간의 러시아 여행』(2003, 중심), 「극동지역한인들과 러시아 국경 통과문제」(2009,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동북아역사재단) 등이 있다.

## 찾아보기

### ㄱ

- 가중다수결(加重多數決) 281  
긴초세 96  
경도 47  
경제수역 272  
경제특구 320  
경흥수선(輕吃水船) 268, 270  
고기단구(古期段丘) 249  
고위 평탄면 162  
고위 평탄지대 156  
공기부양선 268, 270  
공동 관리체제 297  
공동 국경표지위원회 51, 232  
공동 소유체제 297  
공동위원회 43  
공동체적 일체감 11  
구(舊) 하상(河床) 61, 89  
국가 주권선언문 76, 281, 362  
국가두마 140, 240  
국가두마(하원) 246  
국가안보개념 291  
국가주권 237  
국가최고권력기구 290  
국경변경 83, 245  
국경복원 61  
국경분할 30  
국경선 162  
국경선 '재합의' 83  
국경선 이동 166  
국경선 획정 26  
국경설명서 27, 45, 52, 143, 400  
국경설정 27, 43, 101, 176  
국경설정 설명서 47, 164  
국경설정 안(案) 278  
국경설정문건 76  
국경설정위원 166  
국경설정위원회 367  
국경설정지도 214  
국경수비대 68  
국경수비대장 30  
국경수역 204  
국경제설정 70, 74, 121, 151, 212  
국경점 60, 74  
국경조약 29  
국경조정 327  
국경통과 조약 179  
국경표주 8, 21, 44, 51, 143, 162, 186  
국경표지 29, 43, 51, 143, 245  
국경표지 목록 30  
국경표지위원회 29, 61, 73, 101, 187  
국경표지작업 43, 73, 143  
국경협정 7  
국경회담 72  
국경획정 29, 43, 176  
국경획정 문건 74  
국경획정문 147  
국경획정선 42, 105  
국경획정위원 55  
국경획정지도 107, 212, 214  
국립자연생태공원 252  
국민 국가 건설 10  
국민의 배타적 권리 281  
국새(國璽) 112  
국제관계위원회 155, 240  
국제관할권 271

국제법 규범 288  
 국제자연보호연맹 251  
 국제조약법에 관한 빈 협정 285  
 국제해양법 264  
 국제해양법 규범 265  
 군사력 증강 296  
 극동공화국 96  
 극동해양보호구역 251, 254  
 글로벌 패권주의 296

## L

내수로 항행권 139  
 네르친스크(Nerchinsk) 조약 20, 25, 26, 34  
 노년곡(老年谷) 250  
 노보키엡스크 의정서 20, 25, 51, 182

## C

다극적 경제질서 293  
 다만스키 섬(전바오다오[珍寶島]) 70, 101  
 다인종·다민족적 식민 제국 10  
 대공방어 시스템 447  
 대량살상무기 293  
 대륙붕 경계 272  
 대륙붕 자원 272  
 대통령 전권대리인 318  
 독립국가연합 12  
 동부국경 추가협정 7, 8  
 동부국경협정 7, 25, 81, 90, 158  
 동중국철도 67  
 동해 진출로 231

## R

러·중 공동위원회 58  
 러·중 실무그룹 회의 233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73

## M

목본식물(木本植物) 251  
 목제 국경표주 58  
 무력압박 정책 304  
 무주지(無主地) 31  
 무효(無效) 289  
 문화혁명 69  
 미분할 영토 297  
 민족사회주의 303

## B

바지선 268, 270  
 발원지 44  
 방위각 184, 401  
 배수량 270  
 범람원 239  
 법률행위(法律行爲) 289  
 법적 무효 304  
 베이징 조약[北京條約] 20, 25, 34, 37, 147  
 베이징 추가조약 41  
 보조 국경표지 54, 168  
 보호조치 101  
 복합운송망 292  
 본초 자오선 133, 199  
 볼쇼이우수리스크(Bols hoy Ussuriisk) 섬 44

봉천 협정 66  
 부라(Bura) 조약 20, 25, 28  
 부영양화 250  
 부처간 위원회 201  
 분리주의 331  
 분수령 56, 156  
 분수령 산맥 186  
 분수령 표면 165  
 분수령선 161  
 분쟁지역 69, 70, 123, 151, 165, 168,  
 228, 229, 297  
 불균형적 잠재력 294  
 불신입안 363  
 불평등조약 69  
 비준 236, 286  
 비준·발효 245  
 비준동의안 289  
 비준서 28  
 비준서 교환 276  
 비지(飛地) 215, 254

人

상대고도 401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 20, 25, 49, 69  
 상호주의 65, 114  
 생태균형 249  
 석제 국경표주 53  
 선린정책 97  
 선박 자유항행권(自由航行權) 265  
 선박 항행권 14  
 선박 항행규정 20, 74, 135, 256  
 소·만(蘇·滿) 국경 229  
 소·중 국경 단독실사 부처간 특별위원회

소·중 동부국경협정 20, 72, 221  
 소·중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 68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81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65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과 중화인민  
 공화국 간 국경 동부구간 협정 72  
 소택지 169  
 수계(水系) 125  
 수로국경 60, 89, 263  
 수로국경선 81  
 수로국경위원회 90  
 수로측량작업 95  
 수리구조물 265  
 수문체계(水文體系) 248  
 수상운송시설 266  
 수생태계 250  
 수중생태계 251  
 수질 249  
 수질오염 250  
 습지 169  
 시베리아횡단철도 270  
 10월 혁명 20, 63  
 신(新) 데탕트 302  
 신(新) 하상(河床) 91  
 신사고 81  
 ‘신사고(新思考)’ 정책 74, 127, 275  
 신흥공업국 294  
 실크로드 365  
 실효적 국경 구간 322  
 실효적 국경선 232  
 심의 286  
 12해리 수역 265

## ○

ASEAN 293  
 아이훈 조약[愛理條約] 20, 25, 34  
 안보위원회 291  
 안보회의 293, 334  
 안부(鞍部) 196, 400  
 안정성 291  
 연방회의(상원) 246  
 영유권 26, 228  
 영토 불가침권 273  
 영토 수호 334  
 영토 일체성 327  
 영토·국경 분할 109  
 영토·국경정책 12  
 영토문제 120  
 영토분할 48, 75  
 영토성(Territoriality) 17  
 영토적 공민 11  
 영토적 통합성 11  
 영토적·정치적 팽창주의 296  
 영토주권 97  
 영해(領海) 265, 272  
 예측가능성 291  
 원충국(극동공화국) 96  
 외교노트 62, 84  
 외교정책 독트린 354  
 외무인민위원회 64  
 원료공급기지 295  
 월권행위 367  
 위도 47  
 위력정찰(威力偵察) 229  
 유관식물(維管植物) 251  
 유로(流路) 91  
 UNDP 271

유효기간 287  
 육로국경 72  
 육로국경선 81, 163  
 육상 '분쟁지역' 232  
 의화단운동(義和團運動) 113  
 의회청문회 321  
 이차식생 200, 402  
 인민대의원대회 75, 280, 290  
 인종집단 11  
 일·만 연합군 68  
 일·만(日·滿) 정권 229  
 '1국 1연안' 원칙 100  
 일팔타결 121  
 일방적 점유 155  
 임시표지 94

## ㄸ

자기자오선 183  
 자유경제시대 365  
 자유항행 258  
 저지형(低地形) 250  
 적군(赤軍) 230  
 적법성 289  
 적색자료목록 200, 40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46  
 전권대리인 33  
 전략공조 302  
 전략적 국경 294, 354  
 전략적 동반자 관계 8, 302  
 전략적 요충지 244, 273  
 전위 93  
 절대고도 218, 401  
 정밀 분계지도 388  
 정밀 지형도 169

정밀실사 163  
 정지수(停止水) 25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64  
 조약의 효력 288  
 조약파기(條約破棄) 289  
 주 항로의 중심 265  
 주(主) 하상(河床) 115  
 주지류(主支流) 92  
 주지류의 중앙선 265  
 주향(走向) 197, 401  
 주향방위각 199, 401  
 중계거점 272  
 중앙위원회 155  
 중앙집행위원회 99, 155  
 중화민국 65  
 중화시장(中華市場) 293  
 지경학적(地經學的) 요인 310  
 지리적 국경 294  
 지리적으로 공인된 국경 294  
 지전략적 국경 354  
 지전략적(地戰略的) 291  
 지정학적(地政學的) 정세 분석 140  
 지표수문학(地表水文學) 248, 448  
 지형도 346  
 지형측량단 55  
 지형탐사대 44  
 직교좌표 442  
 집단안보체제 293  
 집수구역 238, 321

## 天

채산성 272  
 천문지표 56  
 천수화(淺水化) 124

천연기념물 251  
 청정 담수 공급원 250, 321  
 청정 식수원 249  
 청정도 249  
 최고회의 289  
 최심선(最深線) 92, 265  
 추가협정 443  
 치치하얼 협약 20, 25, 59  
 치치하얼[濟濟哈爾, Qiqihar] 의정서 33, 59, 69  
 침식현상 217, 225  
 침투능(浸透能) 249

## к

카흐타(Kyakhta) 조약 20, 25, 28, 32  
 쿠레스크(Kuresk) 의정서 69  
 쿠릴 열도 239

## т

타라바로프(Tarabarov) 섬 44  
 타이가 지대 169  
 텐진 조약[天津條約] 20, 25, 36  
 통과운송 요충지 273  
 통합성 8  
 트로이 목마 324

## п

패권주의자 299  
 팡창정책 354  
 팡창주의 300, 354  
 페레스트로이카 74, 159  
 평화기 301

폐기통고(廢棄通告) 288, 321, 352  
표층수 249  
풍배도(風配圖) 446

ㅎ

하류곡(河流谷) 250  
하바롭스크 변경주 118  
하바롭스크 의정서 20, 25, 51  
하산사태 229, 332  
하상 준설공사 338  
하주(荷主) 269  
하항(河港) 258  
한가 의정서 20, 43  
합의의사록 60, 94

항행 불가능한 하천 245  
항행권 34, 254  
항행규정 138, 262  
해상공간 354  
해상국경 294, 354  
해양 진출권 262  
해양생물자원 272  
핵심적 이익 294  
행위능력(行爲能力) 289  
헌법소원 336, 337  
화물운송 272  
화해정책 340  
환경영향평가 360  
환적센터 271  
활공로 446



동북아  
역사재단  
번역총서  
28

## 러시아-중국 문서와 사실에 나타난 동부국경

초판 1쇄 인쇄 2010년 12월 10일

초판 1쇄 발행 2010년 12월 15일

지 음 보리스 이바노비치 트카첸코(B. I. Tkachenko)

옮 김 성중환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 록 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77 임광빌딩

전 화 02-2012-6065

팩 스 02-2012-6187

e-mail book@historyfoundation.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10

ISBN 978-89-6187-214-0 93900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